캐나다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토론토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4
한국과의 주요이슈 / 8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 10
주요 산업 동향 / 2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32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 51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52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 56
대한수입규제동향 / 65
관세제도 / 66
주요인증제도 / 69
지적재산권 / 75
통관운송 / 84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 97
외국기업 투자동향 / 101
우리기업 투자동향 / 10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 105
진출형태별 절차 / 115
투자입지여건 / 120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29
조세제도 / 134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40

V.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 142
물가정보 / 152
바이어발굴 / 153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163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16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172
이주정착 가이드 / 175
출장가이드 / 18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216
유관기관 웹사이트 / 217

1996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5) 685-3100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캐나다(Canada)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984,670 ㎢(한반도의 46배, 남한면적의 101배)
기후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지방), 해양성(태평양 대서양 연안), 한대성(북극권)
수도	오타와(Ottawa)
인구	3,350만 명(2009년 9월)
주요도시	Toronto(520만 명), Montreal(361만 명), Vancouver(217만 명), Ottawa (115만 명), Calgary (104만 명), Edmonton (100만), Quebec City (71만) 등
민족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언어	공용어 (영어 59% 및 불어 23%), 기타(18%)
종교	가톨릭(44%), 기독교(29%), 무슬림(1.9%), 그리스정교(1.6%), 유대교(1.1%), 기타(5.9%), 무교(16.5%)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 취임일: 1952.2.6
	○ 총독: Michaëlle Jean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2005.9.27(5 년 임기)
	○ 수상: Stephen Harper(실권자) ○ 취임일: 2006.2.6

자료: 캐나다 통계청

나. 경제지표

GDP	2007년: C$ 1조 3196억, 2008년: C$ 1조 3257억
실질경제성장률	2007년: 2.7%, 2008년: 0.5%, 2009년: -2.3%(중앙은행 2009년 9월 발표 기준)
1인당 GDP	2007년: US$ 38,200, 2008년: US$ 40,200
실업률	8.7%(2009년 8월)
물가상승률	2.3%(2008년), -0.9%(2009년 8월)
화폐단위	Canadian Dollar(C$)
환율 (C$/U$)	1.066(2008년), 1.089(2009년 8월)
외환보유고	US$ 439억(2008년), US$ 536억(2009년 8월)
산업구조	금융(20.2%), 제조업(14.3%), 유통(11.8%), 의료복지(6.5%), 건설업(6.1%), 공공행정(5.7%), 교육(4.9%), 과학기술서비스(4.8%), 광업(4.5%), 정보문화(3.7%), 농업(2.1%), 기타(15.4%) (2008년 기준)
교역규모	○ 수출: US$4,534 억 ○ 수입: US$4,064 억(2008 년 기준)
교 역 품	○ 수출: 자동차, 원유, 석유가스, 자동차부품, 비석유계가공품, 트럭, 알루미늄, 목재, 항공기, 금(2008 년 기준) ○ 수입: 자동차, 원유, 자동차부품, 트럭, 컴퓨터, 의료품, 비석유계 가공품, 내연엔진, 유무선 송신기기, 비행기부품(2008 년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다. 한-캐 관계

체결협정	○ 무역협정('66) ○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67) ○ 소맥원조협정('70) ○ 원자력개발응용협력협정('76) ○ 이중과세 방지협정('81) ○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협정('86) ○ 양국간 항공서비스협정('89) ○ 사회보장협정('97) ○ 산업기술협력약정('99) ○ 군사비밀정보교환 및 보호협정('99) ○ 통신장비조달협정('99) ○ 항공자유화협정('09)
협상 중	□ 한-캐 FTA ○ 2004.5.1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단기 과제로 추진, 우선 캐나다 측과 FTA 공동연구(Joint Study)를 추진하기로 결정 - 캐나다와의 FTA 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우수한 첨단 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상호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고려 ○ 2004. 11 월 APEC 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 회담 시 양국 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정부 당국간 예비협의(FTA exploratory discussions)를 개최키로 합의 ○ 2005. 1 월 및 3 월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 개최 - 양국의 FTA 추진정책, FTA 의 대상범위 및 포함할 내용, FTA 추진 시 양국의 관심·민감 분야 등에 대해 논의 ○ 2005. 5. 6 한-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 - 한-캐나다 FTA 추진에 관한 업계·학계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 2005. 5.23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한-캐나다 FTA 협상 추진 승인 ○ 2005. 7.11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DDA 소규모각료회의 계기, 대련) - 한-캐나다 FTA 협상 공식 출범에 합의(7.15 공식 발표) ○ 2005. 7.28 제 1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 협상 일정, 협정문 및 양허안/유보안 교환 시기·방식 등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체계(framework)에 대해 논의 ○ 2005. 9.27~30 제 2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 상품(시장 접근,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무역 구제)·서비스(금융, 통신, 인력 이동 등), 투자, 정부 조달 등 분야별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개시 ○ 2005.11.28~12.2 제 3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분야별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분야 양허방식(Modality)에 대한 논의 진행 ○ 2006. 2.13~17 제 4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 분야별 통합 협정문 축조심의 작업 진행 및 상품 분야 양허 제외 및 장기철폐 품목 교환 ○ 2006. 4.24~27 제 5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 양측 간에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 유보안이 교환됨으로써 실질적인 양허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통합 협정문 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

	○ 2006. 6.26~29 제 6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 양측 간에 상품·투자·서비스 등 분야별로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상품 양허안에 대한 request 를 교환하였으며, 서비스, 투자 유보 안에 대하여 논의 ○ 2006. 9.25~28 제 7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 양측간에 상품 2 차 양허안을 교환, 분야별 통합 협정문 협의 지속(통관분야 협상 마무리), 품목별 원산지 협상, 서비스.투자 유보 안에 대한 논의 계속 ○ 2006.11.20~23 제 8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서비스, 투자 현재 유보안 수정안과 미래 유보안 초안을 교환하여 양허협상 심화 ○ 2007.1.29~2.1 제 9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밴쿠버) - 공산품.농산물.수산물.임산물 분야별로 양허 협상을 진행하고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집중 검토 ○ 2007.4.23-4.26 제 10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 상품 양허,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였으며, 전자 상거래, 지재권, 원산지,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경쟁, 총칙 등 협정문 본문에서 일부 쟁점을 해소 ○ 2007. 6. 25~6. 28 한-캐나다 FTA 제 1 차 상품분야 실무협상 개최(오타와) - 핵심 분야인 상품양허 협상과 관련, 양측이 협상 전 교환한 상품 양허 package 안을 기초로 논의를 심화하고 공산품, 농산물 일부 품목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협상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 2007.9.11~14 한-캐나다 FTA 제 2 차 상품분야 실무협상 개최(서울) - 상품양허, 자동차 비관세 장벽, 무역 구제 등에서 양측이 교환한 포괄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쟁점별 이견을 좁혀나가는 데 논의를 집중,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 2007.10.9~12 제 11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 상품, 원산지, 서비스(통신, 인력이동 포함), 투자, 위생 및 검역 조치(SPS), 기술장벽(TBT) 등 분과별로 협의를 진행. 상당수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합의 내지 의견 접근을 이룸으로써 최종 협상 타결안의 윤곽을 형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2007.11.26~29 제 12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서울) - 12 차 협상에서는 핵심 쟁점의 실질적 진전 및 여타 잔여 쟁점에 대한 타결을 추진 ○ 2008.3.25~28 제 13 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오타와) - 상품 양허, 협정문, 서비스, 투자 등 잔여쟁점 사항 타결 - 2008 년 6 월 서울에서 제 14 차 협상 개최 합의 ○ 2008.6.16~19 제 14 차 한-캐나다 FTA 협상 무기한 연기(서울) - 제 14 차 협상이 6 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일주일 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
한국과의 교역규모	○ 2006 년 - 수출: US$ 36 억 2,000 만 - 수입: US$ 30 억 9,000 만 ○ 2007 년 - 수출: US$ 35 억 - 수입: US$ 32 억 5,000 만

	○ 2008 년 - 수출: US$ 40 억 6,000 만 - 수입: US$ 44 억
교역품	○ 수출: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타이어, 합성수지, 철강 등 ○ 수입: 유연탄, 펄프, 알루미늄, 광물, 항공기, 사료, 육류, 석유화학, 원목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현지법인 투자 - 2006 년: 77 건, US$ 8 억 9,881 만 - 2007 년: 61 건, US$ 2 억 4,148 만 - 2008 년: 42 건, US$ 1 억 4,993 만
	○ 캐나다의 대 한국 투자 - 2006 년: 60 건, US$ 8,296 만 - 2007 년: 46 건, US$ 5,114 만 - 2008 년: 45 건, US$ 8,961 만
교민	총 교민 수 약 22만 3,000여 명(일시 체류자 포함) (2009년 9월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조직

1) 국가 형태

캐나다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 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다. 각 주의 정부와 연방정부라고 불리는 국가의 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2중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국가조직과 흡사하게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캐나다는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 국왕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공화제와는 달리 국민의 통일적 상징 으로서의 군주(영국 여왕,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표)를 받드는 점이 캐나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연방수상이 행정적 수반 으로서 전권을 행하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 체제를 갖추고 있다.

□ 10 개 주(Province)와 3 개 준 주(Territory)로 구성

구 분	주 명	수 도 명	면적비(%)	인구비(%)
대서양	New Foundland	St. John's	4.1	1.6
	Prince Edward Island	Charlottetown	0.1	0.43
	Nova Scotia	Halifax	0.6	2.9
	New Brunswick	Fredericton	0.7	2.3
중 부	Quebec	Quebec	15.5	23.6
	Ontario	Toronto	10.7	38.8
서 부	Manitoba	Winnipeg	6.5	3.7
	Saskatchewan	Regina	6.5	3.1
	Alberta	Edmonton	6.6	10.1
	British Columbia	Victoria	9.5	13.2
북 부	Northwest Territories	Yellowknife	14.4	0.13
	Yukon Territories	Whitehorse	4.8	0.10
	Nunavut	Iqualuit	20.0	0.09

자료: 캐나다 통계청

2) 행정부

□ 여왕(Queen)

법률안의 재가(裁可), 의회소집 및 해산, 외교사절 접대 등의 행정권을 내각의 조언을 받아 행사하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 총독(Governor General)

수상이 추천하고 여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실질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1952년 이래 캐나다인이 임명되도록 제정되었기에 총독의 지위는 더욱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 영국 정부와 캐나다 연방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 소집, 휴회, 의회 해산, 법안에 대한 동의 등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갖는다.

□ 내각(Cabinet)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수상을 수반(首班)으로 한다. 내 각 구성 절차에 관한 헌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내각의 각료는 주로 하원의원 중에서 임명되고 상원의원 중에서도 일부 임명이 가능하며, 하원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행정부 각 부서의 장이 되는 내각은 행정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회계규정이나 행정 조항 등의 법안을 가결할 권한을 갖는다. 4개의 위원회(사회정화위원회, 경제정책 위 원회, 재정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주일에 1회 전 각료가 참 석한 가운데 국무 회의를 개최한다. 수상 이외에 26명의 각료가 있다.

3) 사법부

□ 헌법

캐나다의 헌법은 관습법 체계이므로 여러 가지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영국 연방의 일부 법률 조항들이 넓은 범위의 캐나다 헌 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영국 연방 의회법 중 왕위승계, 총독, 상원, 하원, 선거구, 선거 및 왕의 호칭에 관한 조항들을 캐나다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법 체계는 대부분 영미법을 따르고 있으나 퀘벡 주의 법체계만은 프랑스의 시민법 체계를 토대로 했다.

□ 조직

크게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분류된다. 연방 최고재판소(Supreme Court of Canada)를 정점으로 연방 재판소(Federal Court of Canada), 주 최고재판소(Superior Court), 각 지방(County)의 재판소 및 하급 재판소(가정재판소)의 순서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형의 체계로 되어 있다. 최종심을 다루는 연방 최고재판소(Ottawa소재)는 연방 재판소 및 각 재판소의 민사, 형사 쌍방의 판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헌법 문제와 연방법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 한다.

연방 재판소는 국가에 관련된 소송, 세금문제, 연방 정부 기관에 관한 상소, 주간의 사 건 등을 취급한다. 주 재판소에는 주 공소재판소와 고등재판소가 있다. 주 법원은 삼심제도에 따라 최고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다. 주의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의회

캐나다의 입법권은 캐나다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의회는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과 상원(Senate), 하원(House of Commons)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상징 적인 존재이며 실질적인 입법권은 상, 하원이 수행한다.

캐나다 의회는 국군통수, 무역과 상업, 은행, 통화와 파산, 우편, 어업, 특허권, 저작권, 인구조사, 조세,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법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 밖에도 주 의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모든 법안은 상, 하원의 동의와 총독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상하원은 모두 법안 발의권을 가지나 상원은 공공지출이나 과세 관련 법안의 발의권이 없다.

상원의 의석 수는 105석으로, 수상의 조언에 의해 주별로 할당해 총독이 임명한다. 임 기는 종래 종신이었으나 1965년에 75세로 개정되었다. 상원의원의 임명시 각 주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각 주 출신 의원의 의석 수가 정해져 있다. 재정에 관한 법안의 결의권은 하원이 갖지만 상원은 성문법상 하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실제로 정부에 제출되는 법안은 통상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상원의 입법활동은 극히 저조하다. 상원은 주의 이익 보호, 하원의 착오 시정 및 과격한 정책의 억제, 자본가 및 보수층 이익의 의회 반영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상 하원은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구현하고 예산과 세법상의 결의권을 갖는 등 상원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지며, 실제 입법과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가장 중 요한 기관이다. 하원의 우월적인 지위는 국민을 대표하며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이 민주 적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원은 내각의 수반을 지 명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 등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후 제1당이 된 당의 당수는 내각의 수반으로 지명되며 총 독으로부터 내각을 조직할 권리를 위촉받는다. 하원은 인구 수에 따라 주별로 할당되며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되는 30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성문 법상 5년이지만 관습에 의해 4년부터 4년 반 사이에서 해산하는 것이 통례이다. 총독의 승인을 얻어 임기 내에도 해산할 수 있다.

나. 정치제도

1) 선거제도

캐나다 연방의회의 의원선거는 상원의 경우에는 임명제로 되어 있고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정해져 있다. 단원제인 주의회의 경우도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다. 선거제도는 의회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매커니즘으로 선거 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되며 의회의 세력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상원의원 선출

캐나다 상원의원 정수는 105명으로 모든 상원의원은 수상과 내각의 추천 하에 총독이 임명한다. 온타리오주, 퀘벡주, 대서양 연안지역 및 서부지역에서 각각 24명, 뉴펀들랜 드주에서 6명, 3개의 준주에서 1명의 상원의원이 선임된다. 1965년 6월 2일 이전에 취임한 상원 의원들은 종신으로 그 직을 보유할 자격을 갖는 한편 그날 이후 취임한 상원의원은 75세가 되면 퇴직해야 한다.

□ 하원의원 선거

○ 선거권
- 1970년의 선거법에 의해 연방의회의 선거권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막론하고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에게 부여된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출정하는 국민은 당연히 공직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근거에서 군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갖는다.
- 선거관리관, 재판관, 형무소나 정신이상자 수용시설에 있는 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피선거권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입후보자는 선거구 내에서 250명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200 캐나다 달러의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이 공탁금은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아도 당선자 득표수의 반을 얻은 경우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정당에 소속될 필요는 없으나 개인이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형무소, 정신이상자 시설에 수용 중인 자, 선거 부정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은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선거구
- 캐나다 하원의원 정수는 308명이다. 의석은 원칙적으로 각 주의 인구 크기에 따라 배분된다. 각 주의 하원 의원 수가 상원 의원 수에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 4석, 뉴브런즈윅 주에 10석을 최소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 이는 캐나다 연방의 창설 당시 소규모의 주들이 거대 주들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표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소규모 주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주에 대한 배려의 의미로 국세조사 결과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주도 의석 수의 15% 이상은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 캐나다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308명의 의원 수에 해당하는 308개의 선거구가 존재하며, 각 선거구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따라서 각 주는 각각 배당된 의원 수에 해당하는 하원의원 선거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수 차이에 따라 투표가치의 차이 또한 초래되는데, 그러한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964년에 '선거구 구획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선거구 구획 위원회는 10년 단위로 행해지는 국세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데 각 주의 주민 수를 총 의원 수로 나누어 선거구의 평균 주민 수를 산출, 그 수치의 상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선거구를 분할한다.

2) 정당제도 및 현황

□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자유당의 공적자금 스캔들 및 지지부진한 개혁정책의 실패로 인해 39대 의회에서 12년 만에 재집권한 당으로 서부지역과 농민층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 보수당의 주 요 목표로는 재정적자의 축소, 사회복지개혁, 세금 감면 등으로 동맹당(Alliance Party) 과 통합한 이후 총 16 차례 집권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다. 자유무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 무역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관계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수당은 1990년대 초의 재정악화와 경기불황으로 국민의 불신을 얻은 이후 입지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캐나다 동맹당과 합병하여 재차 제1 야당으로 도약한 이후, 2008년 10월 연방 총선에서 2006년에 이어 승리함에 따라 현재 소수여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 자유당(Liberal Party)

1867년 연방의 창설 이후 현재까지 총 20차례 집권한 대표적인 정당으로 퀘벡주와 온 타리오주 등 동부지역의 도시 층에서 강한 정치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 부의 권력 강화, 이중 언어정책 등을 통한 국민단합 도모와 사회복지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1994년부터 12년 동안 장기 집권하였으나 공적 자금 부패 스캔들 및 공 공의료서비스 개혁 실패로 인해 2006년 1월 39대 총선에서는 보수당에 패하여 현재는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퀘벡 블럭당(Bloc Quebecois)

1990년 Meech Lake 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당시 집권당인 진보보수당을 탈퇴한 일 부 세력이 퀘백 분리독립 등을 위해 별도로 원내그룹을 결성함으로써 창설되었다. 퀘 벡주가 유일한 지지기반인 지역정당으로 1995년 이후 그 당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40대 총선에서도 2006년 총선대비 2석을 잃어 점차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사회주의 정당으로 서부 B.C.주와 사스케치완 주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으며, 40대 총 선에서 2006년 대비 8석을 늘림에 따라 보수당과 자유당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 하는 당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 정당 현황

정당명	당수	하원의원수	상원의원수
보수당(Conservative party: Cons.)	Stephen Harper(현 수상)	143	46
자유당(Liberals: Libs)	Michael Ignatieff	77	53
퀘벡 블럭당(Bloc Quebecois: B.Q.)	Gilles Duceppe	48	0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N.D.P)	Jack Layton	36	0
무소속(Independent)		1	3
공석(Vacancy)		0	0
기타(Non-Aligned)		0	3
합계		305	105

자료: 캐나다 40대 의회, 2009년 9월 기준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보수당 집권에 따른 한-캐 관계 영향 분석

○ 1990년대 후반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집행한 2억 5,000만 달러의 스폰서십 프로그램 예산 중 일부가 선거 지원비 등으로 부당하게 유용되었다는 진상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마틴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2005년 11월 29일 가결됨에 따라 2006년 1월 23일 조기 총선 실시, 보수당이 12년간 집권한 자유당을 밀어내고 집권 여당으로 탈바꿈 하였다.

○ 한-캐나다 FTA 추진과 관련하여 별다른 정치적인 영향은 없지만 보수당의 지역적 기반이 농업이 발달한 서부 캐나다 지역이며 보수당은 기업 이익 대변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농업, 자동차, 조선업, 금융 등 민감한 부문에서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임. 2008년 6월, 제14차 한-캐 FTA 협상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일주일 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캐 FTA 체결 협상 현황

○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는 2004년 5월 대외 경제 장관 회의에서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 2005년 1월과 3월 총 2차례에 걸친 예비협상과 5월 한-캐 FTA 체결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관심사항을 확인한 끝에 2005년 7월 15일에는 한-캐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발표하였다.

○ 협상 공식 발표 이후 2008년 3월까지 13차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제14차 협상이 2008년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일주일 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 협상 진행 경과
-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단기 과제로 설정, FTA 공동 연구(Joint Study)추진 결정
- 2004년 11월: APEC 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 및 통상장관 회담 시 양국 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정부 간 예비협의 개최 합의
- 2005년 1월 및 3월: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 개최(2차례)
- 2005년 7월(1차, 서울), 9월(2차, 서울), 11월(3차, 오타와), 2006년 2월(4차, 서울), 4월(5차, 오타와), 6월(6차, 서울), 9월(7차, 오타와) 협상 개최, 11월(8차, 서울)
- 2007년 2월(9차, 밴쿠버), 4월(10차, 서울), 6월 및 9월 상품분야 실무협상 개최, 10월(11차, 오타와), 11월(12차, 서울)
- 2008년 3월: 제13차 한-캐 FTA 협상 개최(오타와), 상품 양허, 협정문, 서비스, 투자 등 잔여쟁점 사항 타결
- 2008년 6월: 제14차 한-캐 FTA 협상 무기한 연기(서울), 제14차 협상이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일주일 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

다. 한-캐 항공 자유화 협정(Open Sky)

○ 2009년 7월 15일, 한-캐 항공자유화협정 공식 발효
- 양국은 2008년 11월 밴쿠버에서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협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다듬어 2009년 6월에 가 서명을 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 15일에 발효를 공식 발표하였다.
- 항공 자유화 협정은 항공기 운항횟수 및 노선 무제한, 여객 및 화물 운수권 자유화, 한국 항공사의 캐나다 내 운항도시 무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 캐나다는 2009년 7월 29일부로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여, 2009년 9월 기준 한국산 철제관련 2개 품목인 구조용 강관과 동제 관연결구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실시 중이다.

품목명	유 형	규제일자	규제현황
구조용강관	반덤핑	- 03/03/21 조사 개시 - 03/08/19 덤핑 예비판정 - 03/11/17 덤핑 최종판정	- 모든 수출업체에게 수출가격의 89% 반덤핑관세 부과
동제관연결구	반덤핑	- 06/06/8 조사 개시 - 06/10/20 덤핑 예비판정 - 07/01/18 덤핑 최종판정	- 242% 반덤핑관세 부과

○ 2009년 9월 기준, 총 8개 중국산 철강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철강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한국산 제품도 수입규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Ⅱ.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2009년 8월 주요 경제 동향

○ 2009년 6월 캐나다 경제, 10개월 만에 상승
- 2009년 6월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은 전월 대비 0.1% 상승 기록
- 에너지, 도매 판매, 부동산 에이전트 부문은 각각 전월 대비 1.3%, 1.3%, 8.3% 증가를 기록하며 6월 실질 국내총생산 상승을 주도

○ 2009년 7월 소비자 물가, 2009년 6월 대비 0.3% 감소
- 2009년 7월 소비자물가는 2009년 6월 대비 0.3% 감소 하였으며 2008년 7월 대비 0.9% 감소를 각각 기록
- 2009년 6월 대비 0.3% 감소의 주 원인은 가솔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운송 관련 비용 감소를 꼽을 수 있음
- 2009년 7월 경기선행지수는 2009년 6월 대비 0.4% 상승한 214.5포인트를 기록

○ 2009년 7월 누계 기준 對 캐나다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 2009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 캐나다 수출은 U$19억4천4백만, 수입은 U$20억6백만으로 U$6천2백만 무역적자 기록
- 2009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 캐나다 수출은 2008년 7월 대비 16.0% 감소
- 2009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 캐나다 수입은 2008년 7월 대비 21.2% 감소

가. 지표로 본 경제동향

1) 6월 캐나다 실질국내총생산 0.1% 증가

○ 2009년 2/4분기와 6월 캐나다 실질국내총생산 각각 -0.9%, 0.1% 기록
- 2009년 2/4분기 캐나다 실질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0.9%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4분기의 1.6% 하락에 비하면 현저히 개선된 수치이다.
- 2009년 6월 캐나다 실질국내총생산은 전월 대비 0.1%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7월 이후 처음 나온 상승 수치이다.

○ 자동차와 부동산 시장 회복이 2/4분기 GDP에 긍정적 영향 끼쳐
- 2009년 2/4분기, 자동차 구매 증가가 전체적인 개인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동시에 부동산 경기 회복도 GDP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2/4분기 수출과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기업투자는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1/4분기보다 훨씬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2/4분기 제품 부문은 3.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나갔으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과 에너지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 서비스 분야는 부동산업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마감하고 0.3% 플러스 증가를 기록하였다.

○ 2009년 6월 캐나다 GDP, 10개월만에 플러스 성장 기록

- 2009년 6월, 10개월만에 캐나다 실질국내총생산은 전월 대비 0.1% 상승을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 6월 서비스 부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0.4% 성장을 기록한 반면, 제품 부문은 0.6% 하락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제품 부문의 하락 역시 지난 7개월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수치로 볼 수 있다.
- 2009년 6월 GDP 상승 주요 원인은 에너지, 도매 판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꼽을 수 있으며 소매 판매, 금융, 공공부문 역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GDP 상승에 기여하였다.
- 한편, 금속 광산업과 제조업의 부진은 이러한 상승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9년 6월 에너지부문은 1.3% 상승을 기록한 반면, 구리, 니켈, 납, 아연을 포함하는 금속 광산업은 낮은 수요로 인한 광산들의 임시 폐업으로 인해 33% 하락을 기록하였다.
- 2009년 6월 도매 판매는 1.3% 상승한 반면, 제조업은 0.7% 감소하였다. 21개 제조업 부문 중 14개 부문이 감소하였으며, 내구제 제품 생산은 1.4% 감소한 반면, 비내구제 제품 생산은 0.1% 상승하였다.
- 주택 매매 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 업자들의 활동 증가 (8.3%)를 야기시켰다. 건설업은 주택 건설 부진 (-1.5%)으로 인해 전월대비 0.5% 감소하였다.

2009년 6월, 주요산업별 실질 GDP 기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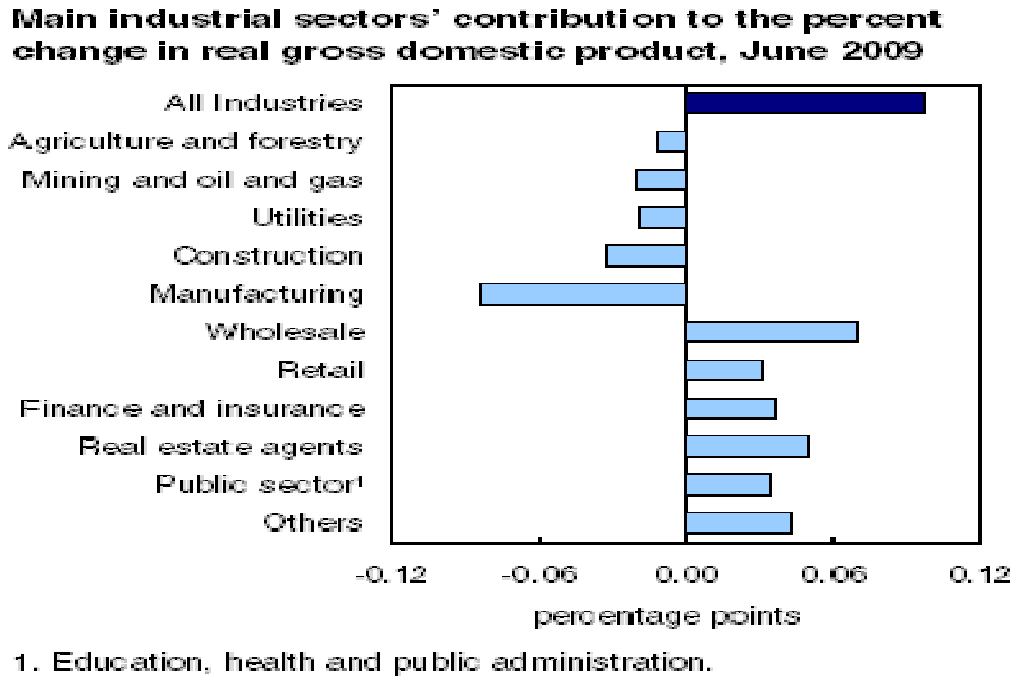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통계청

실질 GDP 성장률 및 산업생산성 추이

(단위: %)

	2008									2009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GDP 성장률	0.4	-0.1	0	0.7	-0.3	0.1	-0.1	-0.8	-1.0	-0.6	-0.1	-0.5	-0.2	-0.5	0.1
노동 생산성	-0.2			0			-0.5			0.3			-		

주: GDP성장률은 전월 대비 수치, 노동생산성은 분기 수치
자료: 캐나다 통계청

2) 주요 경제실적 지표 및 경기전망 지수

○ 6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1.0% 증가

- 6월 소매판매는 8개 분야 중 6개 분야의 판매가 증가하며 전월 대비 1.0% 증가한 C$334억을 기록하였다.
- 6월 소매 판매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부문으로는 자동차부문으로 2.1% 판매이익을 기록하였다.
- 식품 및 음료 부문은 1.3% 증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슈퍼마켓 판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홈 가구와 전자 부문은 0.6%의 이익을 얻었다. 반면에 일용품의 판매는 0.6% 감소를 기록하였고, 건축과 홈 서플라이 부문 또한 0.6%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호조분야: 자동차 부문 (2.1%), 식품 및 음료 부문 (1.3%), 가정용 가구와 전자부문 (0.6%)
・부진분야: 일용품 (-0.6%), 건축 및 홈 서플라이 (-0.6%)
(각 분야 증가/감소치는 전월 대비 수치)

○ 7월 소비자물가, 전월 대비 0.3% 감소

- 7월 소비자물가는 6월보다 낮아진 가솔린 가격으로 인한 운송 관련 비용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한 114.0 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하락한 가솔린 가격으로 인해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하며 113.7을 기록하였다.
- 한편, CIBC의 2009년 8월 소비자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물가 상승률은 2009년 3/4분기까지 하락을 지속하다 그 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0년 물가상승률을 2%로 예상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2010년 물가상승률이 2%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7월 경기선행지수, 0.4% 증가.

- 7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4% 증가한 214.5 포인트를 기록하며 2008년 8월부터 이어져오던 하락세를 마감하였다.
- 10개 부분 중 총 6개 부분에서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주식시장과 주택 수요는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 주택 수요는 증가는 자동차와 같은 내구제 판매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내구제 판매는 1년여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가구, 생활 가전, 개인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0.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제조업은 신규 주문량 감소율이 6%에 달하며 부진을 이어나갔다.
- 평균노동시간은 전월보다 0.1 시간이 늘어난 36.6시간을 기록하였다.

○ 7월 실업률 8.6%기록

- 정규직과 계약직의 일자리 감소로 인하여 4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7월 실업률은 8.6%로 6월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 7월 일자리 감소는 15-24세의 청년 계층과 25-54세 여성계층에서 두드러졌다.
- 주중에서는 퀘백주에서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숙박업, 식당업, 그리고 건설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반면, 도매와 소매판매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 작년 10월 이후, 일자리는 2.4% 하락하였고, 그 중에서도 제조, 건설, 교통, Warehouse분야의 산업 부진이 주요 하락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경제실적 지표 및 경기전망 지수

(단위: %, 포인트)

구분	지표 및 지수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실적지수 및 경기전망지수	소매판매 (Retail Sales)	0.1	-0.3	1.1	-0.9	-2.4	-5.4	1.9	0.2	0.3	-0.8	1.2	1.0	-
	소비자 물가 (CPI)	0.3	0.3	0.2	-0.6	-0.3	-0.4	-0.1	0.4	0.3	-0.3	0.2	0.3	-0.3
	경기선행지수 (Leading Indicator,1992=100)	229.5	230.3	229.4	228.4	227.0	225.7	223.9	218.9	215.8	213.8	213.7	213.6	214.5
	실업률 (Unemployment)	6.1	6.1	6.1	6.2	6.3	6.6	7.2	7.7	8.0	8.0	8.4	8.6	8.6

		2007			2008				2009	
		2/4	3/4	4/4	1/4	2/4	3/4	4/4	1/4	2/4
경제실적지수 및 경기전망지수	개인 소득 (Personal Income)	0.4	1.3	1.4	2.6	1.0	0.7	0.6	-0.8	0.6
	개인 소비 (Personal Expenditure)	1.4	1.0	1.8	0.6	0.3	0.1	-0.8	-0.3	0.4

주: 경기선행지수는 해당 연, 월말 기준. 그 외 지표는 전월/년 대비 증감율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

3) 주요 산업 동향

○ 자동차 산업

- 2009년 7월 캐나다 자동차 판매는 2008년 7월보다 6.4% 감소한 139,901대로 나타났으며 줄곧 두자릿수 감소를 이어온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수 감소를 기록하였다.

- 2008년 7월 대비 경트럭 (light truck) 판매는 4.4%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간 반면, 승용차 판매는 14.4% 감소하였다.
- 총 66,474대의 경트럭이 2009년 7월에 판매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8년 7월보다 2,785대 상승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차의 경우 2009년 7월 73,427대 판매를 기록하였다.
- 2009년 7월까지 자동차 누계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16.6% 감소하였다.
- 경트럭과 승용차의 2009년 7월까지 총 누계 판매량은 각각 2008년 7월보다 8.8%와 22.7% 감소하였다.

<u>지난 3년간 캐나다 자동차 시장 판매 현황</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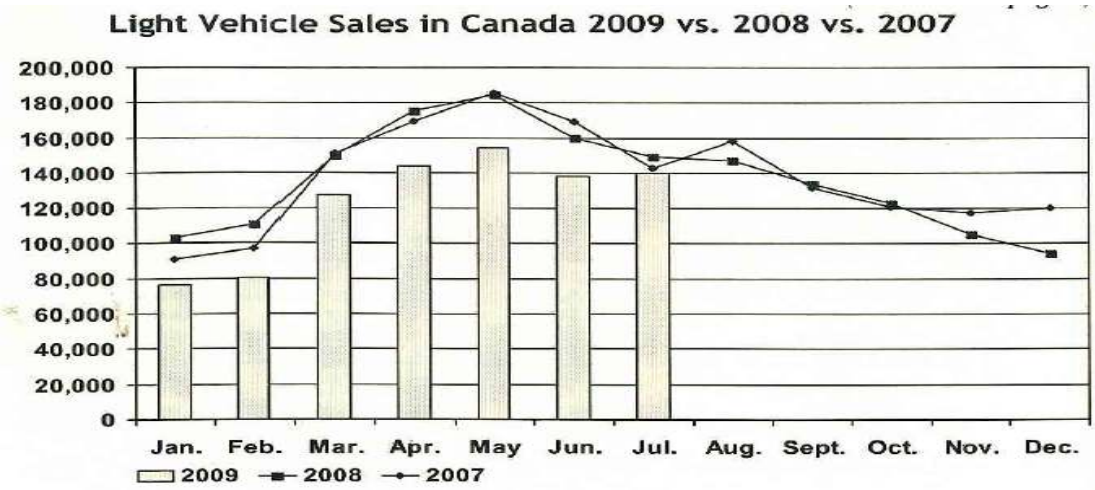

자료: DesRosiers Automotive Reports

- 2009년 7월, 포드, 아우디, 볼보, 현대, 포르쉐, 기아가 2008년 7월 대비 각각 47.6%, 40.3%, 39.4%, 37.8%, 37.0%, 29.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 포드는 두 달 연속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한 기업이 되었으며, 상기 6개 기업 중 기아를 제외하고 모두 승용차와 경트럭 두부문에서 모두 판매 성장을 기록하였다.
- 상기 6개 기업 중 포르쉐와 볼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은 2009년 7월까지의 누계 판매량에서도 전년 동기간 대비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 2009년 7월에 미쯔비시 (+18.7%), Volkswagen (14.6%), 렉서스 (13.9%), BMW (12.1%)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경트럭에서의 부진을 승용차 부문에서의 놀라운 활약으로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쯔비시, Volkwagen, 렉서스, BMW 승용차 부문의 2009년 7월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29.9%, 87.1%, 86.3%, 16.3% 성장을 각각 기록하였다.
- 그 외, 2009년 7월 Mercedes-Benz와 Acura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5%와 7.4%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 7월 누계 판매량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Mercedes-Benz는 16.5% 상승한 반면, Acura는 2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7월, 인피니티, 제규어, Nissan, 스즈키, Subaru 등이 2008년 7월 대비 1.5%에서 8.9% 사이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들 중 2009년 7월까지 누계 판매에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회사는 Subaru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크라이슬러, MINI, 토요타, 마즈다, 혼다, 랜드로버등은 2009년 7월 판매에서 10.1%에서 24.6%의 두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7월까지의 누계 판매에서도 모두 두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부진하였다.

· 2009년 7월 판매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커다란 부진을 보여준 회사는 GM(-41.6%), smart(-42.4%), Saab(-85.8)이며 이들 모두 2009년 7월까지의 누계 판매에서도 매우 부진하였다.

캐나다 자동차 시장 생산 현황 – 2009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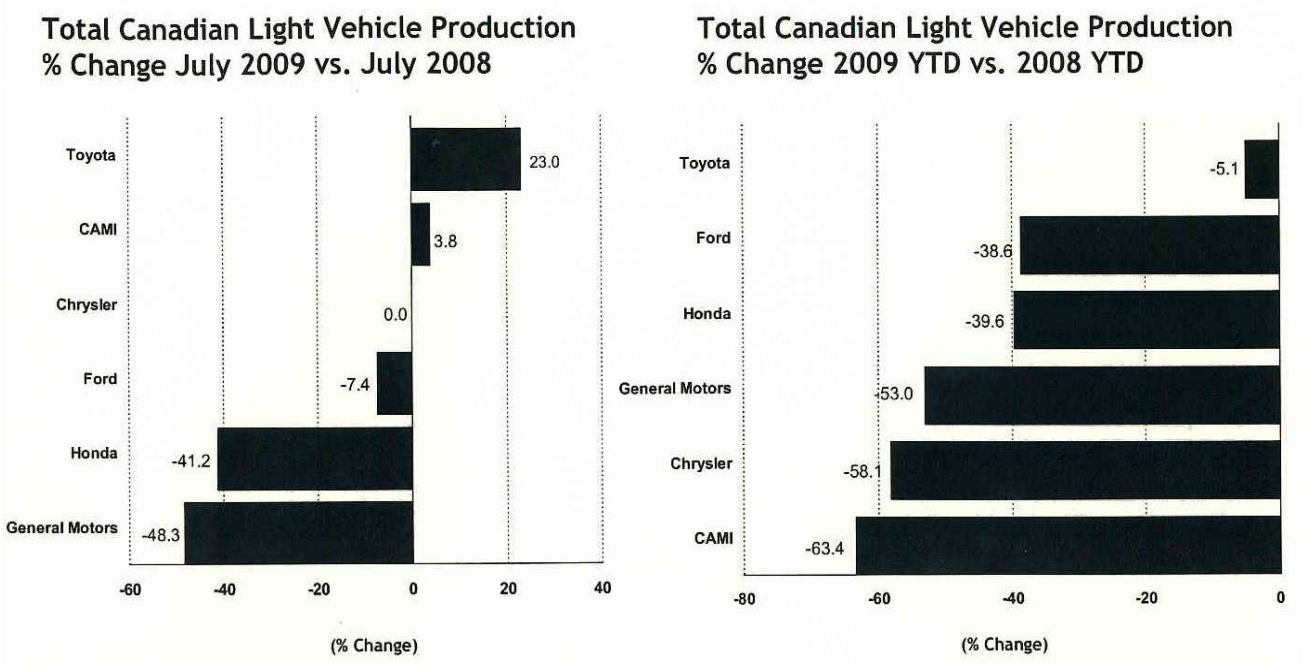

자료: DesRosiers Automotive Reports

- 2009년 7월 캐나다에서의 자동차 생산은 2008년 7월보다 19.5%가 감소한 99,006대를 기록하였다.
· 2009년 7월, 승용차 생산의 경우 2008년 7월 대비 34.4%가 감소한 51,059대를 기록하였다.
· 2009년 7월, 경트럭 생산의 경우 2008년 7월 대비 6.3%증가한 47,947대를 기록하였다
- 2009년 7월 누계 캐나다 자동차 생산은 2008년 7월 누계 대비 43.7% 감소 704,107대를 기록하였으며 종류별로는 승용차 41.3%, 경트럭 46.6%가 각각 감소하였다.
· 2009년 7월, 토요타는 23.0%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의 생산 증가율을 기록한 유일한 회사였다.
· 토요타의 경트럭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130.2%) 승용차 생산 라인의 감소(-12.1%)를 완하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요타는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Corolla 생산을 4.4% 증가시켰다. 토요타 자동차의 7월까지의 누계 생산은 전년동기간보다 5.1% 감소하였다.
· 2009년 7월, 혼다 (-41.2%), GM (-48.3%)등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두 자릿수의 생산율 감소를 나타냈으며 Ford는 7.4%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 크라이슬러의 7월 캐나다 생산은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CAMI는 3.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크라이슬러와 CAMI의 2009년 7월까지의 누계 생산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58.1%와 6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혼다와 GM의 2009년 7월까지 누계 생산은 각각 39.6%%와 53.0% 감소하였다.

○ 항공우주산업

- 캐나다 주요 산업 중 하나인 항공우주산업의 2008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8% 증가한 236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였다.
  - 민간 항공기 관련 분야가 전체 산업 매출액의 77%인 182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여 군수 관련 분야에 비해 산업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전체 항공우주산업 중 항공기 및 항공 부품 분야가 51%인 120억 캐나다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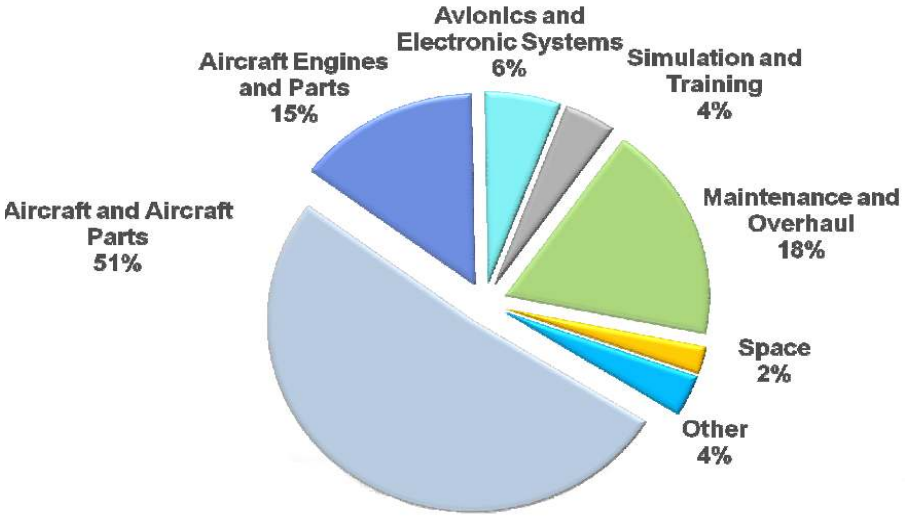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항공우주협회

- 2004년 이후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내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 2005년 기준, 수출이 총 매출의 85%에 이를 정도로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으며 2008년에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수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기준 76%를 차지하던 대미국 항공우주 관련 수출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08년 68%를 기록하였으며, 그대신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 2008년 항공우주산업 내 총 투자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C$20억을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20억 대를 돌파하였다.
  - 특히 2003년 C$7억5천만 이었던 R&D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C$13억을 기록하는 등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2008년 기준 캐나다 내 약 400여개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83,000명의 고용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캐나다 제조업 위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항공우주 산업 내 고용은 전년대비 1,000여명이 증가하였다.

캐나다 항공우주산업 주요 산업 지표

주요 산업 지표 항목	지표 통계치
연간 매출 규모(2008)	C$236억
연간 수출 규모(2008)	C$193억
관련 업체 수	400 여개
관련 종사자 수	83,000 여명
연간 R&D 투자 규모	C$20억
매출 구분 (2008년 기준)	상업용 시장 : C$182억 국방 및 안보 : C$ 54억

자료: 캐나다 항공우주협회

○ IT 산업

- 캐나다 주요 산업 중 하나인 IT 산업의 2008년 매출액은 U$570억을 기록하며 세계 6위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였다.
  - IT 수출과 수입은 각각 U$278억과 U$474억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약 70%가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이며 30%는 통신 장비 관련 수출로 나타났다.
  - 캐나다 전체 IT 기업 수는 16,000개고 종사자는 약 57만 명에 달하며 그 중 약 60%가 온타리오 주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T 시장은 크게 IT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으며 규모는 각각 U$135억, U$114억, U$52억을 기록하고 있다.
  - 미국 기업들의 주력 시장인 IT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2.9% 성장하였다.
  - 아시아 기업의 저가 공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하드웨어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분야는 네트워크 장비 부문으로서 U$17억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75%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8년 1.3% 성장하였으며 CRM과 ERP 부문의 수요 증가가 눈에 띈다.

- 하드웨어 시장에서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서버 (3.4%), Storage (3.5%), 네트워크장비 (6.1%)이다.
  - 하드웨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 유망 분야는 VOIP제품, 모뎀, Phone Set 등과 같은 통신과 CCTV, Biometrics 등의 Security 분야로 나타났다.
  - 통신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는 무선통신시장으로서 (규모: C$95억) 무선 인터넷 확대로 인한 관련 장비, 주변기기, 정보통신 소비재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 Security 분야의 경우 영세 기업이 대부분으로서 연간매출액은 약 U$22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캐나다는 G7 국가 중 최고의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 44,000개의 관련 서비스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시장 수익의 70% 이상이 수입에서 비롯된다.
  -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 유망 분야로는 Animation, Design, Gaming을 꼽을 수 있다. Management Software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북미 회사들도 강한 분야이므로 진출이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4) 금융시장

○ 주가

- 8월 토론토 종합주가지수(S&P/TSX)는 중반까지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18일 이후에는 오일 가격 상승과 밝은 경제 전망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그렸다.
- 8월 6일, 캐나다 최대 보험회사인 Manulife Financial Corp.의 배당금 삭감 소식에서 비롯된 금융종목 부진으로 인해 253.56포인트 하락한 10,793.37을 기록하였다.
- 8월 14일, 유럽국가들의 경제 성장 소식에 따른 전세계 불황 회복 사인과 그로 인한 금융주 및 자원주 상승으로 인해서 토론토 종합주가지수는 8월 최대 상승폭(165.69포인트)을 기록하였다.
- 8월 17일, 경기회복 불안에 의한 전세계적인 주가 하락과 원자재 가격하락은 캐나다 에너지 및 자원 회사들의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금융주의 부진까지 더해 토론토 종합주가지수는 8월 최대 하락폭 (316.42포인트)을 기록하였다.
-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8월 18일, 금값과 오일 상승으로 인한 자원주 상승과 캐나다 최대 IT 업체인 RIM사 예상 주가 상승 조정으로 142.25 포인트 리바운드 한 10531.59를 기록하였다.
- 8월 31일에는 중국의 대출 정책 강화 움직임으로 인한 중국 경제 위축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일 대비 109.76포인트 하락한 10868.21로 장을 마감하였다.

2009년 8월 주가 변동추이

자료: 글로브앤메일

○ **이 율**: 9월 초 현재 기준금리 0.25%, 우대금리 2.25%
- 7월 21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0.25%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캐나다 주요은행의 우대금리 역시 2.25%로 동결되었다.
- 이번 금리 동결 발표는 4월에 기준 금리를 2010년 2/4분기까지 유지 할 것이라는 발표를 따르는 결과다.
- 중앙은행은 현재 세계 경제와 캐나다 경제가 회복하는 추세지만 현재의 저금리 정책 유지는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 당분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캐나다 중앙은행은 2009, 2010, 2011년 캐나다 경제 성장률을 각각 -2.3%, 3.0%, 3.5%로 예상하고 있다.
- 다음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관련 발표는 9월 10일로 계획하고 있다.

○ **환 율**: 캐나다달러, 7월보다 소폭 평가 절하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 8월 31일 캐나다화대비 미화는 7월 31일의 92.68센트보다 1.6% 하락한 91.18센트를 기록하였다.
-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하였지만 올 4월부터 유가 상승, 캐나다 경제의 상대적 건실함, 미화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캐나다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캐나다 현재 제조 및 수출 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8월말, CIBC는 캐나다 정부의 적절한 견제와 Intervention으로 연말 캐나다화 대비 미화는 0.8547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하였으나, TD Securities는 2009년 말 캐나다화는 2007년 9월과 같이 미화와 1:1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는 등 캐나다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8월 캐나다화 대비 미화는 7월 보다 3.02% 상승한 월평균 0.9184를 기록하였다.
- 8월 캐나다화 대비 원화는 7월 보다 1.39% 오른 월평균 1140.25원을 기록하였다.

주요 금융 지표

(단위: %, U$, 원)

	2008	2009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주가(S&P/TSX)	8987	8123	8720	9324.83	10,370.07	10374.91	10787.15	10868.21
기준금리	1.50	0.50	0.5	0.25	0.25	0.25	0.25	0.25
환율(U$/C$)	0.94	0.78	0.79	0.84	0.92	0.86	0.93	0.91
환율(₩/C$)	1021	1157	1147	1082	1092	1101	1137	1141

주: 해당 연, 월말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5) 교역동향

○ 2009년 7월 누계 기준 캐나다 상품수지: U$23억7천7백만 적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7.1% 감소)
- 수출 (2009년 1~7월): U$1천735억7천4백만 (전년 동기간대비 38.0% 감소)
- 수입 (2009년 1~7월): U$1천759억5천1백만 (전년 동기간대비 28.6% 감소)

주요 수출입 품목(2009년 1~7월)

(단위: U$)

대 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대 캐나다 주요 수입품목	
HS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8억9천만	HS 2701 - 석탄, 연탄, 마젝 탄, 유사한 고형연료	5억9천만
HS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	1억7천만	HS4703- 화학목재펄프	1억1천만
HS8708 - 자동차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7천9백만	HS3104- 칼륨비료	1억1천만
HS8450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	5천9백만	HS8479 -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	9천6백만
HS4011 -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신품에 한함)	5천6백만	HS7601 - 알루미늄의 괴	7천5백만
HS 7216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4천만	HS2603 - 동광과 그 정광	6천6백만
HS8451 - 수세, 청정, 건조, 다림질, 표백, 염색, 드레싱, 완성가공, 도포, 침지용등의 기계류 및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3천9백만	HS0203 -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 한다)	5천8백만
HS8504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3천5백만	HS7501 - 니켈의 매트・소결한 산화니켈	5천6백만
HS8481 -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3천2백만	HS4705 - 반화학목재펄프	4천7백만
HS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 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2천9백만	HS 8603 - 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용 객차 및 화차 (제8604호의 것을 제외한다)	3천7백만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9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 캐나다 상품수지: U$6천2백만 적자로 전년 동기간 대비 82.0% 적자 감소를 각각 기록하였다.

- 수출 (2009년 1~7월): U$19억4천4백만 (전년 동기간 대비 16.0% 감소)
- 수입 (2009년 1~7월): U$20억6백만 (전년 동기간 대비 21.2% 감소)

10대 수출입 품목(2009년 1~7월)

(단위: U$)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입품목	
HS2709 - 석유, 역청유	185억6천만	HS2709 - 석유, 역청유	95억9천만
HS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 자동차와 기타 차량	99억8천만	HS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 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85억5천만
HS2711 - 석유가스,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91억2천만	HS8708 - 자동차부품	65억8천만
HS2710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및 웨이스트 오일	57억6천만	HS3004 -의약품	65억8천만
HS8802 - 항공기	42억3천만	HS8471 - 휴대용 컴퓨터 및 미디어 플러이어 기기	35억4천만
HS7108 - 금	37억6천만	HS8704 - 트럭과 물건 운반용 차량	32억8천만
HS 1001 - 밀과 메슬린	33억1천만	HS2710 -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및 웨이스트 오일	31억2천만
HS3004 - 의약품	30억4천만	HS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	29억6천만
HS8708 - 자동차 부품	30억4천만	HS8411 - 터보 제트, 터보 프로펠러	24억1천만
HS 8411 - 터보 제트, 터보 프로펠러	24억8천만	HS 2711 - 석유가스,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21억1천만

자료: 캐나다 통계청

나. 경제, 무역 관련 이슈

1)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 신뢰 지수, 올해 들어 최고치 기록

○ 경기회복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긍정적 반응

- 캐나다의 저명한 경제연구소인 캐나다 컨퍼런스보드가 지난 8월 6일부터 8월 17일 사이 실시한 조사 결과, 2009년 8월 소비자 경기 신뢰지수는 올해 최고치인 88.4를 기록하였다
- 이는 향후 경제와 고용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견해가 점점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례로 향후 경제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1.4%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적었다.

○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

-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6개월 전에는 54.5퍼센트의 사람들이 어두운 전망을 내비쳤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절반 정도인 약 25.6%의 응답자만이 앞으로 6개월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 이밖에 승용차 등 값비싼 내구제 구입과 관련, 지금이 적기라고 답한 사람이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에 비해 많게 나옴에 따라 경기 불황 이후 규모가 크고 값이 비싼 물건의 구입을 자제해 오던 캐나다인들의 소비 형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에 알맞은 캐나다 시장 공략 전략을 갖춰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캐나다 경제, 더블딥 우려 있지만 경제 회복 추세로 접어드는 중

○ 캐나다 소, 도매상의 경기회복

-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6월 캐나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0.2% 성장보다 5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 2009년 6월 캐나다 도매 판매는 자동차 관련 부문과 음식, 음료, 담배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전월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공장 출하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성장을 기록하였다.
- 도,소매 판매와 금융,보험 부동산 부문은 각각 캐나다 전체 GDP의 25%와 21%를 차지하는 중요 부문으로서 이들 부문의 호재는 3/4분기부터 경기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7월 예상을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전문가 의견

- National Bank Financial의 Marco Lettieri 경제학자 : 2009년 2/4분기가 캐나다 경제 공항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전반적인 경제회복이 캐나다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 BMO Nesbitt Burns의 Benjamin Reitzes 경제학자 : 2009년 6월의 캐나다 GDP와 도소매 판매 지수는 캐나다 경제가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캐나다 HSBC Stewart Hall 경제학자 : 캐나다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침체에서 회복으로의 전환 뿐만 아니라, 공공수요 (Public Demand)에서 개인 수요 (Private Demand)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 더블딥에 대한 우려

- 더블딥이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일컫는 말로서 몇몇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이러한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소비자와 기업들의 현재의 수요 증가 추세는 자생적인 현상이 아닌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에 의한 현상으로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뉴욕대학교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Nouriel Roubini는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서 빠져나올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더블딥에 대한 리스크를 높이는 이유라고 언급하였다.
- 실제로 등락을 자주 하는 요즘 캐나다 주식 시장은 캐나다 경제가 조건부 회복 추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다.

○ 자동차와 건축 자재 부문 활성화 조짐

- 자동차 산업부문은 정부의 GM과 크라이슬러 구제 정책으로 정부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야이다.
- 3월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가 상승 추세는 캐나다의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 산업의 회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경기 침체 후 부진을 보이던 건축 자재 부문도 경기 회복 움직임과 정부의 레노베이션 세금 크레딧 정책으로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Home Hardware Stores사 관계자는 1,000개 이상의 매장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캐나다 동부, 서부, 중부의 Warehouse 모두 예상보다 높은 출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2008년과 비슷한 숫자인 35개의 신규 지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캐나다 달러 강세 지속될 경우 중앙은행 개입 할 수도

○ Timothy Lane 중앙은행 부총재, 중앙은행 개입 가능성 언급

- 8월말, Timothy Lane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캐나다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달러의 강세가 경기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캐나다달러 강세에서 비롯된 캐나다 수출 품목들의 가격 상승은 캐나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캐나다 수출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다른 외국기업들에게 고객들을 빼앗기는 등 캐나다 수출 업계는 캐나다 달러 강세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환율로 인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분야는 임업

- 현재의 캐나다달러 강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임업이다. 임업은 캐나다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로서 캐나다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는 종이, 제목, 그리고 건축자재와 관련한 많은 임업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많은 관련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인원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 한편,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 플라스틱, 그리고 자동차들은 캐나다화 강세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캐나다내 소비자와 원자재 가공 업체들에게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하지만 캐나다화 강세는 이러한 이점보다는 전체적인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 캐나다 중앙은행,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 언급

- 캐나다 중앙은행이 캐나다화 강세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2009년 3월 9일 연 최저인 76.89를 기록한 환율은 최근에는 94센트까지도 오른적이 있으며 현재는 91~92센트에 거래되고 있는 등 불과 6개월 사이에 캐나다 달러는 약 20% 가까이 올랐다.
- 중앙은행 부총재는 캐나다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정부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캐나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캐나다 중앙은행이 2010년 2/4분기까지 현재의 0.25% 저금리 유지를 천명하였기 때문에 환율 조정을 위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최근의 CIBC 은행 보고서는 세계 경제 침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2011년까지 캐나다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4) 캐나다 자동차 생산량 증가 (토요타 온타리오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량 증가 계획)

- 토요타사는 GM과의 조인트벤처로 진행되어온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장의 폐쇄로 (폐쇠는 2010년 3월 예정) 이번 가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Cambridge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늘릴 예정이다.
- 북미에서의 소형차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토요타는 GM과의 조인트벤처 생산라인에서 생산하던 Corolla Compact 모델의 생산 중 일부를 Cambridge로 옮겨와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토요타 관계자는 이번 가을 Cambridge 생산라인에서의 생산 속도 증가와 Overtime 등이 이루어 질 것 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추가 고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하였다.
- 한편, 토요타가 Cambridge 공장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다른 모델들의 (Matrix와 Lexus RX 350) 생산 중 일부는 2009년 말 새로 오픈할 온타리오주 Woodstock의 추가 생산 라인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토요타는 캐나다에서 64,800대의 Corolla를 생산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생산량으로 밝혀졌다. 한편, 캐나다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Corolla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사점

○ 2009년 6월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은 에너지, 도매 판매, 부동산 시장, 소매 판매, 금융, 공공부문 상승을 바탕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10개월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 에너지, 도매 판매, 부동산 에이전트 부문은 각각 전월 대비 1.3%, 1.3%, 8.3% 증가를 기록하며 6월 실질 국내총생산 상승을 주도하였다.

○ 2009년 8월 31일, 토론토 종합주가지수는 10868.21 포인트를 기록하며 2009년 7월 말에 비해 포인트 81.06상승하며 회복 기미를 이어나갔다.
- 8월 18일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토론토 종합주가지수는 후에 유가 상승과 밝은 경제 전망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기록하였다.
- 2009년 8월 17일에는 월 최저인 10531.59 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8월 5일에는 월 최고인 11046.9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2009년 7월 21일, 캐나다 중앙은행은 종전의 기준 금리인 0.25%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금리 동결 발표는 2010년 2/4분기까지 0.25%를 유지할 것이라는 종전의 발표에 일치하는 결정으로서 현재의 저금리 정책 유지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당분간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중앙은행은 언급하였다.
-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은 2009, 2010, 2011년 캐나다 경제 성장률을 각각 -2.3%, 3.0%, 3.5%로 예상하고 있다.

○ 2009년 7월 누계 기준 캐나다 수출은 2008년 7월 대비 38.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8.6% 감소하였다.
- 2009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입은 2008년 7월 대비 각각 미화 19억4천4백만, 20억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상품수지는 미화 6천2백만 달러 적자로 2008년 7월 대비 82.0% 가량 적자가 감소하였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총괄

캐나다는 선진공업국 중에서는 드물게 자원과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서 이러한 자원들은 공업제품과 함께 주요한 수출품목이다. 초기 캐나다 산업은 1차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모피, 목재, 농수산물, 에너지 등이 순차적으로 산업을 주도했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지식기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2009년 기준, 1차 산업은 캐나다 총 생산량의 2.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서비스 산업은 27.5%, 나머지 3차 산업은 70.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캐나다 산업을 생각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영향이다. 무역 면에서도 대미무역이 수출입이 전체의 각각 80%, 60%를 넘고 있고, 대미무역 흑자액은 전체의 무역 흑자액을 넘는다. 이러한 무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캐·미 자유무역협정 교섭이 진전되어 1987년 10월에는 기본 합의에 도달했고, 1989년 1월 1일에 CUSFTA(미국-캐나다 FTA)를 체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가 더욱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각 주 차원에서는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공업주, 자원주, 농업주 등) 이해 관계가 얽혀 찬반양론이 있었다. 이후 캐나다와 미국은 1994년 NAFTA를 체결함으로써 CUSFTA에서 양측의 불만사항으로 제기했던 합의 내용을 수정하고, 멕시코를 자유 무역 협정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미 3국 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시장을 형성하였다. NAFTA 체결 이후 이들 국가간의 교역, 투자는 체결 이전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증가하는 고속 성장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부는 1984년부터 자원 의존형의 산업구조의 전환과 첨단 기술산업에의 대응 등을 경제재건의 과제로 내걸고 외국투자의 촉진을 꾀하기 위해서 외자 심사청을 투자청(Invest in Canada)으로 개칭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산업별 경제 총 생산

(단위: C$ 백만)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총생산	1,124,998	1,155,681	1,189,661	1,219,327	1,225,824
농림수산업	27,669	28,214	27,648	26,478	25,966
광산개발업	55,672	55,796	56,699	57,288	55,308
제조업	184,814	187,806	187,041	185,311	175,794
건설업	63,453	66,611	70,805	72,890	74,569
공익산업	28,993	30,613	30,181	31,344	31,135
운송, 보관업	52,169	54,148	55,690	56,624	56,697
정보, 문화	40,813	41,888	43,227	44,349	45,103
도매업	59,990	63,159	66,622	70,256	70,341
소매업	62,666	64,535	68,420	72,391	74,635
금융, 부동산업	215,074	222,475	231,381	240,536	247,068
과학, 기술산업	52,099	53,618	55,963	57,874	58,488
행정지원, 폐기물 처리/재활용	27,363	28,500	29,989	30,948	31,094
공공행정	64,085	64,548	66,134	67,463	69,441
교육업	53,764	55,561	57,108	58,863	60,525
의료, 사회복지	71,589	72,826	74,940	77,035	79,262
예체능	10,791	10,873	11,454	11,716	11,736
숙박, 요식업	25,656	25,998	26,680	27,146	27,741
기타	28,729	29,632	30,565	31,542	32,516

자료: 캐나다 통계청

나. 주요 산업별 개황

1) 농림수산업

농업은 GDP구성비율 2.1%, 고용인구비율 3.5% 선으로 경지면적이 총 7,000만 ha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231ha 규모이다. 사스카치완 주와 알버타 주의 경지면적은 총 C$ 4,700만 ha로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낙농축산품이 농업부문 총 수입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류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임업의 경우 캐나다의 삼림면적은347만㎢에 이르고 국토 총 면적의 40%를 차지해 러시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크다. 이렇게 풍부한 삼림자원 가운데 상업화하기 쉽고 규칙적인 목재 벌채에 적합한 삼림면적은 197만㎢로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침엽수 벌채량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임산지대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수산업에 있어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생선수출국 중 하나로 미국이 50% 이상, 기타 일본, EU 국가들이 대부분 수입해 가고 있다. 캐나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전체 어획량의 75% 차지하고 있으며 200해리 영해 밖의 어획활동 규제를 위해 현재 북대서양 수산업기구(NAFO)에 가입 중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세계 3대 어장 중 하나인 그랜드뱅크스(GrandBanks)에 접하고 있어 생선 수출국으로서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2) 에너지산업

세계 신문용지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목재 외에 천연가스, 오일샌드, 일반탄, 우라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국으로 목재산업이 전체 GDP의 2%를 차지하며, 에너지산업은 전체 GDP의 4.5%를 차지한다. 우라늄 생산은 전 세계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2위의 오일샌드 보유국으로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생산 설비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약 40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일샌드 매장량을 원유 매장량에 포함시키면, 베네수엘라(3,500억 배럴), 사우디 아라비아(2,643억 배럴)에 이어 1,788억 배럴로 세계 3위의 매장량을 자랑한다.

베네수엘라보다 캐나다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캐나다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중남미보다 안정적이고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오일샌드 개발에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 오일샌드는 개발단가가 높아 상업성이 낮았으나 2008년 유가 급등에 따라 개발 붐이 불었다. 한국석유공사도 2006년 7월 미국 뉴몬트사가 보유한 캐나다 블랙골드 광구 지분 100%를 2억 70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오일샌드 개발에 뛰어들었다. 석유공사는 2010년부터 하루 15~20만 배럴 규모로 본격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은 제조업 부문과 함께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로 2007년 전체 투자유입액 5,000억 달러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일샌드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메가 프로젝트로 초대형 오일기업(Supermajor)의 M&A가 진행되고 있다.

2009년 3월 23일, 캐나다에서 시가 총액 기준 3위의 에너지 기업인 Suncor사는 4위의 Petro-Canada사를 인수 합병 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 인수 합병은 191억 캐나다달러의 역사적인 대규모 인수 합병 건으로서 이번 인수를 통해 Suncor사는 46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캐나다 최고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회사로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Exxon Mobil, Royal Dutch Shell, Chevron사 등과 경쟁이 불붙을 예정이다. 이번 인수 합병을 계기로 불황을 이겨내고 호황기를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기업들의 보다 많은 인수 합병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기준, 광산물 생산액으로는 사스카추완주가 21.5%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온타리오주 21.3%,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14.7%, 퀘벡주 11.5%의 순이다.

3) 식품가공산업

식품가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00,000명이며 GDP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식품가공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하게 제공되는 고급 농산물과 발달된 가공기술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으로 인하여 캐나다의 식품가공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은 캐나다 제조산업 중 교통설비제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분야다.

식품가공산업의 자본지출은 매년 약 19억 캐나다달러 규모이며, 이 중 약 84% 정도가 기계설비에 투자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식용류, 곡물류, 비스킷 제품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육류와 육류 가공 제품, 사료 등이 그 다음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주로 증가하는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에 기인한 것이다.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건강하고 편리한 식료품의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캐나다 식품은 전 세계 약 18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83% 정도가 주요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이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 8%, 중국 3%, 멕시코 2% 순이다.

4) 의약산업

캐나다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2%를 차지하는데, 이는 선진 공업국 중 8번째로 큰 규모이다. IMS Health에 따르면, 캐나다 의약 산업은 매년 약 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 멕시코, 스페인에 이어 4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의약산업은 약 40,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 브랜드 의약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 의약 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과 바이오과학 클러스터가 가장 잘 발달한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몰려있다.

캐나다의 의약 산업은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의약 회사의 40% 이상은 연간 매출액이 200만 캐나다달러 이하이다. 의약품 시장 내의 세분화된 시장마다 많은 의약 제품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의약 회사에는 브랜드 의약 회사와 일반 의약 회사로 구분되는데, 브랜드 의약 회사는 R&D 투자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며, 일반 의약 회사는 이미 특허기간이 종료된 약을 개발한다. IMS Health에 따르면, 캐나다 의약 판매량 기준, 브랜드 의약 회사가 84%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6%는 일반 의약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5) 의료기기산업

캐나다 의료기기산업은 위생약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진단, 모니터링, 치료 등에 쓰이는 기기들을 생산한다. 의료기기산업의 주요 기기들은 수술용 기기, 모니터, 의료영상장비, 보조 기기, 진단 기기, 이식관, 치과 장비, 의료용 레이저, 의료 수술 도구 등을 포함한다.

캐나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99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90%가 캐나다 기업이며, 나머지는 외국기업이다. 의료기기산업에는 26,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전체 기업 중 57%가 2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이며, 37%는 25명에서 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4%인 45개의 업체에서 50명에서 1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정도가 15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는 42% 업체가 있으며, 퀘벡주에는 32% 업체가 집중해 있다.

캐나다 의료기기산업의 수출과 수입은 미국이 각각 76%, 54%를 차지하며 단연 압도적이나, 점차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6) 정보기술산업

캐나다에는 32,000개 이상의 IT 기업이 활동 중이며, 약 600,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IT 분야 연구개발은 캐나다의 총 연구개발 인력 중 37%를 차지한다.

정보 기술 산업의 가장 역동적인 분야는 정보 통신제품, 인터넷, 컴퓨터-전화 통신 통합(CTI) 분야이다. 특히 RIM사의 블랙베리 제품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IT 기업 중 50%인 16,000개 기업이 온타리오주에 밀집되어 있으며, 광역 토론토 지역(GTA)에만 3,400개의 IT 업체 및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캐나다의 최대 IT 허브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정보통신산업(이하 ICT)은 2008년 기준 592억 캐나다달러 GDP을 기록하였다. 2007년보다 2.7% 상승하였으며, 2008년 기준 캐나다 전체 GDP의 4.8%를 차지하였다. ICT 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래 ICT 부문은 캐나다 전체 성장 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연평균 4.7%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ICT 부문 GDP 추이

(단위: C$백만, %)

구 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ICT GDP	44,947	47,365	50,599	52,627	55,208	57,613	59,167
전체 GDP 대비 ICT 부문 비중	4.2	4.3	4.5	4.5	4.6	4.7	4.8

자료: 캐나다 산업부

2008년 기준, 통신 서비스 분야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가 ICT 부문 GDP의 각각 37.7%와 23.4%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분야가 78.5%를 차지하며 ICT 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캐나다 ICT 부문 산업별 GDP

(단위: C$백만, %)

구 분	서비스	제조	유통	전체
GDP	46,429	8,746	3,992	59,167
비중	78.47	14.78	6.75	100.00

주: 2008년 기준
자료: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ICT 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입기반 산업으로 연간 2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기준, ICT 산업은 220억 캐나다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역수지 적자는 상품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컴퓨터, 휴대폰, 계측장비 및 전자부품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 반면, 서비스 부문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컴퓨터 시스템 설계 관련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의 높은 기술 수준 및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기준, 캐나다 ICT 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C$442억으로 컴퓨터 장비가 전체 ICT 수입시장의 29% 점유를 비롯, 전자부품과 계측장비(의료장비, 항법장비, 측정장비 등)가 각각 18.8%, 16.0%를 차지하는 등 ICT 상품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수출보험공사(EDC)에 따르면, 2009년 캐나다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의 소비 둔화로 인해 IT 수출이 9% 하락하고, 2010년에는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전자부품산업

캐나다의 전자부품 산업은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로 마이크로 전자와 반도체 부문은 전자부품 산업 생산의 절반 가량을 이루고 있다. 마이크로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는 50개의 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주요 생산 제품은 CMOS IC회로, 실리콘 bipolar IC, ASIC와 기타 다양한 복합 반도체들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고용된 인원은 연구,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인력을 포함해 약 6,000명 가량이며, 연간 평균 수입 규모 또한 최종제품에 사용되는 중간재를 위시로 하여 약 U$ 100억에 이르고 있다.

8) 첨단제조업(고도생산기술산업: ATM)

캐나다의 AMT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 산업에는 5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동 산업은 무역 지향적으로 수출은 미국에, 수입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총 수출 중에서 3/4은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의 78%는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는데, 수입품의 2/3이상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이며 나머지 1/3은 독일에서 수입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AMT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독일에 수출하고 있다.

9) 자동차산업

자동차 산업은 1960년대 캐나다-미국 자동차 협약(Auto Pact)이 체결된 이래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캐나다의 최대 수출품목인 핵심산업으로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미국 미시건 주(디트로이트)에 이어 북미지역 중 두 번째 규모의 자동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서 미국 Big 3사를 비롯 Toyota, Honda 등 12개의 승용차/픽업트럭 및 25개의 버스/트럭 조립공장을 가동 중이다.

2008년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기위축, 북미 내 소비급감, 디트로이트 빅3사의 자금난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하여 1992년 이후 최저 수치인 07년 대비 19.4% 감소한 207만7589대 생산을 기록하였다. 캐나다 노바스코시아 은행의 자동차산업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캐나다 자동차 생산은 2008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캐나다 자동차 생산 추이

(단위: 대, %)

연도	생산량	북미시장 내 비중	생산/판매 비율
2004	2,711,536	16.7	172.2
2005	2,687,892	16.5	164.9
2006	2,571,366	16.2	154.3
2007	2,578,790	16.7	152.6
2008	2,077,589	16.0	125.2

자료: Desrosiers Automotive

2008년 캐나다 내 자동차판매는 07년 대비 1.1% 감소한 163만 5,986대를 기록했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9.5% 감소한 148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년 디트로이트 빅3사의 판매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78만 7,378대를 기록했으며, 캐나다 내 점유율 48.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 이하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08년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11만 8,152대를 판매하여 캐나다 내 점유율 7.2%를 기록하였다.

캐나다 자동차 판매 추이

(단위: 대, %)

연도	캐나다 자동차판매	증감률	빅3사	점유율	현대/기아	점유율
2005	1,583,291	3.2	880,277	55.6	93,286	5.9
2006	1,614,700	2	864,967	53.6	99,628	6.2
2007	1,653,362	2.4	855,007	51.7	109,825	6.6
2008	1,635,986	-1.1	787,378	48.1	118,152	7.2
2009	1,480,000	-9.5	N/A	N/A	N/A	N/A

자료: Desrosiers Automotive

10) 금융업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업은 은행과 신탁회사의 합병이 허용된 이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은행인 Royal Bank가 Royal Trust Co.를 인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금융·보험 산업의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보다 많은 기업합병을 통한 대형 금융기관의 출현이 예상된다.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중 은행은 Royal Bank, CIBC, Bank of Montreal, Bank of Nova Scotia, Toronto Dominion Bank 등 5대 은행이고, 이들의 채용규모는 약 1만 명에 달하며, 아시아, 유럽, 카리브해 연안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해 영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가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기준, 8개의 국내은행을 8,000개 지점, 54개의 외국은행을 271개 지점 보유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의 영업활동이 규제되어 왔으나 FTA 및 NAFTA 협정의 영향으로 미국을 위시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1) 그린에너지 산업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7년부터 ecoENERGY for Renewable Power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주요 그린 에너지로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 소수력 발전을 꼽을 수 있다.

□ 캐나다 풍력에너지 산업 현황

2009년 5월 기준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풍력에너지 산업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4억9000만 캐나다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였으며, 캐나다 풍력에너지 산업 내 등록되어 있는 150여 개 업체 중 1/3 이상이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턴트 업체로 나타났다. 2005~2008년 사이 캐나다 내 풍력에너지 보급량은 연평균 65% 증가를 보이며, 2008년 누적 보급량은 2246 메가와트(MW)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08년 풍력에너지 누적 보급량은 캐나다 전체 전력수요의 1%에 해당하며, 이는 67만 1000 가정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풍력에너지 누적 보급량은 2008년 대비 4배 증가한 8500MW를 기록할 전망이며, 캐나다 풍력에너지 산업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13000명 이상의 신규고용창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8억 캐나다달러 이상의 정부 및 민간 투자가 동 산업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풍력에너지 보급량 누계

(단위 : MW)

구분	2005	2006	2007	2008
풍력에너지 누적보급량	590	1,460	1,845	2,246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anadian Wind Energy Association

□ 캐나다 태양광(Photovoltaic) 산업 현황

2009년 5월 기준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캐나다 태양광 산업 매출액은 2005년 대비 34% 증가한 2억 캐나다달러로 추산되며, 주요 13개 캐나다 태양광 업체가 수출증가로 2005년 대비 30% 증가한 1억3700만 캐나다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산업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2006년 사이 캐나다 내 태양광 보급량은 연평균 25.4% 증가를 보이며, 2006년 누적 보급량은 20.5 메가와트(MW)를 기록하였다. 2002년 이후 태양광 보급량은 연평균 34%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듈 가격 하락세와 제조업체의 기술개발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누적 보급량 기준, 독립형(Off-grid) 태양광시스템은 전체 캐나다 태양광 에너지 시장의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가정용 독립형 태양광시스템은 68%를 차지하여 캐나다 태양광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용도별 태양광 보급량 누계

(단위 : kW)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가정용 독립형 (Off-grid domestic)	2,536	3,322	3,854	4,539	5,291	5,903	6,680
비가정용 독립형 (Off-grid non-domestic)	4,303	5,162	5,775	6,886	8,081	9719	12,296
분산배치 계통연계형 (Grid-connected distributed)	305	342	368	405	476	1,059	1,443
집중배치 계통연계형 (Grid-connected centralized)	10	10	0	0	36	65	65
총합계	7,154	8,836	9,997	11,830	13,884	16,746	20,484

자료: Natural Resource Canada

□ 캐나다 바이오 연료 산업 현황

캐나다 연방정부는 바이오연료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린하우스 가스 감소를 위해 2010년까지 바이오에탄올 14억 리터, 바이오디젤 5억 리터 생산을 목표로 2000년 Climate Change Plan을 발족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힘입어 캐나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시설은 2004년 6개에서 2007년 10개로 증가했으며, 2009년 9억500만 리터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가능한 6개 생산시설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 최대 생산량은 08년 대비 1.9배 증가한 16억3000만 리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캐나다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신규시설 설립완공과 기존시설 확대로 06년 대비 11배 증가한 1억 리터를 기록했으며, 2012년 바이오디젤 생산은 2007년 대비 5배 증가한 5억2000만 리터를 기록할 전망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환경보호와 바이오디젤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 내 유통되는 가솔린과 디젤에 최소 2%의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첨가하는 하는 법안(Bill C-33)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오디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캐나다 소수력발전(Small-scale Hydro) 산업 현황

캐나다 소수력발전 시스템은 수류와 낙차를 이용해 1~50MW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며, 대형 수력발전의 설치 및 유지비용,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소수력발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캐나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수력 발전 산업에 종사하는 총 50여 개의 업체 중 25%는 대규모 국영기업이며, 그 외 부속품제조업체, 개발 및 컨설팅 업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5월 기준 가장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캐나다 소수력발전 누적 보급량은 3422MW를 기록하며, 전체 수력 발전량의 1%를 차지하였다. 한편, 캐나다 소수력발전 산업은 55개의 일반 소수력 발전 장소와 2,000여개 이상의 저낙차 발전 장소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FTA 추진 동향

1) FTA 정책 및 경향

□ 캐나다의 FTA 정책 기조

○ 전통적으로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중시하는 통상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NAFTA 체결 이후에는 세계적 FTA 체결 조류에 부응, 적극적으로 FTA 를 체결해 자국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

○ 중남미 지역의 경우 FTAA 출범(2005 년 협상 결렬)에 앞서 칠레와 FTA 를 체결하는 등 중남미 주요 국가 혹은 경제블록 진출을 강화

○ 중동지역의 경우 1997 년 이스라엘과 FTA 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인근 중동국가들로의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유럽지역의 경우 2007 년 6 월 EFTA 협상을 타결하고 EU 와의 협상을 통해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

○ 아시아 지역의 경우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따라 싱가포르(2001 년 협상 시작), 한국(2005 년 협상 시작), 일본(2005 년부터 타당성 검토)과의 FTA 추진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권 진출 초석 마련에 집중

□ 캐나다의 FTA 추진 경향

○ CUSFTA, NAFTA 등 대미 의존형에서 신시장 개척형으로 체질 개선
- Auto Pact(1966 년, 2001 년 폐지), CUSFTA(1989), NAFTA(1994) 등 전체 교역량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고성장 실현
- 이후 대미 의존적인 형태에서 탈피하고 글로벌 경제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칠레(1997), 이스라엘(1997), 코스타리카(2002)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7 년 6 월에는 EFTA 와의 협상을 마무리
- 동북아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2001 년부터 싱가포르와 협상을 시작. 한국과는 2008 년 3 월에 13 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본과는 타당성 조사중

○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지역·국가간 FTA 추진 가속
- 2006 년 7 월 DDA 협상 잠정 중단 이후, 캐나다 외교통상부는 신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역 및 국가 간 FTA 체결 노력 발표(2006 년 7 월)
- 특히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농수산물, 천연자원 등 주로 1 차 산업 분야의 경우 DDA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대폭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한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보다 높은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

○ 포괄적 FTA 추진
-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지향
- 또한 WTO 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 를 통해 국내 제도 개선 및 선진화 도모

2) FTA 체결 동향

기 체결	협상 중	검토 중
○ NAFTA(미국, 멕시코) - '94.1.1 일 발효 ○ 캐나다-페루 FTA - '09.8.1 일 발효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09.7.1 일 발효 ○ CCRFTA(코스타리카) - '02.11.1 일 발효 ○ CCFTA(칠레) - '97.7.5 일 발효 ○ CIFTA(이스라엘) - '97.1.1 일 발효 ○ 콜롬비아 - '08.11.21 일 서명 ○ 요르단 - '09.6.28 일 서명	○ FTAA(34 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5 국 반대로 '05.11 월 합의 실패 ○ CA4: Central America 4(중 미 4 개국: 엘살바도르, 과테 말 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 04.2 월까지 10 차 협상 개최 후 정체 상태 - 09 년 2 월 11 차 협상 - 09 년 6 월 12 차 협상 ○ 한국 - '08.3 월 13 차 협상 개최 - '08. 6 월 서울에서 14 차 협상 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한 상태 ○ 싱가포르 - '07.8 월까지 8 차 협상 ○ 도미니카공화국 - '07.12.10-14 1 차 협상 개최 - '08. 2 월 2 차 협상 잠정 연기 ○ CARICOM(카리브공동체:15 개국) - '07.10 월 1 차 예비협상 개최 - 1 차 협상 미정 ○ 파나마 - '09.8.11 일 FTA 협상 완료 ○ EU - '04. 3 월 DDA 협상시 Canada – EU TIEA(Trade and Investment Enhancement Agreement) 타당성 조사 시작 합의 - '06. 2 월까지 3 차 협상진행 - '06. 5 월 협상 잠정 중단 합의 - '08. 10. 17 FTA 협상 추진에 합의 - '09. 5. 6 FTA 추진 공식 발표	○ Andean Countries(안데안 공 동 시장: 콜롬비아, 페루) - 에콰도르, 볼리비아는 추후 협상 대상 포함 예정 - 페루는 09.8.1 일 발효 - 콜롬비아 '08.6.7 일 협상 완료. '08.11.21 일 서명 완료. 의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음. ○ 일본 - '05. 6 월까지 세차례 타당성 조사 회의 개최 후 정체

* CARICOM: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Jamaica,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Montserrat

□ EU 와 FTA 협상을 본격 추진할 전망

○ EU 협상 대표와 2008 년 7 월부터 캐나다-EU FTA 협상 추진을 논의하였으며, 2008 년 10 월 17 일 퀘벡 주 몬트리올에서 만나 캐나다-유럽연합 FTA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2009 년 5 월 6 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이 EU 와의 FTA 추진을 공식 발표하였음.

○ 2005 년 캐나다는 유럽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증대 협정(Trade and Investment Enhancement Agreement)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음. 하지만 지난 2008 년 7 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렬 이후 EU 는 캐나다와 FTA 협상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함. 유럽기업이 캐나다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여 시 최저가로 참여할 경우 유럽 기업에게 입찰 기회 이슈를 주정부가 찬성하면서 사실상 FTA 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협상 전망이 긍정적임.

○ 캐나다-EU FTA 협상 내용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제완화와 관세철폐뿐 아니라 우수인력 교류, 유럽 기업이 캐나다 정부조달사업에 입찰할 경우 캐나다 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NAFTA 협정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2008 년 1 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4 개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FTA 를 체결했으며, 이번 27 개 EU 국가와 FTA 협상을 통해 5 억 인구와 GDP 규모가 17 조 달러인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기대

○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캐나다와 EU 의 무역 및 투자 교류는 연간 최소 400 억 캐나다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세계 최대 투자 자본을 캐나다로 유입 효과가 기대됨.

□ 중남미 시장 겨냥 FTA 추진 활성화

○ FTAA 합의 실패 이후,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2009 년 8 월 1 일 페루와 FTA 발효하였으며, 콜롬비아와는 2008 년 11 월 21 일에 서명을 하고 의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임.

□ 한-캐 FTA 협상 무기한 연기

○ 한-미 FTA 타결 이후 미국의 대한시장 진출 강화를 우려, 초반에는 한국에 비해 캐나다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

○ 특히 2003 년 광우병 파동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인해 한국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최근 캐나다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전반적인 제반 환경이 한국과의 FTA 체결 추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캐나다완성차협회(CAW) 및 일부 제조업계의 경우 한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열세에 따른 무역적자 증가를 내세워 FTA 체결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 한-미 FTA 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자동차와 캐나다산 쇠고기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부심

○ 2008 년 3 월 13 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나, 2008 년 6 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4 차 협상은 개최 일주일 전에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

나. FTA 추진 목적과 대상국 선정

1) FTA 추진 목적

ㅁ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 FTA 로 교역활성화 기반 조성

○ 인구는 한국보다 적은 3,300 만 명으로 내수 수요 기반이 작은 반면 경제규모는 세계 8 위로 고객기반의 대부분이 해외에 존재

○ 수출이 GDP 40%를 차지,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형 수출 확대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을 중시

캐나다의 대외 무역

(단위: U$ 백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316,762	360,164	388,313	419,331	453,405
수입	273,427	314,360	349,874	378,661	406,428
수지	43,335	45,803	38,439	40,669	46,977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이에 따라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정 및 지역·국가 간 FTA 체결을 통한 교역활성화 제반환경 조성이 가장 큰 당면 과제

ㅁ NAFTA 전후로 높아진 대미무역 의존도 => 신시장 개척 시급

○ 2008 년 기준,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77.7%, 수입의 52.4%을 차지하는 제 1 의 교역대상국이며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90%가 미국 접경지역에 거주해 사실상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국과 불과분의 관계를 형성

○ 미국과 '66 년 체결한 Auto Pact 는 캐나다의 고도성장의 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캐나다 제 1 의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1988 년 CUSFTA 체결 및 1994 년 멕시코를 포함한 NAFTA 체결은 캐나다의 대미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대미의존적 교역구조는 캐나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체질 개선 및 신시장 개척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FTA 추진이 필수적

ㅁ FTA 의 추진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목적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치적·전략적 목적도 상당수를 차지

○ NAFTA 와 마찬가지로 캐나다가 기 체결한 FTA 의 대부분이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 투자 확대 및 시장 접근성 향상과 함께 산업 고도화를 추구

○ 또한 인력, 환경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FTA 를 추진함으로써 비단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 증진을 통한 캐나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도 큰 의미를 부여

○ 다만 전체 교역량에서 NAFTA 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 반해 CCFTA(0.28%), CIFTA(0.16%), CCRFTA(0.05%)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체결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 가능

○ 즉, 칠레의 경우 FTA 체결 당시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 바, 캐나다 기업들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서 FTA 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

- CCFTA 체결전 1996 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Canada Expo 에서 캐나다 Rio Algom 은 Cerro Colorado Copper Mine 에 U$ 27,000 만 투자를 결정했으며, Nortel(이동 통신사)도 칠레 이동통신사인 Coasin Chile S.A. 지분 인수를 발표

○ 또한 2005 년 FTAA 협상이 타결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원활한 중남미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칠레, 코스타리카와 서둘러 FTA 를 체결한 것으로도 해석하는 시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1994 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 등 중동지역 전반의 평화 확산으로 인해 West Bank, 가자 자치지구 및 기타 중동국가들의 성장가능성을 염두한 정치적·전략적 FTA 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됨.

○ 2007 년 협상이 타결된 EFTA 의 경우 거대 EU 시장과의 교역 확대 및 기술도입을 통한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한국, 싱가포르 FTA 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시장으로의 상품, 서비스 진출 확대가 주된 목적

○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FTA 체결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을 독려, 생활 여건 개선과 빈곤 퇴치에 기여함으로써 캐나다의 우호적인 이미지 확립 및 신흥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FTA 추진대상국 선정

□ FTA 추진대상국 선정은 환경분석(EA: Environment Assessment)을 통해 결정

○ NAFTA 체결 및 우르과이라운드 협정 체결 시에도 캐나다는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Environment Reviews)을 통해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

○ 이후 동 영향분석 도구를 보다 구체화해 2001 년 캐나다 정부는 '통상협상을 위한 환경 분석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onducting Environmental Assessments of Trade Negotiations)'를 마련

○ 동 프레임 워크는 캐나다의 FTA 협상 및 FIPA 체결 시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협상 체결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서부터 각 산업에 대한 위협 또는 기회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분석도구로서도 활용

○ 총 9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 각 단계별로 환경분석을 구체화

Notice of Intent(협상 개시 발표)
- 해당 국가와의 FTA 협상 개시 발표 및 환경분석 시작
- 캐나다 외교통상부 고위급 관리 및 기타 각 산업부처별 파견자들로 구성된 환경분석위원회(EA Committe) 설치

↓

Initial EA(1차 환경분석)
- 협상시기, 기간, 협상단 규모 등 결정
- 대략적인 관련자료 수집 및 협상 타결에 따른 긍정, 부정 효과 분석

↓

Initial EA Report(1차 환경분석 보고서 작성)
- 협상 결과에 따른 전반 효과 및 중대 영향 요인 분석 바탕으로 협상 내용 및 방향성 제공

↓

Decision: 2차 환경분석 필요 여부 결정
- Yes => 1 차 환경분석 보고서 미흡 판단시, Draft EA 돌입
- No => 협상 진행 방향 모니터링 및 협상단 지원에 집중

↓

Draft EA(2차 환경분석)
- 1 차 환경분석에서 드러난 중대 영향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

↓

Draft EA Report(2차 환경분석 보고서 작성)
- 협상 초기단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보충 및 심층 분석결과 제공

↓

Negotiation(협상)
- Draft EA 를 바탕으로 캐나다 협상단의 방향성 및 위치 재정립

↓

Final EA Report(최종 환경분석)- 협상 타결 후
- 협상 타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캐나다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주: Initial, Draft, Final EA Report는 각 과정 종료 시 공개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다. 개별 FTA별 특성 및 협상과정에서 추진된 중점사항

1) 기 체결된 FTA

□ NAFTA(1994.1.1 발효)

○ 북미 단일경제권 확립을 위한 기본틀 마련
- 일부 상품 분야 및 공공·문화 서비스 등의 민감 분야를 제외하고 관세철폐, 수량제한 금지, 세이프가드 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투자, 서비스,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인력이동 등 사실상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완성도 높은 수준의 합의 도출

○ 무역분쟁 해결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위원회 활성화
-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 각 분과별 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및 소위원회(Working Groups)를 설치·운영, 무역분쟁 해결 및 NAFTA 의 기본 취지를 지속하기 위한 발전 방향 제공

○ 2003 년 1 월부로 거의 모든 상품분야 관세를 철폐
- 이후 2004 년에는 내륙 운송량이 많은 디트로이트-윈저 국경의 통관 대기시간을 1/4 로 단축하고 2005 년에는 3 국 정상들이 SPP(Security and Prosperity Partnership for North America)를 발표하는 등 단일 경제권 구축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까지 협력 확대

□ CCFTA(1997.7.5 발효)

○ 남미국가와 체결한 첫 FTA 로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을 비롯, NAFTA 에 근접한 수준인 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노동 분야까지도 포함
- 체결 전후로 하여 칠레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7%에 육박하고 있었으며, 낮은 실업률,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은 NAFTA 체결 이후 최적의 FTA 파트너로 부상
- 산업용 및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단행, 2003 년 1 월 이후 사실상 양국 간의 교역은 무관세

○ 주요 품목 혹은 분야별 합의 내용
- 발효 즉시 상품분야 약 80% 관세 철폐(과거 수입산에 대해 11% 관세 부과)
- 원산지 규정: NAFTA 와 비슷한 형태(농수산물, 화학품, 플라스틱, 의류, 섬유는 원산지 규정 제외)
- 상품분야
・의류: 캐나다는 칠레산에 대해 6 년, 칠레는 캐나다산에 대해 5 년에 걸쳐 관세 장기 철폐
・식품: 수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카놀라유 관세 즉시 철폐, 냉동콩, 제과류, 츄잉껌, 파스타, 수프, 애완용 식품, 재배식물 등은 5 년간에 걸쳐 관세 장기 철폐. 밀가루의 경우 민감 품목임을 감안, 17 년간 장기 철폐. 다만 우유, 치즈 등의 낙농제품과 가금류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TQR 운영
-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설치를 통한 분쟁 해결
- 부속협정으로 환경, 노동분야, 인적교류 협력 포함
- 투자협정: NAFTA 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정. FTA 협상에서 배제된 분야를 제외하고 캐나다인의 칠레 투자시 사전 스크린 금지
- 이중과세 방지조항 포함

□ CIFTA(1997.1.1 발효)

○ 중동지역 국가들로는 처음으로 체결한 FTA 로 관세철폐, 정부조달, 공정경쟁, 무역 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
- CCFTA 의 합의 내용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합의

○ 주요 품목 혹은 분야별 합의 내용
- 상품 분야: 이스라엘산 여성용 수영복, 캐나다산 섬유를 제외하고 발효 후 1~2 년내 전 품목에 걸쳐 관세 철폐. 특히 이스라엘은 캐나다산 곡물, 곡물 가공식품, 쇠고기, 메이플 설탕, 주류 등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전부 철폐하는데 합의(다만 양측은 낙농류, 가금류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유보하고 추가 협상을 통해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지속할 것을 약속)
- 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 설치를 통해 무역분쟁 해결
- 공정경쟁 체제 구축을 위한 내국기업 경쟁법 적용

□ CCRFTA(2002.11.1 발효)

○ 1998 년 FIPA 체결을 통해 FTA 체결 가능성 확인
- 1998 년 FTAA 협상 참가 시 캐나다 외통부 장관은 코스타리카와 FIPA 를 체결했는데 당시 캐나다는 코스타리카에 은행, 호텔, 출판업 등의 분야에 투자진출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이후 '99 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코스타리카와 FTA 체결 가능성 조사를 제안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 FIPA 체결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캐나다가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

○ CCFTA 에 준하는 수준의 협정 체결
- 캐나다의 경우 수산물, 제지류,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목재류 수출 확대 및 통관의 간소화를 통한 교역 확대가 주목적
- 상품 분야: 코스타리카는 캐나다산 상품의 67%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32%는 14 년에 걸쳐 장기 철폐키로 결정. 캐나다는 코스타리카산 상품 86%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8 년에 걸쳐 장기 철폐 합의
- 공정경쟁체제 확립, 인력이동의 자유, 원산지 규정, 반덤핑, 서비스 분야의 제한, 정부조달 참여도 협상 대상으로 포함 되었으며, 문화산업은 예전과 같이 협상에서 제외
- 환경, 노동분야에 대한 부속 협정도 체결

□ EFTA(2009.7.1 발효)

○ 캐나다-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협상 11 년 만에 발효
- EFTA 는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1960 년에 유럽공동체(EC)에 대항하여 결성된 기구로 초기에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을 포함하였으나 이들 국가들이 EC 에 가입하여 현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의 4 개국 회원으로 구성
- 1998 년 10 월부터 시작한 양측의 FTA 협상은 수차례의 협상 회의를 거치며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2000 년 캐나다 선박 시장을 비롯한 민감 분야에 대한 협상 난항으로 교착 상태로 접어듬
- 기 진행 중인 FTA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로 2006 년 캐나 다-EFTA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2007 년 6 월 협상을 마무리 함
- EFTA 와의 FTA 체결은 캐나다가 유럽 지역 국가와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며 2002 년 코스타리카와의 FTA 체결 이후 6 년 만에 체결된 협정

○ 유럽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 로 다양한 상품의 관세 철폐가 주요 내용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양 지역간 관세 철폐에 주안점을 둔 '1세대' 협정으로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포함되지 않음
- 캐나다는 EFTA와의 FTA 체결로 주요 수출 품목인 목재, 펄프, 종이류, 알루미늄, 화장품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동 제품의 경쟁력 향상 기대
- 한편 EFTA 국가들의 자국내 농업상품 및 관련 식품 수출관련 정부보조를 제거함으로써 캐나다 내 농업 부문의 상대적 경쟁력 향상
- 전반적으로 유럽 지역 시장공략 확대를 위한 유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 EFTA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칠레, 한국 및 EU 등과도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

□ Jordan (2009.6.28 서명)

○ 체결 개요
- 2008 년 8 월 25 일 요르단과 FTA 협상을 완료, 2009 년 6 월 28 일 서명하였으며, 의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음
- 요르단은 캐나다의 첫 번째 FTA 아랍국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교역증대 같은 경제적인 이익과 더불어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정치적인 협정임

○ 캐나다의 요르단과의 FTA 기대 효과
- 캐나다와 요르단은 비농산물과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감축을 합의하였으며, 캐나다의 산림업, 농수산업, 제조업 분야가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
- 특히 캐나다의 수출 품목중 농작물, 식료품, 전자기계, 건설장비, 산림제품 등이 현 관세율 20~30%에 달하고 있어 이번 협정으로 캐나다의 대요르단 수출 증가에 기여할 전망
-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무역상 기술 장벽(TBT) 협정과 위생•검역(SPS) 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
-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 요르단은 캐나다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캐나다와 아랍국가의 교역 증가가 예상됨

□ Panama (2009.8.11 협상 완료)

○ 협상 개요
- 2009 년 8 월 11 일 파나마와 폭발적인 진행 속도에 힘입어 환경, 노동분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통신, 금융, 정부조달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상을 완료함

○ 캐나다의 파나마와의 FTA 기대 효과
- 2008 년 캐나다-파나마 상품교역 규모는 1 억 4910 만 달러이며, 캐나다의 대파나마 수출이 1 억 2700 만 달러로 FTA 발효 시, 캐나다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기계, 자동차, 전기 및 전자제품, 항공기 관련 제품, 의약품, 냉동식품 등 캐나다 주요 산업 제품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

2) 현재 협상 중인 FTA

□ CA4(중미 4개국)

○ 캐나다는 2001 년 11 월 21 일 중미 4 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과 노동 및 환경 부문을 포함한 FTA 협상 개시

○ 캐나다 정부는 중미 4 개국과의 FTA 를 통해 그동안 미미했던 양 지역 간 무역증대 효과를 기대. 캐나다의 주요 관심 수출 분야는 통신 서비스 및 제품, 환경 서비스 및 장비, 가공식품, 자동차부품 그리고 건설 서비스 및 장비임.

캐나다의 대 중미 4개국 수출입 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07	2008
대 중미 4개국 캐나다 수출	233	307
대 중미 4개국 캐나다 수입	450	548

자료: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의 대 중미 4 개국 FTA 협상 입장은 자국 시장의 개방을 통해 중미 4 개국의 경제성장을 독려함으로써 생활여건 개선 및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것이나, 자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 중

○ 2004 년 2 월 오타와에서의 10 차 협상이후 5 년만인 '09 년 2 월에 11 차 협상을 하였으며, 09 년 6 월에 12 차 협상 예정으로 중미 4 개국의 정부 보조를 받는 섬유 및 의류 제품 및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중

○ 다만 2006 년 10 월까지 캐나다와 CA4 고위급 정부관료들이 약 3 차례에 걸쳐 비공식 회담을 가진 것으로 볼 때, 공식협상은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단 실무적인 선에서는 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도미니카공화국

○ 캐나다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2002 년 11 월 2 일 FTA 협상을 위한 첫 예비 회의를 시작

○ FTA 체결 후 캐나다는 산업용품과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 간 FTA 와 마찬가지로 전자기기, 의료기기, 의류, 섬유 등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주장

○ 또한 양국 간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감자 등에 대해서는 12~15 년간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제지, 광물, 동선,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5~10 년간 관세 장기 철폐를 목적으로 협상 추진

○ 캐나다의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FTA 협상 입장은 자국 시장의 개방을 통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제성장을 독려함으로써 생활여건 개선 및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것

○ 2007 년 12 월 1 차 협상을 개최했으며 '08 년 2 월에 2 차 협상 개최는 잠정 연기된 상태임.

□ 싱가포르

○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2001 년 10 월 21 일부터 본격 협상 개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비롯해 금융, 투자, 정부조달, 환경 및 노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를 추진

○ 대부분의 캐나다 상품은 이미 싱가포르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으므로 FTA 를 통한 캐나다의 경제적 이득은 투자 및 서비스 부분에 집중될 전망

캐나다의 대 싱가포르 무역 및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 싱가포르 수출	585	528	654	853	770
대 싱가포르 수입	750	803	869	1,388	1,169
캐나다의 대싱가폴 투자액(FDI)	3,580	2,728	2,749	2,589	2,911
싱가폴의 대캐나다 투자액(FDI)	45	28	118	291	191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 캐나다는 싱가포르와의 FTA 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 서비스, 정보 기술, 바이오, 환경산업 그리고 항공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03 년 9 월 말 오타와에서의 회의 이후 '07 년 8 월까지 8 차 협상을 개최하였음.

□ 한국: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조

□ 카리브공동체(CARICOM)

○ 캐나다는 카리브해 연안지역 15 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2001 년 1 월 19 일 FTA 협상을 위한 예비 회의를 시작, 2005 년 3 월까지 3 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07 년 10 월 1 차 예비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08 년 2 월 국민의견 수렴을 완료. 공식협상 시기는 미정

○ 카리브공동체는 미국 및 영국에 이어 캐나다의 투자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금융, 광업 및 에너지 부문의 투자 규모가 C$ 250 억에 이르고 있음.

○ 또한 매년 캐나다 기업들은 C$ 200 백만 규모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계약을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수주하고 있는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카리브공동체와 캐나다 간 전략적 관계 형성

□ EU

○ 캐나다는 2004 년 3 월 18 일 EU 집행부와 캐-EU 간 무역 및 투자 확대 협약(TIEA: Trade and Investment Enhancement Agreement) 구성에 합의함. TIEA 는 기존 FTA 보다 한 단계 발전한 미래지향적 개념으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투자, 무역촉진, 규제 협력, 정부조달 및 서비스 등 캐나다와 EU 간의 폭넓은 무역 확대를 위한 기초 구성이 목적임. EU 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교역 지역으로 특히 투자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

○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성공적인 결과도출이 캐나다의 EU 시장에 대한 장벽 제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에 따라 WTO-DDA 결말 이전에 TIEA 의 공식협상은 마무리되지 않을 예정. 2006 년 2 월까지 3 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6 년 5 월에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함.

○ EU 협상 대표와 2008 년 7 월부터 캐나다-EU FTA 협상 추진을 논의하였으며, 2008 년 10 월 17 일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캐나다-유럽연합 FTA 협상 추진에 합의. 2009 년 5 월 6 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은 EU 와의 FTA 추진을 공식 발표하였음

○ 2005 년 캐나다는 유럽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증대 협정(Trade and Investment Enhancement Agreement)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음. 하지만 지난 2008 년 7 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렬 이후 EU 는 캐나다와 FTA 협상을 적극 고려하게 됨. 유럽기업이 캐나다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여 시 최저가로 참여할 경우 유럽기업에게 입찰 기회 이슈를 주정부가 찬성하면서 FTA 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되어 협상 전망이 긍정적임.

○ 캐나다-EU FTA 협상 내용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제완화와 관세철폐뿐 아니라 우수인력 교류와 유럽 기업이 캐나다 정부조달사업 입찰할 경우 캐나다 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NAFTA 협정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2008 년 1 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4 개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FTA 를 체결했으며, 이번 27 개 EU 국가와 FTA 협상을 통해 5 억 인구와 GDP 규모가 17 조 달러인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기대

○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캐나다와 EU 의 무역 및 투자 교류는 연간 최소 400 억 캐나다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세계 최대 투자 자본을 캐나다로 유입 효과가 기대됨.

캐나다의 대 EU 무역 및 투자 현황

(단위: US$ 백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대 EU 캐나다 수출	17,682	20,619	25,749	32,436	34,120
대 EU 캐나다 수입	32,489	37,922	43,171	45,894	50,671
캐나다의 대 EU 투자액(FDI)	121,120	113,821	130,196	129,752	136,371
EU의 대 캐나다 투자액(FDI)	99,552	100,798	104,252	127,975	132,578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3) 현재 검토 중인 FTA

□ 안데안 공동시장

○ 캐나다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베네수엘라 등 5 개국을 포함한 안데안 공동시장과 2002 년 8 월 27 일 FTA 협상을 위한 첫 예비 회의를 시작

- 이후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 개국은 2006 년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고 2007 년 6 월 캐나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EFTA 협상 타결 발표와 함께 2007 년 하반기 중 페루, 콜롬비아와 1 차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을 공식 발표
- 2007 년 6 월부터 2007 년 11 월까지 모두 4 차 협상을 개최
- 페루와는 2009 년 8 월 1 일 환경과 노동분야를 포함한 FTA 를 발효
- 콜롬비아와는 2008 년 6 월 7 일 협상을 완료하고 2008 년 11 월 21 일 서명하였으며, 의회비준 절차가 남아 있음.

○ 협상 내용은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 무역진흥, 통관절차, 인력이동, 투자, 정부조달, 공정 경쟁 등 기존의 FTA 와 비슷한 수준이나, 금번 협상에는 지적재산권, 전자 상거래도 함께 포함

○ 협상대상국인 콜롬비아와의 교역규모는 2008 년 기준 C$ 12.6 억으로 이중 수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C$ 660 백만, 수입은 37% 증가한 C$ 603 백만을 기록. 2008 년 기준 캐나다가 C$ 10 억을 직접 투자한 가운데, 석유시추, 광산개발, 출판업, 신발제조, 식품가공, 교육, 주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페루와의 교역규모는 2008 년 기준 C$ 26.6 억으로 캐나다의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C$ 359 백만, 수입은 16% 증가한 C$ 23 억을 기록. 2008 년 기준 캐나다의 대 페루 직접투자는 광산 개발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은행, 출판업을 포함해 C$ 23 억에 달함

○ 동 FTA 는 캐나다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수력발전기 등의 수출 확대 및 광산, 엔지니어링, 환경, 금융, 통신기술 등의 서비스 교역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일본

○ 캐나다와 일본은 2005 년 1 월 19 일 양국 간 FTA 체결 가능성 타진을 위한 예비 합의에 착수한 후 2005 년 11 월 19 일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교류에 끼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공동연구를 위한 구성개발을 마침.
- 2005 년 11 월 공동연구를 시작, 12 개월간 공동연구 진행 완료
- 일본은 미국, 영국에 이은 캐나다 제 3 의 수출상대국으로 2008 년 기준 연간 수출규모는 U$ 104 억이며 캐나다의 대 일본 수입실적은 U$ 143 억에 육박

○ 캐나다 정부는 FTA 체결과정에서 일본 정부와의 교섭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
- 그동안 일본은 캐나다와 보다 긴밀한 교역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 다소 통일되지 않은 반응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자국 농·축산업계를 보호하려는 일본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 캐나다 정부가 일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라. 주요 FTA 체결 효과 실증 분석

1) NAFTA

□ 교역

○ 1994 년 발효 이후, NAFTA 는 캐나다의 경제 성장 및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 NAFTA 해당국가의 교역량은 2008 년 기준으로 NAFTA 체결전인 1993 년 대비 182% 증가

○ 2008 년 기준 전체 교역 비중에서는 미국이 전체 수출의 77.7%, 수입의 52.4%를 차지하고 있어 역내 교역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 반면 멕시코의 경우, 수출 1.21%, 수입 4.13%로 작은 규모를 차지

캐나다의 대 미국, 대 멕시코 교역 현황

(단위: U$ 백만)

구분		1993	1996	199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수출	116,804	163,678	207,335	233,100	267,478	301,902	316,794	329,889	353,018
	수입	88,265	115,109	145,082	145,427	160,556	177,601	191,863	205,025	212,842
	무역수지	28,540	48,569	62,254	87,673	106,922	124,302	124,931	124,864	140,176
멕시코	수출	640	923	1,085	1,578	2,379	2,778	3,867	4,602	5,486
	수입	2,876	4,426	6,418	8,698	10,322	12,046	14,110	15,969	16,796
	무역수지	-2,236	-3,503	-5,333	-7,120	-7,943	-9,268	-10,243	-11,367	-11,310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투자

캐나다의 대 미국, 대 멕시코 투자 현황

(단위: C$ 백만)

구분		1993	1996	199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국	직접투자	67,677	93,939	151,775	169,605	198,877	204,604	223,623	230,558	310,708
	투자유치	90,600	121,943	176,045	238,057	243,328	251,477	271,125	292,698	293,608
멕시코	직접투자	530	1,933	3,325	3,047	2,649	3,453	4,369	4,499	3,892
	투자유치	154	n/a	101	214	287	322	232	221	246

자료: 캐나다 외교부

○ 교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제 1 의 직접투자, 투자유치 대상국은 미국으로서, 2008 년 기준 NAFTA 체결전인 1993 년 대비 직접투자는 359%, 투자유치는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 NAFTA 체결 이후인 1994 년부터 약 230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17.5%의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

2) CCFTA

□ 교역

○ 1997 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2008 년 기준 1997 년 대비 84% 증가한 가운데 캐나다의 대 칠레 수출은 6.7 억 캐나다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16.8 억 캐나다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수출 증대 효과 발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분석

○ 전체 교역 비중에서는 전체 수출의 0.15%, 수입의 0.41%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캐나다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의 대 칠레 교역 현황

(단위: U$ 백만)

구분		1996	1997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칠레	수출	305	283	231	276	276	344	417	715	671
	수입	251	235	632	1,005	1,005	1,372	1,634	1,568	1,682
	무역수지	54	48	-401	-729	-729	-1,028	-1,217	-853	-1,011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투자

○ 2008 년 기준, 칠레는 캐나다의 제 14 대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FTA 체결전인 '96 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투자 대상은 광산업 및 IT 산업임.

○ 반면 칠레로부터의 투자유치는 과거부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FTA 체결에 따른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는 전혀 없음.

캐나다의 대 칠레 투자 현황

(단위: C$ 백만)

구분		1996	1997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칠레	직접투자	3,281	3,876	4,878	6,024	5,636	5,330	4,626	5,866	6,434
	투자유치	n/a	n/a	n/a	n/a	n/a	n/a	n/a	n/a	n/a

자료: 캐나다 통계청

3) CIFTA

□ 교역

○ 1997 년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2008 년 기준 1996 년 대비 354% 증가한 가운데, 캐나다의 대 이스라엘 수출은 546 백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1,142 백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 확대 효과가 발생

○ 전체 교역 비중에서는 전체 수출의 0.12%, 수입의 0.28%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캐나다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의 대 이스라엘 교역 현황

(단위: U$ 백만)

구분		1996	1997	1998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스라엘	수출	176	182	176	293	355	393	396	546
	수입	196	227	442	531	671	769	892	1,142
	무역수지	-20	-45	-267	-237	-315	-375	-495	-595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투자

○ 2008 년 기준, 이스라엘은 캐나다의 제 47 대 직접투자 대상국, 23 대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자리매김

○ 캐나다의 대 이스라엘 직접투자는 누적액 기준으로 FTA 체결전인 1996 년 대비 9,000% 증가한 C$ 364 백만을, 투자유치는 794% 증가한 C$ 769 백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FTA 체결이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캐나다의 대 이스라엘 투자 현황

(단위: C$ 백만)

구분		1996	1997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스라엘	직접투자	4	n/a	n/a	263	266	317	321	292	364
	투자유치	86	34	41	361	332	328	858	859	769

자료: 캐나다 통계청

4) CCRFTA

□ 교역

○ 2002 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은 2008 년 기준 2001 년 대비 178% 증가한 가운데, 캐나다의 대 코스타리카 수출은 100 백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353 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253 백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전체 교역 비중에서는 전체 수출의 0.02%, 수입의 0.09%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캐나다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

캐나다의 대 코스타리카 교역 현황

(단위: U$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코스타리카	수출	41	49	50	59	70	61	76	100
	수입	122	157	212	242	292	342	343	353
	무역수지	-81	-108	-161	-184	-221	-281	-267	-253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투자

○ 2008 년 기준, 코스타리카는 캐나다의 제 61 대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은행, 호텔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결과 C$ 40 백만을 기록

○ 반면, 코스타리카의 대 캐나다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보다는 직접투자를 위해 FTA 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

캐나다의 대 코스타리카 투자 현황

(단위: C$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코스타리카	직접투자	118	120	99	101	117	120	99	40
	투자유치	0	0	0	0	0	0	0	0

자료: 캐나다 통계청

5) EFTA

□ 교역

○ 양측 간 교역량은 2008 년 기준 2001 년 대비 3 배 증가한 가운 데, 캐나다의 대 EFTA 수출은 39 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84 억 달러를 기록하여 -4 억 5860 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전체 교역 비중에서는 전체 수출의 0.86%, 수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캐나다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캐나다의 대 EFTA 교역 현황

(단위: U$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FTA	수출	882	986	1,083	1,762	2,234	2,757	4,884	3,913
	수입	3,209	3,503	4,120	5,111	6,802	6,731	7,142	8,498
	무역수지	-2,327	-2,516	-3,037	-3,349	-4,568	-3,974	-2,258	-4,586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투자

○ 2007 년 기준, 캐나다의 대 EFTA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C$ 100 억을 기록. 캐나다의 대 스위스, 노르웨이 투자는 감소한 반면 대 아이스랜드 직접투자가 급증(44%)

○ EFTA 의 대 캐나다 투자 또한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7 년 C$ 182 억을 기록. 양측간의 지속적인 투자 증가세는 FTA 체결에 힘입어 지속할 전망

캐나다의 대 EFTA 투자 현황

(단위: C$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TFA	직접투자	-	-	6,610	7,663	7,883	9,226	10,176	N/A
	투자유치	-	8,953	8,626	9,618	13,759	15,495	18,182	N/A

자료: 캐나다 통계청

6) Jordan

□ 교역

○ 양국 간 교역량은 2008 년 기준 2001 년 대비 3.5 배 증가한 가운 데, 캐나다의 대 요르단 수출은 72 백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14 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58 백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 기록

○ 전체 교역 비중에서는 전체 수출의 0.016%, 수입의 0.0035%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캐나다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

캐나다의 대 요르단 교역 현황

(단위: U$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EFTA	수출	22	20	22	32	101	50	59	72
	수입	3	3	4	5	7	13	15	14
	무역수지	19	18	18	27	94	37	44	58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투자

○ 캐나다의 대요르단 직접 투자는 2001 년 C$ 2 억 28 백만을 투자한 이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요르단의 대 캐나다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FTA 체결을 통해 직접 투자 및 투자 유치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

캐나다의 대 요르단 투자 현황

(단위: C$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요르단	직접투자	228	-	-	-	-	-	-	-
	투자유치	-	-	-	-	-	-	-	-

자료: 캐나다 통계청

7) Panama

□ 교역

○ 양측 간 교역량은 2008 년 기준 2001 년 대비 3.7 배 증가한 가운 데, 캐나다의 대 파나마 수출은 1 억 2 천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2 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1 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기록

○ 전체 교역 비중에서는 전체 수출의 0.026%, 수입의 0.0049%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캐나다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

캐나다의 대 파나마 교역 현황

(단위: U$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파나마	수출	31	24	40	56	50	74	80	120
	수입	7	8	91	36	37	31	27	20
	무역수지	24	16	-51	20	13	43	54	100

자료: 캐나다 통계청

□ 투자

○ 캐나다의 대 파나마 직접투자는 2006 년 이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 발효 시, 파나마의 입장에서 직접투자보다는 투자유치를 위해 FTA 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

○ 파나마의 대 캐나다 투자는 2006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08 년 C$ 5 천만을 기록. 파나마는 캐나다의 37 번째 투자유치 대상국임.

캐나다의 대 파나마 투자 현황

(단위: C$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파나마	직접투자	198	153	144	141	143	111	x	x
	투자유치	116	50	46	53	76	49	60	50

자료: 캐나다 통계청

마.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주재국 FTA 추진 전망과 시사점

○ 현 집권당인 보수당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선호
- 낮은 세율 및 단순보편적 과세구조 지향, 對민간 보조금 및 정부부채 삭감, 공기업 민영화 확대 등 '보수적·긴축적 재정정책' 추진 기조

○ 대외통상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FTA 를 추구하는 동시에 WTO 등 다자논의에서도 관세장벽 인하 및 무역보조금 철폐에 중점을 두면서 캐나다정부의 역할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지역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되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아시아 및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출산업의 경쟁력 및 고용 창출 증진에 중점

○ 중남미, 중동, EU 시장이 캐나다 정부의 FTA 협상 우선순위
- 캐나다와 FTA 를 협상 및 검토중인 국가 중 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국가(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카리브공동시장, 중미)는 모두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어 캐나다 정부의 FTA 협상대상 우선순위가 중남미와 중동시장으로 옮겨간 것으로 판단됨. 2008 년에만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과 협상을 완료하였음
- EU 와는 2008 년 10 월 17 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FTA 를 추진하는데 합의하였으며, 2009 년 5 월 6 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은 EU 와의 FTA 추진을 공식 발표하였음

○ 한국과의 FTA 협상 조기 타결은 무리
- 한국과 캐나다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싱가포르 FTA 의 경우 2002 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추진 방향을 관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한국의 FTA

□ 추진현황

○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는 2004 년 5 월 한-캐 대외경제 장관 회의에서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 2 차례에 걸친 예비 협상과 2008 년 3 월까지 총 13 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 2008 년 6 월 서울에서 14 차 협상 개최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상태

○ 한국의 쟁점사항은 농산물로서 농산물의 민감성을 수용할 수 있는 15 년 이상 장기 철폐, 관세 일부 인하, TRQ(할당관세) 등 다양한 양허방식에 대해 캐나다 측의 입장을 타진

□ 협상 내용

○ 제 1, 2 차 상품양허안 교환, 서비스 및 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 사실상 13 차 협상까지 실무적인 사항은 상당부분 정리되고 주요 쟁점사항만 남아 있는 상태임.

○ 캐나다 측에서는 비관세 장벽 논의 및 관세양허 등 자국에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 바 협상 타결 시점을 정하지 않고 있음.

□ 주요 쟁점

○ 상품·원산지
- 캐나다는 2003 년 5 월 이후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관세양허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
  ・우리 측의 자동차 양허요구(10 년 철폐→단기철폐)와 캐나다의 쇠고기·돼지고기 양허 요구(양허제외→양허포함),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의 개편 요구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
- 수산물: 캐나다는 모든 수산물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초민감 수산물(고등어, 민어, 꽃게 등 24 개 품목)의 양허 제외를 조건으로 캐나다 측 관심품목의 양허 의사(가공 새우, 민대구, 해삼 등 20 여 개)를 표명
- 섬유 부문: 우리 측은 원사기준(Yarn-Forward) 수용 대신 충분한 특혜관세 물량(현 수출 물량의 5 배 수준)을 요구 중
  ・한국의 대캐나다 섬유 수출: 1.2 억 달러(전체 對 캐나다 수출의 3.6%)
-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서비스·투자
- 원칙적으로 과거, 미래 MFN 의 상호부여를 합의했으나 한-칠레 FTA 적용 등 세부사항 논의 중
- Ratchet, 주 정부 비합치 조치 목록화, 투자자 對 국가 간 분쟁(ISD) 대상에서 '수용' 배제에 대한 입장차 지속

- 우리 측은 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협정 적용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캐나다는 유보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 견지(ISD 등 일부 효과 차이 발생)
- 금융 서비스는 자유화 방식(mode 3 에 대한 negative 방식 적용)에 합의한 상태이나 구체적인 논의가 개시되지 않음.

○ 기타 분야
- 반덤핑 규범개선(Zeroing 금지, Lesser-duty rule, Non-cumulation)에 대해 캐나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 캐나다는 일시입국 적용대상에 자유 전문직, 배우자 포함을 주장하나 우리 측 국내 법제 미비로 논의 未 진전
- 우리측은 정부조달에서 주정부를 양허대상에 포함 주장
・캐나다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WTO 에서도 미 양허한 상황

□ 체결 가능성

○ 상기 쟁점 분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자동차, 캐나다의 쇠고기 및 기타 농수산물 분야가 한-캐 FTA 의 최대 쟁점사항임.

○ 과거 한-미 FTA 가 타결된 만큼 한-캐 FTA 도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러한 시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분석
- 즉, 한-미의 체결 사례가 일정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대우를 받을 경우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또한 국제 수역사무소(OIE)에서 최근 캐나다를 광우병 통제 가능국가로 평가,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명분 자체가 사라짐에 따라 캐나다 측의 거센 수입재개 요구가 예상

○ 한국 역시 미국에서 수용한 3,000CC 이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캐나다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관세율은 2.5%인데 반해 캐나다의 관세율은 6.1%에 달하고 있어 즉시 철폐는 사실상 불가함을 표시

○ 2008년 6월 서울에서 제14차 한-캐 FTA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일주일 전 10월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

○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접근 없이는 타결 시점을 예상하기가 어려워 한국과의 FTA 협상 조기 타결은 무리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 한국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의 전기전자 제품 등 기술집약적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캐나다는 석탄, 광물류, 목재류, 사료·비료, 농·수·축산품 등 1차 산업 품목 및 석유 화학 제품을 주로 수출해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

○ 양국 간 교역량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의 U$ 721백만에서 2008년에는 U$ 8,461백만으로 11배 이상 확대되었음.
- 2008년 교역량은 2007년 U$ 6,760백만보다 25.1% 증가

○ 2008년 수출은 U$ 4,057백만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으며 수입은 U$ 4,404백만으로 전년 대비 35.3% 증가하였음. 2008년 대 캐나다 무역적자는 U$ 346백만을 기록함.

- 무역수지는 1990년대 지속적인 적자현상에서 탈피해 2000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 그러나 2008년에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연탄, 펄프, 우라늄, 니켈 등 1차 상품 수입총액 증가로 무역적자를 기록.

○ 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2009년 양국의 무역규모는 2008년에 비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7월까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간보다 각각 16.0%와 21.2% 감소한 U$ 1,944백만과 U$ 2,005 백만을 기록
- 2009년 7월까지 한국의 대캐나다 무역수지는 U$61 백만 적자를 기록 중

한국 기준 수출입 동향

(단위: U$ 백만,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99	1,638	5.6	1,793	-9.2	△154
2000	2,427	48.1	2,108	17.6	319
2001	2,036	-16.1	1,821	-13.6	214
2002	2,341	15	1,846	1.3	495
2003	2,682	14.6	1,860	0.8	822
2004	3,383	26.1	2,189	17.7	1,194
2005	3,446	1.9	2,604	19	842
2006	3,620	5.1	3,091	18.7	529
2007	3,506	-3.1	3,254	5.3	252
2008	4,057	15.7	4,404	35.3	△346
2009.7	1,944	-16.0	2,005	-21.2	△61

주: 연도별 수출입 실적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의 대 캐나다 주요 수출 상품(한국 기준)

1) 2006~2008년 품목별 수출현황

최근 3 년간 대 캐나다 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승용차, 무선전화기, 섬유기계가 증가 세를 보이며 수출을 주도

승용차와 무선전화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주력 수출품인 의류와 섬유 직물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섬유류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고 있음. 지난 3 년간 캐나다의 건설업 약화로 인한 철강자재, 건설중장비 등 수출품목도 다소 주춤

2008 년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실적은 2007 년 대비 15.7% 증가를 기록하였음. 2009 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캐나다 주요 산업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해 캐나다의 경기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 캐나다 수출은 2008 년 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임.

2006~2008년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U$ 천, %)

순위	품목명	2006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620,405	5.1	3,506,423	-3.1	4,057,234	15.7
1	승용차	1,293,654	1.6	1,293,654	1.6	1,349,426	4.3
2	무선전화기	276,735	-28.9	276,735	-28.9	341,351	23.4
3	선박	148	-99.8	1,169	689.3	189,940	16145
4	섬유기계	54,477	35.7	88,706	62.8	133,434	50.4
5	자동차부품	132,192	19.2	122,480	-7.3	114,572	-6.5
6	타이어	85,709	-4.5	96,822	13	84,260	-13
7	컴퓨터	6,955	-19.1	4,534	-34.8	66,656	1370.2
8	철도차량	0	n/a	14,659	n/a	59,360	304.9
9	철강 및 비합금강형강	115,089	57.7	67,035	-41.7	58,172	-13.2
10	변압기	27,220	178.9	23,539	-13.5	55,017	133.7
11	합성수지	71,807	-11.5	53,739	-25.2	45,719	-14.9
12	주단강	14,194	97.7	53,739	-25.2	45,719	-14.9
13	제트유 및 등유	0	n/a	0	n/a	43,921	n/a
14	합성고무	19,183	25	22,461	17.1	43,247	92.5
15	밸브	50,529	40.1	41,833	-17.2	41,952	0.3
16	철강관	44,419	7.6	35,561	-19.9	41,383	16.4
17	아연도강판	65,517	44.5	40,423	-38.3	41,110	1.7
18	공기조절기	8,514	155.7	15,694	84.3	35,990	129.3
19	인쇄용지	14,241	-16.1	28,124	97.5	33,268	18.3
20	기타 기계요소	30,974	27.5	33,456	8	33,064	-1.2

주1: 순위는 2008년 수출실적 기준
주2: 증가율은 해당년도 수출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
주3: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2) 2009년 7월 누계 품목별 수출현황

2009 년 7 월 누계 통계를 보면 컴퓨터, 철강재용기, 형강, 세탁기, 변압기 등이 증가세를 보이며 대캐나다 수출을 주도

전통적 대기업형 강세 종목인 승용차와 무선전화기를 비롯하여 밸브, 아연도강판, 합성수지와 같은 중소기업형 주력 수출 상품의 수출도 감소

한편, 철강 관련 제품인 철강재용기와 형강 등의 수출은 증가함. 컴퓨터, 세탁기, 변압기 등과 같은 전자 제품의 수출도 증가하였으며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증가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캐나다내 내수 감소로 인해 2009년 7월 누계 기준 대캐나다 수출은 2008년 동기간 대비 16.00% 감소한 U$ 19억 4천4백만을 기록

(단위: U$ 천, %)

순위	품목명	2009.7 누계	
		금액	증가율
	총계	1,944,191	-16.00
1	승용차	886,831	-6.6
2	무선전화기	158,690	-35.3
3	섬유기계	85,433	4.8
4	자동차부품	83,879	16.3
5	타이어	56,164	-2.2
6	철강및비합금강형강	40,254	94.4
7	변압기	34,311	22.2
8	컴퓨터	25,153	925.9
9	냉장고	21,796	21
10	아연도강판	19,052	-23.8
11	밸브	18,959	-24.1
12	합성수지	18,390	-22.1
13	기타플라스틱제품	17,679	6.9
14	휘발유	16,273	N/A
15	철강재용기	15,393	763.9
16	철강관	14,326	-36.2
17	기타기계요소	13,495	-30.2
18	세탁기	12,455	82.8
19	편직물	12,291	-25
20	기타석유화학제품	11,171	-32.9

주1: 증가율은 해당년도 수출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한국의 대 캐나다 주요 수입 상품(한국기준)

1) 2006~2008년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U$ 천, %)

순위	품목명	2006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091,282	18.7	3,254,474	5.3	4,403,522	35.3
1	유연탄	486,296	12.7	598,848	23.1	1,242,204	107.4
2	펄프	383,400	10.4	430,948	12.4	477,639	10.8
3	니켈괴 및 스크랩	236,922	86.6	330,208	39.4	348,715	5.6
4	칼륨비료	80,592	-22.5	96,098	19.2	292,049	203.9
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24,493	55.4	131,685	5.8	150,593	14.4
6	동광	187,960	156.4	80,751	-57	129,795	60.7
7	가축육류	104,636	23.6	117,386	12.2	126,610	7.9
8	우라늄	34,155	-27.1	31,398	-8.1	110,348	251.5
9	곡류	24,710	-2.3	31,822	28.8	85,704	169.3
10	원목	57,477	29.3	71,634	24.6	59,189	-17.4
11	의약품	37,251	21.9	54,414	46.1	55,390	1.8
12	식물성유지	16,747	-1.3	34,387	105.3	50,061	45.6
13	유선통신기기부품	45,627	81.3	38,206	-16.3	47,826	25.2
14	제재목	37,274	27	50,302	35	45,091	-10.4
15	석유화학합성원료	62,181	0	70,396	13.2	40,902	-41.9
16	철광	10,606	-68.2	8,627	-18.7	40,224	366.3
17	소가죽	16,912	-29.9	29,889	76.7	39,238	31.3
18	자동차부품	25,756	44.8	31,385	21.9	33,434	6.5
19	계측기	29,617	14.5	23,033	-22.2	30,969	34.5
20	기타기계류	10,984	-48.7	11,181	1.8	29,772	166.3

주1: 순위는 2008년 수입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3 년간 대 캐나다 품목별 수입현황을 보면, 유연탄, 니켈, 펄프 등 주로 1 차 산업 제품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

2008 년 수입 실적은 2007 년 대비 35.3% 증가한 U$ 44 억을 기록

2) 2009년 7월 누계 품목별 수입현황

2009 년 7 월 누계 기준, 경기 불황으로 인해 대캐나다 수입은 2008 년 동기간 대비 21.2% 감소한 U$ 20 억 5 백만을 기록

주 수입 품목인 니켈, 우라늄, 유연탄과 같은 원자재 수입 감소가 전체적인 수입 감소를 이끌었음.

2009년 7월 누계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U$ 천, %)

순위	품목명	2009.7 누계	
		금액	증가율
	총계	2,005,414	-21.2
1	유연탄	593,253	-3.2
2	펄프	157,216	-49.2
3	칼륨비료	109,857	-20.7
4	기타기계류	93,676	647
5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8,835	-1
6	니켈괴및스크랩	78,210	-69.1
7	동광	66,444	11.1
8	가축육류	59,880	-17.9
9	철도차량	37,202	508.1
10	우라늄	35,594	-62.6
11	원목	30,839	-22.8
12	석유화학합성원료	27,814	-1.7
13	의약품	26,313	-23.3
14	원자로및전기로	25,378	183.2
15	곡류	25,306	-47.7
16	철광	24,810	153.4
17	계측기	24,059	26.5
18	제재목	19,922	-33.7
19	밍크모피	18,200	7.4
20	합성고무	15,051	23.9

주1: 증가율은 해당년도 수입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
주2: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출입 금지, 허가 품목 종합

1) 수입 금지 품목(Import Prohibition List)

품목(분야)	내용	비고
동물	몽구스과(Mongoose,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들로 Galidia, Galidictis, Mungotictis, Salanoia, Suricata, Herpestes, Helogale, Donogale, Atilax, Mungos, Crossarchus, Liberiictics, Ichneumia, Bdeogale, Rhynchogale, Cynictis, Paracynictis, Cryptoprocta 등	관련HS코드 9897.00.00
	Sturnus vulgaris, Gracula religiosa, Leucopsar rothschildi를 제외한 찌르레기과(Starling Bird, 조류)에 속하는 동물들	
	양식용, 동물원 및 관람용 관상조를 제외한 비 사냥용 (non-game) 조류	
	타조털, 뇌조(꿩)털, 인도공작털, 사냥용으로 분류된 살아있는 조류, 박물관 및 연구목적의 조류를 제외한 해오라기털(물수리 털), 새의 부리, 머리, 날개, 꼬리, 가죽 등 기타 조류의 일부분(가공 여부 불문)	
금속	위조 지폐 및 동전	
침구	HS코드 9806,9807,9808,9809,9810에 의한 침대 매트리스나 중고 매트리스 중 살균 처리된 것을 제외한 모든 중고 매트리스	
인쇄물	인쇄판권이 캐나다나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일반제품	완제품이나 그 부속품이 죄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캐나다 인증법(Trade-marks Act)이나 캐나다에서 수입을 불허 하 는 지역에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연막	자동차용이나 선박용의 연막(smoke screen)	
자동차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 - HS 코드 9801,9807,9808,9809,9810 에 의해 수입된 경우 - 관세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상속에 따라 반입된 경우 - NAFTA 조항에 의해 미국,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경우 - 2009 년에서 10 년 사이: 출고된 후 10 년 이하의 중고차 - 2011 년에서 12 년 사이: 출고된 후 8 년 이하의 중고차 - 2013 년에서 14 년 사이: 출고된 후 6 년 이하의 중고차 - 2015 년에서 16 년 사이: 출고된 후 4 년 이하의 중고차 - 2017 년에서 18 년 사이: 출고된 후 2 년 이하의 중고차	
비행기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 비행기 - HS 코드 9803,9809,9810 에 의해 수입된 경우 민간 및 화물 수송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항공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캐나다 국방부에서 국방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성냥	백색 인광성 성냥(White Phosphorus Matches)	
무기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동화기, 무기, 총탄, 무기 제조기기 및 관련 기기 -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국방부, 경찰, 관련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예외조항에 속하는 비시민권자가 수입 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취득하여 수입하는 경우나 캐나 다를 경유하여 제 3 국으로 운반되는 경우 -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35 조에 의해 자동화기 수입이 가능한 비 시민권자나 허가권을 취득한자가 수입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화기 구입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무기 취급 허가를 취득한 경우	관련HS코드 9898.00.00
출판물	○ 그림, 사진, 책, 프린트 물 등의 각종 인쇄물 중 - Criminal Code 에 의거, 인종차별 및 각종 증오, 범죄, 반역, 학대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관련HS코드 9899.00.00
	범죄나 폭력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은 포스터나 전단	
	아동 포르노를 주제로 한 사진, 필름, 비디오, CD, DVD 등 모든 관련 영상물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Canadian Customs Tariff의 Prohibition Provisions

2) 수입허가품목(Import Control List)

현재 캐나다에서는 Import Control List(수입관리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Import Permit(수입허가)을 취득해야 함. 하기 품목들은 Import Control List에 등록된 품목들임.

품목(분야)	내용
군용품	총기부품 및 총기류(라이플, 카빈, 리볼버, 피스톨, 자동소총 등)
	대량 살상무기(총, 유탄포, 캐논, 박격포, 탱크지뢰, 군용연막, 가스 및 화공품)
	탱크 및 자가추진력에 의한 각종 군용품
	폭탄, 어뢰, 로켓 및 비유도탄 및 해당 부품
	수출 관리품목(Export Control List)에 해당되는 군용품
철강	탄소강 관련 제품(철판, 코일, 철도관련 제품, 기초골재, 파이프 형 등)
	특수강(철판, 봉강, 파이프, 튜브, 코일, 합금, 주석 등)
의류제품	멕시코와 미국(NAFTA국가) 생산된 의류 및 기타 국가들에서 생산된 면화, 수제 직물사 등
무기류	수입금지 무기류
낙농제품	암탉, 수탉(185g이상), 닭고기(냉동 여부 불문)닭고기를 주 재료로 한 각종 제품 등
	칠면조(185g이상), 칠면조 고기(냉동 여부 불문), 칠면조를 주 재료로 한 각종 제품 등
	소, 송아지, 소고기 등(NAFTA국가 및 Chile산 제외)
	각종 유제품(우유, 크림, 유지분유, 버터)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 및 기타 성분 함유)
	계란 및 계란을 주 재료로 한 각종 제품
	마가린
	치즈(체다, 블루 베인드, 카망베르, 브리, 브로볼롱, 구다, 모짜렐라, 스위스, 그뤼에르, 하바티, 파마잔, 로마노 및 기타 각종 종류의 치즈)
	요거트
	버터 및 각종 유지방 제품
	통밀, 메슬린, 밀분 등
	파스타, 면 등
	밀을 주 재료로 한 각종 제품(시리얼, 비스킷, 러스크, 쿠키, 프레첼 등)
	보리, 보릿가루 등
	보리를 주 재료로 한 각종 제품
기타제품	이스라엘산 장미
기타제품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3) 수출허가품목(Export Control List)

현재 캐나다의 Export Control List(수출관리 리스트)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위산업 관련품목 및 기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들로서, 캐나다 정부는 이를 Group 1부터 Group 7까지 세분화해 해당 품목들을 관리하고 있음. 아래는 Export Control List에 등록된 품목들임.

품목(분야)	내용
Group 1 (Dual List)	○ 96 년 바세나르 협정(WA)에 의해 캐나다 정부는 군사용 제품의 수출통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분화를 통해 각 카테고리별 관련 품목을 관리 리스트로 지정 - Category 1010: Advanced Materials(특수 원자재 관리) - Category 1020: Materials Processing(군수품 가공) - Category 1030: Electronics(각종 관련 전자품) - Category 1040: Computers(컴퓨터) - Category 1050: Telecommunications(정보통신) - Category 1150: Information Security(정보보안) - Category 1060: Sensors and Lasers(센서 및 레이저) - Category 1070: Navigation and Avionics(항법 및 항공 전자) - Category 1080: Marine(해상기술) - Category 1090: Propulsion(동력기술)
Group 2 (Munitions List)	○ 동 그룹 역시 바세나르 협정(WA)에 근거한 리스트로서 탄약, 폭약 제조 및 기타 기술관리와 관련된 품목관리 리스트임. - 구경 12.7mm 이하의 화기 및 총탄 - 구경 12.7mm 이상의 화기 및 총탄 - 폭탄, 어뢰, 로켓, 미사일 및 각종 폭발물 - 경보시스템 및 대응장치 - 각종 군사용 목적의 지상 수송장비 - 생화학 무기 및 관련기술 - 군함을 비롯한 군사용 목적의 해양수송장비 -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용 목적의 항공수송장비 - 군사용 목적 이외에 일반 용도로 사용 불가한 전기장치 - 건설 및 공사를 위한 공병기기 등
Group 3 (Nuclear Non-Proliferation List)	○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제조기술 및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관련 물질, 기계 관리 - 플루토늄, 우라늄, 중수소, 트리튬, 원자로, 연료봉, 추출기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물질 및 기계
Group 4 (Nuclear related Dual-use List)	○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제조기술을 적용한 관련 산업기술 및 관련 제품 - 핵발전소, 수소분리기, 탐사기기 등
Group 5 (Miscellaneous Goods)	○ 군사용 목적의 품목 이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및 분야 - 연목, 연목제품, 통나무, 삼나무, 알부민, 혈청, 땅콩버터, 청어, 설탕, 시럽, 레이저 화기, 핵 융합기, 대인지뢰, 전략적 통제 품목 등
Group 6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List)	○ 1987 년 합의한 미사일 통제기술 이전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에 따른 미사일 관련 통제기술·소프트웨어 - 추진력 발생기술 및 관련부품, 유도 기술 및 장치, 항법기술 등
Group 7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n-proliferation List)	○ 1992 년 미국과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생화학무기확산 금지조약에 의한 품목 - 거의 모든 종류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전자조작 생물, 독극물 등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나. 수입쿼터

○ 사실상 캐나다는 주로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쿼터를 적용할 뿐, 기타 분야에서는 쿼터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섬유의 경우 NAFTA 국가간 쿼터를 제외하고 2005 년 1 월부로 해제됨)

○ 아래는 현재 수입쿼터를 적용 받는 품목 및 관련 HS 코드로 최근 2 년간 수량 및 관련 HS 코드는 거의 동일하다.

품목(분야)	내용
칠면조	- 쿼터: 2,227,940kg - 책정 방식: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하거나 전년 대비 약 3.5% 증가된 수량을 책정 - 해당 HS 코드 · 0105991100, 0207241100, 0207249100, 0207251100, 0207259100, 0207261000, 0207261001, 0207261002, 02 07271100, 0207279100, 0207279101, 0207279102, 020 9002300, 0209002300, 0210901400, 0210901401, 0210 901401, 0210901402, 1601003100, 1602203100, 16023 11200, 1602319300, 1602319301, 1602319302
닭고기	- 쿼터: 24,849,403kg - 책정 방식: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하거나 전년 대비 약 7.5% 증가된 수량을 책정 - 해당 HS 코드 · 0105929100, 0207119100, 0207129100, 0207139100, 0207139101, 0207139102, 0207142100, 0207149100, 0207149101, 0207149102, 0209002100, 0210991100, 1601002100, 1602321200, 1602329300, 1602329301, 16023 29402
계란 및 계란제품	- 쿼터: 5,153,047 DZN - 책정 방식: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하거나 전년 대비 약 2.988% 증가된 수량을 책정 - 해당 HS 코드 · 0407001822, 0407001800, 0407001820, 0407001821, 0407001890, 0408111000, 0408911000, 3502111000, 040 8191000, 0408991000, 2106905100, 3502191000
병아리	- 쿼터: 119,538,300 마리 - 책정 방식: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하거나 해당 연도 국내생산 수량의 21.1%를 책정 - 해당 HS 코드 · 04070011, 04070012, 01051121, 01051122 이하
소고기 및 송아지	- 쿼터: 76,409,000kg(2008 년과 동일) - 책정 방식: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 해당 HS 코드 · 0201101000, 0201201000, 0201301000, 0202101000, 0202201000, 0202301000
돼지고기	- 쿼터: 2,970,000kg(2008 년과 동일) · EU로부터의 수입에 한함 - 책정 방식: WTO 협약에 의해 수량을 결정 - 해당 HS 코드: 02032900 이하
마가린	- 쿼터: 6,348,800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 1517101000, 1517902100
버터	- 쿼터: 2,688,774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 0405101000, 0405201000, 0405901000

치즈	- 쿼터: 8,513,180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406101000, 0406201100, 0406209100, 0406301000, 0406401000, 0406901100, 0406902100, 0406903100, 0406904100, 0406905100, 0406906100, 0406907100, 0406908100, 0406909100, 0406909300, 0406909500, 0406909800
우유	- 쿼터: 4,345,000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4049010 이하
요거트	- 쿼터: 332,000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4031010, 04031020 이하
아이스크림	- 쿼터: 159,176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21050091 이하
기타 크림류	- 쿼터: 381,851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4013010, 04013020 이하
고지방유	- 쿼터: 11,700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402911000, 0402991000
유지분유	- 쿼터: 145,949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403901100
분말분유 (Powdered whey)	- 쿼터: 7,176,654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4041021, 04041022
기타 유제품	- 쿼터: 151,395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405901000
기타 낙농제품	- 쿼터: 70,000kg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0910903300, 0910905300
밀	- 쿼터: 226,883ton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1001100110, 1001100190, 1008100810
보리	- 쿼터: 399,000ton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1003100300, 1003110411, 1003110421, 1003110710, 10 03110720
밀제품	- 쿼터: 123,557ton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1101110100, 1102110311, 1102110319, 1103110320, 1102110321, 1102110329, 1102110419, 1102110811, 1109110900, 1109120929, 1109151590, 1109190420, 1109190430, 1109190490, 1109230230, 1109270111
보리제품	- 쿼터: 19,131ton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 해당 HS 코드 ・1003190420, 1003190490, 1003230240
정제당	- 쿼터: 26,680ton - WTO 협약에 의해 수량 결정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 대미, NAFTA 수출입쿼터

○ 캐나다는 땅콩버터, 정제당, 설탕 제품에 대해 수출 쿼터를, NAFTA 국가 간에는 의류 제품에 대한 수출입 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미 수출쿼터 품목 및 수량

품목(분야)	내용
땅콩버터	- 쿼터(대미수출에 한함): 14,500,000kg - 쿼터 배정방식 · 캐나다 거주자로서 쿼터를 신청하기 · 전부터 땅콩버터 수출 업에 종사한 업체여야 함. · 전년 배정수량을 기준으로 증가(감소)된 쿼터를 부여
정제당	- 쿼터(대미수출에 한함): 10,300,000kg - 쿼터 배정방식: 상기 배정방식과 동일
설탕제품	- 쿼터(대미수출에 한함): 59,250,000kg - 쿼터 배정방식: 상기 배정방식과 동일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NAFTA 수입 쿼터(의류)

품목(분야)	미국	멕시코
양모 의류(Wool Apparel)	919,740 SME	250,000 SME
순면 혹은 수제 의류 (Cotton or Man-made Apparel)	9,000,000 SME	6,000,000 SME
순면 혹은 수제 직물, 직물제품 (Cotton or Man-made Fibre Fabrics and Made-up goods)	2,000,000 SME	7,000,000 SME
순면 혹은 수제 방적사 (Cotton or Man-made Fibre spun yarns)	1,000,000 SME	1,000,000 SME

주1: 2009년 9월 기준
주2: SME: Square Meter Equivalent(1제곱 미터)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다. 수입규제 현황

1) 최근 수입규제 동향

○ 2009 년 9 월 기준, 38 개국 20 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

2) 주요 교역국별 수입규제 현황

국가명	규제 품목수	규제형태	관련 제품
중국	15	반덤핑	자전거, 신발(고무, 플라스틱), 이음새(탄소강), 목제 슬래트, 후판(저합금강, 일반합금강), 크산틴산염
		반덤핑/상계	화스너(탄소강), 바닥재, 이음새(동제)
대만	4	반덤핑	자전거, 화스너(탄소강, 스테인레스강), 후판(탄소강)
프랑스	2	반덤핑	바닥재
		상계	정제당
미국	4	반덤핑	동제 연결구, 감자, 스테인리스 강선, 정제당
한국	2	반덤핑	구조용 강관, 동제 연결구
남아공	2	반덤핑	후판(일반 합금강), 구조용 강관
불가리아	1	반덤핑	후판(저합금강)
체코	2	상계	정제당
		반덤핑	후판(저합금강)
루마니아	2	상계	정제당
		반덤핑	후판(저합금강)
인도	1	반덤핑/상계	후판(일반합금강)
터키	1	반덤핑	동제 연결구
멕시코	1	반덤핑	슬래트
브라질	1	반덤핑	후판(일반합금강)
우크라이나	1	반덤핑	후판(일반합금강)
덴마크, 독일, 영국, 네덜란드		반덤핑/상계	정제당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페인, 라트비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스웨덴, 폴란드, 룩셈부르크, 말타,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상계	정제당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단일 국가로는 15 개 품목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입 규제 대상 1 위
- 자전거, 신발,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걸쳐 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국산의 캐나다 시장 잠식에 대한 캐나다 업체들의 우려 증대
- 최근 중국산 완구류에 대한 대규모 리콜 사태, 가짜 치약 수입사건 등,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가 예측되었으나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음.

○ 대만, 미국, 한국, 남아공 등, 2 개 품목 이상 규제를 받는 국가의 경우 철강 제품이 반드시 포함
-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반영

3)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산업별	규제품목
철제류 (9)	화스너 (탄소강, 스테인레스강), 파이프이음쇠 (탄소강), 후판(저합금강 2종, 일반합금강), 스테인레스 강선, 구조용 강관, 동제 연결구
식품류 (2)	감자, 정제당
건자재류 (2)	목재 슬레트, 바닥재
신발류 (2)	방수 고무소재 신발, 방수 플라스틱소재 신발
기타 (3)	자전거 및 프레임, 크산틴산염, 담배용 튜브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총 20 개 품목에서 철제류 품목이 9 개를 차지
- 전체 규제 대상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 년간 철제류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규제형태별 수입규제 현황

규제형태별 수입규제 현황

규제 형태별	품목
반덤핑관세 (14개 품목)	자전거 및 프레임, 화스너(탄소강-중국산), 화스너(스테인레스 강), 바닥재(프랑스산), 신발(고무, 플라스틱 바닥), 동제 연결구(한국, 미국), 파이프 이음쇠(탄소강), 감자, 슬래트, 후판(저합금강 2종), 후판(일반합금강- 브라질, 중국, 대만, 우크라이나, 남아공), 스테인레스 강선(중국, 한국, 미국), 정제당(미국)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5개 품목)	바닥재(중국), 화스너 (탄소강-대만), 동제 연결구(중국), 후판(일반합금강-인도), 정제당(덴마크, 독일, 영국, 뉴질랜드)
상계관세 (2개 품목)	스테인리스강선(인도), 정제당(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말타,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바키아)

주: 2009년 9월 기준
자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라. 비관세 장벽

1)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상의 문제

캐나다는 GATT회원국으로서 원칙적으로 동 규정에 의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 국가들과 상이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 시 최혜국 대우(MFN)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반덤핑, 상계 관세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반덤핑 규정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정품목의 반덤핑 의혹이 제기되어 그에 따르는 반덤핑 관세를 산출할 때 수

출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관세 산출에 불충분할 경우 타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WTO의 '반덤핑 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국내업체의 피해를 합산(cross-cumulating)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규정은 덤핑 피해의 산정 시 다른 요소에 의한 피해를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일방적 조치

캐나다 관세법(Customs Tariff Act)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취할 수 있는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정식으로 발동한 경우는 없다. 이러한 독자적인 무역보복 조치 관련 규정은 타국의 관행이나 제도의 공정성 여부를 캐나다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WTO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참고사항: AMPS제도 시행

캐나다 관세청은 2002년 10월 7일을 기하여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 (AMPS)을 도입해 통관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AMPS의 기본내용은 수입 통관 절차 시 작성하는 통관문서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경고 처분으로 끝낸 기존 작성오류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AMPS는 우선 상업목적의 수입 제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관광을 주목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하는 여행자들에게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문서 작성 시 HS Code, 원산지 표시, 제품 설명 등의 사항을 기입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MPS 는 관세법(The Customs Act), 관세표(율)(The Customs Tariff),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 등의 모든 수입관련 규제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단순 경고에서 최고 $25,000의 벌금형, 또는 제품의 압수 및 고발 조치에 이르기까지 경우에 따라 각종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AMPS는 수입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록이 누적되어 우범자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상의 각종 편의 혜택을 박탈하며, 정밀검사와 감사 등의 규제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통관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수입업자들은 앞으로도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겠지만 문서상 자주 지적되어 왔던 업체들에게는 특별감사와 정밀 통관 조사 등이 자주 실시될 예정이므로 수입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AMPS의 위반 시 페널티는 3-Strike제도를 도입해 첫 위반 시 단순경고로 문제가 마무리 되지만, 위반사례가 AMPS 시스템의 기록에 남아 향후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의 액수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차후 AMPS의 모든 위반사례와 위반업체들의 기록을 여론에 공개, 업체들의 대외신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현황

□ 2009년 9월 기준, 철강 제품 관련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규제 실시 중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

품목명	HS 코드	유 형	규제일자	규제현황
구조용 강관	7306.30.10.23 7306.30.10.33 7306.30.90.23 7306.30.90.29 7306.30.90.33 7306.50.00.30 7306.60.90.12 7306.60.90.22 7306.60.90.29	반덤핑	- 03/05/21 조사 개시 - 03/08/19 덤핑 예비 판정 - 03/12/23 덤핑 최종 판정 - 07/09/27 재조사 개시 - 08/1/10 조사결과 한국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터키에 반덤핑 관세 연장 부과키로 결정 - 08/12/22 수입규제 종료 재심 결과, 수입규제 지속 결정	- 모든 수출업체에게 수출가격의 89% 반덤핑관세 부과 - '08.12.22 수입규제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 지속 결정
동제 관연결구	7412.10.00.11 7412.10.00.19 7412.10.00.20 7412.20.00.11 7412.20.00.12 7412.20.00.19 7412.20.00.20	반덤핑	- 06/06/08 조사 개시 - 06/10/20 덤핑 예비판정 - 07/02/19 덤핑 최종판정 - 07/07/16 재조사 개시 - 07/08/16 덤핑률 조정	- 최종 판정: 모든 수출업체에 수출 가격의 104% 반덤핑관세 부과 - 덤핑률 조정: 정상가를 제출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수출업체는 수출가격의 242% 반덤핑 관세 부과

자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2009년 9월 기준

나. 최근 대한수입규제 변동 내역:

○ 2009 년 7 월 29 일부로 한국산 스테인레스 강선(HS7223)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

다. 2009 년 수입규제 전망

□ 캐나다의 통상정책 방향

○ 미국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 아시아지역 관심도 증대
- 대미 수출의존도는 2004 년 84%에서 2008 년 78%로 감소
- 대미 수입의존도도 2004 년 59%에서 2008 년 52%로 감소

캐나다 수출입 추이

(단위: U$ 백만,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미국	267,479	301,882	316,685	331,131	353,018
	기타	49,283	58,281	71,628	88,200	101,369
	합계	316,762	360,164	388,313	419,331	454,387
	대미수출의존도	84	84	82	79	78
수입	수입	160,565	177,589	191,884	205,165	212,842
	기타	112,862	136,771	157,990	173,497	193,582
	합계	273,427	314,360	349,874	378,661	406,424
	대미수출의존도	59	56	55	54	52

자료: 캐나다 산업부

○ FTA 체결 확대를 통한 교역 활성화
- 미국-멕시코(NAFTA), 칠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페루 등 총 10 개국과 FTA 를 체결한 캐나다는 EU 와도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2009 년 5 월에 공식 발표하였으며, FTA 체결 활성화를 통한 대미의존적 구조 탈피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 총력

□ 대한 수입규제 예상품목

○ 대기업 주력수출 품목, 수입규제 가능성 낮음
- 2009 년 5 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품목 중 휴대폰(-8.2%), 타이어(-13.2%)를 제외한 자동차(5.3%), 반도체(40.5%), 냉장고(27.3%) 같은 대기업주력 수출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이같은 대기업형 품목의 수입증가에도 불구, 한국산 대기업 제품에 대한 규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

○ 한국산 철강품목, 수입급증에 따른 수입규제 주의
- 2009 년 5 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캐나다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제품(HS7216)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84.9% 증가한 5,935 만 달러를 기록
- 2009 년 8 월 기준, 총 8 개 중국산 철강 품목에 대해 수입 규제를 발동하고 있으며,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한국산 제품도 동반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

5. 관세제도

가. 개황

캐나다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나. 관세율 종류

캐나다에서는 상품의 종류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12가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 관세 일반

○ 최혜국관세(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 GATT 제1조의 원칙에 따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된다.

○ 일반특혜관세(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이며 GPT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캐나다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GPT 수혜대상국에 속해 있다.

○ 최저개발국관세(LDC: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일반관세(GT: General Tariff)

- 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세율법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되는데 다른 관세들에 비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 알바니아, 북한, 리비아, 오만, 몽고, Palau Is land 등의 국가들이 일반관세 적용 대상국에 속한다.

2) 각 국가별 해당 관세코드 및 원산지 결정 기준

해당 관세코드	해당국가	주요 내용
MFN(Most Favoured Nation)	알바니아,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버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일본, 말타,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토리코, 산마리노, 사우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오만 등	총생산비용(Ex-factory price: 원자재비, 인건비, 세금 등 제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 51% 이상이 자국, MFN 국가들이나 캐 나다로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MFN 관세 부여 - 주로 선진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GPT(General PreferentialTariff)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바부다, 부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순시온,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베닌, 버뮤 다,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 룬,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지부티, 하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UAE, 기니아, 이디오피아, 피지, 가봉, 잠비아, 가나, 괌, 과테말라, 지브랄타, 온두 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 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한국**, 중국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마카오, 유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 이시아, 몰디브,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카타르, 루마니아, 르완다, 서사모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소말 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와질랜드,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 주엘라, 베트남, 버진 아일랜드, 예멘, 잠비아 등	- 총 생산비용의 61% 이상이 자국, GP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달 된 경우 에 한해 GPT 관세 적용 - 가장 일반적인 관세코드로서 한 국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 등 에 적용 되는 관세율
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부탄, 부르키나 파소, 브룬디, 캄보디아, 콩고, 지부티, 기니아, 이디오피아, 잠비아, 하이티,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네팔, 르완다, 서사모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투발루, 우간다, 예멘, 잠비아 등 (주: LDCT에 속하는 국가들은 전부 GPT에 포함됨. 이는 두 관세율 중, 유리한 관세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총 생산비용의 41% 이상이 자국 또는 LDC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 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LDCT 관세 부여 - 주로 극빈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 개발 도상국 적용되는 관세율
CCCT (Common Wealth Caribbean Tariff)	앙골라,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케이먼제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트리니나드 토바고, 버진 아일랜드(영국령)	총 생산비용의 61% 이상이 자국, CCC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 달된 경우에 한해 CCCT 관세 부여. 주로 영국령 국가들이나 중남미 도 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GPT 관세율과 거의 동일
AUT NZT (Australia and New Zealand Tariff)	호주, 뉴질랜드	총 생산비용의 51% 이상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부터 조달된 경 우에 한해 호주는 AUT, 뉴질랜드 는 NZT 관세 부여. MFN에 비해 다 소 낮은 관 세율 적용
GT (General Tariff)	북한, 미얀마, 리비아	Canada Customs Tariff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들 관련 규정은 Canada Customs Tariff의 29조(General Tariff) 참조

3) 기타 특혜관세

○ 대미, 대 멕시코 관세(UST, MT, MUST)
-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3개국 간에 무역거래 시 적용되는 모든 관세는 NAFTA협정에 의거,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가 명시되어야 된다.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대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AUT, NZT, CT, CIAT)
- 호주 및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상협정을 체결, 최혜국 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 카리브해 영연방국가들(CCCT: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 관세평가제도

캐나다 관세청은 1985년 1월 1일을 기해 GATT 7조의 관세평가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동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기준을 종전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판매가격으로 대치함으로써 관세평가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가제도에 의해 평가된 관세는 항상 캐나다 달러로 표시되며, 캐나다 세관의 관세 평가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나 연방법원에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는 수입제품의 통관 시 Import Duty(관세) 외에 Excise Tax(가솔린, 보석, 시계, 자동차 등에 부과되며 우리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및 Excise Duty(담배 및 술 등에 부과) 등이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때의 부과액은 상기 관세 평가액에 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품용역세 (GST)도 부과되는데 연방 상품용역세는 평가액과 상기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된다.

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적용

캐나다는 모든 한국산 상품에 대해 보통 일반특혜관세 (GPT)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산 상품이 관세율 적용규정에 명시된 저율의 G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발행의 원산지증명서 Form A가 첨부되어야 한다. GPT 수혜 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완전하게 작성된 Form A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최혜국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현재 한국산 철강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 (SIMA)"에 의한 반덤핑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대한 수입규제 동향’참조)

(자료: 캐나다 관세청)

마. 캐나다의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 관세율표(온라인): 아래의 캐나다 관세청 사이트 참조
- http://www.cbsa.gc.ca/trade-commerce/tariff-tarif/menu-eng.html

6. 주요인증제도

가. 캐나다의 안전 기준

1) 개요

○ 캐나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업체들에게 요구
- 특히 감전의 위험이 높은 전선을 설치하는 업체나 전기 장비, 기기 등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

○ 국내 판매를 위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에는 지정된 인증취득이 필수
- 대부분 전기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기준과 관련, 모든 주정부들은 각종 공인된 인증을 획 득한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인증은 CSA 를 들 수 있음.

<u>캐나다의 주요 인증기관 및 마크</u>

기관명	인증마크	인지도	주요사항	홈페이지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CSA	상	- 캐나다에서 설립된 검사기관 - 캐나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증으로,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CSA 를 취득 - 검사비용 과다 및 장기간 소요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KTL)이 업무제휴를 맺고 CSA 인증발급을 위한 검사를 대행	www.csa-international.org
Underwriter's Laboratories of Canada	UL	상	- 미국의 검사기관으로 캐나다 사무소 설치 - 캐나다에서는 2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인증 - CSA 와 협약을 체결, UL 인증을 기 취득한 제품의 경우 호환인증 취득 용이.	www.ulc.ca
Intertek	ITS	중	- 미국의 검사기관으로 캐나다 사무소 설치 - 바이어들의 CSA 선호로 인해 인지도가 낮으며, 관련인증 취득 미흡	www.intertek-etlsemko.com
Met Laboratories	MET	하	- 미국의 검사기관으로 캐나다 사무소는 없음. - 바이어들의 CSA 선호로 인해 인지도가 낮으며, 관련인증 취득 미흡	www.metlabs.com
Quality Auditing Institute	없음	하	- 캐나다의 검사기관으로 자체 인증은 발급하지 않음. - 동 기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CSA 에서 인증을 발급	www.qai.org
TUV Rhineland	없음	하	- 독일의 검사기관으로 캐나다 사무소 설치 - 바이어들의 CSA 선호로 인해 인지도가 낮으며, 관련인증 취득 미흡	www.tuv.com

나. CSA 인증

1) 개요

○ 1919 년 도입,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시행되는 규격인증 제도

○ 품목의 특성과 분류에 따라 강제 또는 임의규격으로 구분
- 강제규격: 전기기구, 가스연소기구 등 위험성이 높은 품목에 적용
- 임의규격: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적용

○ CSA 는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격을 강제할 권한이 없음.
- 그러나 정부기관이 CSA 규격을 법률로 채택하면 강제규격으로 인정됨.
- 전기제품의 경우 모든 주 정부는 안전성 보장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해 CSA 의 안전시험 또는 주 검사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CSA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전기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전시, 선전, 판매, 사용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도 있음.

2) 인증의 효력범위

○ 캐나다 바이어들은 제품이 CSA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거래 추진을 주저함.
- 이는 제품의 시장성이 증명되었다고 해도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임.
- 또한 인증취득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가와 관련된 갈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인증을 기 취득한 수출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함.
- 그러나 제품의 충분한 시장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인증을 취득하였다가 취득 비용만 낭비하고 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
- 인증취득 이전 제품의 시장성과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과정임.

○ 캐나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UL 인증도 함께 통용
- CSA 인증보다 미국의 UL 인증이 더욱 환영을 받는 품목도 존재
- 제품의 특성과 바이어의 조언을 종합, 유리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
- Gas 사용기기의 경우에는 북미 전 지역에서 CSA 의 인증이 UL 인증보다 안전성 보장의 측면에서 더욱 높은 명성을 자랑
- CSA 의 Gas 사용기기 안전검사는 세계적 수준으로 북미지역 외에도 CSA 인증이 환영 받고 있음. (호주, 뉴질랜드 등)
- 한편 전기제품은 UL 인증이 더욱 인정받고 있어 UL 인증 취득이 더욱 유리

○ 따라서 인증의 효력범위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할 인증을 결정
- 인증별로 취득비용과 소요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바이어와 상담, 가장 적절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권장됨.

다. CSA 제도

1) 적용대상

○ 전기, 기계, 환경, 경영관리 등 9 가지로 대분류해 1,800 개 이상의 품목에 적용

CSA 품목별 분류

대분류	품목군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and Appliances (환기장치, 냉난방시설 및 부품)	-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equipment - motor-operated tools, components and access ories
Commercial and Household Appliances (상업/가정용 전자제품)	- refrigerators, freezers, ranges, dishwashers, microwave & convection ovens, small kitchen appliances, washers, clothes dryers, motor-operated tools, components & accessories
Analytical and Electronic Products (IT 제품, 의료기기, 실험기기, 자료 처리장치 등의 정밀전자기기)	-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medical e equipment, laboratory equipment, process control equipment, test & measurement equipment, power supplies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sting
Industrial / Consume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산업/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 audio/vided equipment,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communications equipment, compu ters, peripherals, electronic appliances for the home including mixers, food processors, hair dryers
Plumbing Products and components (연관류 제품 및 부품)	- valves, fixtures - faucets, sinks, toilets - pipes, fittings, water treatment devices, filtration products, purification systems
Gas-fired Products and Accessories (천연가스/액체프로판가스로 작동하는 기기와 부품)	- natural gas & liquid propane gas-fired appli ances, components & accessories, including forced air furnaces, fireplaces, water heaters kitchen ranges, clothes dryers, barbeque grills, landscaping lights, household/commercial & industrial boilers
Machine Technology / Power Control & Distribution (동력기, 엔진, 전선, 조명기기 등)	- motors & generators, machines, distribution equipment, industrial control equipment, elevator control equipment, wiring devices, wire & cable, lighting equipment
Mechanical and Safety Products (화공업, 건축, 기계, 운동기기 등)	- chemical technology, construction products, mechanical products, occupational health & safety, photometric, consumer safety, athletic equipment
Products used in Hazardous Location ns (유전시설, 섬유제조업 등 위험성이 높은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제품)	- products and components, controls, switches, data acquisition, other products used in oil refining, handling, textiles manufacturing, and industries with hazardous environments

2) 획득절차

□ 예비신청

○ 정식 인증취득 신청 전, CS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신청서를 요청하는 절차

○ 제출서류는 제품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 예비신청 의뢰 서신: 신청회사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있는 영문 편지용지를 사용, CSA 인증 신청을 알리고 신청서 송부를 요청하는 서한
- 제품 사양서: 제품의 품명, 모델번호, 전기정격, 용도, 성능, 작동법 등을 엔지니어가 알기 쉽게 설명. 동 서류에 포함된 항목은 CSA 의 엔지니어가 신청제품의 시험 항목 선정 및 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필요
- 구조도, 배선도(전기/전자제품)
- 부품 목록표: 제품에 사용된 부품 목록표를 작성하고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제출된 제작 도면의 사본을 첨부. 부품이 이미 CSA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취득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품도 별도의 안전시험을 거쳐야 함.
- 제품의 내부, 외부 사진
- 제품의 최종조립 공장명, 담당자 이름 및 주소

□ CSA 신청서 송부

○ CSA 는 예비신청 의뢰서신과 첨부자료를 접수, 검토작업을 개시
- CSA 는 검토작업 개시 후 5 일 이내로 본 신청서를 작성, 인증비용의 견적금액, 시험 샘플의 종류 및 수량, 담당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CSA 가 송부한 본 신청서를 수령한 후 서명, 시험비용과 샘플을 제출
- 샘플이 대형규격이거나 우편제출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방문시험도 가능
- 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시험실시

○ 본 신청수속 완료 후 시험 세부사항이 결정됨.
- 담당기사가 결정되고 작업 일정이 예정되며 CSA 의 고유번호가 부여
- CSA 의 담당기사는 작업일정에 따라 인증취득을 신청한 제품이 구조 및 성능 면에서 캐나다의 규격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평가서 (Finding Letter) 송부

○ 시험검사 후 CSA 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CSA 의 평가서는 시험결과, CSA 라벨과 마크 표기법, 제품변형 요구사항(alteration)을 포함
- 제품변형 요구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는 개선방법을 CSA 에 서면으로 회신

□ 승인심의 및 인증결과 통보

○ CSA 는 정식 승인을 위해 승인심의회(CSA Approval Council)에 보고서를 제출)
- 승인심의회의 정식승인
- CSA 는 결과를 인증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보

○ CSA 는 인증기록을 작성,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

□ 협약서 체결(Legal Agreement)

○ 신청자는 인증서를 받은 후 CSA 마크사용 관련지침을 담은 협약서를 CSA 와 체결
- 동 협약서는 CSA 검사자의 공장방문 허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CSA 에 통지할 의무, 인증유지를 위한 연간 경비지불 내역을 포함

□ 공장검사(CSA Field Service)

○ 제품의 인증취득 승인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장검사 실시
- CSA 검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업무 제휴기관의 검사원이 대신 방문하여 수행(한국의 경우 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KTL)
-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 3 동 222-13
- 전화: 02-8601-114
- 웹사이트: www.ktl.re.kr

○ 공장검사는 연간 6 회를 한도로 하여 사전 예고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시행
- 공장검사는 제품의 인증 요구사항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함.

○ 정기 공장검사 외에 문서로 공장방문을 요청해 시행하는 검사도 있음.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를 필요로 할 때
- 검사회수는 통상 연간 2 회에서 4 회로 1 회 검사 시 보통 2 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

□ CSA 공장검사 보고서

○ 공장검사 후 검사원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
-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공장 측에서 이에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 서명
- 보고서 사본 1 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

○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CSA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음.
- 경고가 누적되거나 검사 결과가 CSA 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
- CSA 에 송부한 샘플의 재시험 결과 불합격해 이미 취득한 인증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음.

□ 인증취득 비용

○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
- CSA 측은 직접 인증의 취득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분야별 인증 취득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최소 U$ 2,000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상기 인증취득 비용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의 직접경비로 샘플 우송료, 통신료 등 각종 간 접경비를 포함하면 더욱 많은 경비가 소요됨.

○ 기본 직접경비 외에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 복잡한 시스템 구조를 갖춘 제품의 인증취득을 신청할 경우
- 수출기한이 촉박하거나 업무 진행상 CSA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캐나다로 직접 직원을 파견할 경우

□ 인증취득 기간

○ 예비 신청일로부터 최종 인증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 주에서 8 주
- 이는 인증취득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불합격해 재시 험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

□ CSA 라벨 발주

○ CSA 라벨 발주를 위해 신청자는 CSA 파일번호, 라벨 종류와 수량을 신청
- CSA 는 업무 제휴기관 (한국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
- 업무 제휴기관이 라벨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장을 방문, 해당 제품이 관련규격 및 CSA 의 인증보고서와 일치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라벨을 송부

○ CSA 마크는 단독 또는 부속기호와 함께 표시되어 각각 다른 뜻을 나타냄.

<u>입증하는 CSA 인증마크</u>

라. CSA 인증 취득사례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 CSA 인증취득 전 바이어와의 사전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

○ CSA 인증취득은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요소
- 캐나다 정부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CSA 인증 취득 이 필수적임.
- 실제로 한국제품의 캐나다시장 진출을 위해 KBC 에서 접촉한 바이어들 중 상당수가 거래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CSA 인증취득 여부를 문의

○ 인증취득과 관련 현지 바이어와의 사전상담은 필수
- 제품 시장성을 파악하기 전에 미리 인증부터 취득하는 것 보다는 바이어와 수출상담 후 시장성이 입증된 후 인증취득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 품목에 따라 미국의 UL 인증이 더욱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지 업계의 바 이어에게 사전문의를 통해 적절한 인증을 추천받는 것이 유리

□ 한국 수출업체의 인증취득 사례

○ 가정/상업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 캐나다 난방기기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던 모 업체는 인증취득 신청 이전에 미리 현지 의 시장성을 파악하고 거래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와 접촉을 시도한 후 바이어들의 조언에 따라 CSA 인증을 취득

- 이 업체가 생산하는 난방기기는 Gas 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캐나다는 물론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UL 인증보다는 Gas 사용기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CSA 인증획득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한 것이 CSA 인증 취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개요

캐나다 정부는 기본 법령으로 새로운 발명, 방식, 제조법 등의 다양한 지적재산 보호를 규정하 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는 파리협정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 제정한 기본법령으로는 아래의 6개 개별법령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캐 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 산하 지적재산권 관리국(CIPO: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ww.cipo.gc.ca)에서 5개 법령을, 캐나다 식품검역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에서는 1개 법령을 관리, 집행하고 있다.

1) 지적재산권 관리국(CIPO: Canad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특허법(Patent Act)
○ 상표법(Trade-marks Act)
○ 저작권법(Copyright Act)
○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s Act)
○ 집적회로설계법(Integrated Circuit Topographies Act)

2) 캐나다 식품검역국(CFIA: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 식물재배권법(Plant Breeders' Rights Act)

(자료: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나. 지적재산권별 세부 내용

1) 특허권(Patent)

○ 정의: 공정, 기계, 생산활동, 물질 등의 발명이나 기존의 발명을 창의적으로 보완, 발전시 킬 수 있는 유용한 것

○ 특허 유효기간: 20년

○ 특허승인기관: 지적재산권 관리국(CIPO)

○ CIPO의 권한 및 의무
- 특허 신청 검토 및 특허 등록
- 특허 검사 실시 및 관련 자료 등의 기록
- 캐나다 혹은 외국에서 신청한 특허권 관련자료의 보관 및 일반 대중의 특허권 관련 자료 열람, 검색 환경 제공
- 특허권 관련 정보 취합 및 공표
- 일정 요건을 갖춘 특허 등록 대행업자 및 업체 리스트 관리 및 제공

○ 특허 승인기준
- Novelty(참신성): 특허 신청 대상 혹은 기술이 아직까지 일반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것(만 약 현재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을 활용한 경우, 동 기술이 활용된 혹은 상용화된 날 부터 1년 내에 특허 신청이 가능)
- Utility(유용성): 사용 혹은 활용 가능한 것
- Ingenuity(창의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기존부터 널리 알려지지 않은 창의적인 것

○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경우: 파리협정에 따르면 자국 특허 신청기관에 특허를 등록한 이 후 1년 내 외국의 특허기관에 특허를 신청해야만 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CIPO에 개별적으로 특허 신청을 해야 하며, 캐나다 내 주소가 없을 경우 대리인을 지명 해 신청할 수 있다.

□ 특허 신청과정

○ 유사 특허 존재 여부 검토
○ 특허 신청서류 준비
○ 특허 신청서류 CIPO 제출
○ 특허검사
○ 해당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 특허권 부여
○ 특허권 부여 이후 재검사

2) 상표(Trade-marks)

○ 정의: 한 회사, 개인,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를 지칭하는 특정 글자, 심볼, 디자인 등

○ 유효기간: 15년

○ 상표의 종류
- Ordinary Marks: 특정 회사 혹은 개인의 상품, 서비스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단어 및 단어 의 조합, 심볼 등
- Certification Marks: 특정 단체나 조합, 기관 등에서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 서비 스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단어의 조합, 심볼 등
- Distinguishing guise: 제품 및 용기, 포장 등의 형상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

○ 상표 승인기관: 지적재산권 관리국(CIPO)

○ CIPO의 권한 및 의무
- 상표 신청 검토 및 상표 등록
- 등록된 상표의 기록 및 정리
- 캐나다 혹은 외국에서 신청한 상표권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일반 대중의 상표권 관련 자료 열람, 검색 환경 제공
- 상표권 취득 절차 및 관련 정보 취합, 공표
- 일정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업무 대리인 리스트 관리 및 제공

○ 상표신청 시 의무사항: 캐나다 내에서 동 상표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될 것

○ 상표 등록이 불가한 경우
- 특정인의 이름 혹은 성: 단, 일반 대중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름 이나 성이 널리 사용되고 있을 경우나, 고유명사로서 제품의 특징과 모양을 나타내는데 있 어 다른 표현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 가능
- 제품 혹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
・예) 사과-juicy, 아이스크림-Sweet, 세탁소-Perfectly Clean
- 제품 혹은 서비스를 호도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 예) 육상운송-Air Express
- 지명과 결합된 상품명 혹은 서비스: 예) Paris Fashion, Danish Furniture, Atlantic Cod
- 외국어 고유명사: 예) Gelato: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Wurst: 독일 소시지 등
- 기존 상표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예) Southpole Ice Cream - Northpole Ice Cream
- 정부, 국제기구, 특정 국가를 상징하는 마크, 심볼, 국기 등
- 기타 CIPO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승인이 불가한 경우

□ 상표 신청과정

○ 유사 상표 및 회사명 존재 여부 검토
○ 상표등록 신청서류 준비 및 CIPO 제출
○ 신청서류 검토
○ 이의신청 접수
○ 상표 등록

3) 저작권(Copyrights)

○ 정의: 문학작품, 미술, 드라마, 음반, 공연 등의 작품을 독점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이용 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작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 아님)

○ 유효기간: 원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 저작권 신청대상
- 문학작품: 책자, 팸플릿, 시집, 컴퓨터 프로그램 등
- 드라마: 영화, 비디오, 연극, 대본 등
- 음악: 노래, 반주, 가사 등
- 미술: 그림, 미술품, 지도, 사진, 조각상, 기타 미술작품
- 예술행위: 연기, 연주, 무용, 가창 등
- 각종 방송 영상물
- 녹음: 카세트 테이프, CD, 기타 녹음기기로 녹음하는 행위

○ 저작권의 범위
- 원작품의 재연, 리메이크, 출판, 번역
- 문학작품, 드라마, 음악, 미술 등을 기타 형태로 변환
- 통신수단을 통한 작품의 홍보
- 컴퓨터 프로그램의 확대 재생산
- 기타의 행위 등

○ 저작권 보호 대상 기준: 문자, 녹음, 그림 등으로 표현된 작품 혹은 아이디어로서 슬로건, 방법, 이름, 제목, 주제 등의 경우 일반 대중의 공유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저작권 자동 부여 대상: 캐나다는 국제 저작권 협정(문학과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Berne 협정)의 회원국으로서 저작물이 발간 혹은 창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하는 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저작권자가 ① 캐나다 시민 혹은 영주권자 이상의 거주민 ② Berne 협정 회원국, 로마협약 회원국, WTO 가입국일 경우에 해당한다.

○ 저작권 승인기관: 지적재산권 관리국(CIPO)
- CIPO의 권한 및 의무
· 저작권 신청 검토 등록
· 연방법원의 허락에 의한 저작권 신청서 수정 및 보완
· 등록된 저작권의 기록 및 정리
· 캐나다 혹은 외국에서 신청한 저작권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일반 대중의 상표권 관련 자료 열람, 검색 환경 제공
· 저작권 신청 절차 및 관련 정보 취합 및 공표
· 저작권 라이센스, 대여 관련 추심기관 리스트 관리 및 제공

○ 저작권 인증 신청과정: 상기에서 지적한 국민의 경우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되지만, 추후 발 생가능한 저작권 시비를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 CIPO로부터 저작권인증 (Certificate)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 저작권 전체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시, 저작권자는 CIPO 에 이를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라이선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CIPO에 저작 권자와 라이선스 취득자 간의 합의내용을 보고해 기록으로 남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 저작권 신청과정

○ 유사 저작권 존재 여부 검토
○ 저작권 인증 신청서류 준비 및 CIPO 제출
○ 신청서류 검토
○ 저작권 등록

4)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s)

○ 정의: 특정 외양, 형태, 구조, 패턴, 장식물 등이 손수 혹은 기계를 통해 제품에 반영된 시 각적 조합물

○ 유효 기간: 디자인 등록 이후 10년간(등록시점으로부터 5년 후 디자인 유지비 납부)

○ 산업디자인 등록 가능자: 신청 대상 디자인을 직접 창조한 사람, 즉 산업디자인 소유권자 에게 등록권이 주어지며, 계약에 따라 고용주를 위해 제작한 디자인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동 디자인의 소유권을 갖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산업디자인 등록신청 불가대상
- 설계도와 같이 시각적 효과를 목적에 두지 않는 실용디자인
- 구체적인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홀로그램 등)
-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 설계방법 혹은 아이디어, 재료, 사용목적, 색상 등

○ 저작권 승인기관: 지적재산권 관리국(CIPO)

○ CIPO의 권한 및 의무
- 산업디자인 등록 신청 검토 승인
- 기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기록 및 정리
- 캐나다 혹은 외국에서 신청한 산업디자인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일반 대중의 관련 자료 열람, 검색 환경 제공
- 산업디자인 등록 신청 절차 및 관련 정보 취합 및 공표
- 산업디자인 등록 대행업체 리스트 제공

○ 산업디자인 양도 및 라이선스: 산업디자인 전체 혹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시, 디자인 취 득자는 CIPO에 이를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라이선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CIPO에 디자인 소유자와 라이선스 취득자 간의 합의 내용을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 산업디자인 등록 신청과정

○ 유사 산업디자인 존재 여부 검토
○ 산업디자인 등록 신청서류 준비 및 CIPO 제출
○ 신청서류 및 도면 검토
○ 디자인 등록

5) 집적회로설계권(Integrated Circuit Topographies)

○ 정의: 3차원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설계된 창의적인 집적회로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

○ 유효기간: 10년

○ 집적회로설계권의 활용 가능 범위: 집적회로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 수출, 수입, 임대, 판 매, 유통 등

○ 집적회로가 도용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
- 집적회로 소유자의 허락없이 이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했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이득을 취한 회사의 현재 남아 있는 재고를 처분해 로열티 지불 가능
- 또한 캐나다 법원에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제품이 이미 캐나다에 등록된 집적회로를 활용해 생산되었다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캐나다 관세청에서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 및 현재까지 수입된 제품의 강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리기관: 지적재산권 관리국(CIPO)

○ CIPO의 권한 및 의무
- 집적회로설계 신청 검토 및 등록
- 등록에 필요한 필요한 각종 실험 등의 기록
- 대행 기관 리스트 제공

□ 집적회로설계권 신청 절차

○ 유사 집적회로 존재 여부 검토
○ 집적회로설계권 등록 신청서류 준비 및 CIPO 제출
○ 신청서류 및 설계도면 검토
○ 신청서류 및 설계도면 검토

6) 식물재배권(Plant Breeders Right)

○ 정의: 재배 혹은 교배를 통해 얻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튼튼한 식물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독점권

○ 유효기간: 18년

○ 신청가능자: 최초 재배자, 관련직원, 법적대리인 등이며,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등록 신청 가능

○ 관리기관: 캐나다 식품검역국 산하 식물재배권 관리국(PBRO: Plant Breeders' Rights Office)

○ PBRO의 권한 및 의무
- 최초 재배된 식물의 등록 및 관리
- 등록에 필요한 각종 실험 및 기록
- Plant Varieties Journal을 통한 홍보
- 기타 관련정보의 취합 및 보관

○ 등록 적격여부 판단 기준
- 참신성(New):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판매된 적이 없는 식물에 한하 며, 외국의 경우 초목과 대목은 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6년 내, 기타 식 물은 4년 내 신청 가능
- 차별성(Distinct):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물과 확연한 차별성이 부여되는 식물
- 통일성(Uniform): 식물 재배자는 식물의 성장에 따른 예측가능한 변화 혹은 진화 등을 알 고 있어야 함.
- 안전성(Stable): 식물을 다시 재배할 경우에도 원천적인 특성 혹은 성질은 변함이 없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술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기타
- 현재 동 법률에 의해 곡물, 과일, 야채, 꽃 등 23개 종류의 식물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캐나다 국민 이외에도 '새로운 식물 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의 회원국(한국 포함) 국민 역시 동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식물재배권 등록 신청 절차

○ 유사 식물의 존재 여부 검토
○ 식물재배권 등록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 신청서류 및 샘플 검사
○ 해당 식물재배권 등록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식물재배권 부여

다. 지적재산권 침해방지 유의사항

1)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재정립

지적재산권은 개인 혹은 회사에 귀속된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탈피, 향후 회 사의 존망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는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원천기술 보호에 대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지적 재산권의 소유 및 보호는 전적으로 소유자의 책임 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으로 사료된다.

2) 타겟시장의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인지

캐나다의 경우 외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 CIPO에 신청한 경우 에 한해서만 이를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즉, 각국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법령과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타깃 진출시장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인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신청하더라도 신청 주체는 캐나다 내 주소를 갖고 있 는 개인이나 회사로 한정된다. 즉, 대리인의 지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CIPO에서 관리하 는 리스트에 등록된 신용 있는 대리인을 통해 지적재산권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우리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하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타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토대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권 등에서는 침해를 당한 시기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유력시장 진출을 대비한 지적재산권 선등록

지적재산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개인이나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 따 라 유망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술, 혹은 향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에는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간단한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특정 분야의 핵심 기술로 중대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먼저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라.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절차

1) 관련법상 구제

각 지적재산권 개별법에는 지적재산권 '침해(Infringement)'에 해당하는 행위 및 소유권자에 대 한 보상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침해사실 혹은 침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 등에 대한 구 체적인 구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인 목적이 공공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에서 소유한 독점적 권리의 보호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물적, 금전적 피해 보상 신청 여부는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나 이와 관련된 이익의 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역시 형사(刑事)가 아닌 민사(民事)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법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2)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구제 절차

○ 정부 기관
- 지적재산권 관리국(CIPO) 및 식물재배권 관리국(PBRO)확인 결과, 이들 기관들은 지적재 산권의 등록과 관리, 인증서 발급, 지적재산권 신청업무 대리업체 리스트 제공 등을 담당 할 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혹은 방법 제공은 이들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료: www.cipo.gc.ca, www.inspection.gc.ca

○ 유관기관
- 캐나다 공정거래소(BBB: Better Business Bureau): 미국 및 캐나다 민간업체들의 펀드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양 당사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중재 역할을 할 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 한 구제 혹은 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자료: 캐나다 공정거래소(www.bbb.org)
- 상사 분쟁중재 기관(ADR Canada): 비영리 기관으로서 국내 혹은 국제 비즈니스 간 분쟁 발생 시 법적소송으로 사태가 커지기 전에 중재자 혹은 제3자가 개입해 해결책을 제시, 상 호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동 기관 역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혹은 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각 산업 분야별 중재 전문가 혹은 자문 가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웹사이트 내에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중재자와 법률가 등을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구축했다.
  · 자료: 캐나다 상사 분쟁중재 기관(www.adrcanada.ca)

마. 지적재산권 침해 및 대응 사례

1) 사례 1: 미국 NTP Technology(제소) vs 캐나다 RIM(피고)

○ 개요: 2001년 12월,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NTP Technology Inc(www.ntp-inc.com)는 캐나다 제1의 IT 업체이자 북미지역에서만 320만의 블랙베리 (Black berry) 사용자를 보유 하고 있는 RIM(Research In Motion, www. rim.com)이 자사에서 특허로

등록한 '라디오 주 파수 무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무단으로 블랙베리에 사용했다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 기했다.

○ 진행과정
- 2001.12월: NTP Technology,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RIM을 특허 침해로 고소
- 2002.12월: NTP 승소, RIM에 U$ 2,310만 지급 판결
- 2003.8월: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RIM의 지급 지연에 따라 미국내 블랙베리 사용 금지 명 령을 내리려 했으나 RIM 측에서 항소
- 2004.12월: 항소심 역시 RIM 측에서 NTP의 특허를 도용했음을 인정. 단, 버지니아주 연 방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다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관
- 2005.3월: RIM, NTP에 U$ 450백만 합의금 제시
- 2005.6월: RIM과 NTP 최종 합의금 타협 실패
- 2005.10월: RIM, 미 항소법원과 대법원에 NTP가 U$ 450백만 합의금을 수용토록 요청했으나 두 법원에서 심리 거절. 다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으로 재판 이관
- 2005.12월: NTP, RIM에 5.7%의 블랙베리 로열티 지급 조건으로 합의 제시
- 2006.1월: NTP, RIM에 30일 내로 합의치 않을 경우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블랙베리를 제외하고 NTP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서비스 중단 요청 발표
- 2006.2월: 미 지방법원, 다시 한 번 NTP와 RIM에 합의 도출 권유

○ 결과: 2006년 3월 3일, RIM은 NTP에 U$ 61,250만달러 합의금 지급을 결정하고 4년간 지 속된 특허권 분쟁을 종료.

○ 시사점
- 이 사건은 블랙베리에 대한 RIM의 자존심과 고집이 발단이 된 분쟁 사례로 RIM은 합리 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제1의 IT 업체라는 대외적 인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 금전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자원을 허비했다.
- 특히 원천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NPT에서 미리 등록했음을 인지하고도 특허법에 기초한 신속하고 명확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규모와 자금력을 통해 물리적으로 이를 해결코자 했다는 점에서 RIM의 패배는 이미 예견되었다.

(자료: CBC News(www.cbc.ca))

2) 사례 2: 캐나다 Bell(제소) vs 캐나다 Archer Enterprise(피고)

○ 개요: 2005년 6월, 캐나다 제1의 통신 서비스 업체인 Bell(bell.ca)은 Archer Enter - prise에서 등록한 도메인 네임인 'belll.ca'의 등록 취소 혹은 사용 중지를 요청. 그러나 Archer Enterprise에서는 이를 악용해 'belll.ca'의 라이센스 혹은 구매 등 캐나다 상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Bell에서는 'belll.ca'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B.C 국제 상업중재 위원회(BCICAC: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에 중재를 요청

○ 진행과정
- 2005.4월: Archer Enterprise, 캐나다 인터넷 도메인 등록기구(CIRA: Canada Internet Register Authority)에 'belll.ca'를 등록
- 2005.6월: Bell, 'belll.ca'의 등록 사실을 발견하고 Archer Enterprise에 사용 중지를 요청

- 2005.6월: Archer Enterprise, Bell에 'belll.ca'의 연간 임대나 혹은 구매를 제의
- 2005.6월: Bell, BCICAC에 중재를 요청하여 'belll.ca'의 등록취소 혹은 소유권을 Bell로 이관하도록 요청
- 2005.7월: Bell, 'belll.ca'가 사용될 수 없는 사유 및 이에 대한 증거 등을 BCICAC에 종합하여 제시

○ Bell측의 논거
- 캐나다 상표법
  · 캐나다 상표법상 '기 등록되어 있고, 일반 대중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거의 비슷하여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함을 주장. 즉, 'bell.ca'에서 L이 하나더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시각적으로나 발음상으로 'belll.ca'와 'bell.ca'는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
  · 또한 1880년에 설립된 Bell의 경우 캐나다 Trade-mark D/B에 'Bell', 'Bell & Design', 'Bell Canada', 'Bell Canada Enterprise', 'Bell Globemedia', 'Bell Mobility', 'bell.ca' 등을 설립 때부터 운영해 왔으며, 일반인들 역시 'Bell'이라는 상표 자체를 오랜기간 동안 접해 왔기 때문에 'belll.ca'는 'bell.ca'와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한 도메인
  · Bell에서 서면으로 'belll.ca'의 사용 중지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Archer Enterprise 에서는 도메인의 연간 리스 혹은 구매를 서면으로 제의한 것을 증거로 제시
  · 'belll.ca'에 접속한 결과, 현재 Bell의 최대 경쟁업체인 Rogers(www.rogers.com)로 곧바로 연결되는 등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도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Bell의 이미지 훼손 및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 등을 유발하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의 도메인으로 해석 가능

○ 결과: 2005 8월 30일에 BCICAC는 CIRA의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Rules'에 따라 'belll.ca'의 소유권을 Bell로 이관토록 결정

○ 시사점
- 악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Bell 이외에도 여러 글로벌 기업 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특히 관련법의 틈새를 이용한 조직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사 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와 증빙 등의 기록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캐나다 인터넷 도메인등록기구(www.cira.ca))

8. 통관/운송

가. 통관

1) 수입신고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은 캐나다 관세청(CBSA: 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을 거쳐 수입되고 있는데, CBSA에 공통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CCD (Cargo Control Document), 상업송장, CCCD(Canada Customs Coding Form) 각 2부 와 원산지 증명서 1부이다.

다만 수출입 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과 특별 수입규제조치법(SIMA: 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의해 지정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주로 국민 건강과 안

전에 직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필요 시 수입 허가, 안전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 허가(Import Permit)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에서 'import Control List'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수입 허가리스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수입허가품목(import control List)

품목(분야)	내용
군용품	총기부품 및 총기류(라이플, 카빈, 리볼버, 피스톨, 자동소총 등)
	대량 살상무기(총, 유탄포, 캐논, 박격포, 탱크지뢰, 군용연막, 가스 및 화공품)
	탱크 및 자가추진력에 의한 각종 군용품
	폭탄, 어뢰, 로켓 및 비유도탄 및 해당 부품
	수출 관리품목(Export Control List)에 해당되는 군용품
철강	탄소강 관련 제품(철판, 코일, 철도관련 제품, 기초 골재, 파이프 형 등)
	특수강(철판, 봉강, 파이프, 튜브, 코일, 합금, 주석 등)
의류제품	멕시코와 미국(NAFTA국가) 생산된 의류 및 기타 국가들에서 생산된 면화, 수제직물사 등
무기류	수입금지 무기류
낙농제품	암탉, 수탉(185g이상), 닭고기(냉동 여부 불문) 닭고기를 주재료로한 각종 제품 등
	칠면조(185g이상), 칠면조 고기(냉동 여부 불문), 칠면조를 주재료로한 각종 제품 등
	소, 송아지, 소고기 등(NAFTA국가 및 Chile산 제외)
	각종 유제품(우유, 크림, 유지분유, 버터)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 및 기타 성분 함유)
	계란 및 계란을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
	마가린
	치즈(체다, 블루 베인드, 카망베르, 브리, 브로볼롱, 구다, 모차렐라, 스위스, 그뤼에르, 하바티, 파마잔, 로마노 및 기타 각종 종류의 치즈)
	요거트
	버터 및 각종 유지방 제품
	통밀, 메슬린, 밀분 등
	파스타, 면 등
	밀을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시리얼, 비스킷, 러스크, 쿠키, 프레첼 등)
	보리, 보리가루 등
	보리를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
기타제품	이스라엘산 장미
기타제품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북아이릴랜드산 돼지고기

자료: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2) 물품검사

캐나다 관세청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 안전성과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혹은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상과 수입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물품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초기 수출되는 제품이나 농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입허가법, 수입규제 조치법 등에 적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랜덤 검사를 통해 수입 서류와 제품이 부합하는지의 여부,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 수입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서류 상의 오류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나 서류상의 오류 발생 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로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농수산물의 경우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별도의 검사장으로 제품을 이동시킨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한국산 배, 감 등의 과실류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주로 어류(젓갈 등)에 대한 수입 불허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통관절차 흐름도

상품 선적보고: 상품을 선적하였음을 캐나다 관세청에 보고
상품 양도: 상품 양도시 각 상품 운송단위별로 14자리의 번호(Transaction Number) 부여
선적상품 검사: 캐나다 관세법에 의거 캐나다 세무국(CCRA: Canada Customs and Revenue)에서 임의로 상품을 검사
상품 선적에 관한 회계보고: 수입에 관련된 총 경비 보고(Accounting Package)
상품보관: 상기 절차 완료 후 보관창고로 상품 운반

자료: 캐나다 관세청

4) 세관 제출서류

캐나다의 서류상 통관절차는 크게 '최소서류통관제도(RMD)'와 '일반서류통관제도(RFD)'으로 구분되고 있음.

□ 최소서류통관제도(RMD: 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 정의: 최소의 서류로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제도

○ 이용 요건
- 현재까지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업체
- 전년도 월 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3 가지 경우에 따라 예치금이 상이함. 즉, 월 평균 관세납부액이
  - C$ 250 미만인 경우: C$ 250
  - C$ 250 이상 C$ 1,000 만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
  - C$ 1 천만 이상: C$ 1,000 만
- 별도의 검사를 요하지 않는 물품일 경우
- 필요서류: 총 3 종류의 서류 요망
  - Cargo Control Document 1 부
  - Invoice 2 부
  -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필요 시) 1 부

□ 일반서류통관제도(RFD: 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 정의: 일반적인 통관절차로서 관세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도

○ 제도 이용 요건: 특별한 조건 없음
- 필요서류
- Cargo Control Document 2 부
- Invoice 2 부

- Canada Customs Coding From(2 부)
-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1 부
- Certificate of Origin(필요 시) 1 부

○ 참고
- CBSA 홈페이지에 통관과 관련된 'Release of Your Shipment' 참조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bsa-asfc.gc.ca/import/release-dedouanement-eng.html

나. 운송

1) 무역항

□ 동부: Port of Montreal

○ 기본정보(Montreal Port Authority, 몬트리올 항만관리공단)
- 주소: Port of Montreal Building, 2100 Pierre-Dupuy Avenue, Wing 1, Montreal, Quebec H3C 3R5
- 전화: (514) 283-7011
- 웹사이트: http://www.port-montreal.com

○ 유럽과 캐나다를 잇는 동부 최대의 항만
- 북미-유럽 교역의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캐나다 동부 주요도시인 토론토, 퀘벡, 킹스톤과 미국의 주요 도시인 시카고, 디트로이트, 보스톤, 뉴욕 등으로 철도운송으로 빠르게 연결
- 전 세계 100 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연간 총 처리물량은 2,702 만 톤

○ 항만시설
- 4 개의 현대식 컨테이너 터미널
- 2 개의 다용도 터미널
- 26 만 톤의 bulk cargo 터미널
- 연결철로망: CN(Canadian National), CPR(Canadian Pacific Railway)

최근 10년간 물동량 현황

(단위: 메트릭톤)

연도	벌크화물		일반화물			총계
	Liquid	Dry	컨테이너	비컨테이너	소계	
1999	4,812,638	5,933,411	9,147,687	739,163	9,886,850	20,632,899
2000	4,415,393	6,295,963	9,205,120	816,915	10,022,035	20,733,391
2001	4,224,294	5,755,070	8,718,439	421,273	9,139,712	19,119,076
2002	3,808,972	5,059,129	9,446,412	405,366	9,851,778	18,719,879
2003	5,345,352	5,233,109	9,755,300	446,533	10,201,833	20,780,294
2004	6,230,788	6,038,267	10,851,505	516,203	11,367,708	23,636,763
2005	7,407,560	5,303,433	11,137,562	495,459	11,633,021	24,344,014
2006	7,727,092	5,569,642	11,339,316	470,367	11,809,683	25,106,417
2007	7,861,385	5,455,345	12,406,026	295,752	12,701,778	26,018,508
2008	8,005,416	5,479,149	13,321,147	215,630	13,536,777	27,021,342

최근 2년간 Port of Montreal의 수출입 물동량

(단위: 메트릭톤)

구분	2008	2007	전년 대비 변동	
			수량	증가율
전체 물동량	27,021,342	26,018,508	1,002,834	3.90%
○ 일반화물(General Cargo)	13,536,777	12,701,778	834,999	6.60%
- 컨테이너	13,321,147	12,406,026	915,121	7.40%
- 비 컨테이너	215,630	295,752	-80,122	-27.10%
○ 벌크화물(Bulk Cargo)				
- Dry	5,479,149	5,455,345	23,804	0.40%
- Liquid	8,005,416	7,861,385	144,031	1.80%
수입 물동량	15,204,437	15,677,695	-473,258	-3.00%
○ 일반화물(General Cargo)	5,781,085	5,791,170	-10,085	-0.20%
- 컨테이너	5,606,710	5,570,910	35,800	0.60%
- 비 컨테이너	174,375	220,260	-45,885	-20.80%
○ 벌크화물(Bulk Cargo)				
- Dry	4,095,870	4,098,174	-2,304	-0.10%
- Liquid	5,327,482	5,788,351	-460,869	-8.00%
수출 물동량	11,816,905	10,340,813	1,476,092	14.30%
○ 일반화물(General Cargo)	7,755,692	6,910,608	845,084	12.20%
- 컨테이너	7,714,437	6,835,116	879,321	12.90%
- 비 컨테이너	41,255	75,492	-34,237	-45.40%
○ 벌크화물(Bulk Cargo)				
- Dry	1,383,279	1,357,171	26,108	1.90%
- Liquid	2,677,934	2,073,034	604,900	29.20%

자료: 몬트리올 항만 관리공단

□ 동부: Port of Halifax

○ 기본 정보(Halifax Port Authority, 할리팩스 항만관리공단)
- 주소: Halifax Port Authority, P.O. Box 336, Halifax, Nova Scotia, B3J 2P6
- 전화: (902) 426-8222
- 웹사이트: http://www.portofhalifax.ca/
- 저장 시설 면적: 17,882 m2 / 192,485 ft2
- 2008 년 연간 처리량: 1,028 만 톤

○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만으로서 연간 2,000 대 이상이 정박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

최근 3년간 수출입 물량

(단위: 메트릭톤)

구분	2008	2007	2006
벌크	6,629,308	7,613,194	8,755,331
컨테이너	3,197,776	4,228,260	4,572,020
Ro/Ro	283,404	244,630	216,032
브레이크 벌크	171,323	152,824	136,404
합계	10,281,811	12,238,908	13,679,787

자료: 핼리 팩스 항만관리공단

□ 서부: 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 (VFPA)

○ VFPA
- 대표: Gordon Houston / President & CEO
- 성격: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설립한 영리조직, 밴쿠버항 등 3 개항의 운영 및 개발업무 담당 · 비즈니스 플랜, 자금지출 등 이사회를 통해 단독 결정
- 주소: The Vancouver Port Authority, 100 The Pointe, 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Canada V6C 3T4 (밴쿠버-프레이저 항만관리공단)
- 전화: (604) 665-9000
- 웹사이트: http://www.vfpa.ca
- VFPA 는 Fraser River Port Authority, North Fraser Port Authority, Vancouver Port Authority 등 3 개 항만이 2008 년 1 월 1 일부로 통합
- VFPA 는 미국 시카고, 중국 베이징 등 2 개의 해외사무소 운영

○ Port of Vancouver
- 캐나다 최대 항만
- 북미-아시아 교역의 게이트웨이(gateway)로서 여타 북미 서해안 항만에 비해 수송시간 비교우위 (아시아와 최단거리)
  · 해외수출: 북미 1 위
  · 화물량: 서 북미 2 위
  · 총 화물 및 컨테이너 처리: 캐나다 1 위
  · 연간 화물을 100 여 교역 대상국가로 수송(1 억 1 천 4 백만 톤)
  · 북미 최초로 내륙 트럭운송 예약시스템 가동
  · 캐나다 최초 컨테이너 검색용 감마선 스캐너 설치(ISPS 준수)
- 항만시설
  · 25 개 주요 터미널(67 개 Berth): 벌크, 컨테이너 및 밴쿠버- 알라스카 크루즈항
  · 17 Bulk 터미널
  · 3 Break Bulk Cargo 터미널
  · 3 Container 터미널
  · 2 Cruise 터미널
  · 연결 철로망: CN(Canadian National Railway), CP(Canadian Pacific Railway), BNSF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Port of Vancouver 주요통계(최근 2년)

구 분	2008	2007
총 물동량 (Total Traffic)	1억1천4백만 톤 Foreign exports: 68.3백만 톤 Foreign imports: 13.8백만 톤 Domestic traffic: 32백만 톤	1억2천7백만 톤 Foreign exports: 69.7백만 톤 Foreign imports: 13.0백만 톤 Domestic traffic: 45백만 톤
화물종류별 비중 (Cargo Types)	Bulk: 73백만 톤 Breakbulk: 20백만 톤 Containers: 20백만 톤	Bulk: 78백만 톤 Breakbulk: 27백만 톤 Containers: 21백만 톤
컨테이너(Containers)	2,492,107 TEU	2,495,522 TEU
총 외국선박 도착 (Foreign Vessel Calls)	3,005	3,165
크루즈 이용승객/운항선	854,493명/254척	960,554명/275척

자료: 밴쿠버항만관리공단

Port of Vancouver 주요 교역대상 국가별 전체 물동량(2008년 기준)

(단위: 천톤)

Inbound			Outbound			전체		
1	중국	5,753	1	일본	17,725	1	일본	18,568
2	미국	2,951	2	중국	9,787	2	중국	15,540
3	한국	1,031	3	한국	7,768	3	한국	8,800
4	일본	843	4	미국	3,905	4	미국	6,855
5	홍콩	527	5	브라질	3,137	5	브라질	3,140
6	멕시코	454	6	대만	2,324	6	대만	2,757
7	대만	433	7	인도	1,818	7	멕시코	2,096
8	태국	365	8	싱가폴	1,796	8	인도	1,899
9	말레이시아	208	9	독일	1,698	9	싱가폴	1,867
10	칠레	153	10	멕시코	1,642	10	독일	1,733

자료: 밴쿠버항만관리공단

2) 공항

□ 동부: 토론토 공항(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 캐나다의 주요 국제공항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항으로는 동부에서는 토론토 국제공항 (Lester B. Pearson Internatl onal Ai rport)을 꼽을 수 있고, 이밖에도 동부에서는 몬트리얼 국제공항(DorvalInternat lonal AIrp ort, Mirabel International Airport), 오타와 국제공항(Ottawa Macdonald Cartier Interna tional Airport)이 있다.

주요 국제공항

Toronto Lester B.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 주소: P.O. Box 6031. 3111 Convair Drive, Toronto AMF, Ontario, L5P 1B2(Greater Toro n to Airports Authority, 광역토론토 공항 관리공단) - 전화: (416) 776-3000(관리공단), (416) 247-7678 (제 1 터미널), (416) 776-5100 (제 3 터미널)
Montreal Pierre Elliott Trudeau International Airport
- 주소: 975 Romeo-Vachon Blvd. North, Suite 317, Montreal, Quebec, H4Y 1H1 - 전화: (514) 394-7377 / (1-800) 465-1213
Montreal Mirabel International Airport
- 주소: 12600 Aerogare A-1 street, Suite 4480, Mirabel, Quebec, J7N 1C9 - 전화: (514) 394-7377 / (1-800) 465-1213
Ottawa MacDonald-Cartier International Airport
- 주소: 1000 Airport Parkway Private, Ottawa, Ontario, K1V 9B4 - 전화: (613) 248-2000

○ 사업이나 관광 등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공항은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총 2 개의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1 터미널은 에어 캐나다의 국제선과 국내선, 미국-캐나다 간 비행을 주로 하는 미국 항공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3 터미널은 에어캐나다와 미국 항공사를 제외한 기타 국제 항공사들이 사용한다.

- 제 1 터미널: Air Canada 및 미국 항공사
- 제 3 터미널: 기타 항공사 (대한항공 포함)

토론토 국제공항 주요통계

	2008	2007
항공기 운항 (Aircraft Movements)	합계: 430,588 Terminal: 385,210 Non-Terminal: 45,378	합계: 425,500 Terminal: 370,198 Non-Terminal: 55,302
공항 이용 승객 수	합계: 32,334,831명 국내선: 13,895,707 환승객: 8,806,040 국제선: 9,633,084	합계: 31,446,199명 국내선: 13,743,920 환승객: 8,869,494 국제선: 8,832,785

자료: GTAA(광역토론토 공항관리공단

2) 서부: 밴쿠버 공항(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YVR)

○ 북미 서부지역에서 2 번째로 큰 규모의 국제공항
○ 북미지역에서 아시아와의 최단거리인 공항
○ 밴쿠버 항에서 13km, 미국 국경까지 30 분거리 위치
○ 시설: 3 개의 활주로
- 42 대의 항공기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
- 2 main terminals-국제선, 국내선과 미국
- 57 개의 Gates
- 33 개의 취항항공사
○ 서비스: Free-trade zones(Export Distribution Centres)

밴쿠버 국제공항 주요통계

구분	세부항목	2008년	2007년
물동량(Air Cargo)	합계 -Intergrator -Other Carriers	211,312 74,283 137,029	226,233 74,858 151,376
항공기 운항 (Aircraft Movements)	합계 -Runway -Non-runway	339,022 278,796 60,226	328,008 274,595 53,413
공항 이용 승객 수	합계 -국내선 -국제환승객 -아시아-태평양 -유럽 -기타	17,852,459 9,344,761 4,335,443 2,464,431 1,217,595 490,229	17,459,049 9,016,556 4,361,177 2,453,518 1,289,366 374,432

자료: 밴쿠버국제공항

3) 캐나다 물류 구조

○ 캐나다는 인터넷 기반의 전산화 시스템 및 GPS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집배송 체제가 정착되어 최소 재고 유지에 의한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특히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Supply Chain 의 통합화로 배송시간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광대한 국토에 인구가 분산된 지리적 어려움을 물류산업 고도화로 극복하고 있다.

○ 캐나다의 물류 구조는 크게 공급 주체인 항공, 해상, 철도, Trucking(트럭) 및 Freight Forwarder(화물운송업자), 통관사(Customs Brokers), Warehousing(창고), Courier (택배) 등과 수요자인 제조 업체(Shipper) 및 도소매업자(대형유통체인 포함)로 나눌 수 있으며 공급 주체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물류 공급 주체별 현황

구 분	주 요 현 황
Trucking	- 캐나다 내륙 수송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규모는 260 억 달러 - Courier(택배업계, 연간 35 억 달러 매출)와 제휴를 통해 집 배송물류망 확보
철도	- CN 및 CP 등 캐나다 2 개 철도의 연간 매출은 56 억 달러 - 석탄, 철광석, 곡물류 등이 전체 수송비중의 약 50% 차지 - 수송 비중: 국내 70%, 국외(미국 포함) 30%
구 분	주 요 현 황
항공	- 항공 Cargo 연간 매출은 7.5 억 달러 - 국외 택배업계와 연계를 통한 집 배송 물류망 확보
해상	- 국외 물류의 85% 담당, 수출 시 운송비중은 석탄(19.5%), 철광(17.5%), 밀 (10.5%) 순으로 연간 매출규모는 16 억 달러
Freight Forwarder	- 캐나다 내 1,100 사 활동, 연간 매출규모는 11 억 달러 - 통관, 창고보관 등이 주요 업무이며 기업의 재고관리 및 소량 주문, 배송 등으로 업무영역 확장 중
통관사	- 캐나다 내 350 여 개사 활동, 연간 매출규모는 4 억 달러 - EDI 시스템을 활용한 통관이 주 업무 - 최근 3PL 과 연계, 재고 관리, Supply Chain 통합관리 등으로 활동범위 확대 중
Warehousing	- Private(개인), Public(기업), Contract(계약) 등의 형태로 운영 - 특히, Public 및 Contract 서비스는 보관 이외 배송 및 관련 부보, 물품 검사, 행정서류 처리, 지불관련 사항까지 지원

자료: Int'l Business Strategies

4) 운송비용

부산 – 토론토 간 각 단계별 운송비용

(단위: U$)

비용구분	20ft		40ft		LCL	
	단위	비용	단위	비용	단위	비용
부산→밴쿠버→토론토 야적장(해상, 철도)	컨테이너	3,200	컨테이너	4,000	Cbm	100
성수기(6-11월)	컨테이너	300	컨테이너	400	Cbm	N/A
토론토 세관통관	건	65	건	65	건	65
통관 브로커 Handling	건	50	건	50	건	50
토론토야적장→창고(육상)	컨테이너	200	컨테이너	200	cbm	해상운임에 포함

주: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으로서 실제 비용은 상이할 수 있음.

부산 – 밴쿠버간 각 단계별 운송비용

(단위: U$)

비용구분	20ft		40ft		LCL	
	단위	비용	단위	비용	단위	비용
부산→밴쿠버	컨테이너	2,200	컨테이너	2,900	Cbm	80
밴쿠버 세관통관	건	65-75	건	65-75	건	70-85
통관 브로커 Handling	건	50-65	건	50-65	건	50-65
밴쿠버야적장→창고(육상)	컨테이너	200-400	컨테이너	200-400	Cbm	해상운임에 포함

주: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금액으로서 성수기 여부, 품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캐나다와 아시아를 운행하는 12 개 컨테이너 해운사들은(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포함) CTSA(Canada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라는 협약을 통해 해운비를 책정하고 있다.

5)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 토론토

3Way International Logistics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246 Brockport Drive, Unit 27 Toronto, Ontario M9W 6W2
전화	(1-416) 640-1921
팩스	(1-416) 640-1924
홈페이지	http://www.ship3way.com

The Messenger International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103 Richmond St. East - Suite 104 Toronto, Ontario M5C 1N9
전화	(1-416) 365-0155
팩스	(1-416) 365-1614
홈페이지	http://www.themessengers.ca

United Air Express International Courier Inc.	
소재지	Scarborough, Ontario
주소	55 Nugget Avenue Unit #H, Scarborough, Ontario M1S 3L1
전화	(1-416) 412-1535
팩스	(1-416) 412-3586
홈페이지	http://www.uaecourier.com

Hitek Logistic	
소재지	Montreal, Quebec
주소	749 Meloche Street , Dorval, Quebec, Canada H9P 2S4
전화	(1-514) 631-5115
팩스	(1-514) 631-5135
홈페이지	http://www.hiteklogistic.com

Pak Express	
소재지	Mississauga, Ontario
주소	6469 Netherhart Road, Mississauga, Ontario L5T 1C3
전화	(1-416) 291-4744
팩스	(1-905) 405-9912
홈페이지	http://www.pakex.net

Active Group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645 King St W, suite 600 Toronto, Ontario M5V 1M5
전화	(1-416) 504-6227
팩스	(1-416) 504-8374
홈페이지	http://www.activegroup.com/active/contact.html

Freightmate Inc	
소재지	North York, Ontario
주소	26 Tangiers Rd, Toronto, Ontario M3J 2B2
전화	(1-416) 633-3311
팩스	(1-416) 633-9558
홈페이지	http://www.compufreight.com

Total Express(토탈 익스프레스, 한인업체)	
소재지	Brampton, Ontario
주소	20 Delta Park Ave, Brampton, ON L6T 5E7
전화	(1-905) 789-1431
팩스	(1-905) 789-5974
홈페이지	http://www.totalexpress.ca

Ace Trans Inc.(에이스 종합물류, 한인업체)	
소재지	Etobicoke, Ontario
주소	270 Rexdale Blvd. Unit 2, Etobicoke, ON
전화	(1-905) 625-3000
팩스	(1-905) 625-6049
홈페이지	N/A

World Express(월드 익스프레스, 한인업체)	
소재지	North York, Ontario
주소	30 Lepage Court. North York M3J 1Z9
전화	(1-416) 467-0688
팩스	(1-416) 467-0687
홈페이지	N/A

□ 밴쿠버

PBB Global Logistics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11188 Featherstone Way, Unit #110
전화	(1-604) 717-1500
팩스	(1-604) 231-1566
홈페이지	www.pbb.com

Schenker of Canada(밴쿠버 지사)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3A-103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2Y3
전화	(1-604) 688-8511
팩스	(1-604) 688-5212
홈페이지	www.schenker.ca

현대해운(밴쿠버 지사)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101-120 176 St Surrey, BC V3C 9S2
전화	(1-604) 538-1042
팩스	(1-604) 538-3994
홈페이지	www.aacb.com

대한통운(대행 한인업체)	
소재지	Burnaby, British Columbia
주소	#306 4501 North RD, Burnaby, BC
전화	(1-604) 444-5862
팩스	(1-604) 444-5864
홈페이지	www.korex.co.kr

탑운송(한인업체)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Unit 7-91 Golden Dr. Coquitlam, BC V3K 6R2
전화	(1-604) 941-8802
팩스	(1-604) 467441
홈페이지	www.top-van.com

A & A Contract Customs Brokers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101-120 176 St Surrey, BC V3C 9S2
전화	(1-604) 538-1042
팩스	(1-604) 538-3994
홈페이지	www.aacb.com

Pacific Customs Brokers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101-17637 1 Ave Surrey, BC V3S 9S1
전화	(1-604) 538-1566
팩스	(1-604) 538-3984
홈페이지	www.pcb.ca

AEI Canada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105-5980 Miller Rd Richmond, BC V7B 1K2
전화	(1-604) 207-8100
팩스	(1-604) 207 8108
홈페이지	www.danzas.com

Cole Freight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115-5000 Miller Rd Richmond, BC V7B 1K6
전화	(1-604) 273-5161
팩스	(1-604) 273-2053
홈페이지	www.cole.ca

Kuehne & Nagel International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700-535 Thurlow St. Vancouver, BC V6E 3L2
전화	(1-604) 684-4531
팩스	(1-604) 684-3317
홈페이지	www.kuehne-nagel.com

Hudd Distribution Canada Inc.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300-109 Braid St. New Westminster, BC V3L 5H4
전화	(1-604) 525-7783
팩스	(1-604) 525-7164
홈페이지	N/A

Livingston Internation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PO Box 2168 Vancouver, BC V6E 4H5
전화	(1-604) 685-3555
팩스	(1-604) 681-8431
홈페이지	www.livingstonintl.com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환경 일반

1) 긍정적 요인

캐나다는 온타리오, 퀘벡 등 동부의 제조업과 브리티쉬 콜럼비아, 알버타 등 서부의 자원개발 산업이 어우러져 견실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미국 과 인접한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2008 년 기준, NAFTA 는 4 억 4,700 만 명의 인구와 통합된 총 생산액 (GDP)은 16.5 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시장이다.

○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교역에 유리한 환경
- 캐나다 내 20 개 대도시 중 17 개 도시가 1 시간 30 분 이내에 미국 국경에 이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 접근성이 용이
- 미국, 멕시코 및 중남미 시장과의 교역 규모 확대
- 이민 인구를 배경으로 한 아·태 시장과의 접근성

○ 에너지, 통신, 교통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보유
-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육상 교통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도로와 잘 연결되어 있음. 총 53,000 km 가 넘는 철도는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 위 규모
-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가장 저렴한 business telephone 사용료 수준으로 우호적인 사업 환경 지원

○ 풍부한 고급 인력 및 높은 교육 수준
- 캐나다는 G7 국가 중 교육을 위한 비용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 2009 년 9 월 현재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07 년도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에 의하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학력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25~35 세 사이의 대학 졸업 인구 기준)
- 이민인구의 45% 이상이 대학졸업자 이상

○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
- 2008 년 기준 1 인당 GDP 가 40,200 미달러를 넘어서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1997 년~2006 년까지 G7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
- 2008 년 10 월 IMF 전망자료에 따르면, 2009 년 캐나다가 G7 국가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높은 R&D 투자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
- 캐나다는 연구개발 인프라에 GDP 의 1.8~1.9%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2008 년 기준, 국가 R&D 지출은 GDP 의 1.8% 인 290 억 달러를 넘어섰음.
- SR & ED (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프로그램 등 연방 정부 차원 의 R&D 투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투자가들에게 제 공하고 있음.

○ 높은 생활수준으로 인한 우호적인 외국인 생활 여건
- 의료, 복지 등 캐나다의 우수한 생활여건으로 UN 의 Human Development Index 에서 90 년대부터 계속 1 위 국가로 선정

- 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 에서 발간된 Worldwide Quality of Living Survey 에 포함된 세계 215 개 도시 중 캐나다의 밴쿠버(3 위), 토론토(15 위), 오타와(18 위, 수도), 몬트리올(22 위) 및 캘거리(24 위) 등 총 5 개 도시가 25 위 내 선정

○ 국제 기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업 환경 경쟁력
- 영국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 발표한 "2008~2012 년 글로벌 비즈니스 랭킹"에서 캐나다를 G7 국가 중 1 위, 82 개 조사국 중 4 위로 발표
- KPMG 가 2008 년 발표한 "Competitive Alternatives, KPMG's Guide to International Business Location"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 비용지수 비교에서 멕시코(20.5%)에 이어 0.6%의 우위를 기록하여 G7 국가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선정(아래 표 참조)

국가별, 산업별 전반적 분석 결과

INDUSTRY	OPERATION	EUROPE				
		France	Germany	Italy	Netherlands	UK
Manufacturing						
Aerospace	Aircraft Parts	101.8(5)	113.2(9)	104.4(6)	106.9(8)	106.0(7)
Agri-Food	Food Processing	100.0(4)	106.0(9)	101.8(8)	100.9(7)	100.9(6)
Automotive	Auto Parts	100.8(5)	111.8(9)	104.8(8)	104.1(7)	104.0(6)
Chemicals	Specialty Chemicals	105.4(5)	116.6(10)	108.4(6)	109.0(8)	108.6(7)
Electronics	Electronics Assembly	106.4(5)	117.6(9)	107.6(6)	110.7(7)	111.2(8)
Medical Devices	Medical Devices Mfg.	102.9(5)	113.8(10)	105.2(6)	107.4(8)	105.5(7)
Metal Components	Metal Machining	101.2(5)	111.2(9)	104.6(8)	104.5(7)	104.0(6)
Pharmaceuticals	Pharmaceutical Products	102.8(5)	112.5(10)	104.5(6)	106.7(8)	104.9(7)
Plastics	Plastic Products	100.0(4)	109.1(9)	103.8(8)	102.5(7)	102.5(6)
Precision Mfg.	Precision Components	99.5(4)	112.8(10)	101.9(6)	105.8(8)	103.2(7)
Telecommunications	Telecom Equipments	101.2(5)	108.3(10)	102.7(6)	104.1(8)	103.8(7)
R&D						
Biotechnology	Biomedical R&D	105.7(5)	127.0(9)	112.2(8)	107.9(6)	110.7(7)
Clinical Trials	Clinical Trials Management	87.2(3)	135.5(10)	102.7(7)	86.2(2)	104.5(8)
Product Testing	Electronic Syst. Dvlt/Testing	95.7(3)	117.0(10)	106.3(8)	97.0(5)	104.7(7)
Software						
Software Design	Advanced Software	105.2(5)	127.1(10)	115.6(9)	110.0(7)	112.9(8)
Web and Multimedia	Content Development	104.7(5)	127.2(10)	112.0(9)	109.2(6)	109.6(8)
Corporate Services						
Back Office/Call Centers	Shared Services Center	121.2(5)	141.9(9)	129.8(7)	132.2(8)	123.2(6)
Overall Results		103.6(5)	116.8(10)	107.9(8)	107.3(7)	107.1(6)

INDUSTRY	OPERATION	NORTH AMERICA			ASIA PACIFIC	
		Canada	Mexico	US	Australia	Japan
Manufacturing						
Aerospace	Aircraft Parts	99.1(3)	77.8(1)	100.0(4)	98.3(2)	113.4(10)
Agri-Food	Food Processing	99.2(3)	89.2(1)	100.0(5)	97.6(2)	106.8(10)
Automotive	Auto Parts	100.2(4)	81.0(1)	100.0(3)	98.2(2)	115.2(10)

Chemicals	Specialty Chemicals	99.1(2)	88.1(1)	100.0(3)	103.2(4)	109.5(9)
Electronics	Electronics Assembly	100.4(3)	78.0(1)	100.0(2)	102.3(4)	117.9(10)
Medical Devices	Medical Devices Mfg.	99.7(2)	79.2(1)	100.0(4)	99.9(3)	112.7(9)
Metal Components	Metal Machining	101.0(4)	81.2(1)	100.0(3)	98.2(2)	114.9(10)
Pharmaceuticals	Pharmaceutical Products	99.6(2)	82.0(1)	100.0(3)	100.6(4)	111.7(9)
Plastics	Plastic Products	101.7(5)	84.2(1)	100.0(3)	96.7(2)	111.3(10)
Precision Mfg.	Precision Components	98.6(3)	73.4(1)	100.0(5)	95.8(2)	110.0(9)
Telecommunications	Telecom Equipments	98.6(2)	85.7(1)	100.0(4)	99.7(3)	107.6(9)
R&D						
Biotechnology	Biomedical R&D	98.6(2)	73.6(1)	100.0(3)	105.6(4)	127.2(10)
Clinical Trials	Clinical Trials Management	92.6(4)	63.9(1)	100.0(5)	100.2(6)	117.7(9)
Product Testing	Electronic Syst. Dvlt/Testing	94.4(2)	64.8(1)	100.0(6)	96.0(4)	109.2(9)
Software						
Software Design	Advanced Software	95.1(2)	72.0(1)	100.0(3)	101.5(4)	109.1(6)
Web and Multimedia	Content Development	98.0(3)	66.7(1)	100.0(4)	97.6(2)	109.4(7)
Corporate Services						
Back Office/Call Centers	Shared Services Center	105.8(3)	69.3(1)	100.0(2)	109.6(4)	159.9(10)
Overall Results		99.4(2)	79.5(1)	100.0(3)	100.2(4)	114.3(9)

자료: Competitive Alternatives, KPMG's Guide to International Business Location(2008)

○ 동 보고서 조사방법
- 10 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호주, 일본) 136 개 도시를 표본으로 설정
- 17 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노동비용, 세제, 운송비용 등 27 개 항목의 비용민감도 조사
- 미국의 수치를 기준(100)으로 하여 비용수준을 지수화 함.

□ 정부 정책

○ 캐나다는 1985 년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제정 이후 보다 "사업에 개방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4 년 NAFTA 체결로 인해 역내국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 캐나다 투자법은 국내 및 국제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선 거래에 대한 신고 외엔 특별한 규제가 없다.

○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방과 주정부 차원 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제조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세 제도에 포함
-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자원개발,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기업 지원
-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지원
-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 제공
- 해외투자자나 국내 거주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보다 간편한 입국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불 편 요소 제거

2) 부정적 요인

○ 높은 미국 경제 의존도
-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로 미국과의 연간 교역량은 2008 년 기준 5,653 억 달러가 넘으며, 지난 5 년간 하루 평균 10 억 달러가 넘는 물품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오가고 있음.
- 미국은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였으며 거의 모든 캐나다 수출품 분야에서 최대 무역파트너임.
- 비록 미국 의존적 경제성향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는 있으나 캐나다 GDP 의 약 40%가 아직까지도 대미 수출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기름과 천연가스는 전량 미국에만 수출되고 탄광, 제지, 목재 수출의 90%와 자동차 수출의 100%가 모두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위험
- 2009 년 9 월 현재 캐나다화의 강세로 캐나다 수출 산업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미국을 타겟으로 제품을 생산하던 제조업체들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2008 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캐나다 제조업체들 중 상당수가 도산했으며 2009 년 9 월 현재의 전체적인 경기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009 년 4 월부터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캐나다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밀리고 있음.
-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들 제조업체들의 재무적 위험도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됨.
- 높은 환율은 외국인들의 캐나다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투자진출제한 업종
- 문화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투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으나, 업종별로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거나, 담당 부처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외국인이 출자할 수 없도록 부분적인 제한이 존재

<u>투자 진출 제한 업종</u>

해당 문화 산업	제한 내용
서적 출판, 배포 및 판매	○ 캐나다 문화 정책 하에 국익(Net Benefit)창출이 가능한 경우만 허용 ○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 허용됨.
영상물 제작, 배급 및 판매	○ 캐나다 기존 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입 및 배포는 신규투자에 한하여 허용 ○ 새로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 규모의 인가받은 수입업자에 한함.
간행물 출판, 배포 및 판매	○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전통문화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음. ○ 외국 간행물의 광고 공간을 최대 18%로 제한함.
방송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의 정책에 따라, 캐나다 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외국 기업은 시장에서 규제 당할 수 있음. ○ 주주 혹은 이사회를 통해 최소 80% 이상 내국인의 통제 하에 있지 않으면 사업 승인서를 발급 혹은 재발급 받을 수 없음.

자료: Investment Canada Act

3) 출자비율 규제

해당 문화 산업	제한 내용
통신업	ㅇ 직접 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리자(Type I 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로 제한함. ㅇ 자회사를 통한 인수 시, 자회사 주식의 67%는 내국인 소유로 제한
기타 산업	ㅇ 항공: 항공사 소유지분은 25%로 제한 ㅇ 에너지/채광업: 우라늄 채광기업의 최대지분소유 불가능 ㅇ 수산업: 49%로 지분 제한(인허가 기업의 경우) ㅇ 부동산업: 캐나다에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는 언제든지 보상을 통해 개인의 토지를 환수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지역(Edward Island, Saskatchewan, Nova Scotia)에선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부동산 판매를 허용함. ㅇ 민영화 산업: 주·연방 정부의 감독 하에 상황에 따라 규제 여부가 정해짐.

자료: Broadcasting Act, Income Tax Act, Telecommunication Act, Doing Business in Canada: 2008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4) 경쟁법(Competition Act)

ㅇ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허위 광고, 불법 판촉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함.

ㅇ 합병이나 상권 남용 행위 등은 시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 규제됨.

ㅇ 모든 법적 절차는 조사, 기소, 판단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조사단계에서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경우 기소 단계에서 검찰 당국의 자율 판단 하에 소송 여부가 결정됨.

ㅇ 실제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됨

(자료: Sharpening Canada's Competitive Edge)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연도별/산업별 투자유치 현황

ㅇ 2008 년 누계 기준, 외국기업의 대 캐나다 투자는 5,048 억 캐나다달러로 '07 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중 광업 및 에너지 산업이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금융 및 보험 업종이 18.7%를 차지하였다.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대형 건설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산업별 캐나다 투자유치 현황

(단위: C$백만)

산업/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목재/펄프	13,095	14,122	15,481	16,756	16,420
광업 및 에너지 산업	85,097	98,504	121,444	161,334	171,899
기계 및 자동차 산업	47,926	43,497	51,013	55,037	48,450
금융 및 보험업	90,870	92,045	90,208	92,205	94,506
서비스 및 소매업	36,280	38,458	46,391	50,786	51,695
기타 산업	106,182	111,202	114,110	115,170	121,895
전체 산업	379,450	397,828	438,648	491,287	504,864

자료: 캐나다 통계청

산업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2008 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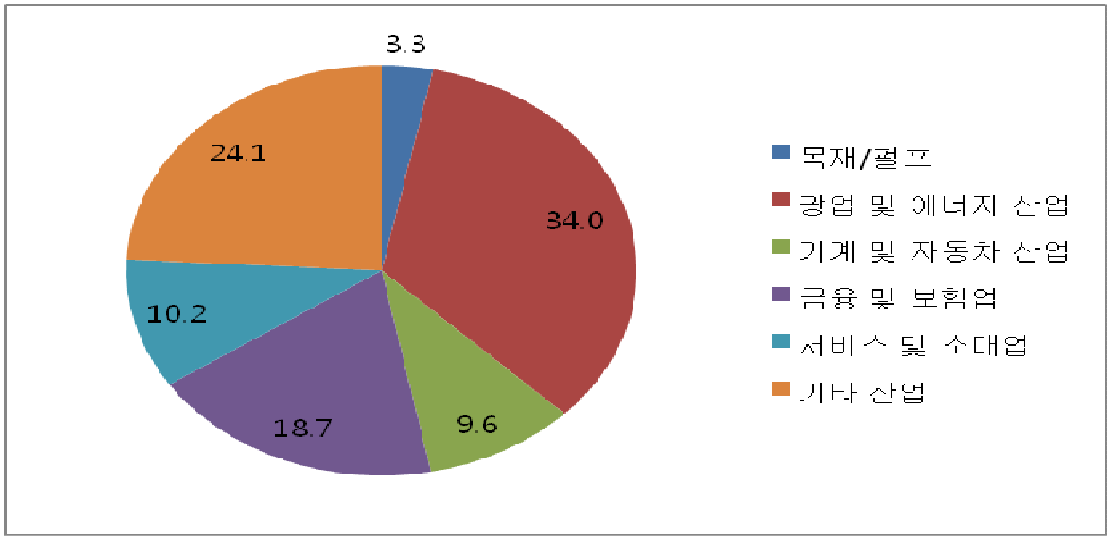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FDI 통계보고서(2009 년 4 월)

나. 주요국별 투자 동향

○ 캐나다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과 영국으로, 2008 년 기준 미국은 캐나다 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한국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별 캐나다 직접투자 현황

(단위: C$백만)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379,450	397,828	438,648	491,287	504,864
1. 미국	243,328	251,477	271,125	292,698	293,608
2. 영국	25,318	29,499	37,823	52,449	54,423
3. 네덜란드	19,968	21,068	24,769	30,613	33,850
4. 프랑스	33,419	28,293	16,883	17,061	18,540
5. 스위스	7,843	13,061	14,679	13,626	15,333
6. 일본	9,939	10,523	13,431	13,634	13,013
7. 브라질	1,863	3,069	11,812	11,244	11,920
8. 독일	7,575	8,763	8,391	9,163	9,373
9. 룩셈부르크	2,944	3,595	6,572	5,418	5,662
10.아랍에미리트	0	0	0	3,259	5,205
22. 한국	353	397	839	871	863

주: 순위는 2008년 기준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다. 외국기업 투자동향

○ 2007 년 중반부터 시작된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로 인해 2008 년 캐나다 M&A 시장은 2007 년까지의 호황세를 마감하고 많은 양의 거래가 감소하였다.

○ BCE 와 Alcan 인수 등 굵직한 Deal 들로 인해 가장 활발한 거래 활동(1,999 건, 3,157 억 캐나다달러)을 보인 2007 년 비해 2008 년에는 거래 액수 및 건수 면에서

매우 떨어졌다. 2008 년 기준, 총 1,467 건의 거래건수와 1,147 억 캐나다달러의 거래액수를 기록하였다.

캐나다 내 산업별 M&A 현황

(단위: 건수, C$백만)

구 분	2008		2007	
INDUSTRY GROUPS	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건수	거래금액
Industrial Products	349	9,326	413	86,541
Consumable Fuels	322	33,929	359	56,668
Metals & Minerals	180	21,380	220	23,158
Real Estate	145	4,449	355	18,904
Financial Services	103	8,881	139	35,637
Consumer Products	100	10,165	129	11,919
Merchandising	83	1,159	133	13,016
Utilities	58	13,963	58	8,342
Gold	41	7,176	30	11,221
Transportation & Environmental Services	34	969	69	8,405
Communications & Media	32	1,066	69	35,849
Paper & Forest	14	309	18	4,226
Pipelines	6	2,016	7	1,817
TOTAL	1,467	114,788	1,999	315,703

자료: Crosbie M&A Report

○ 2009 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한 M&A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거래건수는 증가하지만 총거래 액수는 2008 년에 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재정 상태 악화에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한 M&A 거래 증가 현상은 1980 년대 초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들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서들을 스핀오프(Spin-off)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핀오브(spin-off): 회사분할의 한 방법으로 분할 회사가 자회사를 신설하고, 취득주식 및 기존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 분여하는 법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동향

한국의 대 캐나다 연도별 현지법인 해외투자

(단위: 건, U$ 천)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2	40	20	9,689	5,727
2003	42	26	36,141	15,282
2004	55	32	41,834	46,360
2005	55	31	46,677	35,134
2006	110	77	898,812	389,916
2007	110	61	241,480	144,591
2008	82	42	149,937	163,710
2009.6월 누계	25	8	106,223	111,44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요업종별 한국의 대 캐나다 투자동향(2008년 기준)

(단위: 건, U$ 천)

업종 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Total	82	42	149,937	150	163,710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505	1	492
광업	19	3	55,097	53	53,402
제조업	9	8	5,991	18	16,609
건설업	3	2	1,406	2	1,001
도매 및 소매업	8	7	2,341	10	2,344
운수업	0	0	0	0	0
숙박 및 음식점업	4	3	2,423	4	2,15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1	100	4	1,059
금융 및 보험업	0	1	0	2	29,6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7	48,069	30	28,0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5	15,934	18	11,4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	0	0	0	0
교육 서비스업	4	2	1,835	5	1,7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0	0	0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2	16,236	3	15,826

주: 법인구분은 현지법인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한국의 대 캐나다 투자는 1968 년부터 2009 년 6 월까지 신고기준, 830 건 31 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7 년에는 경제호조와 자원개발 붐에 따라 부동산업 및 자원개발 분야의 투자 진출이 활발했으며 최근 추진(진행)되었던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다.

- ○ 한화 L&C 의 온타리오 생산 공장 착공/준공(2007 년)
- ○ 대아그룹(경남기업)의 써리지역 콘도미니엄 개발
- ○ 알덱스의 스퀴미쉬지역 타운하우스 단지 개발
-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투자 (SK 주 우라늄광산)
- ○ 한국석유공사의 오일샌드 개발투자 (2006 년 6 월)

캐나다 국민의 소득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자원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경공업 소비재와 산업재의 수요는 수입에 의해 충족되고 있어 한국 업체들의 캐나다 시장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나. 우리기업의 대 캐나다 투자사례

(단위: U$백만)

기업명	투자연도	산업	투자내용	투자액
한라공조	2003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	비스테온사(미)와 합작법인 설립	5
기아자동차	2004	자동차	캐나다 본사 신축	n/a
Halla Climate Control Canada Inc.	2006	자동차 부품	한라공조 캐나다법인 지분 인수	22
Pan Pacific Metal Mining Corporation	2006	광산업	n/a	6.9
석유공사	2006	석유	Alberta 주 oil sand 광구 인수	743
한화 L&C	2007	건축자재	현지생산기지 착공	26
POPLAR Point Energy Inc.	2007	천연가스	n/a	32

자료: 토론토 KBC, 밴쿠버 KBC 자료 종합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1) 정책 일반

○ 캐나다 경제는 외국인 투자 의존도가 높으며, 캐나다미국 FTA(1989)와 NAFTA(1994) 협정 체결 이후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 캐나다 비금융 자산의 25%를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
- 2008 년 기준 외국 투자가의 캐나다 직접투자액은 5,048 억 캐나다달러에 달함.

○ 1985 년 제정된 '캐나다 투자법(ICA)'은 원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거래에 대한 신고 외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 동 투자법 제정 이후 약 20 년 동안 정책에 대한 재검토는 없으며,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도	주요 사항
1973	- FIRA(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Act)제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담당 - 외국인 투자자는 자국에 "현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경우에만 허용
1985	- 검토과정을 거쳐 미개발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단, 문화산업 분야는 제외) - "현저한 이익"에 대한 조건을 "국익"으로 완화 - 산업부에 의해 행해지던 1,529 개의 심의 규제를 완화
1999 이후	- 98 개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 외국인투자 규모나 WTO 회원국 여부에 따라 심의 조건을 달리 적용

WTO 비회원국	- 500 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
WTO 비회원국	- 5,000 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기업을 간접투자 방식으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 포함
WTO 회원국	- 2 억 9,500 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캐나다 기업 인수 시만 심의 대상에 포함 (2008 년 기준)

주: 투자 제한 산업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임
자료: Invest in Canada

○ 캐나다 산업부는 투자법에 명시된 "Net Benefit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에서 국익 창 출이 예상될 경우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각각 항목에 대한 경중은 없다.
- 내국인의 예상 참여 정도
- 해당 산업의 자국 내 경쟁 정도
- 해당 산업과 자국의 경제, 문화 정책과의 적합성 여부
- 해당 산업에 대한 캐나다의 국제 경쟁력
- 생산성, 효율성, 기술개발, 상품 혁신 요인

(자료: Sharpening Canada's Competitive Edge)

2) 캐나다의 투자유치기관(Invest in Canada)

○ 캐나다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서, inbound 직접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교통 상부의 연간 사업운영계획(RPP-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에서 Invest in Canada 의 투자유치 정책 목표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RPP 의 투자유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신규 투자유치 및 증액투자 유도: 캐나다 업체들의 질적 수준 향상, 신기술 상용화를 통한 경쟁력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지원
- 투자대상국으로서 캐나다의 인지도 제고: 캐나다에 대한 각종정보 제공 및 외국인 투자가 에게 캐나다의 투자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심을 증대
- 제도정비를 통한 원활한 투자유치 도모: 캐나다 자국 기업 및 외국 기업의 투자, 기술 이 전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한 환경을 제공. 또한 신기술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이의 상용화를 통해 OECD 가입국의 high technology 상용화 부분에서 상 위 3 위권 이내에 진입하도록 노력
- 연방-주정부간 협력 강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호협력관계를 개선, 연방정부의 정책 수 립 담당 부서와 주정부가 캐나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
-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세계 각국의 조직망(상무관)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Asia-Pacific Gateway 로서 캐나다 투자를 장려

(자료: 캐나다 외교통상부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나. 투자 인센티브제도

1). 조세 인센티브

○ 정부의 감세 정책

- 캐나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한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본 이득 에 대한 특별 혜택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2012 년까지 연방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08 년 기준 19.5%까지 낮춤. (G7 국가 중 최저 수준)
· 2012 년까지 주 및 연방정부의 법인세를 25%로 낮춤. (OECD 평균 이하)
· 2011 년까지 G7 국가 중 '신규 사업 투자 시 세금이 가장 적게 부과되는 국가'를 목표로 함.
· 2008 년 1 월 1 일부터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5%로 삭감하였으며 중소기업 법 인세 역시 11%로 축소

- 특히 제조업에 부과되는 세금 완화에 집중하고 있음.

· 2007 년부터 2012 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80 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
· 제조 기업에 부과되던 누진세율 폐지
·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자료: Canada's Economic Outlook and Policy Framework, 캐나다 재경부)

○ SR & ED Tax Benefits (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Benefits)

- SR&ED 는 연방 정부의 여러 인센티브 중 유일하게 외국 기업(Foreign-Controlled Corpor ations)을 자국 대형 상장 기업(large public)과 같이 분류하여 자국 중소기업과 구별을 둔 조세감면 제도임.
- SR&ED 개요

· 대상: 캐나다 내 R&D 활동 수행 기업
· 정의: 실험 또는 분석에 의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systematic 한 조사 또는 연구
· 조건: Canada Revenue Agency(캐나다 국세청)에 의해 업체의 활동 내역 및 재정 상태 등 을 토대로 적격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

○ 조세감면 table(R&D 비용 500 만 달러의 경우) 예시

구분	Small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Large Public or Foreign-controlled Corporations			
	Credit 비율	Refund 비율	Refund금액 (캐쉬백)	Tax Credit 조세감면	Credit 비율	Refund 비율	Refund금액 (캐쉬백)	Tax Credit 조세감면
200만 달러까지	35%	100%	70만 달러	--	20%	-	-	40만 달러
초과 300만 달러	20%	40%	24만 달러	36만 달러	20%	-	-	60만 달러
	-	-	94만 달러	36만 달러	-	-	-	100만 달러

자료: Invest In Canada

○ 각 주정부의 SR&ED tax credit 을 결합한 표는 아래와 같음.

주	Small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Large Public or Foreign-controlled Corporations				
	주정부 Credit		연방정부 Credit		결합 조세감면율	주정부		연방정부		결합 조세감면율
	비율	Refund	비율	Refund		비율	Refund	비율	Refund	
Alberta	-	-	35%	Yes	35.00%	-	-	20%	No	20%
British Columbia	10%	Yes	35%	Yes	41.50%	10%	No	20%	No	28%
Manitoba	20%	No	35%	Yes	48.00%	20%	No	20%	No	36%
New Brunswick	15%	Yes	35%	Yes	44.75%	15%	Yes	20%	No	32%
Newfoundland	15%	Yes	35%	Yes	44.75%	15%	Yes	20%	No	32%
Nova Scotia	15%	Yes	35%	Yes	44.75%	15%	Yes	20%	No	32%
Ontario	10%	Yes	35%	Yes	41.50%	-	-	20%	No	20%
Prince Edward Island	-	-	35%	Yes	35.00%	-	-	20%	No	20%
Quebec	37.5%	Yes	35%	Yes	60.94%	17.5%	Yes	20%	No	34%
Saskatchewan	15%	No	35%	Yes	44.75%	15%	No	20%	No	32%

주 1: 결합 조세감면율 계산시 주정부 credit을 연방정부 tax credit에서 차감하여 계산, British Columbia주의 결합 조세감면율은 주정부 10% + (100-10)*35% = 41.50%
주 2: Ontario주와 Quebec 주는 상기 표 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R&D 프로그램을 운영
주 3: Quebec주에서는 R&D 인력 급여만이 R&D tax credit로 인정
자료: Invest In Canada

○ 참고사항
- 외국인 투자가는 R&D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조세 감면을 받게 되며,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함.
- 500 만 달러를 R&D 비용으로 인정받은 캐나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으로 94 만 달러, credit 으로 36 만 달러 등 총 130 만 달러의 세제 혜택을 입게 되어 외국인 투자가의 tax edit 인 100 만 달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 오히려 캐나다 중소기업에게 더 유리한 제 도라 할 수 있음.

○ SR&ED 지원 자격

지원 자격 조건	제외 대상
- 과학적 혹은 기술적 내용이 포함된 연구 - 내국인의 소유 지분은 50% 이상 - 연구의 주체나 회사의 대표가 1 년에 6 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	- 단순 반복적인 기술 또는 특정제품만을 위한 개발기술 -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 및 시장조사 마케팅 활동

○ SR & ED 절차
- 기간: 보고서 작성에서 실사에 이르기까지 총 3~6 개월 가량 검토 과정 소요
- 기본 신청서 (T2 Schedule 32) 작성
- 회계사무소로부터 기업의 T2 Schedule 획득
- 연구 및 개발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은 '기술 리포트' 제출(연구과정을 담은 사진, 도표, 실험 자료와 함께 필요 시 모형이나 시제품도 함께 제출)
- 신청 후 국세청(CRA)에서 3~6 개월간 실사를 거쳐 비용환급 수표나 세액 공제를 받음.
- 한번 지원받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매년 지원 대상에 포함
- 차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NRC: National Research Council)에도 지원 가능
- 연구결과가 실패로 종결되더라도 연구 활동이 향후 기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다시 신청 자격을 부여함.

(자료: Canada Revenue Agency)

□ 주요 주별 조세 인센티브

○ 브리티쉬콜럼비아
- 목표산업(광산업, 국제금융, 영화산업, 뉴미디어)을 선정하여 특별 세제를 적용

광산업	- BC 주 내의 광구 조사에 한해 20%의 세액 공제
국제금융	- 국제 금융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정부 법인세 환급 - 국제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근로자의 주정부 개인소득세 환급
영화산업	- 자국 소속 회사의 영상물 제작에 대해 인건비의 25% 세액 공제 - 외국 회사의 영상물 제작에 대해선 인건비의 11% 세액 공제
뉴미디어	- 신규 미디어 사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주정부 세액 공제

자료: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정부

○ 온타리오
- 목표산업(영화산업, 뉴미디어, 연구개발)을 선정하여 특별 세제를 적용

영화산업	- 영화 혹은 TV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효과 관련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20% 세액 공제. 환급 가능 - 영화 혹은 TV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인건비의 20% 세액 공제
뉴미디어	- Interactive 디지털 미디어 제품의 개발에 소요된 인건비, 마케팅비 및 유통비에 대해 20%의 세액 공제. 환급 가능 - 사운드 녹음 작업에 소요되는 제작비 및 마케팅비에 대해 20%의 세액 공제. 환급 가능
연구개발	- 혁신적인 기술(Innovative)로 판단된 연구개발 소요 비용에 대해 10% 혹은 최대 20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 환급 가능 - 연방정부의 SR&ED 프로그램에 합격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한해 최대 4백만 달러의 세액 공제. 환급 가능

자료: 온타리오 주 정부

○ 퀘벡
- 목표산업(영화산업, 광산업, 연구개발, IT 산업)을 선정하여 특별 세제를 적용.

영화산업	○ 영화 혹은 TV 프로그램 제작 소요비용의 26.25%~37.5%의 세액 공제. 환불 가능 (불어 프로그램의 경우 37.5%)
광산업	○ 광물 및 천연가스의 채굴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5~45%의 세액 공제. 환불 가능(광물 종류에 따라 세금 감면율 변동)
연구개발	○ 다음 연구개발 활동 소요비용에 대해 17.5%의 세액 공제. 환불 가능 -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 연구 활동에 간접 참여한 제삼자에 지불된 수수료의 50% - 대학교 및 정부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일 경우 총 R&D 소요액의 80% - 정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 컨소시움에 기여한 자금
IT 산업	○ IT 인프라, IT 컨설팅, e-commerce 솔루션 개발 업체에 한해 소요 인건비의 30%의 세액 공제. 환불 가능. - 직원 당 한 해에 2만 달러까지 공제대상에 고려됨.

자료: Investissement Quebec

2) 금융 인센티브

○ 정부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 캐나다는 선진 은행 시스템과 발달된 자본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구분	장·단기 부채 지원	자본 조달	정부 자금 지원
대기업	기업의 장·단기 자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캐나다 금융기관의 지원	공공 및 사설 기관을 통한 투자 자금 지원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	신탁은행, 대출 전문 은행 등 선진화된 은행 서비스를 통해 대출 지원	기업 규모에 따라 개인 투자가를 모집하여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며, 유가증권에 대한 조달은 주정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름.	주정부 및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료: Invest In Canada

○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

분류	기관명	지원사항
연방정부 프로그램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BDC) Technology Seed Investment Group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CSBF) Program	신규 설립, 확장,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BDC Venture Capital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 Program	기업의 R&D에 관련된 임금, 자원 및 장비에 대한 세금 보조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국가연구위원회(NRC)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 서비스
	Technology Partnerships Canada	혁신적이며 잠재적 이익이 높지만 위험도가 큰 R&D 투자에 자금 지원
연방정부 프로그램	Precarn	지식 시스템 분야 R&D 투자에 대한 지원 펀드로서 2개 이상의 회사와 1개 대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 진행 시 지원
	Film Tax Credit Programs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프로그램
주정부 프로그램	Canada Ontario Business Centre Sources of Microcredit Financing	개인 사업가의 소규모 사업 진행 시 대출 지원
	Canada Economic Development for Quebec Regions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Western Economic Diversificaiton Canada	밴처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일반 은행보다 완화된 이자율 적용

자료: Invest in Canada

3) 입지 인센티브

○ 사회간접자본

- 캐나다는 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		○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통신		○ 한국보다 저렴한 수준의 장거리 통화료 ○ 정보통신사업 기반구축정책에 따라 2000 년 이후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 설비를 갖춤.
교통	도로	○ 총 90 만 km 에 달하는 도로를 보유함. ○ 1962 년 완공된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는 최초의 캐나다 대륙횡단 고속도로(7,820km)이자 세계 최장 고속도로임.
교통	도로	○ 대부분의 도로이용료는 무료 ○ 미국과의 호혜협정 체결로 운송업자들은 북미주 전역을 자유롭게 왕래 가능
	철도	○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 길이 보유(국민 1 인 기준)
	항공	○ 국제항공사 및 수백 개의 소형 항공사가 존재하며, 68 개 주요 대규모 공항과 관제탑이 없는 140 개의 소규모 공항을 보유
	수상	○ 세인트 로렌스 5 대호 수로를 통해 미국의 17 개 주와 캐나다 4 개 주간의 수상교역 가능
	파이프라인	○ 화물 수송량은 총 도시간 화물 수송량의 25%를 차지 ○ 알버타 주와 사스카츄안 주의 유전과 가스전에서부터 동쪽의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까지 수백 km 에 이르는 파이프라인들이 로키산맥 위에 건설

○ 공단, 개발지역, 보세구역 입지 특혜
- 캐나다 특성상, 외국인 투자가를 차등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특별 공단, 개발구역 및 보세 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 각 주 정부는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Economic Development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가와의 면담 및 협상을 통해 공장 설립이 가능한 부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Economic Development 와의 협상 시에도 각 주에서 제공하는 Tax Incentive 에 대한 정 보만 제공한다.

다. 투자 장려 및 제한 분야

1) 투자 장려 분야

○ 제조업

자동차 산업	- 일본, 미국에 이어 3 대 수출국 - 북미 자동차 생산량의 16.5% 차지 - 900 개 이상의 자동차 제조 공장 존재 - 자동차 산업에 최근 10 년간 평균 3.5 십억 달러 투자
	- R&D 부분의 정부의 다양한 지원 · Auto21: 정부, 교육기관을 포함한 120 개의 조직에서 230 개에 이르는 조사기관을 지원 · Automotive Research & Development Centre(ARDC): 대체 연료, 엔진 디자인, 안전성 등을 연구하기 위한 500 백만 달러에 이르는 프로그램 · Partnership for the Advancement of Collaborative Engineering Education (PACE): GM, EDS, Sun Microsoft, UBC 의 협력 아래 자동차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디자인 관련 연구
항공 우주 산업	- 세계 5 대 생산국, 550 개사, 80,000 명 종사 -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위성 항법 시스템 공급 - NASA, European Space Agency 와 20 년이 넘는 긴밀한 협력 관계유지
항공 우주 산업	-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한 산업 지원 · Institute for Aerospace Research: 항공산업 전반 조사 · Aerospace Manufacturing Technology Centre: 항공기 핵심기술 개발 및 비용절감 기술 연구 · NRC Industrial Materials Institute: 산업재 개발을 통해 캐나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National Institute for Nanotechnology: 나노 기술의 관점에서 화학, 공학, 엔지니어링, 생물학 등을 연구 ·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자 금 지원 및 경영 자문 역할 · Canadian Space Agency: 우주산업 관련 정부부서 · Defense Industrial Research Program: 방위산업 보조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

자료: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of Canada, Invest in Canada

○ 농산품
- 세계 4 대 농산품 수출국으로 시장 규모는 770 억 달러
- 식품검역기관(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의 감독 하에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 최 고를 지향
- 높은 생산성, 선진 식품 기술 등으로 효율적 생산
- R&D 부분의 세제 혜택
- 최첨단 농업 기술을 보유한 대학

○ 화학산업
- 캐나다의 의약, 우주산업, 광업의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
- 세계 시장의 28.5%에 이르는 북미 지역 시장 공략에 용이
- 화학분야 노동 생산성은 매해 평균 3.9%씩 증가추세
- 알버타, 온타리오, 퀘벡, 노바 스코시아 지역 등에 클러스터 형성

○ 고도 기술 산업
- 질병 연구, 환경기술 개발, 생태계 연구를 통해 인류 복지 증진 및 캐나다 경제에 견인차 역할

농생명	- 일본, 영국 시장 매출액의 두 배에 달하는 시장 보유 - AAFC(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19 개 센터 및 산업 클러스터 지원 - ACAAF(Advancing Canada Agriculture and AgriFood): 농생명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한 240 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
생명공학	- 세계 5 대 선진국 - 북미 최대 규모의 제약 연구단지 보유
환경기술	- 수소 연료 기술 개발에서 선두적 위치 - 몬트리올에 Waste Management 클러스터 소재 -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쉬콜럼비아 주에 대기관리 클러스터 소재 - Canmet Energy Technology Centre(CETC): 세계 5 대 터빈효율 측정 연구소로서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나노기술	- 연방정부, 주정부 및 대학기관의 협력 연구 추진 - 약 200 여 개에 이르는 나노기술 관련 사업 진행 중 -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산하의 9 개 기관에서 나노기술 연구 - 알버타, 브리티쉬콜럼비아, 온타리오, 퀘벡, 사스카츄완 지역에 클러스터 형성

○ 정보통신 (ICT)
- 정보통신 분야 R&D 에 대한 다양한 투자 지원
- 매해 4 만여 명에 이르는 수학, 공학, 순수 및 응용과학 전공 대학 졸업생 배출
- IBM, Xerox, Open Text, Cisco, Nokia, Ericsson, Motorola 등의 글로벌기업들이 산업 연 구를 위해 캐나다에 진출
- CGI Group, XWave, Cognos, Crystal Decisions, Hummingbird 등 세계 수준의 IT 서비스 회사 보유

○ 생명공학
- 2010 년까지 R&D 투자를 두 배로 늘려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세계 5 위 진입 목표
-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퀘벡,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등 지역에 클러스터 형성
- 16 개 의학대학, 100 개 넘는 연구기관의 3 만 명에 이르는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산업관련 커뮤니티 형성
- 세계 8 대 의약 시장을 보유한 의약 산업은 몬트리올과 토론토 등 생명공학 클러스터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 플라스틱
- 세계 4 대 금형 수출국
- 세계 8 대 플라스틱 가공기계 수출
- 플라스틱산업 관련 전공 졸업생이 풍부한 노동 시장

- 특화된 R&D 인프라 보유: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net Institute, Centre de recherche industrielle du Quebec, Materials and manufacturing Ontario, National Research Council

○ 목재 가공업
- 서부는 목제품 생산, 동부는 종이와 펄프 생산으로 특화되어 있음
- 퀘벡, 온타리오, 브리티쉬콜럼비아에 집중
- 국토의 46%가 숲으로 형성
- Softwood lumber 부분 세계 2 대 생산국
- Paprican, Feric, Forintek 등 다양한 연구단체를 통한 산업 증진

2) 투자 제한 분야

○ 통신업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 종 전기통신사업자(Type 1: 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기반 소유)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취득을 20%로 제한(간접취득은 33.3%)
- 단, 해저 광케이블이나 인공위성을 보유한 통신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재판매(Resale) 하는 경우에는 지분 취득에 제한이 없다.

(자료: Telecommunication Act)

○ 방송
- 캐나다방송법(Canadian Broadcasting Act)에 의거, 공영 혹은 케이블 방송업의 소유자는 캐나다인으로 한정하고, 외국인의 지분 취득은 20%로 한정
- 또한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 - cation Commission)는 캐나다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TV 와 라디오 방송국에 일정비율 이상으로 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그램 방영을 의무화함(Canadian Content Rules)
- TV 방송국
· 모든 TV 방송국에서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국산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연간 방송 시간의 60% 이상)
· 특히 오후 6 시부터 자정까지 저녁시간에는 국영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방송은 60% 이상, 상업방송은 50% 이상의 캐나다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함.
- 라디오 방송국
· 라디오 역시 TV 와 마찬가지로 방송되는 노래의 35% 이상을 캐나다에서 작곡된 곡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캐나다에서 작곡된 곡을 판단하는 데에는 아래의 4 가지 기준(MAPL 기 준)이 적용되며, 이 중 2 가지 기준 충족 시 캐나다에서 작곡된 곡으로 인정
① M(Music): 캐나다인이 작사/작곡한 음악
② A(Artist): 캐나다인에 의해서 연주된 음악
③ P(Production): 캐나다에서 녹음/라이브로 연주된 음악
④ L(Lyrics): 캐나다인에 의해 작사된 음악

(자료: 캐나다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

○ 문화산업
- 서적 출판 및 배포
· 캐나다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인수 금지(단, 동 기업이 재정적으로 극히 어려우며, 캐나다 기업 중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

· 외국인 신규 투자는 소수 지분에 대한 공동투자로 제한하고, 간접 투자를 통한 인수는 인수한 이후 2 년 내 캐나다인의 소유로 전환시키거나 캐나다에 순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경 우에만 허용
- 신문 및 정기간행물
· 500 만 달러 이상의 모든 투자는 투자청의 심의 대상이며, 500 만 달러 미만의 금액도 사안에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999 년 5 월 미국과의 잡지분쟁 타결로 소유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최소 80%의 캐나다 내용을 포함하는 잡지 광고는 조세 감면 가능
- 영상물 배급
· 기존 캐나다 v 업체의 인수는 불허하고, 신규투자는 전매상품의 수입 및 배포에 한해 허용. 캐나다 내 외국인 소유업체에 대한 직·간접 인수는 투자가의 소득분을 캐나다에 재투자 한 다는 조건하에 허용

(자료: 캐나다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 운송 서비스
- 캐나다 운송법(Canada Transportation Act)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자국 항공사 지분은 최대 25%로 제한함.
- 자국 항공사의 의사결정권 중 75%는 내국인의 소유 하에 있어야 함.

○ 우라늄 생산
- 자국 산업을 보호를 위해 원자재 생산 단계에 있어 외국 투자자의 지분 소유 최대 49%로 제한함.
- 단, 내국인의 관리 하에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내국인 사업 파트너가 존재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외국 투자자에게 초과투자 허용

(자료: 캐나다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 원유 및 가스 채굴업
- 캐나다내 원유 및 가스 채굴 사업 참여시, 캐나다 자원부 장관은 자국의 이익(Benefit Plan)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 승인을 결정(Benefit Plan 이외에 기타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 가능)

(자료: Canada Oil and Gas Operations Act)

○ 금융 서비스
- 특정 소유 지분 규제나 거주지 조항은 존재하지만 투명성과 자국 사업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 5 년마다 법 조항 수정(최근 수정: 2007 년 3 월, Bill C37)
- 기존 50 억 달러 이상에서 80 억 달러 이상으로 “대규모 은행”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의 규제 기준 완화

(자료: Canada's Sectoral Investment Regimes, Sharpening Canada's Competitive Edge)

○ 보험업
- 캐나다보험법(Insurance Companies Act)에 의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보험사 지분의 10% 이상 취득 불허

○ 항공업
- Air Canada Public Participation Act 에 의거, 외국인은 캐나다 국적항공사인 Air Canada 지분의 25% 이상 취득 불허

○ 어업
- 외국인이 49%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어류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어업권(Commercial Fishing License) 발급 불허
-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계 선박의 조업을 불허

(자료: 캐나다 해양수산부(Fisheries and Ocean Canada))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 설립 절차(Foreign Corporation's Subsidiary in Canada)

1) 법인 분류

현지 법인은 영업범위에 따라서 연방법인(Incorporating at the federal level), 주법인(Incorporating at the provincial level)으로 나누어지며, 소유방식에 따라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합자기업(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조합(Cooperative)으로 분류 된다.

<u>기업 소유 방식에 따른 분류</u>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s)	- 개인소유자가 기업의 모든 채무 및 법적 사항에 대해 책임짐. - 부채에 대한 무한 책임 - 개인소유자가 자신의 본명을 상호로 쓰는 경우, 사업등록을 할 필요 없음.
합자/합명회사 (Partnerships)	- 두 명 이상의 투자자에 의해 설립 - 조약사항 불이행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검토하에 사칙을 제정해야 함 - 이익 분배는 조약사항을 따름.
주식회사 (Corporations)	- 주주나 소유주와 분리된 법적 실체 - 주주는 기업의 부채나 법적 사항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조합 (Cooperatives)	- 회원 및 고객들에게 상품, 서비스 및 수익 제공 목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됨. -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모든 의사결정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짐.

자료: Canada Business

영업 범위에 따른 분류

연방법인 (Incorporating at the federal level)	주법인 (Incorporating at the provincial level)
- 캐나다 전역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모든 주에서 상호 사용 가능 - 연간 매출 1,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 500만 캐나다 달러를 초과할 경우, 현지 법인과 모기업의 매출 및 자산내역을 포함한 재정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함	- 법인을 설립한 주에서만 기업활동 가능 주에 따라 외국기업의 등록(Registration) 혹은 면허(License) 요구

자료: 캐나다 연방기업법(CBCA)

2) 투자신고 및 투자사전심의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1985년 제정된 캐나다투자법(ICA)에 의거, 투자액수, WTO 회원국, 정부 보호 핵심 국가산업 여부에 따른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규제 없이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신고 및 심의는 산업부 산하 투자심의부서(Investment Review Division)에서 이루어진다.

투자신고 (Notifiable transaction의 경우)	- 캐나다투자법(ICA)에 명시된 투자제한 조건 이외의 투자는 투자 개시 전이나 투자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투자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투자자에게 신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심의신청 (Reviewable transaction의 경우)	- 캐나다투자법(ICA)에 명시된 투자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투자는 심의신청(Application for review)을 해야 하며 필요시 서면 각서(Written Memorandum)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투자승인 여부는 심의신청 후 45일 이내에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심의기간이 연장됨. - 심의 기간 내에 별도의 승인여부 통보가 없을 경우 투자승인으로 간주

자료: Investment Canada Act

3) 업체명 조회 및 등록

캐나다 정부는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의 상호 및 상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NUANS (Newly Upgraded Automated Names Search)라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UANS에 희망 상호 및 상표를 입력하면 50개의 유사 상호를 정리한 'NUANS 보고서'가 출력된다. NUANS 보고서는 연방 법인 등록 시 혹은 NUANS 서비스 직접 이용 시 출력 가능하다.

NUANS 보고서 출력 방법

연방법인 등록 시 (The NUANS Real Time System)	- 온라인을 통해 연방법인 등록 시 Corporations Canada의 NUANS RTS (RealTime System)를 통해 출력 - 각 보고서 출력 시 20 캐나다달러의 서비스 이용료(GST 제외)가 부과됨
대행 서비스 이용 시 (NUANS Registered Member)	- NUANS 공식 검색대행업체를 통해 보고서 출력 - 검색 대행, 보고서 출력 및 기업등록에 필요한 서류절차 대행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료: 가입비 125 캐나다달러, 월 사용료 100캐나다달러

자료: NUANS

4) 현지법인 설립

○ 현지법인 설립 시, 연방법인과 주법인 중 택일하여 설립
- 주별로 법인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 사항은 연방법인 설립 절차와 유사
-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50 캐나다달러인 반면,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경우 200 캐나다달러로 보다 저렴
· 온라인 신청은 Canada Online Filing Centre의 웹사이트 이용
· 우편신청시 Corporations Canada "Information Kit"에서 양식 출력

연방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

Form1(Articles of Incorporation)	상호, 배당방법 등 기본사항
Form3(Notice of Registered Office or Notice of Change of Registered Office)	사무실 소재지 정보
Form6(Notice of Directors or Notice of Change of Directors or Notice of Change of Address of a Present Director)	이사회 정보
NUANS 보고서	상기 양식 1,3,6과 함께 제출 (필요에 따라 선 제출 가능)

자료: 캐나다 연방기업법(CBCA)

주요 주법인 등록 서류

구분	온타리오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제출 서류 및 비용	- 온타리오주 기업법(BCA)에 의거하여 'BCA Form1'작성 - 신청비용: 360 캐나다달러(온라인 신청 시 300 캐나다달러)	-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가능 - 제3자가 법인등록 시 추가 서비스 비용 부과
해당 웹사이트	http://www.cbs.gov.on.ca/mcbs/english/4VWQQC.htm	www.corporateonline.gov.bc.ca

5) 외래기업 등록/면허 취득(ExtraProvincial License)

캐나다 내 다른 주에서 연방 또는 주법인 활동 시, 외래기업 등록/면허 취득(ExtraProvincial Registration/License)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사항은 유사하다.

온타리오주 외래기업 등록/면허

분류	외래기업 등록 (ExtraProvincial Registration)	외래기업 면허 (ExtraProvincial License)
대상	연방법인이나 캐나다 내 타주 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지점)의 경우
제출 서류	온타리오주 기업정보법(CIA)에 의거, 'CIA Form 2'를 작성하여 영업 개시 60일 이내에 제출	- EPCA Form 1(Application for ExtraProvincial License), Form 2(Appointment of Agent for Service)와 NUANS 보고서 함께 제출 - Form2에서 온타리오 거주자 또는 상주법인을 서비스 대리인(Agent of Service)으로 선정해야 함

6) 사업자 등록번호(BN: Business Number) 취득 및 세무계좌 개설

○ BN이란 연방정부와 기업 간의 재정, 세무 업무 간소화를 위해 부여되는 번호체계 시스템
-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는 전제 조건
- 연방정부번호(BN)와 각 주정부 번호가 별도로 존재함.

○ 총 15개의 숫자 및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됨.
- 9개의 앞자리 숫자는 각 사업을 의미함.
- 이어지는 두 개의 글자와 4개의 숫자는 각 사업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 계좌의 종류를 나타냄.

	종류	해당 내용
4대 주요 계좌	RT	상품 및 용역세(GST/HST)
	RP	고용세
	RC	법인세
	RM	수출입 관세

○ 기타 계좌로는 RR(registered charity), RD(excise duty), RE(excise tax), RN(insurance premium tax), RG(air travelers security charge) 등이 있음.

○ 각 계좌는 해당 기업 활동에 대한 한 가지 세부 사항만을 포함하므로, 하나의 계좌로 전체 기업 활동을 포괄할 수 없음.
- GST/HST 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고용세(Payroll)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됨.

○ 예를 들어, “Business X"라는 기업체가 캐나다 국세청(CRA)에 하나의 GST/HST 계좌, 두 개의 세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해당 기업체가 받게 될 BN은 아래와 같음.

사업자 등록번호	123456789
GST/HST account	123456789 RT 0001
1st payroll deductions account	123456789 RP 0001
2nd payroll deductions account	123456789 RP 0002

○ 각 주정부에도 판매세 등의 세금 부과를 위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해당 주	사업자 등록 사항
온타리오	- BIN(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취득해야 함. - Ontario Business Registration Form1 작성 - 60캐나다달러의 수수료 - BRO(Business Registration Online)시스템을 통해 온타리오 영업 면허(MBL) 취득
노바스코시아 브리티쉬콜럼비아 퀘백	- 사업자등록 온라인 시스템(BRO)을 통해 해당 주정부 웹사이트로 자동으로 정보 연동 - 노바스코시아: Nova Scotia Business Registry (NSBR) - 브리티쉬콜럼비아: OneStop Business Registry - 퀘백: Revenu Quebec programs

자료: Canada Revenue Agency

7) 기타 면허 취득 및 세무계좌 개설

주별로 영업종류에 따라서 추가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세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주별로 필요한 면허나 세금 계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관할 정부에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분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담당 기관	Ministry of Finance www.fin.gov.on.ca	Ministry of Provincial Revenue www.rev.gov.bc.ca/ctb/
해당 사항	소매판매업의 경우, 판매세(PST)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시청에 사업자등록 필수	

나. 지점 설립 절차(Foreign Corporation's Branch Office in Canada)

1) 개요

○ 외국기업의 지점에는 소득세법(Income Tax rate Act)에 따라 지점세 (Brach profit tax)가 최대 25%까지 추가 적용되나,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하여 5%의 지점세를 적용받는다.

○ 외국기업의 지점은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며, 법정 분쟁 시 국내기업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료: "Doing Business in Canada", Osler, Hoskin & Harcourt LLP)

2) 세부 설립 절차

○ 지점은 타 국가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외국기업이 캐나다 내에서 영업권만을 취득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주 및 연방정부에 법인등록서류 제출' 절차를 제외하고 매우 유사하다.

- 투자신고 및 투자사전심의
- 업체명 조회 및 등록
- 외래기업 면허(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
- 사업자 등록번호(Business Number) 취득 및 세무계좌 개설
- 기타 면허 취득 및 세무계좌 개설

○ 지점 설립 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서류는 외래기업 면허(Extra Provincial License)로 외부에서 설립된 기업에게 발행하는 영업 허가서류에 해당된다.

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Liaison Office in Canada)

캐나다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역시 공식적인 사업체(Legal entity)로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구분하는 경계는 다소 모호하며, 캐나다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대부분은 국내 및 해외 정부기관이거나 교육 기관이다.

라. 공장 설립 절차

캐나다 내에 공장 설립 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나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지점 설립 절차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장부지 확보 및 공장 임차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며 공장 설립을 추진할 경우, 먼저 주정부에 공장 설립 의사를 통보하면 관심 후보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투자가를 지원하고 있다.

설립 규제관련, 각 도시별로 규제 기준 및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 설립 위치를 정하는 시기부터 도시별 투자유치 담당자와 함께 충분히 검토,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며, 환경오염 문제에 관하여 연방 및 주정부에서부터 각 시 정부에 이르기까지 3중으로 감독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공장 설립이 요구된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캐나다의 산업단지 개요

캐나다의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별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방정부인 시정부에서 관리하는 시 공단지역(Industrial Zone)과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공단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민간공단이다.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연방정부는 개입하지 않으며 공단지역이 소재해 있는 시 정부의 경제개발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시 공단지역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외국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단을 찾아볼 수 없다.

외국기업이 특정도시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등의 특혜는 없다. 그렇지만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지 원제도,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제도 등 각종 기업활동 지원제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권 리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를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부의 대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신청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ACOA(대서양), FORDQ(퀘벡주), FEDNOR(온타리오주 북부), WEDC(서부) 등의 4개 산하기관을 두고 동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주 정부차원의 대표적인 산업지원제도로는 온타리오주 해외시장 개척 기금(TEF), 기업혁신 및 생산성제고 지원제도(OIPS), 퀘벡주의 수출진흥프로그램

(APEX)과 산업 개발지원제도(CQIDP) 등이 있다.

나. 자유무역지대

현재 캐나다 내에는 경제관련 특수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 일컬어지는 경제 관련 특수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사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단지역이나 민간기업들의 공단지역이 각지에 형성되어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원주민들의 국경 통과 시 개인사용 목적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 주요 산업단지

- Annacis Island Business Park
- Crestwood Industrial / Business Park
- Tilbury Business Park and Delta Industrial centre
- Great Plains Industrial Park
- Westwind Industrial Park
- Cambridge Business Park
- London Industrial Park(Trafalgar & Oxford)
- Welland Industrial Park(Southwell, Ontario Industrial & North Welland)
- Gateway Industrial Park, Sault Ste Marie
- Vaughan

London Industrial Park (Trafalgar & Oxford)					
소 재 지	London, Ontario(온타리오주 남서부지역)				
부지면적	2백8십만km2	조성주체	런던시(지방정부)		
공단성격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자동차조립/부품, 플라스틱, 기계, 식품가공, 인쇄, 의료기술 등 발달				
입주비용	공단지: $65,000 ~85,000/acre				
교통	항만	5대호로부터 차량으로 2시간 거리			
	철도	토론토, 몬트리얼, 시카고 등과 철도로 연결			
	공항	London International Airport 보유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2시간 거리			
	도로	Hwy 401, 402, 403 등 주요 고속도로 통과			
전 력	- 전력 공급 풍부, 현재 200 MVA 용량, 27,600V 공급 - 월 50-1,000 KW 사용시: · 0 - 250 KW - C$10.88 센트/KW · 250 - 12,250 KW - C$7.43 센트/KW				
용 수	용수 공급 원활, 월 수도료 기준 C$53.29센트/m³				
통신	첨단통신 네트워크 완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사무, 기술인력 총 20 만 명 보유. - 시간당 평균 임금: 일반기계공 C$16.50, 용접 C$15.50, 금속공 C$18.00				
외국기업 입주현황	3M Canada, Cami Automotive 등 대표적 기업				
우대조치	온타리오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금융, 수출 및 기술 개발 제도 활용 가능, 주-시 정부 차원 창업비 지원책 마련				
입주여건에대한 KBC 의견	동 지역에 발달한 산업과의 유관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진출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ity of London			
	주 소	300 Dufferin Avenue, P.O. Box 5035, London, ON N6A 4L9			
전화	1-519-661-4535	팩스	1-519-661-5331	담당자	Mr. Mathew Fischer, Director

Annacis Island Business Park			
소 재 지	Hwy 91 & Richmond Connector, Delta, B.C.		
부지면적	1,046,710m2	조성주체	Gorsvenor International Canada Ltd./Royal Le Page / Town Group (개인기업)
공단성격	서울 여의도와 유사한 섬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 도로, 철도, 공항에 근접 하며 미국 국경과도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요충지로서 주로 유통산업 업체로 구성		
입주비용	- 구입 시: C$33 – 58 만/acre - 임차 시: C$5.25 – 7.75/sq.ft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입주 가능		
교통	항만	Delta Seaport 에서 20km	
	철도	CN rail 에서 10km 이내	
	공항	Richmond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20km	
	도로	Hwy 91에서 5km, Hwy 401 인접	
전 력	○ BC 전력공사에서 관할 (based on consumption of 400,000 kWh per month on 1,000 KW demand) - 산업용 전력 사용료: $4.42/month - demand charge: consumption >35 kW: NIL next 115 kW: $3.54 / kW all additional kW: $6.79 / kW - Energy Charge: > 14,800 kWh $0.0691 / kWh All additional kWh $0.0332 / kWh - Minimum charge: $13.02 per month - Terasen GAS 관할: C$3.718/GJ		
용 수	C$0.3222/m³ (상수료는 없고 하수료 개념으로 부과. 분기당 최소 C$30.56 부과 리치먼드 시에서 관할)		
통신	- Telus: 1 commercial line - 설치: C$112 + Tax (14%) - 기본사용료/월: C$52.80 + Tax (14%) -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종합대학이 3 개 소재하여 인력조달 사정은 양호한 편임 - 임금은 사무직 C$1,800-3,000/월, 생산직이 C$2,000 전후로 캐나다 여타지역과 비슷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총 입주업체 150여 사 중 약 40%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KBC의견	- 교통이 편리하고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창고 및 물류센터로 활용 유망 - 제조업은 경공업위주 입주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Royal Le Page	
	주 소	# 400-885 Dunsmuir St., Vancouver, B.C., V6C 1N8	
전화	1-604-683-3111	팩스	1-604-683-0432
담당자	Mr. Ken Blunt		

Crestwood Industrial / Business Park					
소 재 지	Fraser Road – Westminster Hwy – Jacombs Rd – NO. 6 Road, Richmond, B.C.				
부지면적	2,428,026m2	조성주체	Bentall Properties (개인기업)		
공단성격	서부캐나다의 부동산 및 관리로 유명한 벤톨사에서 기획한 주요 산업 단지 로서 밴쿠버 국제 공항이 위치한 리치몬드시에 위치. 미 국경과 연결되는 Hwy 91에 근접한 요충지이며 주로 컴퓨터 산업과 관련된 유통업체가 입주함..				
입주비용	- 구입 시: C$65 만 – 110 만/acre - 임차 시: C$5.50 – 8.75/sq.ft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입주 가능				
교통	항만	Delta Seaport에서 15km			
	철도	CN Rail에서 20km			
	공항	Richmond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에서 10km 이내			
	도로	Hwy 91에서 10km 이내			
전 력	○ BC 전력공사에서 관할 (based on consumption of 400,000 kWh per month on 1,000 KW demand) - 산업용 전력 사용료: $4.42/month - demand charge: consumption >35 kW: NIL next 115 kW: $3.54 / kW all additional kW: $6.79 / kW - Energy Charge: > 14,800 kWh $0.0691 / kWh All additional kWh $0.0332 / kWh - Minimum charge: $13.02 per month - Terasen GAS 관할: C$3.718/GJ				
용 수	C$0.3222/m³ (상수료는 없고 하수료 개념으로 부과. 분기당 최소 C$30.56 부과. 리치먼드시에서 관할)				
통신	- Telus 사 관할 (1 commercial line) - 설치비: C$112 + Tax (14%) - 기본사용료/월: C$ 52.80 + Tax (14%) - 시외, 국제전화는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종합대학이 3 개 소재하여 인력조달 사정은 양호한 편임. - 임금은 사무직 C$1,800-3,000/월, 생산직이 C$2,000 전후로 캐나다 여타지역과 비슷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총 입주업체 약 100여 개사 중 35%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KBC 의견	주요 고속도로 및 교통이 편리하며 소비시장에 인접하여 주로 유통업관계, 특히 전자제품의 유통업체가 주위에 많아 전자 유통업체의 물류센터로 이용				
공단연락처	업체명	Bentall Properties			
	주 소	3100-595 Burrard St, Vancouver, B.C., V7X 1B1			
전화	1-604-661-5000	팩스	1-604-661-5055	담당자	Mr. Bruce Tama

Great Plains Industrial Park					
소 재 지	52nd St & Glenmore Trail S.E., Calgary, Alberta				
부지면적	–	조성주체	캘거리시		
공단성격	캘거리 남부 시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동 공업단지는 주로 경공업 및 통신 등 첨단산업이 유통업위주로 개발된 시 관리공단으로서 1995년에 개발				
입주비용	C$15만/acre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없음 (약 1,000km 떨어진 밴쿠버항 이용)			
	철도	CN Rail에서 7km			
	공항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20km			
	도로	Hwy 2 에서 5km			
전 력	○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가격상이 ○ 5,000KWH/월 이하 사용시 - 기본요금: C$12.45/월 - 사용료: C$0.08972/kWH ○ 5,000KWH/월 초과 사용 시 - 기본요금: C$5.50/월 - 사용료: · 최초 2500 KW – C$263.00, · 초과분: C$0.08079/kWH overall average pending on the market consumption ○ Natural Gas Direct Energy Regulated Services 에서 관할 - 사용료: $6.697/GJ				
용 수	○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 상수료(according to water meter size from 15mm – 250mm) - 기본요금: C$10.74 – 235.85 + 사용료 - 사용료: · 100m³ 이하- C$1.1224/m³ · 101~900 m³: C$0.9452/m³ · 1,000m³ 이상: C$0.8754/m³ 하수료: 상수료의 2/3% 부과				
통신	- Telus Corp. 에서 관할 - 1 개의 상업용 선 설치비: C$75 + (Tax, 6% GST) - 월 사용료: C$37.00 – 40.66 + (Tax, 6% GST) - Emergency 911 Fee: C$0.13 –0.44 + (Tax, 6% GST) -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석유화학 및 첨단산업관련 양질의 인력 보유했으나, 최근의 인력난이 심화됨 - 사무직은 월 C$1,500-3,000, 생산직은 월 C$ 2,000 전후이며 연구직의 임금은 분야에 따라 상당한 고수준임.				
외국기업 입주현황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KBC 의견	- 캘거리는 중부 산업중심도시로서 2002 엑스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 대기업들이 다수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캐나다 내 가장 성장이 유망한 지역 - 특히, 동 지역에는 통신 등 첨단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동 업종 및 유통업체 입주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The City of Calgary. Corporate Properties Group #8052			
	주 소	P.O.BOX 2100, Postal Station M, Calgary, Alberta, T2P 2M5			
전화	1-403-268-2276	팩스	1-403-268-1948	담당자	Mr. Scott Hooper

Westwind Industrial Park					
소 재 지	47TH Street N.E. & McKnight Blvd., N.E., Calgary, Alberta				
부지면적	158,201sq.ft	조성주체	캘거리 시		
공단성격	캘거리 시 관할지역으로 시청 도시개발부에서 직접 분양. 경 공업 개발 계획 단지로서 유통업을 첨가할 계획에 있음. - 2007 년 9 월까지 McKnight-Westwinds LRT station 건설 예정				
입주비용	C$17.5만/acre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없음 (약 1,000km 떨어진 벤쿠버항 이용)			
	철도	CN Rail 에서 5km			
	공항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4.5km			
	도로	Hwy 91 에 근접, Hwy 2에서 7km			
전 력	○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가격상이 ○ 5,000KWH/월 이하 사용시 - 기본요금: C$12.45/월 - 사용료: C$0.08972/kWH ○ 5,000KWH/월 초과 사용시 - 기본요금: C$5.50/월 - 사용료: · 최초 2500 KW – C$263.00, · 초과분: C$0.08079/kWH overall average pending on the market consumption ○ Natural Gas Direct Energy Regulated Services 에서 관할 - 사용료: $6.697/GJ				
용 수	○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 상수료(according to water meter size from 15mm – 250mm) - 기본요금: C$10.74 – 235.85 + 사용료 - 사용료: · 100m³ 이상: C$1.1224/m³ · 101-900m³: C$0.9452/ m³ · 1,000m³ 이상: C$0.8754/m³ 하수료: 상수료의 2/3% 부과				
통신	- Telus Corp. 에서 관할 - 1 개의 상업용 선 설치비: C$75 + (Tax, 6% GST) - 월 사용료: C$37.00 – 40.66 + (Tax, 6% GST) - Emergency 911 Fee: C$0.13 -0.44 + (Tax, 6% GST) -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석유화학 및 첨단산업관련 양질의 인력 보유 및 조달 용이 - 사무직은 월 C$1,500-3,000, 생산직은 월 C$2,000 전후이고 연구직의 임금은 분야에 따라 상당한 고수준임.				
외국기업입주현황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KBC 의견	- 캘거리는 중부 산업중심도시로서 최근 대기업들이 다수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캐나다 내 가장 성장이 유망한 지역임. - 특히, 동 지역에는 통신 등 첨단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동 업종 및 유통업체 입주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The City of Calgary, Business Dev. Mgr, Economic Development			
	주 소	P.O. Box 2100, Stn. M. Calgary AB T2P 2M5			
전화	1-403-221-7899	Toll Free	1-888-222-5855	담당자	Mr. Richard Pootman

Cambridge Business Park			
소 재 지	Cambridge, Ontario(온타리오주 남부지역)		
부지면적	345 hectares	조성주체	Cambridge시 (지방정부)
공단성격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자동차부품, 자동차조립, 기계, 금속가공, 항공부품업이 발달		
입주비용	공단지: C$210,000/acre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입주 가능		
교통	항만	에리, 휴론, 온타리오 호수로부터 1시간 거리	
	철도	토론토, 몬트리얼 등 대도시와 철도로 연결	
	공항	Regional of Waterloo Airport와 인접,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	
	도로	Hwy 401, 국도 24, 8번 도로 등 통과	
전 력	○ Cambridge 시 와 North Dumfries Hydro 공동 관할 (전력 공급 풍부, 현재 2 MVA 용량, 27,6 kV 공급) - 월 1000 – 5,000 kW 사용시 * Access Charge: $787.32/month * Distribution kW Charge: $2.9007 / kW * Admin. Fee: $0.25 / month * Wholesale Market Services: $0.0062 / kWh * Debt Retirement Charge: $0.007 / kWh * Transmission Service: $2.0900 / kW * Transformation Services: $1.7360 / kW * Transformer Allowance: $0.60 / kW - 월 >5,000 KW 사용시 * Access Charge: $4,382.05/month * Distribution kW Charge: $1.6433 / kW * Admin. Fee: $0.25 / month * Wholesale Market Services: $0.0062 / kWh * Debt Retirement Charge: $0.007 / kWh * Transmission Service: $1.9804 / kW * Transformation Services: $1.7671 / kW * Transformer Allowance: $0.60 / kW ○ Natural Gas – Union Gas Ltd. (Westcoast Energy Inc.)관할 - 연간 평균 140,000 – 40,000,000m³사용 * Gas-Commodity rate: $0.361119/m³ * Transportation to Union Gas: $0.033566/m³ * Storage: $0.009309/m³ * First 1,400 m³: $0.051701/m³ * Next 4,600 m³: $0.041427/m³ * Next 124,000 m³: $0.030859/m³ * Next 270,000 m³: $0.024743/m³ * All over 400,000 m³: $0.022978/m³ * Monthly Fixed Charge: $16.00		
용 수	○ 공단 내 약 500 만 갤런의 저수지 및 150 만 갤런 물탱크 보유. ○ 수도료: total water consumed @ $0.8540/m³, plus monthly service charge ○ 하수료: total water consumed @ $0.6525/m³, plus monthly service charge - 수도 Monthly service charge(water meter size: 25mm – 300mm) * $4.95 – $129.04/month - 하수 Monthly service charge(water meter size: 25mm – 300m) * $2.91 – $95.30/month		
통신	○ Bell Canada 서비스 지역(14% Tax) - 1 상업용 라인 설치비용: $55.00 - 월 사용료: $18.48 - emergency 911 fee: $0.19 - touchtone service: $2.80 ○ 광섬유 등 첨단 통신 네트워크 Atria Networks Inc. 와 Bell Canada 에서 관리 - LAN speed 10Mbps – 100Mbps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주변 기술인력 45 만 명 보유, 고급인력 풍부 - 시간당 평균 임금: 일반기계공 C$13.80, 용접 C$14.90, 빌딩관리인 C$ 10.20, 금속 공 C$20.10				
외국기업 입주현황	Toyota, Ciba Geigy, Allen Bradley 등 대표적 다국적 기업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온타리오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금융, 수출 및 기술개발 제도 활용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KBC의견	고급인력을 요하는 자동차, 금속가공업 관련 첨단 산업 진출 요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Business Development Department The Corporation of the City of Cambridge			
	주 소	73 Water Street North, P.O. Box 669, Cambridge, ON N1R 5W8			
전화	1-519-740-4535	팩스	1-519-740-4512	담당자	Mr. Donald G. Eastwood

Welland Industrial Park					
소 재 지	Southwell, Ontario Industrial & North Welland (온타리오 주 남서부)				
부지면적	300만km2	조성주체	웰런드시 (지방정부)		
공단성격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미국 국경과 1시간 내 인접, 도로, 철도 및 항만 시설 등 교통 요지				
입주비용	공단임대료 1/2acre당 C$17,500 (Southwell 기준)				
교통	항만	Welland 운하 건착장 시설 완비			
	철도	CN, CP 철도 서비스를 통한 미 뉴욕주 버팔로 직결			
	공항	Niagara District Airport 보유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			
	도로	Hwy 406, QEW 통과, 토론토 및 버팔로 1시간 내 연결			
전 력	- Welland Hydro: 각 공단부지에 15,000 KW 전력 공급 - 월 50-1,000kw 사용시, 0-250 KW - C$11.05 센트/KW 250-12,250 KW - C$7.25센트/KW				
용 수	- 용수공급 1 일 2,100 m³, 하수처리 1,600 m³/일 - 월 수도료 기준 48.95 센트/m³				
통신	Bell Canada 광섬유 통신시설 등 첨단 네트워크 완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나이아가라 지역 내 약 16 만 명 고급인력 보유 - 시간당 평균 임금: 공작기계공 C$11.02, 용접 C$10.64, 금속연마공 C$17.15				
외국기업 입주현황	TRW Canada, Atlas Specialty Steels 등 대표적 기업				
한국입주 기업명단	한국 삼미그룹 현지법인 Atlas Specialty Steels				
우대조치	온타리오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금융, 수출 및 기술개발제도 활용 가능. 시 정부 차원에서 공단부지 선정 지원				
입주여건에대한 KBC 의견	시 관할 이외에 민간공단들이 입주업체 유치에 치열하여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입주 가능				
공단연락처	업체명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orporation of the City of Welland			
	주 소	411 East Main Street, Welland, ON L3B 3X4			
전화	1-905-735-1700	팩스	1-905-732-1919	담당자	Mr. Dan Degazio, Mge

Gateway Industrial Park				
소 재 지	Sault Ste. Marie, Ontario			
부지면적	16십만km2	조성주체	수세마리시(지방정부) 및 Algoma 철강 (사기업)	
공단성격	Algoma 철강에 인접한 호반 개발지로 입주업체는 전기요금 15-20% 할인 혜택 수혜			
입주비용	분양가는 1 acre당 U$15,000~25,000 이나 협상 가능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입주 가능			
교통	항만	Algoma 항만시설 (Marina Port Facility)		
	철도	Wisconsin Central 철도 및 캐나다 국철(CN) 연결		

	공항	공단으로부터 15분 거리에 대규모 활주로를 갖춘 공항 소재
	도로	미국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및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 17번과 연결
전 력	Great Lakes Power 및 Central Gas사가 할인율로 공급	
용 수	오대호 인접으로 용수 풍부	
통신	광섬유 통신 시설 등 통신시설 완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고기능 인력의 즉시 고용 가능	
외국기업 입주현황	미국 Algoma Steel Georgia Pacific - Flakeboard 합작회사	
한국입주 기업명단	한국 General Metal Diffusion 社(담당: Andrew Park, Jong You)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연방 및 지방정부의 對기업 지원책 및 인근대학 등이 운영하는 인력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입주여건에 대한KBC 의견	인프라, 교통 및 전력, 용수 등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고임금 및 구내 시장 협소가 애로사항	
공단연락처	업체명	Sault Ste. Marie Economic Development Corp.
	주 소	99 Foster Dr. Civic Centre Level 3, Sault Ste. Marie, ON P6A 5N1
전화	1-705-759-5432	팩스 1-705-759-2185
담당자	Mr. John , Dir. Economic Development Officer	

Vaughan			
소 재 지	Vaughan, Ontario(토론토 서북경계 소재)		
부지면적	공업지역 총 27,655,831m2	조성주체	시당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 개인 및 기업이 분할 소유
공단성격	토론토 서북쪽에 인접하여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발달된 공업지역		
입주비용	소유주와 계약으로 매수, 임차 가능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지번에 따라 조성이 완성된 곳과 나대지 등이 혼재		
교통	항만	남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한 토론토항을 이용	
	철도	캐나다 국철(CN) 화물 주 분류장이 시 내부에 소재하며 Canadian Pacific 철도의 환적 터미널도 있음	
	공항	토론토 국제공항이 15-30분 거리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Buttonville 공항 소재	
	도로	Hwy 407, 7, 427, 27 이 남쪽에서 7번 도로를 관통하게 됨	
전 력	Vaughan 전력회사가 최고수준의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전기 공급		
용 수	온타리오호를 수원으로 하고 있어 용수가 풍부, 하수시설도 완비		
통신	광섬유 통신망 및 100% 디지털 교환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시설이 광통신 시설인지의 여부는 즉시 확인 가능함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약 65,000명의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인근 광역 토론토 지역에는 200만의 노동인구가 있음.		
외국기업 입주현황	없음		
한국입주 기업명단	한국 한화그룹, 현지 제조합작법인 Acan Windows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입주에 앞서 Vaughan시 관계자와 도시계획법에 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함.		
우대조치	없음		
입주 여건에 대한KBC의견	토론토 인근지로 소비층이 두터우며 양질의 노동력을 지닌 지역		
공단연락처	업체명	Economic & Technology Development Dept. City of Vaughan	
	주 소	2141 Major Mckenzie Dr., Vaughan, ON	
전화	1-905-832-8521	팩스	1-905-832-6248
담당자	Mr. Frank Miele, Commissioner		

7. 노무관리

가. 임금

1) 임금 상승 추세

캐나다의 임금상승률은 상품 용역세(GST) 도입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199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2005	2006	2007	2008
임금상승률 (주당 평균임금 기준)	3.9	2.5	4.3	2.8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2002년 기준)	2.2	2.0	2.2	2.3

자료: 캐나다 통계청

2) 최저 임금

캐나다의 임금 수준은 산업별,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제를 두고 있음. 학생, 고령자, 미경험자, 외국인의 경우 특별 규정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노동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나, 대부분의 피고용자들은 일차적으로 해당 주정부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다. 근로 경험이 있는 성인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 양하지만 대체로 시간당 8달러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다.

<u>주별 최저임금 및 연내 개정 계획</u>

주(준주)명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 시기
Alberta	$8.40	2008. 4. 1
British Columbia	$8.00	2001.11.1
Manitoba	$8.50	2008. 4. 1
New Brunswick	$7.75	2008. 3.31
Newfoundland & Labrado	$8.00	2008. 4. 1
Northwest Territories	$8.25	2003.12.28
Nova Scotia	$8.10	2008. 5. 1
Nunavut	$10.00	2008. 9. 5
Ontario	$8.75	2008. 3.31
Prince Edward Island	$8.00	2008.10. 1
Quebec	$8.50	2008. 5. 1
Saskatchewan	$8.60	2008. 5. 1
Yukon	$8.58	2008. 4. 1

자료: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나. 노동조건

1) 근로 시간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ur Code)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 시간을 기본으로 정하 고 있고, 주당 최소 하루는 휴무가 원칙이다. 지정된 최대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수당은 각 주별로 상 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수당은 기준 근무수당의 1.5배 수준이다. 이는

고용자로 하여 금 일반작업에 더욱 많은 인력을 고용함과 동시에 근무시간 이외 작업을 위해서는 시간 외 노 동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5시간 연속 근로한 노동자에 게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Meal Break)을 제공해야 한다.

주별 근로시간 현황

주(준주)명	기본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초과 근무수당	업무 중 휴식	휴일
연방	1일 8시간 주 40시간(주 48시간)	1.5배	N/A	1주당 1일
Alberta	1일 8시간/주 44시간 (1일 12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1일 근무교대 전 8시간
British Columbia	1일 8시간/주 40시간	1.5 또는 2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32시간 근무교대 전 8시간
Manitoba	1일 8시간 주 40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1일
New Brunswick	주 44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1일
Newfoundland and Labrador	1일 8시간	1.5배	1시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1일 1일 8시간
Northwest Territories and Nunavut	1일 8시간/주 40시간 (1일 10시간, 주 60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1일
Nova Scotia	주 48시간	1.5배	N/A	1주당 1일
Ontario	주 44시간 (1일 8시간,주 48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2회 분할 가능)	1일 11시간 1주당 1일 또는 2주당 2시간 근무교대 전 8시간
Prince Edward Island	주 48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1일
Quebec	주 40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32시간
Saskatchewan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44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6시간 이상 근무 노동자에 한함)	1일 8시간 1주당 1일
Yukon	1일 8시간 주 40시간	1.5배	30분/5시간 연속근무	1주당 2일 근무교대 전 8시간

자료: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2) 휴가 제도

1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들은 캐나다노동법(Canada Labour Code)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반 적으로 연간 2주간의 휴가를 보장 받는다. 휴가기간은 해당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변 동 가능하며 6년 연속 동 사업체에서 근무한 피고용자의 경우, 3주간의 휴가를 보장받을 권리 가 있다.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는 고용주의 판단 또는 피고용자와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고용주의 판단에 의해 피고용자의 휴가가 결정될 경우 최소 2주 전에 당사자에게 공지해 주어야 한다. 단, 고용주는 10개월 이내에 피고용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비는 피고용자의 연간 총 임금(팁 제외)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2주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4%, 3주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6%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휴가비는 보통 휴가 시작 14일

전에 지불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휴가 중 혹은 휴가가 끝난 직후 지불되기도 한다. 단, 고용주와 피 고용자 사이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휴가비 지불을 미룰 수 있다.

캐나다는 연간 8일의 연방 공휴일이 있으며 각 주마다 연간 1일 이상의 주 공휴일이 있다.

공휴일	해당 지역	날짜 (2009년 기준)
New Year's Day*	전체	1월 1일
Bank Holiday	Quebec	1월 2일
Family Day	Alberta, Ontario, Saskatchewan	2월 16일
Louis Riel Day	Manitoba	2월 16일
Heritage Day	Yukon	2월 17일
Good Friday*	전체	4월 10일
Easter Monday	전체	4월 13일
Victoria Day*	전체	5월 18일
Patriots' Day	Quebec	5월 25일
National Aboriginal Day	Northwest Territories	6월 21일
St. Jean Baptiste Day	Quebec	6월 24일
Canada Day*	전체	7월 1일
Nunavut Day	Nunavut	7월 9일
Civic Holiday	Quebec, Yukon을 제외한 전 지역	8월 3일
Discovery Day	Yukon	8월 17일
Labour Day*	전체	9월 7일
Thanksgiving Day*	전체	10월 12일
Remembrance Day*	전체	11월11일
Christmas Day*	전체	12월25일
Boxing Day	전체	12월 26일

주: * 표시는 연방 공휴일
자료: The Holidays Act

3) 해고

캐나다의 노동법 상 다음의 두 가지 사유에 의해 해고 가능하다.

- 근로자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정당한 해고
- 불경기, 구조 조정, 과잉 인력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고용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통보기간을 거친 후 해고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 사회보장제도

1)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캐나다의 모든 고용자들은 피고용자의 퇴직, 노동 장애, 사망 시 피고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단, 퀘벡 주는 CPP와 유사한 the Quebec Pension Plan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18세 이상의 인력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쪽 모두 부담한다. 단, 자영업자의 경우, 양쪽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애연금 수령자, 연금 수령자는 제외 대상이며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입금액은 피고용주의 임금 및 공제 사유를 토대로 부여되는 code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투자 수익 등은 임금계산 시 제외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Net Profit) 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납입금액은 최소 임금과 최대 임금 사이에서 결정되며, 고용주 및 피고 용자의 기부율(contribution rate)은 4.95%(2009년의 경우, 1인당 납입 최대금액은 $2,118.60 임)이고, 기본 공제액은 $3,500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임금 기준액은 매년 1월 평균 임금상 승률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자료: Canada Revenue Agency)

2)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캐나다 정부는 피고용자의 질병, 임신, 육아, 입양, 직업훈련, 구직 및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질병 등 발생 시, 일시적인 재정 지원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EI)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재정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납입으로 충당되며, 연령제한은 없다. 고용자는 급여의 2.42%, 피고용자는 1.73%를 각각 부담(2009년)한다. 연간 최대납입 상한액은 고용자의 경우 $1,024.51, 피고용자의 경우 $731.79로서 고용자가 피고용자보다 1.4배의 납입 의무를 지닌다.

피고용자는 전년도에 법적 최소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수혜대상이 된다. 피고용자가 실업상태로 전환될 경우, 평균납입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경기, 구조조정, 과잉인력에 따른 실업 및 대량 해고 등 피고용자의 과실에 의한 실업이 아닌 경우 정규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52주간의 정규 노동 시간을 채운 피고 용자에 한함) 수혜 기간은 매주 $435씩 14주에서 최대 45주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자료: Canada Insurance Act)

3) 노동 연령 하한선

캐나다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노동으로 인해 교육의 의무가 침해 당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의무 교육 참석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허용, 각 주별로 상이한 연령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채용 시 연방 및 주 별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u>연방 정부 연령 규제</u>

관련법령	나이제한	내 용
Canada Labour Code and Regulations	17세 이하	ㅇ 각 주에서 정한 의무교육 일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여야 하며, 채굴작업과 같은 위험한 외부 작업은 불허함. ㅇ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작업 불가
Canada Shipping Act	15세 이하	ㅇ 어떠한 종류의 상선에도 고용될 수 없음. (단, 가족이 고용주이거나 교통부 장관(minister of Transport)이 허가한 특수 목적의 상선인 경우 허용)
	18세 이하	ㅇ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은 가능하지만 관련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선원 중 의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함. (단, 증기 기관선은 불허)
Explosives Act and Regulations	16세 이하	ㅇ 폭발 위험이 있는 공장이나 창고에는 절대 고용될 수 없음. (단, 21살 이상의 적합한 감독관의 감독 하에는 허용됨)
	18세 이하	ㅇ 폭발물을 실은 차량의 운전은 불허하며, 만약 폭발물의 무게가 2,000kg 이상일 경우, 조수나 보조 차량의 운전사도 불허
	21세 이하	ㅇ 2,000kg 이상의 폭발물을 실은 차량의 운전 불허

자료: 캐나다 노동부

라. 직원 채용

1) 고용 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산하 인력개발원(HRSDC)과 각 주정부는 실업자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채용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Job Bank
- 캐나다 전 지역의 채용정보를 고용주들이 직접 웹페이지에 공지
- 이력서 작성 방법 및 각종 분야의 직업 교육 실시
- 피고용자 관심 분야 직업 검색 가능
- e-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쉽게 등록 가능
- 홈페이지: http://www.jobbank.gc.ca/intro_en.aspx

○ Job Creation Partnerships(JCP)
- 인력개발원(HRSDC) 산하 프로그램으로 피고용자들에게 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실업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육아 목 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노동자가 지원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해당 지원양식(EMP5209)을 작성 하여 가까운 'Service Canada Centre'에 제출하면 된다.
- 홈페이지: www.servicecanada.gc.ca

2) 고령 노동자 고용촉진 프로그램

2008년 캐나다 정부의 세금활용안(Budget 2008)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55~64세) 노동자를 위해 2012년 3월 31일까지 9,000만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설립할 계획이다.

3) 외국인 노동자 고용

<u>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절차</u>

구분	절 차
고용주	1. 구인 사이트에 직원모집 공고 2. 'Service Canada Centre'에 신청서(Application for a Labour Market Opinion, LMO) 제출 3. 인력개발원(HRSDC)에서 심사 후 승인 ○ 심사 기준 - 해당 직업의 진위 여부 - 임금 적정성 - 피고용자 직무교육 여부 -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 가능 여부 - 자국에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4. 외국인 노동자에게 승인 문서(HRSDC LMO) 송부 5. 고용주는 외국인피고용자에게 캐나다이민국(CIC)에 '노동 허가서(work permit)를 신청토록 공지
외국인 피고용자	1. 고용주로부터 서면 고용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직업에 필요한 조건(학력, 근무 경험 등) 충족 여부를 증명할 서류 준비 2. 신체검사 절차 후, 피고용자의 자국 주재 캐나다대사관에서 면접 실시 3. 캐나다 비자 사무소로부터 승인 문서를 수령(노동허가서 아님) 4. 캐나다 입국 후, 이민국에 승인문서, 여권 등을 제출하고 노동허가서(work permit) 신청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하기 위해선 고용허가가 필요하며, 고용하는 고용주 역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담당 기관은 HRSDC(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및 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이며, 퀘벡주의 경우 별도의 신청 양식(Quebec Acceptance Certificate, CAQ)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

4) 주재원 입국 및 체류 관련

연락사무소는 캐나다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방문객의 체류자격을 갖는다.

외국인이 근로를 목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비자(EA: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심사결과에 따라 1년에서 3년 만기로 발급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주재원으로 입국하는 경우와 일반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절차상 차이가 있다.

구분	절 차
일반 취업비자	1.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취업초청 획득 2. 캐나다 인력 자원부(Human Resources Canada)의 취업초청 확인서 (Confirmation of Offer of Employment) 획득 3.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취업비자(EA) 신청
주재원 입국	1.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직접 취업비자(EA)신청 - 캐나다 대사관의 취업초청 확인서를 취득할 필요 없음 ○ 참고: 주재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 국외기업으로부터 국내 관련기업으로 일정기간 부임 - 입국 전 최소 1년간 해외 모기업에 근속 - 간부, 관리직, 전문가의 직위 보유

자료: 캐나다 이민국, 주한캐나다대사관

5) 참고사이트

○ 캐나다 각 주별 노동법률 정보
- http://www.hrsdc.gc.ca/en/labour/employment_standards/ministries.shtml

8. 조세제도

가. 조세 체계

1) 조세 징수기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3개 기관에서 조세를 징수한다.

연방정부	(법인/개인)소득세, 자본세, 상품용역세, 관세, 소비세 등 징수
주정부	(법인/개인)소득세, 판매세, 천연자원의 이용에 관한 소득세 징수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징수

주: 직접세를 부과할 권리는 주 정부에 있으며 기타의 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음.

2) 납세의 의무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캐나다 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다.

3) 세금의 종류

종류	내용	징수 기관
법인세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연방정부, 주정부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연방정부, 주정부
상품용역세	부가가치세와 동일	연방정부
재산세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판매세	물품판매에 따른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함	주정부
소비세	특정물품 소비에 대한 세금(유류, 자동차, 보험료 등)	연방정부

나. 법인세

1) 감세 정책 및 산업 지원

캐나다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각각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을 목표로 2012년까지 통합법인세를 25%까지 차례로 낮출 예정이다.

2) 과세 대상

캐나다 내에 주재하는 기업은 캐나다 국내외에서 획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 기업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 캐나다에 소재하는 비상장 기업 - 1971 년 6 월 18 일 이후 설립 - 외국인에게 경영권 귀속되지 않음 - 주요 의결권은 자국인 소유여야 함
비상장 기업 (Other Private corporation)	- 캐나다에 소재한 비상장 기업 - 세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에 경영권이 귀속되어서는 안 됨.
상장 기업 (Public corporation)	- 캐나다에 사무소 소재 - 캐나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 - 기업의 규모나 지분 구조 등은 세법을 따름.
상장 기업의 지점 (Corporation controlled by a public corporation)	- 자국 상장 기업의 지점인 경우
그 외 기업 (Other corporation)	- 상기 분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경우로 신용조합, 공기업, 일반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함.

3) 연방 법인세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자본 이득의 75%만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38%이지만, 연방 감가 상각률 10%가 적용되어 28%로 적용된다.

○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기업(CCPC)의 경우, 2008 년 1 월 1 일부터 첫 영업소득 40 만 캐나다달러에 대해서 17%의 중소기업특별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 SBD)를 받음. (11%의 세율이 적용)

○ 그 외 일반기업의 경우 19.0%의 세율이 적용(2009 년 1 월 1 일부터)

4) 주 법인세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 기업의 법인세를 징수하며, 세율은 주별로 상이하며, 여러 주에 소득이 분산된 경우, 지역별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

○ 이중과세율(Dual Tax Rates) 적용
- 각 주의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첫 40 만 캐나다달러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저세율(lower rate)과 그렇지 않은 고세율(higher rate)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주별 이중 과세율표

Province or territory	Lower rate	Higher rate
Newfoundland and Labrador	5%	14%
Nova Scotia	5%	16%
Prince Edward Island	3.2%	16%
New Brunswick	5%	13%
Ontario	5.5%	14%
Quebec	8.0%(40만 캐나다달러까지)	11.9%
Manitoba	1%	13%
Saskatchewan	4.5%(50만 캐나다달러까지)	12%
British Columbia	2.5%	11%
Alberta	3.0% (46만 캐나다달러까지)	10%
Yukon	4%	15%
Northwest Territories	4%	11.5%
Nunavut	4%	12%

자료: Canada Revenue Agency

다. 개인소득세

1) 과세대상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 및 캐나다에서 수입을 거둔 모든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1년에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

자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개인의 경우, 기업이 법인세의 형태로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배당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개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 과세 부과를 막기 위해 배당금을 1.25배로 환산한 이후 tax credit(약 25%)을 부여하고 계산함으로써 배당을 재조정한다.

캐나다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해외 원천과세의 총합)은 개인 소득에 전액 반영한다.

2) 연방 개인소득세

연방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기준금액 (캐나다 달러)	적용세율
38,832 이하	15%
38,832 이상 77,664 이하	22%
77,665 이상 126,264 이하	26%
126,264 초과	29%

3) 주 개인소득세

주 소득세의 경우, 적용세율과 기준금액은 주별로 상이하다.

브리티쉬콜럼비아		온타리오	
35,716 캐나다달러 이하	5.06%	36,848 캐나다달러 이하	6.05%
35,717 이상 71,433 이하	7.7%	36,849 이상 73,698 이하	9.15%
71,434 이상 82,014 이하	10.5%	73,698 캐나다달러 초과	11.16%
82,015 이상 99,588 이하	12.29%	-	-
99,588 캐나다달러 초과	14.7%	-	-

주: 퀘벡 주는 자체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별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4) Bracket Tax System

캐나다의 조세 시스템은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제일 낮은 Bracket의 세금을 계산한 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가지고 다음 Bracket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5) 세금 공제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은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라. 부가가치세(상품용역세)

1) 상품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상품 및 용역에 5%의 세율로 일괄 적용되며 부가 가치세의 특성을 지닌다.

○ GST 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지만, 그 징수 및 납부는 판매자가 직접 담당하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에 등록(Registrants)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과세율이 0%에 속하는 품목(수출품, 채소류, 처방약, 농수산물 등)들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세금이 전가되지 않지만 판매자의 재화 구매로 포함되어 추징되며, 그 중 일부분은 추후 공제 받음.

○ GST 면제 대상
- 자영업자, 합자회사 또는 일반 회사 중 연속된 4 분기 동안 매출액이 3 만 캐나다 달러 이하인 소규모 공급업체
- 의료, 교육 육아, 국내금융 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체

2) 주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

상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마다 상이하며 알버타 주, 유콘준 주, 노스웨스트준 주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브리티쉬콜럼비아 주의 경우 주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따로 정의
- 소매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 임대인의 자격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
-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우
- 밴쿠버 지역 내에서 주차권 판매를 하는 경우
-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물건 수리비 등)
-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자료: Small Business BC)

3) 통합 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HST)

노바스코시아,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주는 주 판매세(PST)와 상품용역세(GST)를 단일화해 적용한다. 즉, 상품용역세(5%)와 주 판매세(8%)를 더한 13%로 적용한다.

GST/HST/PST Rates

Province	GST/HST Rate (%)	PST Rate (%)	Combined Rate (%)
Alberta	5	not applicable	5
British Columbia	5	7	12
Manitoba	5	7	12
New Brunswick	13	not applicable	13
Newfoundland & Labrador	13	not applicable	13
Northwest Territories	5	not applicable	5
Nova Scotia	13	not applicable	13
Nunavut	5	not applicable	5
Ontario	5	8	13
Prince Edward Island	5	10 *	15.5 *
Quebec	5	7.5 *	12.875 *
Saskatchewan	5	5	10
Yukon Territory	5	not applicable	5

주1: 퀘벡과 프린스에드워드 지역은 GST를 부과한 세액에 추가로 PST를 부과하는 방법 사용
주2: PST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지 않지만, 통합 판매세엔 포함

마. 기타 세제

1) 관세

캐나다는 WTO협정에 기초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다른 무역국들과 통일된 상품 설명과 코드 시스템(HS System)을 사용한다.

2) 임금세(Payroll Deductions)

연방정부는 캐나다국민연금(CPP), 고용보험(EI)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임금세를 징수한다. 임금세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부과되며,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 뉴펀들랜드, 유콘준주는 별도 임금세를 징수한다.

3) 소비세(Excise Taxes and Duties)

연방정부에서 특정상품(유류, 자동차, 보험료)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

유류	항공유, 디젤유, 휘발유 등이 이에 해당하며, 1리터당 4~11센트씩 부과
자동차	저효율 차량에 부과되며, 효율에 따라 1,000~4,000 캐나다 달러 부과
보험료	1년에 순보험료의 10%씩 부과

바. 이중과세방지협약

1) 개요

2006년 9월 5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개정)'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투자소득 제한세율의 인하, 양국의 과세권 명확화, 이자소득 면세 혜택을 받는 정부기능 수행 금융기관 범위 확대 등이다.

2) 세부 내용

투자소득 제한세율(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 인하

구 분	협정 이전	협정 이후
배당금	15%	5% (25% 이상 지분)15% (기타)
이자	15%	10%
사용료(Royalty)	15%	10%

자료: 캐나다 재정부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과세권 명확화
-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주식양도차익 관련, 부동산법인의 정의 변경
-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이전)"⇒"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남용방지 규정 도입
- 비거주자가 일방 국내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동 일방국이 비거주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를 허용하는 경우 조약상 혜택 배제한다.

○ 연금에 대해 지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조항 도입
- 퇴직연금은 15%, 보험연금은 10%의 제한세율을 두는 조건으로 연금 지급지국의 과세권을 허용한다.

○ 과세를 위한 정보교환 대상범위 확대
- 상대국이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자국의 과세목적상 보유한 정보 외의 정보도 제공한다.

○ 국책은행 범위 확대
-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5 개 기관이 캐나다에서 거둬들이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외환은행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효과 혜택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수출개발공사와 함께 캐나다 국립은행을 면세대상에 추가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환율제도

캐나다는 1990년 6월부터 시장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식적인 외환규제는 없지만 환율은 국내 금융정책과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 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환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 은행(Bank of Canada)의 이자율 조정 등의 정책적 조치가 있기도 하다.

또한 1994년 4월 26일에는 NAFTA 북미 3국이 환율 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북미 3개국 통화안정 강화협정(Swap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환율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 력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의 저금리 정책과 물가상승을 우 려한 캐나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양국의 금리차이 확대현상이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이어 짐에 따라 캐나다 달러의 대미달러 환율은 1991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캐나다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한 금융완화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의 금리차가 축소, 캐나다 달러는 약세로 반전하게 되었고 공공부문의 적자와 채무누적, 퀘 백주 분리운동 등의 영향으로 1999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대미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그 후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던 대미달러 환율은 2002년 후반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달 러화의 약세 기조, 유가/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캐나다 경제 호황에 힘 입어 완만한 상승 세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0월에는 캐나다 달러 가치가 드디어 달러화를 넘어섰으며 11월 중 최고 10% 이상 강세를 실현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캐나다 환율은 유가 및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되었으며, 2009년에는 달러자산 수요 증대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라 캐나다달러는 대미달러에 비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율변동 추이

(1C$=개별통화)

통화단위	2005.12	2006.12	2007.12	2008.12	2009.9
미국 달러	0.8611	0.8674	0.9968	0.8101	0.8164
유로	0.7261	0.6566	0.6846	0.6012	0.6161
일본 엔	102.07	101.67	111.99	73.96	73.50
한국 원	881.09	802.36	927.96	1,104.27	1,106.13
영국 파운드	0.4931	0.4417	0.4940	0.5451	0.5641

자료: 월 평균환율 기준, 캐나다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나.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외환관리제도

캐나다는 IMF 8조국 회원으로 캐나다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외환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자본금 투자 및 회수, 이익 및 배당금 송금, 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외국에 대한 로열티와 비용의 지급 등에 아무런 제약을 두 지 않으며 원천징수세만 부과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들에 의한 손실의 이전, 이전가격 조작 등이 증가함에 따라 1993년 4월 연방하원은 이전가격에 대한 엄격한 통제, 영업수익의 명확한 해석, 세금포탈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 자국으로의 송금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들의 투자에서 획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화는 미화 등의 외화와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천과세는 배당금, 금리, 이윤배당, 봉급, 보너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수수료 등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원천과세율은 25%이지만, 최근 여러 국가와의 쌍무관세 협정을 통해 15, 10, 또는 5%로 세율이 하락하였고, 심지어는 원천과세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 도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일부 채권에 대한 원천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라. 현지 자금조달 방법

캐나다에서 자금조달 시 외국기업, 내국인기업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의 거래실적, 매출, 자산, 재무실적, 수익률 등의 요소에 의해 조달 가능여부가 판단되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인 자 본에 의한 자본조달, 즉 간접금융과 자기자본에 의한 조달, 즉 직접금융에 의해 조달 할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 현지진출 한국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은행 중 하나인 외환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외에 한국 내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하다.

1) 대기업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금융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Debt Financing: 캐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단기의 대출,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 Equity Financing: TSX, TSX-Venture 등의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매각/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TSX: Toronto Stock Exchange)
- Government Financing: 캐나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등

2)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현지자금조달의 경우도 상기한 방법에 의해 조달이 가능하나, 대기업에 비해 거래 실적, 매출, 자산, 재무실적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각 종 정책금융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단기간 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 The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CSBF) Program
- 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Act 바탕으로 자본대여를 필요로 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고정자산 융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출 지원

○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BDC)
- BDC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행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재정 관련 고문역할 수행
- BDC Venture Capital은 중소기업 중 벤처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며, 현재 생명공학, 원거리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 선진기술 분야 지원

□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온타리오	○ Sources of Micro-credit Financing - "Micro-Credit"은 개인사업 또는 소기업을 시작하는 개인에 대한 소액융자 지원
퀘벡	○ IDEA-SME Program - IDEA-SME는 퀘백주 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 Strategic Support for Investment Program(PASI) - 퀘백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생산량 확대 등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Montreal Community Loan Association(ACEM) - 퀘백주의 작지만 신용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서부 캐나다	○ WD Sponsored Loan Programs - 서부캐나다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Micro Loans for Small Businesses - 서부캐나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대부 지원제도

Ⅴ.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개요

□ 시장 규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동안 캐나다 시장의 규모를 과소평가, 수출시장 개척에 그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의 인구 수는 2009년 1월 기준 약 3,350만 명으로 미국의 1/7수준이며 경제규모 역시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아 미국 총 경제규모의 1/10수준이다. 그러나 캐나다를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변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의 대형시장 개척기회를 놓치는 일이 될 것이다.

캐나다는 3,350만 명의 많지 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2008년 기준, 캐나다는 수출 US$ 4,534억과 수입 US$ 4,064억을 기록, 국가총생산(GDP)에서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달해 G7국가들 중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천연자원 생산량의 3/4 이상과 제조업 제품의 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수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캐나다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8년 캐나다의 총수입 US$ 4,064억 중 한국제품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내외 이다. 한-캐 FTA가 체결되면 캐나다 수입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된다.

나. 시장 특성

1) 경제권의 지역적 편재

지역별 경제규모(국가총생산 기준) 분포도는 중부권(온타리오주, 퀘벡주, 매니토바주) 65%, 서부권(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알버타주, 사스카치완주) 29%, 그리고 대서양권 뉴펀들랜드주,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5.8%로 주요 경제활 동이 중부와 서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이 있다.

2) 경제권의 미국과의 관계

캐나다의 총 수출입 중 對미 수출은 80%, 對미 수입은 60%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큰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경제는 미국 경제의 직접적·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경기의 침체는 캐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를 감소시켜 캐나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한다면 대미 캐나다 수출이 2% 하락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제시장 근접

캐나다 시장이 보유한 큰 장점 중 하나는 국제시장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NAFTA협정 체결 이후 형성된 방대한 북미시장은 국제 투자가 및 수출업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캐나다는 인구가 적고 인종의 구성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가진 소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주요기업들은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며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로 하는 최첨단 제품들을 생산한다.

4) 인구

2009년 8월 기준, 캐나다의 인구는 3,350만 명에 불과하며 연간 인구 증가율 역시 1% 에 미치지 않는다. 국토 면적은 1,000만㎢에 가깝지만 인구 수가 적은 이유로 캐나다의 인 구 밀도는 선진 공업국가들 중 가장 낮다. 대규모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과의 국경에 근접한 남

부에 치중해 있으며 인구의 90%가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62%의 인구가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 남부에 밀집해 살고 있다.

캐나다 연령별 인구구조는 다른 선진 공업국과 유사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은 캐나다 소비 시장의 2/3를 형성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5) 소득

캐나다인의 소득수준과 구매력은 매우 높은 편으로 평균 가계소득은 US$ 4만5,000 가량 이며 구매력은(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소득 중 투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은 현재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가 보조하는 퇴직금 및 연금은 소득의 17%를 차지한다. 개인의 명목소득은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2~3% 증가하고 있다.

6) 소비특성

캐나다 소비자들은 매년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에 US$ 5,000억 가량을 소비한다. 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은 서비스 부문의 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택구입에 소비하는 지출이다. 비 내구성 소비재는 소비지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의 구입에 소비되는 지출이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내구 소비재의 지출은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자동차 구입에 관한 지출이다.

높은 소득수준과 구매력을 자랑하는 캐나다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선조들의 근면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근검절약을 중시하는 생활습관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고가의 사치품이나 보석, 의류의 구입을 중시하기보다는 연극, 오페라 관람 등의 문화생활이나 골프와 스키 등의 각종 스포츠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폐품을 재활용하는 "Recycling"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각기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사회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에 따라 다른 소비패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투자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홍콩계 중국인들의 경우 아직 이민역사가 짧은 관계로 각종 레저와 문화활동에 관련된 소비지출은 활성화되지 않은 반면 주택이나 사업체, 자동차의 구입 등 고액의 투자를 요하는 부문에서는 활발한 소비활동이 진행, 간접적으로 캐나다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래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창고 판매방식은 실내장식과 판매요원 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줄이고 대신 제품 가격을 인하시켜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캐나다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세련되게 장식된 매장 대신에 대형 물품창고에 상품을 축적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러한 Warehouse의 세일에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비교적 적은 수의 인구가 광활한 국토에 분산해 거주하기 때문에 토론토나 몬트리올과 같은 대도시 내 지역상권이 발달한 곳 이외의 지역에서는 교통 및 유통 구조의 발달이 부진하여 소액, 소량 주문이 일반화된 시장소형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 공산품 위주의 수입 구조를 갖추고 있다.

7) 상품화와 유통

많은 캐나다 소비자는 물건의 선택에 있어서 높은 안목을 소유하고 있기에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디자인과 포장은 성공적인 제품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물건을 구입할 시 캐나다 소비자들은 정시배달과 확실한 사후서비스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며 대부분의 내구 소비재는 장기간의 품질보증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캐나다인들은 많은 양의 상품 광고를 접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브랜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대형할인매장의 영향으로 유명회사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들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소비재의 유통구조는 전통적으로 식품류를 제외한 소비재 유통은 일부 대형 백화점들이 주도하였지만 최근 들어 대형할인매장들과 "Big Box" 소매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8) 구매시즌

캐나다 소비자들의 연중 최대 구매시즌은 크리스마스, 부활절(Easter day, 4월 둘째 주)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0월 둘째 주) 등이다. 이러한 구매기간 동안 많은 소비자가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소비를 한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마다 소비재나 가구, 가전용품 등의 세일이 실시되어 할인기회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진다. 그 밖에도 매년 9월 초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Back To School" 세일기간은 1년 중 학생용품의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밖에 특이한 점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부터 12월 말(또는 1월 초)까지 “Boxing Day Sale"이 계속되는데 상당수의 도소매 업주들이 구모델이나 재고상품 등을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할인 폭이 큰 대규모의 세일을 실시, 알뜰한 소비자들은 이 기간 동안 대량구매를 한다.

또한 각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연중 내내 판촉세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 동일제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주요 바이어들은 주로 1년 중 판매시장이 가장 한산한 2월에 집중하여 공급업체들 과의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섬유류와 같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계절별로 구매 계 약이 이루어지지만 소량주문을 위주로 하는 기타 일반 소비 제품은 1년치 구매를 선호하 는 경향이 있다.

다. 유통구조

1) 유통구조 개황

풍부한 부존(賦存)자원을 보유,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캐나다는 방대한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는 3,350만 명으로 이웃 국가인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인구의 지역별 편재현상이 심하고 전 국민의 90% 이상이 미국 국경 인근지대에 밀집하고 있다. 특히 다른 선

진국에 비해 자본의 축적비율이 낮아 미국의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외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가지며 2008년 기준 전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경제는 미국경제와 외국인 투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분석할 수 있으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캐나다 인구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국경지역에 밀집되어 있기에 대규모 시장 역시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과 같이 미국에 인접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품별 유통 단계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입상(혹은 생산자), 공급업자, 소매상의 순서로 유통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 중간 수입/유통업자를 통한 유통체계

가장 기본적인 유통체계로서 캐나다의 주요 매장들은 수입/유통 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대형 유통매장들의 자체적인 구매부서 설치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생산공장 설립 및 신규 공급업체 발굴을 위한 해외사무소, 에이전트 활용이 늘어나면서 수입/유통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의 대형 수입/유통업체를 활용하는 유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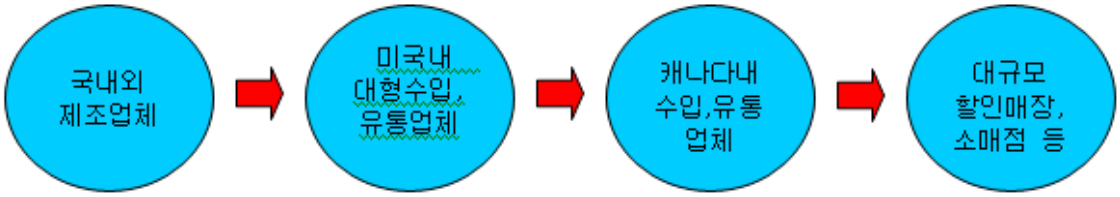

대량구매의 이점을 이용한 유통구조로서 미국 내 대형 수입/유통업체에서 해외로부터 대량구매한 제품 중 캐나다의 수입/유통업체가 일부 물량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다시 할인매장과 소매점에 공급한다. 상당수의 캐나다 업체들은 해외로부터 직수입함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 대규모 구입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1일 배송이 가능한 지리적 인접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공급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 국내외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는 유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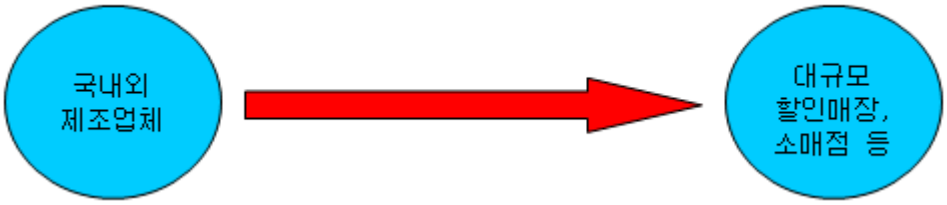

캐나다 대형 할인유통매장인 Canadian Tire와 미국계 할인점인 Sears, Wal-Mart의 유통 체계로서 해외로부터의 제품조달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중간 수입/유통상 없이 직접 제품을 발굴/공급한다. 특히 Canadian Tire는 중국과 동남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해외로부터 공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도매점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와 직접 거래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는 수입절차나 수입업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그다지 까다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도매상이나 공급업체들이 물품을 직수입하거나 국내 생산업체들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매상으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물품 공급과정에 있어 업체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마진 자체도 높지 않아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는 단점이 있다.

2) 소비 특성

○ 거의 모든 제품분야에 걸쳐 가격이 최우선 고려 요소
- 캐나다에서는 소비재 상품은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산물, 에너지 자원, 광산물, 중간 원재료 등이 수출되며 기계류를 포함한 다양한 경공업품과 일상용품 등이 수입되고 있다.
- 특히 소비재 상품의 수입은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 등의 구매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급대상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다. 가격경쟁력이 우선 검토된 후에 상품의 품질, 디자인, 다양성 등의 요소가 구매 결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친다.
- 또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대형창고에 물건을 쌓아 놓고 파는 새로운 운영방법인 창고식 세일방법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격에 대해 캐나다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브랜드 인지도 중시
- 캐나다 수입시장의 가장 큰 거래처는 미국이며 그 외에도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상품을 구매 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고 해도 품질 면에서 캐나다인의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잡한 상품은 싸구려 제품으로 인식 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 수입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산 제품의 대부분도 유명 브랜드의 OEM 제품으로서, 전반적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아 직까지 낮으며, 유명 브랜드의 OEM 제품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다.

○ 근검절약에 기초한 소비 패턴
-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근검절약 하는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작은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다. 또한 비교적 유행에 민감한 편이 아니며 실용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 특히 캐나다인들의 소비지출 특성은 주택, 자동차, 가구집기, 식기 등 주택과 관계된 부문에는 필요한 지출을 아끼지 않지만 의류와 식품류에 관계되는 지출은 그에 비해 되도록 간소화하는 것이다.
- 이는 1 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운 겨울의 영향으로 주택을 단순한 거주지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는 국민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A/S 및 품질보증 기간

- 캐나다인들의 구매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A/S 및 품질보증 기간인데, 현재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에는 1 년 이상의 품질보증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생산회사의 품질보증서 외에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A/S 서비스를 별도로 판매할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3) 백화점 소매유통

캐나다의 백화점은 크게 중, 상급제품의 판매를 주로 하는 The Bay, Sears 백화점과 중저가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Zellers, Wal-Mart등의 주니어 백화점으로 나누어진다. 1993년 이 래로 이들 주니어 백화점들은 매출의 호황을 기록, 백화점의 수익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백화점이 매출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 이윤의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Costco 등의 대형 창고식 할인 매장은 지속적인 번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 소비자들은 제품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동시에 가격경쟁력도 갖춘 대형 소매매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반 백화점 내 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개인 매장들도 즐겨 찾는 편이다.

<u>주요 유통업체 리스트</u>

백화점
○ Hudson's Bay Company (The Bay): 1670 년 설립된 캐나다 최대 규모의 백화점으로 Zellers, Home Outfitters 등의 자회사를 합쳐 현재 캐나다 전역에 452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Sears: 1953 년 캐나다에 진출한 미국의 대형 백화점으로 캐나다 전역에 200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 주로 카탈로그 판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 할인판매 체인점
○ Zeller's: Hudson's Bay 의 자회사로 캐나다 전역에 300 개 매장 운영 ○ Canadian Tire: 1922 년 설립된 캐나다 대형 할인판매점으로 캐나다 전역에 473 개 매장을 운영. 주로 홈하드웨어, 철물, 자동차 부품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 RONA: 1939 년 퀘벡에서 설립된 홈 하드웨어 전문 체인으로 캐나다 전역에 600 개 매장(프렌차이즈 포함)을 운영 중에 있다. ○ Wal-Mart Stores: 미국 최대의 대형 할인체인으로 1994 년 캐나다 첫 진출 이후 현재 캐나다 전역에 235 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 Home Depot: 미국 최대의 홈 하드웨어 전문 체인으로 캐나다 전역에 200 개 이상의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Costco: 미국의 대형 할인체인으로 캐나다 전역에 66 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기타 소매 체인점
○ 대형 식품 체인점: Loblaws, Dominion, No Frills, Food Basics, Sobeys ○ 주요 의류매장: The Gap, Tip Top Tailors, Harry Rosen, Fairweather, Banana Republic, Parasuco, Club Monaco, Roots, Zara, Tommy Hilfiger, Polo ○ 서적: Chapters, Indigo, Coles ○ 컴퓨터 및 전자제품: Future Shop, Best Buy, The Source ○ 스포츠용품: Sport Check, Foot Locker, Sports Authority ○ 골프용품: Nevada Bob, Golf Town ○ 가구: Leon's, Idomo, de Boer's, Bricks, United Furniture Warehouse ○ 완구: Toys "R" Us, Disney Store ○ 애완용품: PETs MART

4) 수입품 유통

□ 수입 상품

수입상품의 품질에 관한 캐나다 소비자들의 취향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어 품질이 낮은 상품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중저가 수입품의 품질이 지속 향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 제품의 판매가격에는 주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온타리오주의 경우 8%,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7%) 및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5%)가 부과되므로 수입공산품의 경우 전반적인 판매가격이 미국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는 것이 특징이다.

□ 효율적인 마케팅

한국산 제품이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그 입지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선 고부가가치 및 첨단기능을 갖춘 제품을 중심으로 해 저가품과의 경쟁을 피하고 중·고가품 시장을 겨냥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OEM으로 제작되어 캐나다로 수입되는 의류나 가전제품들의 경우 그 품질이 한국산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향상되고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한국제품의 경우 무엇보다도 단순모델의 대량생산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모델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상품을 선보이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보다 개성있는 디자인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태도와 업계의 변화에 민감히 대응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고객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유통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보통 중대형 유통체인을 통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유통과정을 단축시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들 중대형 유통체인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제품은 취급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소규모 수입/유통업체들과의 거래를 통해 중 대형 유통체인으로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아국업체의 자체 직판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러 업체의 합작을 통한 현지 판매장이나 세일을 위한 창고 설치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지 자사 거점에 원료나 반제품을 수출한 후 재가공하여 미국 시장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산업기술협력, 현지 부품비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 투자진출 및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역시 모색할 수 있다.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의 획득이 가능한 제품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캐나다 진출이 유리한 편이다.

한국상품 이미지 격상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판촉활동 역시 성공적인 캐나다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요소로 현지 세일즈 방문 및 사절단 파견 강화, 전시회 참가, 현지 판매대리점이나 직접 참가형식을 통한 전문박람회 참가 적극 추진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고급제품 인식 제고를 위해 디자인 및 포장의 고급화로 구매 동기 유발 및 고부가가치 획득에 주력해야 한다.

라. 현지 히트 상품

1) 한국산 냉장고

캐나다의 주요 냉장고 수입대상국으로는 미국, 독일, 스웨덴 등 3 개 국가를 들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으로, 캐나다의 수입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무려 58%에 달한다. Whirlpool, GE, Kenmore, Maytag 과 같은 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은 오랜 시간 캐나다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지금까지 캐나다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던 한국산 제품들은 대부분 텔레비전, 비디오, DVD 등으로 한정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의 삼성과 LG 등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캐나다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 냉장고는 물론 식기세척기, 세탁기,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의 판매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 년 기준 한국산 냉장고는 캐나다 냉장고 수입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내 대형유통업체인 Sears 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삼성과 LG 냉장고의 경우, C$950 부터 $4,500 까지 매우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고급 제품의 경우, 다른 외국기업 제품 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 또한 Whirlpool, GE, Maytag, Siemens 등 브랜드 제품의 외양이 대부분 흰색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산은 흰색, 검정색,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등 다양하고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히 젊은층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 년 한국의 대 캐나다 냉장고 수출은 2007 년 대비 2.3% 증가한 U$3 천 1 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9 년 7 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 캐나다 냉장고 수출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2008 년 동기간 대비 17.3% 증가한 U$2 천 43 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 한국산 자동차

2009년 7월 누계 기준, 캐나다 자동차 판매 시장은 미국 및 일본 자동차 업계의 고전으로 2008년 7월보다 16.6%나 급락했지만, 현대 및 기아차는 역대 최대판매를 기록하는 등 2009년에도 한국차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7월 누계 기준, 미국차 GM(31.4%↓), 크라이슬러(36.3%↓), 일본차 도요타(19.5%↓), 혼다(25.5%↓), 닛산(9.1%↓) 등은 판매가 부진한 반면, 현대차는 올해 업계 최고 상승률인23.9% 증가한 62,942대를 판매해 캐나다 시장 진출 26년 만에 최다 판매량을 세우고 있으며, 기아차도 소울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20.4% 증가한 총 22,603대를 판매해 캐나다 진출 10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09년 7월까지 캐나다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 업계 침체로 전년 동월 대비 22.7%나 급락하였지만 현대와 기아차는 이와는 정반대로 무서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에 민감해 상대적으로 비싼 일본차보다 한국차를 선호하고 있고, 품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고급이미지 변신에도 크게 성공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가 북미시장에 내놓은 고급차종인 제네시스는 2009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2009년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3) 한국산 타이어

2008년 한국은 9,440만 달러의 대캐나다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대캐나다 타이어 수출국 중 4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 7월 누계 기준으로 한국산 타이어는 대캐나다 수출 실적에서 9.4% 감소한 5천 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로 캐나다 현지 한국 타이어 회사 법인들의 판매 실적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저가 제품들의 판매 호조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타이어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어 브랜드로는 미국의 Good Year, Bridgestone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 회사들은 자동차 조립공장들이 밀집한 온타리오 주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 Big3 자동차 제조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브랜드인 미셰린도 온타리오주에 생산공장을 설립한 이후 캐나다에서의 판매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타이어 수입시장은 아직까지 NAFTA 체결에 힘입은 미국이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한국산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한국 타이어 제조업체의 캐나다 현지법인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산 타이어는 캐나다인들에게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타이어로 인식되고 있다. 즉, 예전부터 고품질로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유럽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처음부터 저품질 저가격을 앞세운 중국 산에 비해서는 30%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가격대비 품질 면에서 운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타이어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판매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바이어들의 저가 선호 성향으로 인해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캐나다 타이어 수입 시장에서 부동의 2, 3위를 지키고 있던 한국이 2008년에는 4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실제로 타이어는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는 품목인 만큼 캐나다의 운전자들이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선뜻 중국산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형 유통매장으로의 납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한국산 타이어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는 사실도 판매전망을 밝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 타이어는 캐나다 대형유통매장인 Canadian Tire와 월마트에도 직접 납품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역시 지속적인 판매망 확충을 통해 한국산 타이어의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판매하는 타이어 종류 역시 500여 개 이상에 달하고 있어 차종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한국산 타이어의 판매 호조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그 밖에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규모델 출시 및 차량교체 시기 도래에 따라 타이어 시장의 전반적인 활황이 예상된다는 점도 한국산의 입지강화 및 수출확대에 긍정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2. 물가정보

(1 US$ = 1.05 C$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C$)
식품류	쌀 1kg	4.89
	계란 12개	2.99
	쇠고기 등심 1kg	19.38
	돼지고기 등심 1kg	16.51
	우유 500ml	1.79
	식용류 1L	4.29
	생수 1L	1.29
	맥주 (하이네켄 330ml, 6팩)	13.5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8.75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4.19
	김치찌개 1인분	6.99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832.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6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ㅇ, 몸살감기 내과조친)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2000~28000
	무연휘발유 1L	1.00
	자동차 등록비	74
	자동차보험료 의무(1800cc신차,운전경력7년,20대중반,대인/대물 커버,1년)	3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3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3
	시내버스 기본요금	3
	택시 기본요금(낮/밤, 승차요금임)	4
통신	시내전화 요금 (1달 기본 무제한)/공중전화(2분)	21.95/0.3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0.45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35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5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8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사립)	86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사립)	12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사립)	158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2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89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37000~43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30000~35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55000~65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7주
	연간 국경일수	9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0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각종 협회

현재 캐나다에는 약 2만여 개에 달하는 협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산업이 발달한 캐나다의 특성상, 자동차부품협회(APMA)와 캐나다 완성자동차생산협회(CVMA) 등은 대정부 건의 및 정부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큰 규모의 협회로 알려져 있으며, 이밖에도 관련 산업별 협회들도 정기 소식지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간 정보공유 및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캐나다의 주요 산업별 협회 및 관련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IE Canada(Canadian Association of Importers and Exporters): 캐나다 수출입협회
- 수출입 관련 캐나다 정부기관 및 관련 업체들이 모여 구성한 대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 산업분야별 수출입 관련 업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수출입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및 수출입 업계들의 이익 증진을 위한 발전 방향 제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importers.ca

○ CME(Canadian Manufacturers & Exporters): 캐나다 제조&수출협회
- 캐나다 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증진과 수출업체의 해외상품 수출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무역·산업분야의 최대 규모 협회
- 웹사이트: http://www.cme-mec.ca

○ APMA(Auto Parts Manufacturers' Association): 자동차부품생산자협회
-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1952 년 설립된 캐나다 자동차 부품 관련 최대 협회로서, 주로 OEM 부품을 생산하는 400 여 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1 회 정기총회 등을 개최하며, 자동차 부품업계간 정보 공유 및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대 정부 정책 건의도 실시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apma.ca

○ CVMA(Canada Vehicle Manufacturers' Assocation): 캐나다완성차생산자협회
- 온타리오주 윈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Big3 의 생산공장들이 주축이 되어 1929 년 설립한 협회로서 캐나다 완성차 산업 관련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캐 FTA 와 관련하여 한국산 자동차의 캐나다 시장 진출 확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완성차 시장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cvma.ca

○ AIA(Automotive Industries Associations of Canada): 캐나다자동차산업협회
-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산업 육성을 위해 결성된 협회로서 회원사들에게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aiacanada.com

○ ITAC(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Canada): 캐나다정보통신협회
- 캐나다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기관 및 약 1,300 여 개의 관련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으로서 향후 IT 산업에 대한 비전 및 대정부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캐나다 정보 통신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협회로 꼽힌다.
- 웹사이트: http://www.itac.ca

○ CMA(Canadian Medical Association): 캐나다 의료협회
- 1867 년 설립된 캐나다의 의료산업 및 의료기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로서 의료산업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의료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cma.ca

○ CPSA(Canadaian Steel Production Association): 캐나다 철강생산협회
- 캐나다의 주요 철강생산업체로 꼽히는 Algoma, Dofasco, Stelco 등 총 8 개 업체가 모여 구성한 협회로서 캐나다 철강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철강산업 육성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canadainsteel.ca

○ CHFA(Canadian Health Food Association): 캐나다 건강식품협회
- 캐나다의 건강식품 관련 생산, 수입, 도매, 유통 업체들이 모여 구성한 협회로서 각종 다양한 건강식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캐나다의 건강식품 시장 동향, 향후 전망과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캐나다 건강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 웹사이트: http://www.chfa.ca

○ CCC(Canadian Construction Association): 캐나다 건설협회
- 캐나다 내 건설업과 관련된 약 2 만여 개의 회사들이 모여 구성한 대표적인 협회로서 건설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및 관련 업계 간 최근 동향, 건설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cca-acc.com

○ CAPP(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캐나다 석유생산자 협회
- 캐나다의 주요 석유생산 및 천연가스 개발 관련 회사들이 모여 구성한 대표적인 협회로서 캐나다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동향 조사 및 향후 전망 등을 예측하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 건의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capp.ca

○ CWC(Canadian Wood Council): 캐나다 목재협회
- 1959 년 설립된 캐나다의 대표적인 목재산업 협회로서, 다양한 종류의 목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목재 가공회사들이 모여 최근 목재산업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과 향후 캐나다의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cwc.ca

○ AIAC(Aerosapce Industry Association Canada): 캐나다 우주항공산업협회
- 캐나다의 항공기, 인공위성 등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 구성한 비영리 기관으로서 Bombardier 와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들도 동 협회에 소속되어 있으

며, 캐나다의 우주항공 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 및 향후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aiac.ca

○ PAPTAC(Pulp and Paper Technical Association of Canada): 캐나다 제지협회
- 캐나다의 제지 및 종이 생산업체로 구성된 비영리 기관으로서 캐나다의 제지 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paptac.ca

○ Minining Assocation of Canada: 캐나다 광산생산협회
- 캐나다의 광물, 비철금속 생산과 관련한 업계들이 모여 구성한 비영리 기관으로서 관련업계들의 의견을 모아 광물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건의 및 최근 광산업계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mining.ca

○ CTT(Canada Technology Triangle)
- 윈저, 키치너, 캠브릿지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이 구성한 주요 비영리 기관으로, 도요타, Open Text, Research in Motion 등 자동차, IT 관련 주요 업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주요 외국계 기업들로부터의 투자유치 및 캐나다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techtriangle.com

○ CTI(Canadian Textile Institue): 캐나다 의류협회
- 1935 년 캐나다 의류 생산업체들이 결성한 비영리기관으로서, 캐나다의 의류 산업 육성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의류산업종사자들 간의 의견 및 정보 교환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웹사이트: http://www.textiles.ca

2) 인쇄 매체를 통한 바이어리스트 입수

○ Associations Canada
- 다소 작은 규모의 협회나 인지도가 낮은 협회의 경우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에서도 특정 산업의 유관협회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토론토 KBC 의 경우 Micromedia Proquest(www.micromedia.ca)에서 매년 발행하는 Associations Canada 라는 책자를 구입해 특정 산업분야의 유관협회 담당자의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회원사 리스트와 관련 산업의 최근 동향 등을 입수하고 있다.
- 동 책자의 구입 방법은 상기 인터넷 주소에 접속, 온라인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 Scott's Canada
-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업체검색 디렉토리로는 Scott's Canada 에서 매년 업데이트하여 판매하고 있는 Scott's Select 라는 CD 로서 동 CD 는 캐나다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검색조건에 맞는 업체를 발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 특히 업체의 규모, 수출입여부, 관련 품목, 위치 등을 지정함은 물론 종업원 수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정보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 발굴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CD 뿐만 아니라 CD 를 구입한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도 업체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구입방법은 Scott's Canada 에 유선이나 이메일로 연락하여 희망하는 제품을 문의하고, 배송비와 최종 가격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나 개인수표 지급 결재가 가능하다. Scott's Canada 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Toronto 사무소
- 주소: 12 Concorde Place, Suite 800 Toronto, Ontario M3C 4J2
- 전화: 1-800-408-9431(Toll free), 1-416-442-2010
- 팩스: 416-510-6870
- e-메일: sales@scottsinfo.com

○ Montreal 사무소
- 주소: 1 Holiday Street - East Tower, Suite 705 Pointe Claire, Quebec H9A 5N3
- 전화: 1-866-800-4860(Toll free), 1-416-510-6772
- 팩스: 1-866-251-8611
- e-메일: sales@scottsinfo.com

3) 주요 박람회 및 세미나, 전시회 참가

□ 캐나다 동부지역

○ 캐나다 겨울용품 박람회: National Snow Industry Assocatioin Snow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몬트리얼
- 전시장: Place Bonaventure
- 전시분야: 스포츠, 레져용품, 신발, 의류 등
- 관련 웹사이트: http://www.nsia.ca
- 연락처(전화/팩스): 1-514-939-7370 / 1-514-939-7371

○ 토론토 선물박람회: Toronto International Gift Fair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Metro Tornoto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torontointernatinoalgiftfair.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385-1870 / 1-416-385-1851

○ 토론토 CGTA 선물 박람회: The CGTA Gift Spring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gta.org
- 연락처(전화/팩스): 1-416-479-0170 / 1-416- 479-0175

○ 토론토 액세서리 박람회: The Mode Accessories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Toronto International Plaza Hotel
- 관련 웹사이트: www.mode-accessories.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510-0114 / 1-416-510-0165

○ 캐나다 국제자동차 박람회: Canadian International Auto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and Rogers Dom
- 관련 웹사이트: www.autoshow.ca
- 연락처(전화/팩스): 1-905-940-2800 / 1-905-940-2804

○ 캐나다 식품 및 음료 전시회: Food and Beverage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Toronto International Centre
- 관련 웹사이트: www.crfa.ca
- 연락처(전화/팩스): 1-416-923-8416 / 1-416-923-1450

○ 몬트리올 선물 박람회: Montreal Gift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몬트리얼
- 전시장: Place Bonaventure
- 관련 웹사이트: www.montrealgiftshow.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385-1880 / 1-416-385-1851

○ 캐나다 하이테크 박람회: Assembly Canada/Canadian High Technology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International Centre
- 관련 웹사이트: www.hightechassembly.ca
- 연락처(전화/팩스): 1-416-491-3999 / 1-416-491-5088

○ RFID 공급선 박람회: RFID Supply Chain Solutions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Metro Torontot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softmatch.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756-1461 / 1-416-756-2099

○ 몬트리올 가죽패션 박람회: North American Fur and Fashion Exposition
- 개최지역: 캐나다 몬트리올
- 전시장: Place Bonaventure
- 관련 웹사이트: www.naffem.com
- 연락처(전화/팩스): 1-514-844-1945 / 1-514-844-8593

○ APMA 박람회
- 개최지역: 캐나다 해밀턴
- 전시장: Hamilton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apma.ca
- 연락처(전화/팩스): 1-416-620-4220 / 1-416-620-9730

○ 토론토 악세서리 박람회: The Mode Accessories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Toronto Internatinoal Plaza Hotel
- 관련 웹사이트: http://www.mode-accessories.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510-0114 / 1-416-510-0165

○ 토론토 건강식품 박람회: Canadian Health Food Association Expo East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hfa.ca
- 연락처(전화/팩스): 1-905-479-6939 / 1-905-479-1516

○ 의료정보 및 진료 박람회: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and Clinical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몬트리얼
- 전시장: Montreal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ahq.org
- 연락처(전화/팩스): 1-514-282-4223 / 1-514-282-4290

○ 캐나다 기계공구 박람회: Canadian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The National Trade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mts.ca
- 연락처(전화/팩스): 1-416-848-1683 / 1-416-491-5088

○ 캐나다 IT 정부조달박람회: Government Technology Exhibition and Conference
- KOTRA 주관 참가 전시회
- 개최지역: 캐나다 오타와
- 전시장: Ottawa Congress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gtecweek.ca
- 연락처(전화/팩스): 1-613-736-9851 / 1-613-736-9852

○ OHA 건강관리 2007: OHA Health Achieve 2007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Metro Toronto Conventino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ohahealthachieve.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205-1354 / 1-416-205-1301

○ PM 전시회: PM Expo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pmexpo.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512-1215 / 1-416-512-1993

○ 캐나다 건축박람회: Construct Canada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onstructcanada.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512-1215 / 1-416-512-1993

○ 토론토 유행 디자인 박람회: DesignTrends Toronto
- 개최지역: 캐나다 토론토
- 전시장: 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designtrendstoronto.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512-1215 / 1-416-512-1993

□ 캐나다 서부지역

○ 밴쿠버 건설자재 박람회: Buildex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Vancouver Conventino and Exhibi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buildexvancouver.com
- 연락처(전화/팩스): 1-604-739-2112 / 1-604-739-2124

○ 밴쿠버 골프용품 및 여행 박람회: The Vancouver Golf & Travel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BC Place Stadium
- 관련 웹사이트: http://www.vancouvergolfshow.com
- 연락처(전화/팩스): 1-905-477-2677 / 1-905-477-7872

○ 알버타 선물용품 박람회: Alberta Gift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에드먼튼
- 전시장: Edmonton Northland Agricom
- 관련 웹사이트: http://www.albertagiftshow.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385-2053 / 1-416-385-1851

○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택 및 정원 박람회: BC Home and Garden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BC Place Stadium
- 관련 웹사이트: http://www.bchomeandgardenshow.com/spring
- 연락처(전화/팩스): 1-604-433-2284 / 1-604-434-6853

○ 밴쿠버 요식업 박람회: Food Service Expo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BC Place Stadium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rfa.ca/tradeshows/bcfoodserviceexpo.asp
- 연락처(전화/팩스): 1-604-685-9655 / 1-604-685-9633

○ 캘거리 국제자동차박람회: Calgary International Auto and Truck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캘거리
- 전시장: Calgary Exhibition and Stamped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algarymotordealers.com
- 연락처(전화/팩스): 1-403-974-0707 / 1-403-974-0711

○ 밴쿠버 선물용품 박람회: Vancouver Gift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BC Place Stadium
- 관련 웹사이트: http://www.vancouvergiftshow.com
- 연락처(전화/팩스): 1-416-385-1871 / 1-416-385-1851

○ 밴쿠버 국제환경박람회: GLOBE Trade Fair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격년 개최)
- 전시장: Vancouver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globe.ca
- 연락처(전화/팩스): 1-604-775-7300 / 1-604-666-8123

○ 밴쿠버 국제자동차 박람회: Vancouver International Auto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BC Place Stadium
- 관련 웹사이트: http://www.bcautoshow.com
- 연락처(전화/팩스): 1-604-214-9964 / 1-604-214-9965

○ 캐나다 광업박람회: Canadian Institute of Mining, Metallurgy and Petroleum Conference and Exhibition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Vancouver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cim.org
- 연락처(전화/팩스): 1-514-939-2710 / 1-514-939-2714

○ 국제 석유박람회: Global Petroleum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캘거리 (짝수년도에 개최)
- 전시장: Stampede Park
- 관련 웹사이트: http://www.petroleumshow.com
- 연락처(전화/팩스): 1-403-209-3562 / 1-403-245-8649

○ 국제 에너지박람회: Gas & Oil Exposition
- 개최지역: 캐나다 캘거리 (홀수년도에 개최)
- 전시장: Stampede Park
- 관련 웹사이트: http://www.petroleumshow.com/goexpo
- 연락처(전화/팩스): 1-403-209-3562 / 1-403-245-8649

○ BC 골프용품 박람회: BC PGA Show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Penticton Trade and Conven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bcpga.org
- 연락처(전화/팩스): 1-604-536-7878 / 1-604-536-7879

○ 밴쿠버 요식업 박람회: Hospitality Trade Exposition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Vancouver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 관련 웹사이트: http://www.hospitality-trade.com
- 연락처(전화/팩스): 1-604-736-3118 / 1-604-730-6968

○ 밴쿠버 음식박람회: EAT! Vancouver
- 개최지역: 캐나다 밴쿠버
- 전시장: BC Place Stadium
- 관련 웹사이트: http://www.eat-vancouver.com
- 연락처(전화/팩스): 1-604-689-8651 / 1-604-689-8654

4) 캐나다의 주요 전문잡지

○ 동물 관련
- Dogs in Canada: http://www.dogsincanada.com
- Canadian Horse Journal: http://www.horsejournal.com
- The Canadian Sportsman: http://www.canadiansportsman.ca
- Canadian Throughbreed: http://www.horse-canada.com
- Canadian Horse Annual: http://www.horsecanada.com

○ 비즈니스 관련
- Canadian Retailer Magazine: http://www.retailcouncil.org/cdnretailer
- The Advocate: http://www.vancouverbar.ca
- Alberta Venture: http://www.albertaventure.com
- Backbone: http://www.backbonemag.com
- BC Businness: http://www.bcbusinessmagazine.com
- Canadian Business: http://www.canadianbusiness.com/
- Commerce: http://www.revuecommerce.com/
- Corporate Knights: http://www.corporateknights.ca/
- Far North Oil and Gas Review: http://uphere.ca/index.aspx
- Money Sense: http://www.moneysense.ca/
- Profit: http://www.profitguide.com/

○ 일반/사회
- Canadian Family: http://www.canadianfamily.ca/canadianfamily/
- Canadian Living: http://www.canadianliving.com
- Chatelaine: http://www.chatelaine.com
- Homemakers: http://homemakers.com
- Macleans: http://www.macleans.ca/
- Reader's Digest: http://www.readersdigest.ca/
- Toronto Life: http://www.torontolife.com/
- Vancouver Magazine: http://www.vancouvermagazine.com/
- Western Living: http://www.vancouvermagazine.com/

○ 취미생활
- Antique and Collectibles Showcase: www.antiqueandcollectiblesshowcase.ca/
- BC Outdoors sport Fishing: http://www.bcosportfishing.com/
- Canadian Aviator: http://www.canadianaviatormagazine.com/
- Canadain Classics and Performances: http://www.canadianclassicsmag.com/
- Canadian Fly Fishers: http://www.canflyfish.com/
- Canadian Home Workshop: http://www.canadianhomeworkshop.com
- Canadian Wood Working: http://www.canadianwoodworking.com/
- Tidings: http://www.tidingsmag.com/
- Vines magazine: http://www.vinesmag.com/
- World of Wheels: http://www.wheels.ca/

○ 홈 레노베이션
- BC Home: http://www.canadawide.com/bchome.htm
- Canadian Home and Cottages: http://www.canadawide.com/bchome.htm
- Canadian Gardening: http://www.canadiangardening.com/home.shtml
- Canadian Home and Country: http://www.canadianhomeandcountry.com
- Canadian House and Home: http://www.canadianhouseandhome.com
- Garden Life: http://www.gardeninglife.ca/GardeningLife/public/default.aspx
- Garden Wise: http://www.canadawide.com/gardenwise.htm
- Style at Home: http://www.styleathome.com/StyleAtHome/client/en/ today/home.asp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캐나다 업체의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Google 이나 기타 검색엔진으로 특정 품목과 관련되는 바이어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특히 일반 공산품과 달리 산업용 제품이나 원자재 등과 같이 한눈에 띄는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관련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더욱 어려우며,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관련되는 정보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이에 따라 캐나다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수출, 무역 업체를 일목 요연하게 집계한 사이트를 활용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아래는 바이어 발굴 시 참고하는 사이트로 산업, HS 코드, 품목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통해 캐나다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들을 검색할 수 있다.

1) Strategies: www.strategis.gc.ca

○ 캐나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산업별, 지역별 품목(품목명, HS 코드)으로 관련 업체의 검색이 가능하며, 이 중 Importer Data Base 는 HS Code 별로 수입이 가능한 업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찾아가는 순서: 접속=>English=>Company Directories=>Search

2) E-Source Canada: www.esourcecanada.com

○ 제조, 통신, 건설, 자원, 환경, 금융, 교통, 물류 등의 대분류가 있어 관련되는 업체를 1차로 소팅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에서는 캐나다는 물론 미국에 위치한 업체도 검색이 가능하다.

○ 찾아가는 순서: 접속=>카테고리 선택=>Search

3) Canadian Business Directory: www.canadianbusinessdirectory.ca

○ 캐나다의 제조, 서비스, 유통, 소매판매와 관련되는 78 만여 개의 업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산업, 업종 등의 서브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체의 이름이나 산업 등의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다.

○ 찾아가는 순서: 접속=>Search

4) Canada Business Directory: www.cdnbusinessdirectory.com

○ 각 주별로 대분류가 되어 있으며, 주를 선택하면 다시 각 산업별 카테고리로 업체들이 분류되어 있어 관련된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earch 기능도 활용 가능하며, 캐나다 전역이 아니라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검색에 특히 유용하다.

○ 찾아가는 순서: 접속=>주선택=>관련산업선택, 접속=>Search

5) Yahoo Canada: ca.dir.yahoo.com

○ 주로 일반적인 검색엔진의 기능이 강하나, 웹 디렉토리 및 미니 디렉토리를 통해 관련되는 업체를 찾을 수 있다.

○ 찾아가는 순서: 접속=>Web Directory=>B2B=>Canada Listins Only => 업종별 검색

6) Kompass Canada: www.kompass.ca

○ 품목/업체 성격(제조, 유통, 소매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캐나다 외에도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관련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글로벌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 찾아가는 순서: 접속=>무료등록=>Products, 접속=>Products and Services 검색

7) Thomas Net: www.thomasnet.com

○ 업종, 품목별, 주별 검색이 가능하며,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들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찾아가는 순서: 접속=>업종/주별 카테고리 선택.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바이어의 상관습

1) 현지 바이어 특성

○ 담당 바이어의 이름과 직함을 분명히 알고 접촉
- 캐나다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거래를 원한다면 정확한 구매담당자의 직함이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To whom it may concern' 식의 문장으로 시작하는 수취인이 불분명한 팩스나 이메일은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편지나 자료는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버려지게 될 확률이 높다.

○ 특징적인 회사소개가 효과적
- 회사소개 자료는 연혁, 제품 및 특성 소개, 납품실적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제품이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플랜트기자재 등)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특성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북미주의 다른 국가(미국 등)에 납품할 실적을 증명해야 바이어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 특히, 대형 바이어의 경우에는 벤더기업(수출업자)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점과 또한 연결이 되었더라도 외국 벤더기업에서 현지 관행(영어 등)에 미숙하다는 점을 구매 활동 시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 영어자료는 필수, 퀘벡 주의 바이어는 불어 자료 선호
- 구매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바이어들에게 회사 및 제품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할 때에 영 어로 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식 언어로 채택하 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지역에 따라 불어 자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 대도시인 몬트리올이 위치하고 있는 퀘벡주는 대표적인 불어사용 지역으로 이 지역 바이 어들을 접촉할 때에는 불어로 된 자료가 더욱 효과적이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 는 제품의 포장에는 영어와 불어를 함께 병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급함은 금물
- 캐나다 바이어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편으로 처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막대 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별한 불만이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거래선을 신규 거래 선으 로 쉽게 교체하려 하지 않으며 위험성이 없는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거래 처와의 거래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어 가격 조건이 좋다고 무조건 거래처를 바꾸는 경 우는 드문 편이다.
- 현지 기업인의 의견에 따르면 캐나다 바이어들이 통상적으로 거래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 바이어들에 비해 2배 이상 길다고 한다. 따라서 캐나다 바이어들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길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품과 회사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2) 상거래 시 주의 사항

○ 문화적 금기사항
- 특별하게 규정된 문화적 금기사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사회인 만 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 민족, 성,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 비즈니스 에티켓
- 캐나다의 사업 에티켓은 다른 선진 공업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에티켓과 유사하다. 사업가 들 간에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약속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철칙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에 늦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른 매너로 통용 된다. 만약 20분 이상 늦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로 설명하고 약속 시간을 재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캐나다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비교적 친절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개인 신 상에 관한 질문(나이, 결혼 유무, 소득 수준 등)을 자세히 하는 것은 큰 결례로 여기기 때 문에 이를 유념해 두어야 한다.
- 캐나다에서는 사업 상대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개인적인 친분을 나타내는 것이 기 때문에 만약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문 시에는 선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꽃, 와인, 자국 기념품 등의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좋다.
- 사업상의 선물을 하는 것은 큰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별로 흔하지 않다. 정 부의 관리에게 선물을 할 경우, 핀이나 체인 같은 기념품류를 제외한 고가의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3) 대금결제 관행

○ 해외무역에 익숙한 많은 캐나다 바이어들은 대부분의 공급업자들이 계약 체결 시 L/C나 T/T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업체들에게 보통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몇 차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업체에게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과 캐나다의 높은 교역의존도는 바로 양국 간에 신용거래가 빈번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캐나다 바이어가 미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 그러나 몇 차례 거래가 성사된 사실만을 근거로 수입업체의 외상거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으므로 미리 바이어와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나.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바이어 접촉

대부분의 한국업체는 첫 바이어 접촉 시 "팩스나 이메일로 간략한 회사 및 제품소개 등을 보낸 후 관심 있을 경우 연락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캐나다 업체들의 관심을 끌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캐나다에서는 각종 광고물이나 스팸 메일 등이 수시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 등은 직접 우편으로 주고 받고 있다. 또한, 유선접촉 시 직접 전화응대를 하지 않고 자동 응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명, 직함, 소속, 용건 등을 음성사서함에 정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바이어들을 처음 접촉할 때 요구되는 것은 영문 카탈로그, 회사와 제품소개서, 가격표, 영 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샘플 등이 필요하다.

2) 신속한 회신

캐나다 바이어들에게서 한국기업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불평 중의 하나가 답신 지연이다. 수 차례의 이메일 또는 LETTER(FAX)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비록 바 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한국기업과 관련이 없을 때에도 편지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꼭 보내는 것 이 향후 비즈니스 관계 수립에 매우 유리하다.

3) 바이어 면담

바이어와의 면담에서 Warehouse의 유무, 배달방법이나 통관절차, 지급조건 등에 대해 정확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격정보 외에도 위의 사항들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답변을 주고 일을 처리해 가는 첫인상을 주는 것이 거래를 연결하는 핵심요소이다.

또한 캐나다 바이어의 경우, 캐나다 또는 미국 내의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므로 회 사 소개 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한 경력, 전문제조 기술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규모, 설립연도, 연간 매출액 등이 명기된 회사소개서를 사전에 준비해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품목설명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이어에게 향후 비즈니스 파트로서의 신뢰감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역원의 도움보다는 가급적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며, 품목의 객관적인 우수성 및 주요기업에 대한 납품사례 등을 설명하는 등 정중하고 신중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5) 품목이 맞지 않을 경우

품목이 설령 맞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 상세하게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향후 비즈니스 관계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6) 최소주문

한국 기업과 캐나다 업체가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업체가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이다.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물량을 확 보하려 하지만 캐나다 바이어들은 오히려 재고 축적의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캐나다 수입업자들 중에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최소주문량을 처음부터 맞추 기 힘든 경우가 많고 제품의 시장성 유무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소량주문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업체 측이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수출하기를 주장, 협상이 진행되다 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이어가 소량주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자사의 최소주문량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소량주문에 따른 자사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납기일을 조정토록 하는 유연한 협상태도가 효과 적인 방법이다.

7) 계약서 작성

모든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첨가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첨가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 협약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주의해 계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종결하는 양자 간 합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기업 간에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진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특별히 외국기업이어서 겪는 차별보다는 캐나다 해당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가. 철도운송 인프라 부족

- 캐나다의 철도운송은 CN(Canadian National Railway)와 CP(Canadian Pacific Railway)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최근 캐나다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급증하는 교역량 증가에 반하여 철도 신규 건설은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철도운송 인프라가 부족해 운송 적체 및 지연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곧 우리기업의 수출 및 납기일 준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현지 투자기업에 따르면, CN와 CP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적극적 개선 노력 없이 적체 및 운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향후 한-카 FTA 체결 시 화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 요망된다.

나. 밴쿠버항 등의 항만인력/공간 부족현상 심화

○ 주요항만 시설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노조의 개입으로 인해 필요인력의 1/3~1/2 밖에 투입이 되지 않고 있어 운송시간 지연 및 관련 Cost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 이에 관련 우리기업은 주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였으나 사적 영역임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에 그치고 있다.

○ 또한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규모 확장작업은 현지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필요한 작업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광업투자에 대한 고율의 법인세

○ 광업분야에 투자 시 Federal Income Tax, BC Provincial Income Tax, BC Mineral Tax 등 총 43.9%의 고율의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캐나다 자원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라. 서부캐나다 자원개발 붐으로 인한 인력난 및 사무실난

○ 서부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 붐으로 인해 알버타주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 주의가 요망된다.

○ 또한 서부캐나다의 자원개발 붐은 이들 지역의 사무실 임차료의 대폭적인 상승을 가져와 캘거리 지역의 경우 불과 몇 년 사이에 임차료가 2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어 사무실 임차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임차기간이 5년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인해 임차인의 요구조건 반영은 어렵다.

마. 해결방안

사전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거나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등 거래 위험을 극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업체와의 상사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초기단계에서 국내업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1) 불공정거래신고(BBB: Better Business Bureau, www.bbb.org)

동 기관은 미국 및 캐나다 민간업체들의 펀드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양 당사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중재 역할을 한다.

일단 분쟁사례가 접수되면, BBB는 피고업체에 클레임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고소업체와의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요청한다. 만일 피고업체의 반응이 협조적일 경우에는 고소업체와 피고업체 간의 3자대화(한국일 경우 유선) 등을 통해 해결 노력을 하며, 피고업체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BBB가 보유하는 DB에 동 클레임 제기사실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추후 BBB를 통해 피고업체에 신용조사를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한다.

BBB의 성격이 법 집행기관은 아님에 따라 피고업체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문제발생 초기에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피고 업체의 태도를 BBB를 통해 1차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방면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고업체에 전달하는 부수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BBB에 클레임 사례를 등록하려면, 웹사이트(http://lookup.bbb.org/)에 접속한 후 초기 화면에서 Find Your BBB(클레임대상 캐나다업체 소재지) => File a complaint을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클레임사례를 등록하면 된다.

□ BBB Complaint 등록 절차

○ 동 웹사이트로 접속: http://lookup.bbb.org/
○ 상기 웹 사이트에서 분쟁이 있는 캐나다업체가 위치한 지역 BBB 검색
- By City(도시 별 검색), By Zip or Postal Code(우편번호 별 검색)
○ By State or Province(주(州)별 검색), 3가지 카테고리로 검색이 가능.
- 예) 아래 토론토 KBC 주소로 검색할 경우
  * 65 Queen Street, Toronto, Canada, Ontario, M5H 2M5
  · By City -> Toronto 입력
  · By Zip or Postal Code -> M5H 2M5 입력
  · By State or Province -> Ontario 입력
  · 입력 후 Find Your BBB 클릭
○ 지역 BBB 홈페이지에서 File a complaint를 찾아 클릭
○ File a complaint 클릭 후 절차에 따라 Complaint 등록
○ E-메일 및 우편으로도 Complaint 등록 가능

□ Complaint 등록 접수 후 BBB 의 역할

○ 피고업체에 고소업체의 Complaint 등록을 통보하고 고소업체와의 타협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협조적일 경우 고소업체와 피고업체와 3자 대화(한국일 경우 유선)를 갖는다.

○ 비협조적일 경우, 피고업체가 BBB의 멤버면 멤버십을 박탈 당하며, 피고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Complaint건이 영구 저장됨으로써 추후 피고업체에 대해 BBB를 통해 사용조사를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좋지 않은 첫인상을 주게 된다.

○ 고소업체와 e-메일 및 유선으로 F/U을 한다.

○ BBB는 정부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중재로서의 문제 해결이 용이치 않을 경우 Collection Agency, Arbitration, 혹은 Small Court Claim의 접근을 추천한다.

2) 상사중재

중재는 법정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상사분쟁 시 많이 활용되지만, 상대방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절차가 성립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캐나다에는 국내의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정부산하 중재기관은 없으므로 중재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중재자협회를 접촉하여 동 협회에 소속된 중재자를 소개받고 유료로 중재서비스를 의뢰해야만 한다. 동 중재에 소요 되는 기간은 중재자의 능력과 피고소업체의 협조 여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소요비용도 중재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 상사중재(Arbitration/Mediation)의 정의

○ Arbitration: 분쟁의 당사자들인 양측 합의하에 Arbitrator는 중재역할을 맡는다. Arbitrator는 중립적 제3자로서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해결책은 법적 효용을 발휘하므로 양측 모두 Arbitrator가 제시한 합의안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설령 일방에서 Arbitration의 중재 역할 위임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Arbitrator는 중재 역할을 하며, Arbitrator의 해결책은 역시 법적 효용을 발휘한다.

○ Mediation: 분쟁 당사자들 간의 합의하에 Mediator는 전달자(Communicator) 역할을 한다. Mediator는 Arbitrator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법적 효용은 없으므로 제시된 해결책의 수긍 여부는 오로지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려 있다.

□ 상사중재 업무 절차

○ Arbitration
- Statement of Claim(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담은 것, 특정 형식은 없음)을 제출한다.
- Arbitrator는 상대 업체로부터 Arbitrator의 중재자 위임 동의 서한을 보내 사인을 받는다.
- Hearing(증언) 과정으로서 Arbitrator의 주관아래 법정 재판(증거 및 증인 제시)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 Arbitrator는 최종결론을 내리며, 분쟁 당사자들은 최종결론에 따른다.

○ Mediation
- Mediator는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위임된 후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입장을 정리한다.
-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한 후 주 논쟁점을 규정한다.
- 증거 검토 및 당사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논쟁점에 대한 이해 전개
- Mediator는 가능한 해결책들(Options)을 제시한다.

3) 상사중재기관 리스트

□ ADR CANADA (비영리 상사분쟁 중개지원기관)

○ 본사
- 주소: 234 Eglinton Avenue East, Suite 500 Toronto, Ontario M4P 1K5
- 전화: 1-877-475-4353, 1-416-487-4733, 팩스: 1-416-487-4429
- E-메일: admin@adrcanada.ca
- 웹사이트: www.adrcanada.ca

○ British Columbia
- 주소: British Columbia Arbitration & Mediation Institute 104 - 1260 Hornby Street, Vancouver, BC V6Z 1W2
- 전화: 1-604-736-6614, 1-877-332-2264, 팩스: 1-604-736-9233
- E-메일: info@amibc.org
- 웹사이트: www.amibc.org

○ Alberta
- 주소: Alberta Arbitration & Mediation Society Lethbridge Building Ste. 405, 10707 - 100th Ave. Edmonton AB T5J 3M1
- 전화: 1-800-232-7214, 1-780-433-4881, 팩스: 1-780-433-9024
- E-메일: aams@aams.ab.ca
- 웹사이트: www.aams.ab.ca

○ Ontario
- 주소: ADR Institute of Ontario, Inc. Suite 500, 234 Eglinton Ave. East Toronto ON M4P 1K5
- 전화: 1-416-487-4447, 팩스: 1-416-487-4429
- E-메일: admin@adrontario.ca
- 웹사이트: www.adrontario.ca

○ Saskatchewan
- 주소: ADR Institute of Saskatchewan Inc. #16, 2700 Montague Street Regina SK S 4S 0J9
- 전화: 1-866-596-7275, 1-306-596-7275, 팩스: 1-306-584-3395
- E-메일: admin@adrsaskatchewan.ca
- 웹사이트: www.adrsaskatchewan.ca

○ Atlantic
- 주소: ADR Atlantic Institute Box 123 Halifax CRO NS B3J 2M4
- 전화: 1-902-435-3084, 팩스: 1-902-435-3084
- E-메일: admin@adratlantic.ca
- 웹사이트: www.adratlantic.ca

○ Manitoba
- 주소: Arbitration & Mediation Institute of Manitoba Inc. P.O. Box 436, RPO Corydon Winnipeg MB R3M 3V3
- 전화: 1-204-783-0529, 팩스: 1-204-897-7191
- E-메일: info@amim.mb.ca
- 웹사이트: www.amim.mb.ca

○ Quebec
- 주소: Institut de mediation et d'arbitrage du Quebec P.O. Box 5455, Station B Montreal QC H3B 4P1
- 전화: 1-514-282-3327, 팩스: 1-514-282-2214
- E-메일: info@imaq.org
- 웹사이트: www.imaq.org

□ CANADIAN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주소: 215 Caron Street, Suite 06 Quebec, QC G1K 5V6
○ 전화: 1-418-649-1374, 팩스: 1-418-649-0845
○ E-메일: ccac@ccac-adr.org
○ 웹사이트: www.ccac-adr.org

□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주소: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1-604-684-2825, 팩스: 1-604-684-2825

○ 담당자: Contact: Mr. Peter Grove / Executive Director
○ 웹사이트: www.bcicac.com

□ ARBITRATION ASSOCIATES OF CANADA INC.

○ 주소: Suite 207, 1615 - 10 Avenue SW Calgary, AB T3C 0J7
○ 전화: 1-403-238-0668, 팩스: 1-403-229-2010
○ E-메일: aaocinfo@aaoc.ca
○ 웹사이트: www.aaoc.ca

□ TORONTO 지역 Arbitrator & Mediator 검색 사이트

○ http://toronto.com/Toronto/Shopping_Services/Legal_Services/

4) 채권 추심

고소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채권추심을 대행해 주는 민간기업들로서 피고소업체의 비협조로 문제해결이 안 될 경우 Equifax 및 D&B 등의 Credit Bureau에 문제업체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캐나다 전역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Retail Accounts, Commercial Accounts, Litigation 등의 분야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며, 일부업체는 물건에 대한 추심 서비스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회수금액의 일정비율을 받고 있는 수수료는 후불제가 보통이지만 일부 업체는 등록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온타리오주 내 추심기관 기본정보

회사명	주소	담당자	전화/팩스	e-메일
RecoverCorp Inc. (www.ecovercorp.com)	1735 Bayly Street Unit8D PIckerIng, Ontario, Canada L1W 3 G7	Mr. Charlie Mclean	905-420-9779 (x212) 905-420-6833	charles. mclean @recovercorp.com
Collection Group of Canada (www.collectiongroup.com)	2550 Victoria Park Avenue Suite 600 Toronto, Ontario, Canada M2J 5A9	Ms. Judy Baker	416-491-1310, 416-491-1313/ 416-491-0860	sales@ collectiongroup.com
McGrath Canada (www.mcgrathcanada.com)	111A Rideau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X1	Ms.Joanne Douglas	613-241-8420/ 613-241-1653	jd.collections @mcgrathcanada.com
Metropolitan CredItAd justers Ltd.(www.metcredIt.com)	2000 Argentia Rd. Plaza5, Suite 406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N 2R7	Ms.ChrIst Ine Savian	905-819-8939 (x226), 647-219-3126/ 905-858-9166	csavian @metcredit. com
Credit BureauCollections Ltd. (www.cbcollectIons.com)	110 Dunlop Street East, 3rdFloor P.O. Box337 Barie,Ontario, Canada, L4M 4T5	Ms. Doreen Gouthro	705-722-3441/ 705-722-5434	collections@ cbcollections .com
Collect Com Credit In (www.collectcom.com)	4155 Sheppard Avenue East Suite 100 Scarborough, Ontario, Canada, M1S 1T4	Ms. HelenA ugustatos	416-916-9162 (x222)/ 416-916-9163	haugustatos @collectcom .com

현지의 채권추심기관들로는 RecoverCorp(www.recovercorp.com), Collection Group of Canada(www.collectiongroup.com), McGrath Canada(www.mcgrathcanada.com), Credit Bureau Collections(www.cbcollections.com), Collect Com Credit(www.collectcom.com), Metropolitan Credit Adjusters (www.metcredit.com) 등이 있다.

5) 법적 소송

캐나다 사법부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여 공식적인 재판절차를 밟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 클레임이 발생하여도 선뜻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하여 CAD$25,000 이하의 소액 소송일 경우에는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저렴한 비용 하에 클레임 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소액심판제도(Small Claims Court)가 있다. 소액심판제도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법조인 없이 의뢰인(피고/원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다.

소액소송은 C$10,000 이하와 C$10,000~25,000의 경우로 나누어지며 중재인(Mediator)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중재인은 판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현지 변호사에 클레임 건을 의뢰할 경우, 해당 변호사는 공식적인 소송제기에 앞서 2~3차례에 걸쳐 피고소업체에게 해결 및 불응 시 소송제기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동 과정에서 피 고소업체의 대부분이 타협안을 들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고소절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법무부를, 변호사 선임은 캐나다 변호사협회(CBA)를 참조하면 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상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의 90% 이상은 바이어의 수출대금 미지급이 그 원인으로 주로 첫 거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거래 규모와 금액이 늘어감에 따라 바이어들은 상호 신뢰에 기초한 비즈니스가 형성된다는 점을 악용,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차일 피일로 대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주기적으로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건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바이어나 수출업체로서는 불편한 과정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도 매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바이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국에서 흔히 통용되는 신뢰에 기초한 비즈니스는 납품기한과 대금 지급 기일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통한 발전적인 관계 형성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당 관에서 접촉한 캐나다의 바이어들의 대부분은 바이어의 사업여건 악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 혹은 해당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판매 저조에 따른 대금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지급을 잠시 늦출 수도 있는 관계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며, 신뢰의 여부와는 별도로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거래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아래는 최근까지 당 관에 접수된 대금 미지급 사례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법적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일부 악성 바이어의 무성의한 태도와 사

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업체가 현지 채권추심기관에 의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가. 자동차 부품업체

□ 제품 불량에 따른 대금 미지급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캐나다 C사에 수출하였던 모 업체의 경우, 제품 불량 발생으로 인해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업체에서는 관계자를 캐나다로 급파, 불량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전량 검사를 실시하여 다른 제품들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C사 역시 한국업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C사는 한국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C사가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에 제품 공급이 지연되었으므로 공장가동 중단에 의한 금전적인 손실을 전부 한국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한국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의 불량 때문에 C사도 상위 공급업체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패널티를 물게 되었는데 이를 한국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업체는 C사와 1차 벤더 간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은 한국업체와 C사가 맺은 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였으나, C사 또한 1차 벤더로부터 대금을 받아 한국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한국업체는 캐나다의 채권추심기관에 대금 회수를 의뢰한 상태이다.

나. 한국산 식품류 수출 업체

□ 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대금 지급기한 연장

한국의 N사는 캐나다 E사에 각종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서, 두 회사의 비즈니스 관계는 오랫동안 별 문제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E사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있으며, 급기야 한국의 N사는 수출 보험 공사를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E사에 확인한 결과 약 10년 이상 한국의 N사와 높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대금 지급이 몇 차례 늦어진 적이 있으나 한국의 N사는 이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E사에서는 최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최근 들어 한국산을 압도하고 있어 제품이 잘 팔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국의 N사에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대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N사에 확인 결과, 오랜 기간 신뢰에 기초한 비즈니스로 인해 대금지급이 늦어진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E사의 이와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두 회사 간 비즈니스 관 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수출보험공사에 의뢰를 하였다고 한다. 현재 E사는 N사에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큰 무리 없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나 건별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만큼 최악의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었던 사례로 판단된다.

다. 한국산 식품류 수출업체

□ 캐나다 수입업체 도산에 따른 대금 미회수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던 G사는 캐나다의 T사로부터 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독촉을 몇 차례 보냈다. 그러나 T사의 사장은 이에 대한 회신이 전혀 없고, T사에 직접 전화하여 다른 직원과의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어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10만 달러의 대금 결제를 기다리던 G사는 대금지급이 늦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평소에도 통화가 잘 되었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출보험 공사에 현장확인을 의뢰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당 관에서 T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T사는 과도한 부채 경영난에 허덕이다 파산선고를 하였으며, 관련 직원들은 약 1개월 전에 모두 회사를 떠났고, 사장 역시 주위 사람들도 모르게 잠적하였다고 한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T사의 창고에 쌓여 있던 한국 G사의 제품 모두가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현지 채권추심기관에서는 T사의 채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기 통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G사의 제품도 가압류 처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오랜 기간 신뢰에 기초한 비즈니스라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 모포 수출업체

□ 한국업체 제품 공급 지연, 캐나다 업체 추가 주문 이후 대금 결제 늦춰

해외로 모포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S사의 대금 미결제건은 다소 특이한 경우이다. 당초 S사는 퀘백 소재 Q사로부터 모포 제작을 주문받았으며, Q사로부터 제작 비용을 받는 대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기일 내에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모포 제작용 원자재를 인도에서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S사는 제품 제작비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제품 공급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Q사 역시 S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캐나다 모 업체에 공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퀘백 Q사에 미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던 S사는 다행히도 Q사로부터 추가 오더를 받았으며, 과거 공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여 이번에는 예정된 공급일보다 훨씬 일자를 앞당기는 등 신뢰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S사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Q사는 대금지급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과거 S사의 제품 공급 지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즉, 한국의 S사가 공급 지연을 초래함에 따라 Q사 또한 Q사가 현재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부터의 신뢰를 실추하였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인 한국의 S사에 대금 지급을 늦추어 앙갚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S사는 Q사에 대금 지급을 매번 요청은 하고 있으나 예전의 잘못으로 인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Q사에서 대금을 지급해 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마. 영화 수입업체

□ 애매한 계약 조항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

캐나다 B사로부터 영화를 수입한 한국 P사는 애매한 계약서 조항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대금을 지급한 사례이다. 수입한 영화는 영상필름과 함께 사운드 테이프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사운드 테이프는 우측 스피커와 좌측 스피커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운드 테이프인데, 막상 B사에서 배송한 제품을 열어보니 우측 스피커용 사운드 테이프가 함께 배달되지 않아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B사에서는 애매한 계약 조항 을 악용하여 당초 계약상에는 우측 사운드 테이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 사운드 테이프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에 P사는 영화를 상영할 때 상식적으로 영상필름과 좌우 사운드 테이프를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고, 계약서 역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본인들은 당연히 필름과 사운드 테이프를 함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거듭 우측 사운드 테이프를 보내줄 것을 B사에 요청하였으나 계약서 조항을 들먹여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였고, 여러 극장들에 납품할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일단 P사는 우측 사운드 테이프를 별도로 구매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물론 비즈니스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일부 해외의 공급업체들은 애매한 계약조항을 악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치는 등 국내업체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안겨 주고 있어 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입국 수속

공항도착 후 청사 내 이민수속장소에서 도착신고 및 영주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를 신 청한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및 이민비자(취업자는 취업서류)이다. 영주카드는 이민자가 신청한 주소로 3주 이내에 우송된다. 도착신고 시 주소지가 없을 경우, 주소지를 신고하면 영주카드는 신고주소지로 우송된다.

나. 사회보장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 취득

캐나다에서 거주 및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데 신청서는 공증된 비자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지참 서류는 여권과 비자이며,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서명한다.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된 카드는 신청 후 약 3주 후에 거 주지로 우송된다.

□ 지참 서류

- ○ 이민자(취업자) 증명서류: 이민비자, 고용허가서
- ○ 거주지 증명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운전면허증, 은행 잔고증명, 주택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보험가입서, 학교 성적표 등
- ○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보통 2개 이상 요구): 여권, 운전면허증, SIN, 신용카드 또는 은행카드, 학생증 등

□ 신청방법

○ Service Canada Centre 방문
- 밴쿠버 지역(Vancouver, Service Canada Centre)
・757 Hastings Street West, Vancouver, British Columbia, V6C 1A1
- 토론토 지역(Toronto, Service Canada Centre)
・25 St Clair Avenue East, Toronto, Ontario, M4T 3A4

○ 우편접수
- Service Canada Social Insurance Registration Office P.O. Box 7000 Bathurst, New Brunswick E2A 4T1

○ 전화접수(1-888-428-0888)
- New Brunswick 거주자만 가능하며, 1971년 이후 이민자 또는 외국출생자만 가능

○ 인터넷 접수
- 온타리오주만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SIN 신청도 가능
- https://www.orgforms.gov.on.ca/IBR/start.do?lang=en

다. 거주지 선정

캐나다로의 이주 후 거주지 선정은 향후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토론 토의 경우 그 동안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신규 이민자들은 도심 북쪽에 위치한 North York 지 역을 주거지로 선호하여 왔는데 이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으며 학군과 지역환경, 상업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North York의 단점은 부동산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으며 한국인 이민자들이 집 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 지역에서 교외로 10분 정도만 벗어나면 주거비용과 생활 환경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2주 전에 캐나다를 미리 방문하여 교통, 학군, 주변환경,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부 캐나다의 경우 Vancouver, Burnaby, Coquitlam, Surrey, North Vancouver 지역 등의 광 역 밴쿠버 지역이 한국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거주지를 선정할 때 지역학군의 차이를 많이 고려하는 편이다. 특히 Vancouver Westside로 불리는 밴쿠버 서쪽지역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학교 및 학군을 보유하고 있어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다.

□ 거주지 선정 시 고려사항

○ 환경
- 주변에 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 치안상태의 문제점은 없는가?
- 이웃 주민의 구성은? 캐나다인(백인), 중국인, 동남아인, 인도 및 흑인 등의 민족구성은?

○ 교통
- 지하철 역에서 근접하게 위치해 있는가?
- 가까운 곳에 버스 노선이 갖추어져 있는가?
-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이 있는가?

○ 편의시설
- 쇼핑몰이 가까이 있는가?
- 거주단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가?
- 지하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가?
- 주민편의시설 (Community Centre, 수영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

○ 임대료
- 월 임대료는 적정 수준인가?
- 월 임대료에는 관리비, 용수비, 전기료, 주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퇴거 시 조건 및 만기 연장 시 조건은?

○ 자녀들 학군
- 해당 학군은?
- 해당 학군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 사립학교 또는 가톨릭 학교가 부근에 있는가?

○ 학교 선택
- 지역 내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우수한 학교가 있는가?
- (사립학교의 경우)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은?
- 학생의 구성은? 한국인, 중국인, 인도, 동남아인, 난민, 캐나다인(백인) 등의 민족구성은?
- 자녀가 입학하려는 학교에 대한 교민들의 평판은?

라. 전화신청

캐나다로의 이주 후 거주지가 정해지면 먼저 전화개설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대부분의 대형 쇼핑몰 내에는 전화개설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전화개설 신청을 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취향과 필요에 따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전화 요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교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저렴한 국제전화를 제공하는 회사도 많다. 또한, 전화/인터넷/케이블TV 등 통합 서비스 패키지를 일괄 신청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 Sprint Canada: 1-800-652-7633
○ AT&T Canada: 1-800-565-4708
○ Bell Canada: 1-800-555-1111
○ Telus: 1-888-811-2828

마. 교육

□ 초중고 과정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유치원부터 대학 예비과정까지의 공립과 사립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육 정책은 주 정부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독립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4, 5세의 캐나다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1, 2년 동안 유치원에 다니

며,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학기는 대부분 9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까지 운영되고 중등교육과정은 주별로 11 또는 12학년까지이고 이후 대학, 전문대학 등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공립학교의 경우 초등과정은 물론 중등과정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은 전혀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초등 및 중등 과정에서도 상당한 교육비가 부담된다.

현재 많은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해외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운영 및 관 리는 그 지역 해당 교육위원회(School Board)가 맡고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주간 프로그램만을 실시한다. 가톨릭 및 기독교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각 주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해외 유학생과 새로 입학하는 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영어회화 교육과정을 정규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 정책과 학비는 지역 교육위원회 별로 차이가 있다.

모든 사립학교는 각 주의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과 기타 운영 사항들은 반드시 교육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립학교에 진학하려는 해외 유학생들은 남학교, 여학교 또 는 남녀공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부 사립학교는 완전한 기숙학교 또는 주간 학교의 형식을 따르며 일부 학교들은 두 형식을 모두 제공하기도 한다. 일부는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거나 독특한 윤리교육을 강조하기도 하며 엄격한 학습 수준을 적용한다

학교선정은 보통교육의 경우 무상 의무교육제이며 지역 내에서의 학교의 수준편차가 심하지 않 기 때문에 주거지 내에 위치한 학교(Home School)에 취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교 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도 있어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의 입학관련 서류를 준비할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에는 출생 증명서가, 초등학교 (1~8학년)나 중등학교 (9~12학년) 전학에는 이전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전 학년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캐나다 현지학교들은 각종 예방접종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접종 일시, 종류 등)을 요 구하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중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학년제 진급이 아닌 과목별 진 급제(Credit System)를 도입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선수과목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한 준비해야 한다.

많은 교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동포 2세들을 위한 한글학교(주말, 주중저녁)가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토론토에는 현재 약 60개의 한글학교가 있으며 밴쿠버에도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공립학교 (Public School)- 각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주관	
밴쿠버 지역	
Burnaby School Board	(604) 664-8441
Coquitlam School Board	(604) 939-9201
Delta School Board	(604) 946-4101
Langley School Board	(604) 534-7891
Maple Ridge School Board	(604) 463-4200
New Westminster School Board	(604) 527-8240
North Vancouver School Board	(604) 987-8141
Richmond School Board	(604) 668-6000
Surrey School Board	(604) 596-7733
Vancouver School Board	(604) 731-1131
West Vancouver School Board	(604) 981-1000

토론토 지역	
Metro Toronto School Board	(416) 397-2800
Toronto School Board	(416) 397-3000
Scarborough School Board	(416) 396-7100
North York School Board	(416) 396-7100
York School Board	(416) 395-8115
Catholic School Board	(416) 222-8282

Private School(사립학교)	
밴쿠버 지역	
St. George's College(Boys)	(604) 224-1304
Vancouver College, a Catholic day school	(604) 261-4258
Vancouver Oral Centre for Deaf Children	(604) 874-0255
Vancouver Bilingual Pre-School Society	(604) 261-1221
Council of Parent Participation Preschools	(604) 435-4430
토론토 지역	
사립학교 교육부 (900 Bay St., Toronto)	(416) 325-2129
The Bishop Strachan School	(416) 483-4325
Metropolitan Preparatory Academy	(416) 285-0870

□ 대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은 크게 2 종류로 분류되는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지역사회 대학 및 직업학교와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 (University) 및 전문대학 (College)이 있다. 수학기간은 대학교 3~6 년, 전문대학 2~3년, 대학원 2년 이상 등으로 과정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최소 1,000 명에서 최대 3만5,000 명 가량의 전임학생(full time)과 Part time 학생, 평생 교육원에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다수의 대학들은 방대한 범위의 학과와 학부에서 박사학위까지의 다양한 학위과정을 제공하며 비용은 각 주, 학 교, 프로그램 별로 차이가 있다. 대학의 학기는 대개 9월에 시작하여 5월에 끝난다.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입학 조건을 지정하며 입학 희망자의 자격 요건을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캐나다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입학 시험은 없다. 캐나다 대학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일반 적으로 미국이나 기타 영연방 선진국 대학의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 받는다.

대학교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희망 전공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이수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 서류로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필수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학교의 추천서 등이 요구된다. 대학교과정 입학전형은 대학별 입학시험 없이 각 주의 대학교 연합회에서 입학지원 서류를 1차로 접수하여 해당학교에 전달하는 절차로 시작된다. 3개 대학까지 복수지원이 허용되며 재학학교의 추천서가 입학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학 간 상호 학점 인정이 제도화되어 있어 대학 간 학적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 외에 전공 별로 정해진 특정과목을 고등학교에서 필히 이수해야 한다.

한편, 전문대학은 2~3 년의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직업지향적인 교과 과정은 물론 일반 교양과목의 집중 교습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종합대학 졸업자 중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문직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다시 진학, 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밀접하게 공부하고 있다. 전문기술 및 평생교육 교과과정 등의 취업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은

단순 기술직 에서 예능직까지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 걸쳐 있으며, 기타 과정으로는 의료, 경영, 응용 미술, 사회사업, 성인 재교육, 대학 진학준비 등이 있다.

사립기관인 기술전문학교는 일정기간의 집중적인 교육 후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실무기술 교육에 주력한다. 경영, 컴퓨터, 비서능력과 같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전문학교는 주 정부의 인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운영 및 관 리는 주 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

종합대학(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C)	(604) 822-1550
University of Victoria (BC)	(604) 721-7211
Simon Fraser University (BC)	(604) 291-3224
University of Toronto (ON)	(416) 978-2190
McGill University (QC)	(514) 398-4070
McMaster University (ON)	(905) 525-4655
Queen's University (ON)	(613) 545 -2218
York University (ON)	(416) 736-5420
University of Waterloo (ON)	(519) 888-4567
University of Windsor (ON)	(519) 253-3000
Brock University (ON)	(905) 688-5550
University of Ottawa (ON)	(613) 564-3928
Ontario College of Arts and Design (ON)	(416) 977-5311
전문대학(College)	
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 (BC)	(604) 432-8842
Vancouver Community College (BC)	(604) 986-1911
Capilano College (BC)	(604) 527-5413
Douglas College (BC)	(604) 527-5400
George Brown College (ON)	(416) 415-2115
Seneca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ON)	(416) 491-4040

바. 의료보험제도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

캐나다의 의료보험제도는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기 사이트(Canada Health Portal)를 통해 각 주의 의료보험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Canada Health Portal: http://chp-pcs.gc.ca/CHP/index_e.jsp?pageid=10042

참고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경우 Medical Services Plan Application 양식을 작성한 후 사 진과 함께 Health Insurance BC로 우편송부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 입국한 달로부터 숫자로 3개월 후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7월 19일에 입국한 경우 10월 1일부터 보험 적용)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무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신청을 위해서는 보건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의료보험증에는 사진이 부착되므로 신청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의료보험제도 외에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그 중 캐나다 연금기금은 퇴직자, 장애자, 유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노인생활 안정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저 생계보장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혜자들 중 총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국민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캐나다의 모든 근로자는 국가 연금기금(Canada Pension Plan, 퀘벡주는 Quebec Pension Plan)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 수입의 4.9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 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연금소득과 배우자를 포함한 기금 가입자의 유족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2008년 기준, 급여의 1.73% 정도이며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고용자가 2.42%(피고용주의 1.4배)이다.

동 제도는 1990년대 이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 보험금의 지급 또한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 1993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한편,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Child Tax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부모가 각각 서명하고, 부모 및 자녀의 여권과 비자의 사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비자의 사본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목사 또는 신부, 교사, 은행의 매니저, 경찰관, 우체국의 장, 공증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공증된 사본이어야 한다. (제출처: Revenue Canada, 875 Heron Rd. Ottawa, Ontario K1A 1A2)

사. 운전면허 전환

한국(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스위스, 독일)과 캐나다는 운전면허 전환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운전면허증 전환이 가능하다.

□ 운전면허증 공증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번역서류 및 운전면허증 공증을 받는다. 지참서류로는 한국운전면허증, 여권, 비자(이민서류)이다.

□ 운전면허증 전환

해당 거주지역의 운전면허 등록사무소(Driver Licensing Office)에 가서 간단한 시력, 청력 테스트 및 문진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신청 시 지참서류로는 여권, 비자(이민서류),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공증서류이다. 캐나다 운전면허증은 신청자 주소로 우송된다. 운전면허증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2년이며, 갱신 시 5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아. 자동차 구입

시기, 장소마다 자동차의 가격, 부대비용 및 임대 시 적용이율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구입 전 이를 비교해 본다. 자동차 구입 시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입을 할 것인지 또는 임대할 것 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전문가는 각종 비용을 감안할 경우 자동차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연방 산업부와 운전자보호협회(APA)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자동차 판매상이 수익성이 높은 임대계약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 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를 구입 시 많이 참조하는 사이트 또는 잡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Consumer Reports: http://www.consumerreports.org/cro/canadaextra/index.htm
- Canadian Driver: http://www.canadiandriver.com/
- Driving.ca: http://autos.canada.com
- Canadian Buyer's Guide

자. 은행구좌 개설

시중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Social Insurance Number,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편지, 아파트 계약서 등) 등을 구비 해야 한다. 구좌 개설 시 자동현금인출기 사용을 위한 현금카드와 개인수표를 동시에 발급받게 된다. 캐나다 내에서는 전화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개인수표를 발 행하여 우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수표의 발급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차. 공과금 납부

□ 개인수표(Cheque) 우송

개인수표에 금액, 수신인 등을 기재하여 우송한다. 전화회사 등에서는 요금청구 시 수표발송용 봉투를 동봉한다.

□ VOID Cheque 우송

개인 수표에 대각선으로 사선을 긋고, "VOID"라고 표시해서 납부처에 보내면 매달 공과금이 본인 구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VOID 수표에는 사인을 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공과금이 신용카드 구좌에서 이체되도록 신청하면 매달 해당금액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자동 청구된다.

□ 인터넷/텔레뱅킹

캐나다의 모든 대형 은행은 인터넷 및 텔레뱅킹으로 공과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공과금 계좌 등록을 한 후 납입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카. 병원진료

캐나다에서의 병원진료는 기본적으로 1차 진료기관인 가정의(Family Doctor), Walk in Clinic (사전예약 없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 가능하며,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전문진료과목의 경우 1차 진료기관의 의사소견서를 받아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캐나다 가정의 경우 사전에 가정의(Family Doctor)를 선정하여 의료문제를 우선적으로 상담한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해양성기후를 띤 서해안과 동해안지역은 겨울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잦은 반면, 중부 내륙 지방은 여름에 강우량과 습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에 비하면 보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 6개월(11~4월) 정도로 매우 긴 편이다.

- ○ 태평양 연안: 온기 있는 따뜻한 온대성 기후
- ○ 대서양 해안/ 5 대호 부근 / 세인트 로렌스 연안 저지대: 해양성 기후
- ○ 북극권: 한대성 기후
- ○ 중부 내륙: 대륙성 기후
- ○ 내륙 평원지대: 건조하며 기온 차이가 심함

2) 주요 도시의 기후

주요 도시별 기온 및 강수량

도시	겨울(1월)		여름(7월)		강설량	강우량	우천일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연간	연간	연간
	℃				Cm	mm	일
Vancouver	5.7	0.1	21.7	12.9	54.9	1,167	164
Victoria	6.5	0.3	21.8	10.7	46.9	858	153
Regina	-11.0	-22.1	26.3	11.9	107.4	364	109
Calgary	-3.6	-15.7	23.2	9.5	135.4	399	111
Edmonton	-8.2	-17.0	23.0	12.0	129.6	461	123
Winnipeg	-13.2	-23.6	26.1	13.4	114.8	504	119
Toronto	-1.3	-7.9	26.5	17.6	135.0	819	139
Ottawa	-6.3	-15.5	26.4	15.1	221.5	911	159
Montreal	-5.8	-14.9	26.2	15.4	214.2	940	162
Quebec City	-7.7	-17.3	24.9	13.2	337.0	1,208	178
Fredericton	-0.4	-15.4	25.6	12.9	294.5	1,131	156
Halifax	-1.5	-10.6	23.4	13.2	261.4	1,474	170
St. John's	-1.4	-8.7	20.2	10.5	322.1	1,482	217
Charlottetown	-3.4	-12.2	23.1	13.6	338.7	1,201	177

자료: 캐나다 통계청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 ○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시차는 KST(한국표준시간) -12.5 시간에서 17 시간에 이르는 6 개 표준시간대로 구분된다.

- ○ 서머타임 기간(+1 시간): 3 월 둘째 주 일요일~11 월 첫째 주 일요일

캐나다 주요 도시 별 표준 시간대

표준시간대 (서->동)	주요도시	평시 시차	서머타임 시차
Pacific S.T.	Vancouver	KST - 17:00	KST - 16:00
Mountain S.T.	Edmonton, Calgary	KST - 16:00	KST - 15:00
Central S.T.	Winnipeg	KST - 15:00	KST - 14:00
Eastern S.T.	Toronto, Montreal	KST - 14:00	KST - 13:00
Atlantic S.T.	Halifax	KST - 13:00	KST - 12:00
NFLD S.T.	St. John's	KST - 12:30	KST - 11:30

S.T. = Standard Time

○ 한국 시간 4월 4일 오전 9시 경우(서머타임 기간 중),
- 토론토: 4월 3일 오후 8시(Eastern S.T.)
- 밴쿠버: 4월 3일 오후 5시(Pacific S.T.)

○ 한국 시간으로 12월 1일 오전 9시일 경우(서머타임 해제 이후)
- 토론토: 11월 30일 오후 7시(Eastern S.T.)
- 밴쿠버: 11월 30일 오후 4시(Pacific S.T.)

2) 근무시간

근무시간

관청	월~금	08:30~16:30
은행	월~금	09:00~16:00(도심지역)
상업권	월~금	09:00~17:00(도심지역)
대형쇼핑센터	월~금	10:00~21:00
	토	10:00~19:00
	일	12:00~18:00

주: 은행의 지점 중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20:00, 토요일 14:00까지 근무하는 곳도 있음

다. 도량형

1) 표준 도량형

캐나다는 1980년 이전까지는 미국의 표준 도량형인 임페리얼 (Yard, Pound) 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체중, 신장, 목재, 음료 사이즈 등을 측정할 경우에 미국의 Yard, Pound 법이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미터법-야드/파운드법 환산표

길이	마일(mile)	야드(yard)	피트(feet)	인치(inch)	미터(m)	센티미터(Cm)
1 cm	0.000006	0.010936	0.0328	0.39370	0.01	1
1 m	0.000621	1.093613	3.2808	39.3701	1	100
1 inch	0.000016	0.027778	0.0833	1	0.0254	2.54
1 feet	0.000189	0.333333	1	12	0.3048	30.48
1 yard	0.000568	1	3	36	0.9144	91.440
1 mile	1	1760.00	5280.0	63360.1	1609.4	160935

무게	파운드(lb)	온스(oz)	톤(ton)	킬로그램(Kg)	그램(g)
1 g	0.00221	0.0353	0.000001	0.001	1
1 Kg	2.20459	35.273	0.001	1	1000
1 ton	2204.59	35273	1	1000	1000000
1 oz	0.06250	1	0.000028	0.0284	28.3503
1 lb	1	16	0.000454	0.4536	453.599

부피	갤런(gal)	입방야드(yd³)	입방피트(ft³)	입방인치(in³)	리터(L)	입방미터(m³)
1 m³	264.19	1.3082	35.317	61027	1000	1
1 L	0.2642	0.0013	0.0353	61.027	1	0.001
1 in³	0.0043	0.00002	0.00058	1	0.0164	0.000016
1 ft³	7.4817	0.03682	1	1728.3	28.321	0.0283
1 yd³	203.21	1	27.16	46943.8	769.23	0.7692
1 gal	1	0.00492	0.13366	231.01	3.7853	0.0038

넓이	평	에이커(acre)	제곱야드(yd²)	제곱피트(ft²)	아르(a)	제곱미터(m²)
1 m²	0.3025	0.00025	1.196	10.7683	0.01	1
1 a	30.25	0.02471	119.6	1076.83	1	100
1 ft²	0.0281	0.00002	0.111	1	0.00093	0.09287
1 yd²	0.2529	0.00021	1	9.0038	0.00836	0.83614
1 ac	1224.2	1	4840.04	43578.7	40.4693	4046.93
1 평	1	0.00082	3.95367	35.598	0.03306	3.3058

2) 전기규격

캐나다는 주택, 건물, 호텔 등에 110V/ 60Hz가 공급되고 있어 220V용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변압기를 사용해야 하며, 플러그 모양의 경우 220V는 둥근 원기둥 형태이지만 110V는 얇고 납작한 형태이기 때문에 콘센트(일명 '돼지코')를 사용해야 한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1994년 5월 1일 체결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6개월 미만의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 입국허가서는 입국 시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국 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추가서류나 신체검사 없이 6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개인별 체류기간은 방문목적 확인 증빙서류 제출과 캐나다 입국 시 이민국 심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무비자의 경우 보통 6개월의 체류기간을 지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9.11 테러 이후 캐나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다소 까다로운 질문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선별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만약 심사관들의 질문에 불충분한 대답을 할 경우나 혹은 기타 체류기간에 문제가 되는 사유 발견 시에는 체류 기간을 6개월 이하로 하여 특정 출국날짜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적어도 비자 만기일 30일 전 인근지역 소재 이민센터에서 신청서(Application to Extend or Change Visitor's Status)를 입수,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연장신청 시 소요 비용은 1인당 C$ 75이다. 타당한 연장 사유, 연장기간 동안의 충분한 자금원 증명, 출국용 항공티켓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

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한글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민 센터 문의 전화

○ 토론토: (416) 973-4444
○ 몬트리올: (514) 496-1010
○ 밴쿠버: (604) 666-2171
○ 캐나다 전역 수신자 부담: 1-888-242-2100

2)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비자종류를 막론하고 여권,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귀국용 항공표, 1년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및 영문본 각 1통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장기비자로 간주하여 장기 체류 사유서 및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Medical Exam)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로의 재입국이 필요하면 비자 신청서에 복수 입국계획임을 명기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비자 발급처에 제출하여 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면 Multiple Entry 비자를 받을 수 있다.

3) 방역

일반적으로 방문자 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신체검사가 불필요하나 장기 체류자를 포함하여 서울 소재 대사관 측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동 신체검사를 마쳐야만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캐나다 입국 후에 비자기간 연장신청으로 인해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비자 발급처

○ 주한 캐나다 대사관
- 주소: (100-662) 서울시 중구 정동 16-1 번지, 우편사서함 6299
- 전화: (02)3783-6000 (안내)
- 팩스: (02)3783-6239
- 홈페이지: www.korea.gc.ca
- 휴일: 토, 일요일, 양 국가의 법정공휴일

○ 업무시간: 08:00~11:45 & 12:45~16:30
- 이민과: 월요일~금요일 오전 9 시~11 시
- 영사과: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 30 분~11 시 30 분
- 소요 비용(방문비자 수수료): 단수 입국 C$75, 복수 입국 C$150, 가족 C$400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5)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기내에서 배부된 입국 카드(세관신고서 포함)를 작성한 후 입국 심사관(Immigration Officer)에게 여권, 항공 티켓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 목적, 체류 기간, 휴대품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입국 허가안을 받고, 탁송화물대(Luggage Claim)에서 본인이 부친 화물을 찾은 후 세관통관대로 가서 세관원의 관세 물품 여부 심사를 받는다.

□ 휴대품 통관 시 제한사항

○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경우 반입에 필요한 별도의 통관 허가서를 받아야 하나 김치, 젓갈 등 이미 조리, 가공된 음식물의 경우 세관검사 시 검사원에게 설명하면 반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 캐나다 관세청의 규정상 주류는 와인이나 Liquor 1.14 Liter, 맥주 12 병, 담배 200 개피, 시가 50 개피, 담배 가루 1Kg 이하는 면세 통관 된다.

6) 유의사항

○ 해외방문이 처음인 경우에는 최소한 출발 예정일로부터 1 달 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 비자수속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최소 3 개월 전에는 신청하여야 한다.

(자료: 주한 캐나다 대사관)

마. 환율/환전

1) 화폐단위

캐나다 화폐의 기본단위는 캐나다 달러(CANADIAN DOLLAR)로 보통 $로 표시되며, 미국 달러와 함께 명시될 경우에는 보통 C$로 표기된다. 1달러는 100 Cents이다.

캐나다의 주화 및 명칭

주화단위	1 cent	5 cent	10 cent	25 cent	$1	$2
명칭	penny	nickel	dime	quarter	loonie	toonie
	페니	니클	다임	쿼터	루니	투니

지폐는 $5, $10, $20, $50, $100, $1,000 액권 이렇게 6종류이며 $1,000 액권은 범죄 예방 차원으로 2000년 5월부터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발행이 중단되었다. 2001년 하반기부터 $100 위조지폐의 사용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소매업소들 중에는 $100 지폐를 받지 않는 곳이 점차 늘고 있어 관광객들이나 출장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들어 $50 지폐도 받지 않는 업소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급적 $20 지폐를 소지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 들어서는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장치를 설치한 업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업소들도 이를 받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 환율

최근5년간 캐나다화의 대 미화 및 원화 환율 현황

대 미화 환율	2004	2005	2006	2007	2008
US$1=	C$1.302	C$1.212	C$1.134	C$1.075	C$1.066
대 원화 환율	2004	2005	2006	2007	2008
C$1=	880.33원	846.68원	842.02원	868.18원	1,030.27원

자료: 캐나다 중앙은행

3) 환전

환전서비스는 공항, 호텔, 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그 날의 환율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환전 시 2% 내외의 환전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환전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요 환전소로는 Thomas Cook, Western Union 등이 있으며, 시내 곳곳에 지점이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내에는 역 구내나 대형 쇼핑센터에 대개 환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은행은 주말에는 휴무하나 공항의 환전소에서는 휴일에도 환전을 해 준다. 또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 호텔 및 근교 상점, 대형 쇼핑몰, 레스토랑 중에는 미화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 입국 후 공항에서는 당장 필요한 약간의 돈만 환전하고 시내에 온 후 가까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최근에는 캐나다 현지 환전기관에서 원화의 환전도 취급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원화를 미화 또는 캐나다화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원화환전은 토론토와 밴쿠버에 소재한 한국 외환 은행의 캐나다 지점에서도 가능하다.

원화를 캐나다화로 혹은 캐나다화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토론토에서는 Royal Bank와 Scotia Bank의 본점에서만 가능한데 한국에 비해 환전수수료가 높고 환율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국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외환은행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원화를 취급하고 있다.

□ 원화 환전 가능 은행

○ Royal Bank 본점: 2 Bloor St. E. Toronto, ON M4W 1A8
- 전화: 1-416-974-2746

○ Nova Scotia Bank 본점: 44 King St. W. Toronto, ON M5H 1H1
- 전화: 1-416-866-6430

□ 외환은행 지점

1) 토론토 지역: 총 4개점

○ 본점: 4950 Yonge St. # 103 Toronto, ON M2N 3A7
- 전화: 1-416-222-6500
- 팩스: 1-416-222-5855

○ 미시사가(Mississauga)지점: 90 Burnhamthorpe Rd. W. #120 Mississauga, ON L5B 3C3
- 전화: 1-905-272-3130
- 팩스: 1-905-272-3430

○ 블루어(Bloor) 지점: 627 Bloor St. W. Toronto, ON M6G 1K8
- 전화: 1-416-533-8593
- 팩스: 1-416-531-1047

○ 쏜힐(Thornhill) 지점: 7670 Yonge St. #5 Thornhill, ON L4J 1W1
- 전화: 1-905-707-7001
- 팩스: 1-905-707-0171

2) 밴쿠버: 총 3개점

○ 버나비(Burnaby) 지점: 100-4900 Kingsway Burnaby, B.C V5H 2E3
- 전화: 1-604-432-1984
- 팩스: 1-604-432-1964

○ 코퀴틀람(Coquitlam) 지점: 4501 North Road, Suite 202A, Burnaby, B.C V3N 4R7
- 전화: 1-604-420-0019
- 팩스: 1-604-420-0066

○ 밴쿠버다운타운(Downtown) 지점: 590 Robson Street, Vancouver, B.C V3B 2B7
- 전화: 1-604-609-2700
- 팩스: 1-604-609-2777

바. 교통/ 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직항항공편

항공자유화협정에 따라 2009년 9월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인천과 토론토 직항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비성수기에는 주 5회 운항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로는 싱가포르항공이 주 3회 밴쿠버에서 직항 운항하고 있으며, Air Canada도 1994년5월 직항노선을 개시하여 현재 아시아나 항공과 코드공유를 통해 밴쿠버에서 매주 7회 운항하고 있다. Air Canada는 캐나다 전역에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캐나다 주요도시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

□ 미국 경유편

또한 미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방법이 있는데 캐나다 서부지역의 경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을 경유하면 밴쿠버로 갈 수 있고, 동부지역은 시카고나 뉴욕을 경유하여 토론토나 몬트리올로 갈 수 있다.

중부는 미네아폴리스나 디트로이트를 경유하여 에드먼턴, 캘거리, 위니펙 등으로 갈 수 있다.

Air Canada, United Airlines, America Airlines 등의 북미 항공사는 모두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 일본 경유편

그 밖에도 일본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Northwest Airlines 와 일본계 항공사가 동경을 경유하여 밴쿠버로 연결하는 항공편을 운항한다.

2) 캐나다 내 교통편

캐나다 내 주요도시 간 여행은 주로 버스, 기차, 비행기,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출장과 장거리 여행 시에는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택시 이용

시내의 경우 택시는 특별히 따로 승강장이 없고 한국에서와 같이 노상에서 자유롭게 잡을 수 있으며 호텔 등에서는 콜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심을 벗어난 주택가나 교외지역에서는 노상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어려우며 미리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택시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이며, 토론토 및 밴쿠버 등에서 시내 이동 시 대체로 C$ 15~25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팁은 미터기에 나타난 금액에 10% 정도를 더하여 지불하면 되며, 영수증을 요구하면 운전기사가 발급해 준다.

□ 대중교통 이용

토론토 지하철은 남북노선(Yonge Line)과 두 개의 동서노선(Bloor Line, Sheppard Line)만 있으나 시내에서는 토큰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 및 전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만 알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 편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지하철에서 버스나 전차로 갈아탈 경우 지하철에 위치한 빨간색 Transfer 발급기에서 티켓을 뽑아 환승 시 운전기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하철을 이용할 시에는 역 입구에서 토큰을 구입하여 투입기에 넣고 탑승하면 되며 하차 시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내리면 된다. 버스나 전차를 이용할 경우 미리 지하철 역이나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한 토큰이나 현금을 지불하여 탑승하면 된다. 토큰 하나의 가격은 C$2.75이며, 10개를 구입할 시 C$21 이다.

밴쿠버 지역의 경우에는 SkyTrain 이라는 경전철이 운행 중인데 엑스포(Expo) 라인과 밀레니엄(Millennium) 라인 등 2개 노선이 있다. 1번의 승차권 구입으로 정해진 시간 내 SkyTrain, 버스, Sea Bus 등으로의 환승이 가능하다.

1회 탑승요금은 지역에 따라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며 1구간의 경우 C$2.5이며 10매 할인권(C$19) 및 월 정액권이 있다.

3) 공항에서 KBC 오는 방법

□ 토론토 KBC

○ 택시이용
- 공항 출구로 나와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에게 KBC 주소를 주면 KBC 앞까지 안내함.

-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는 일반택시와 일률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공항택시 두 종류가 있는데 요금은 약 C$35~40 내외로 거의 비슷함. 거리/시간 병산제로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 발생 가능. 일반적으로 이용요금의 10%를 팁으로 줌.

○ 공항버스 이용
- 공항출구로 나와 Airport Express 버스 매표소에서 다운타운의 Sheraton Hotel 까지 가는 표를 구입하여 승차. KBC 는 Sheraton Hotel 동쪽에 위치(도보 5 분 거리)한 Thomson Building 6 층에 위치
- 요금: 1 인 C$20(편도)

□ 밴쿠버 KBC

○ 택시 이용
- 이용 가능시간: 24 시간
- 비용: C$ 30~35 내외
- 참고: 약 30 분 정도가 소요되며 캐나다달러,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 에어포터(공항 리무진 버스)
- 이용 가능시간: 새벽 6:30 부터 익일 00:10 까지 매 15 분 간격으로 운행
- 국내 및 국제선 도착 터미널에서 출발
- 비용: 성인기준 편도 C$ 13, 왕복 C$ 20
- 참고: 밴쿠버 시내 주요호텔 경유
- KBC 인근 경유 호텔: Hotel Vancouver 승하차(약 30 분 내외 소요)

4) 국제통신

○ 수신자부담통화(Collect Call)
- 0 을 돌리고 교환수에게 통화를 신청한다. 요금은 상대가 지불한다.

○ 지명통화 (Person to Person Call)
- 지명한 상대와 통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요금이 가산되며 상대가 부재중일 때는 무료이다. 신청방법은 수신자부담통화와 동일하며 신청 시에 미리 지명통화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한다.

○ 국제 다이얼통화 (Direct Call)
- 교환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다. 우선 국제전화 코드인 011 을 돌린 다음 한국 고유번호 82, 이어서 0 을 뺀 상대 시외국번, 번호의 순으로 돌린다 (011+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상대의 번호가 02-123-4567 인 경우에 011-82-2-123-4567 순서대로 걸면 된다.
- 교환수를 통하지 않는 다이얼 통화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심야에는 3 분에 C$5 정도로 할인된다.

○ 국제 전화카드 통화 (Prepaid Card Call)
- 대형 마트, 편의점, 기념품 가게, 한국인식품점 등에서 파는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통화를 할 수 있다. 가격은 C$10 부터 다양하며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한국과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 국제전화카드사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한국의 연락처를 입력하여 통화한다.
-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이용할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부분 인터넷 라인을 이용한 전화서비스(Vo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질이 기존의 전화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 국내통신

○ 공중전화
- 공중전화는 시내 빌딩 내외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찾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며 동전을 사용하는 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시내통화의 경우 25 센트를 넣으면 시간 제한 없이 통화가 가능하며 동전은 5, 10, 25 센트 3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호텔이나 역, 공항밖에 없지만 장거리 통화 시 편리하다. 사용법은 전화기 옆에 표시되어 있다.

○ 시내통화(Local Call)
- 공중전화의 경우에는 25 센트를 투입(5, 10, 25 센트 동전 사용가능)하고 번호를 누르면 되며 통화시간에 제한은 없다. 전화번호 문의는 시내는 411 로, 다른 도시의 경우는 지역번호+552+1212 로 알아본다.
- 전화번호부는 두 종류로, White Pages 는 인명별, Yellow Pages 는 업종별이다.
- 토론토 광역시 및 밴쿠버에서는 10 자리 전화번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시내통화에도 지역번호를 포함한 10 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야 한다.
(예: 토론토 KBC는 416-368-3399, 밴쿠버 KBC는 604-683-1820의 10자리 숫자 입력)

○ 시외통화(Long Distance Call)
- 처음에 0(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필요)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계속 누르면 교환수가 나와 처음 3 분간의 요금을 알려준다. 3 분이 경과되면 통화 중에 교환수가 끼어들어 필요한 요금을 말해주는데 그때 추가요금을 넣어야 한다. 공중전화가 아닌 일반전화일 경우 1+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 휴대폰 임대
- 밴쿠버 공항에서는 핸드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로밍 서비스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로밍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호텔이나 한국인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업체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임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 이용
- 밴쿠버 시내 호텔 대부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C$10~20 수준이다. 또한 시내 곳곳에 인터넷 카페가 있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시간당 C$2~3 수준이다.

6) 우편제도

국영기업체인 CANADA POST에서 지역마다 우체국 또는 지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8:30~17:00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점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우표 구입처
- 우체국, 슈퍼마켓, 약국, 잡화점 등에서 구입 가능

○ 우편물 배송방법

- 우표를 붙여 거리 곳곳에 있는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거나 부피가 큰 우편물이나 소포의 경우에는 근처의 우체국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숙소가 일정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도시의 중앙우체국 보관함(PO BOX)을 수신처로 정해두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만 우편물을 찾을 수 있으며, 15 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반송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단, 서류 이외의 소포를 항공우편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Commercial Invoice'를 동봉하여야 하며, Commercial Invoice 안에는 소포를 대한 정보 및 Commercial Value 를 기재하여야 한다.

□ 우편요금: 일반우편

국내

	가격		
일반우편	30g 이하	30g 이상 50g 미만	
기본규격	$0.54	$0.98	
규격초과	100g 이하	100g 이상 200g 미만	200g 이상 500g 미만
	$1.18	$1.96	$2.75

국제

TYPE OF MAIL	중량(g)	가격($)
기본규격 - 일반우편	30g 이하	1.60
	30g 이상 50g 미만	2.36
규격초과 - 기타우편	100g 이하	3.90
	100g 이상 200g 미만	6.80
	200g 이상 500g 미만	13.60

자료: Canada Post (2009년 9월 기준)

□ 우편요금: 일반소포

소포의 경우 수신처 및 중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홈페이지(http://www.canadapost.ca/personal/tools/rc/res/bin/rc_res-e.asp)에서 수신처, 중량, 규격 등을 기재하면 쉽게 요금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래 그림 참조)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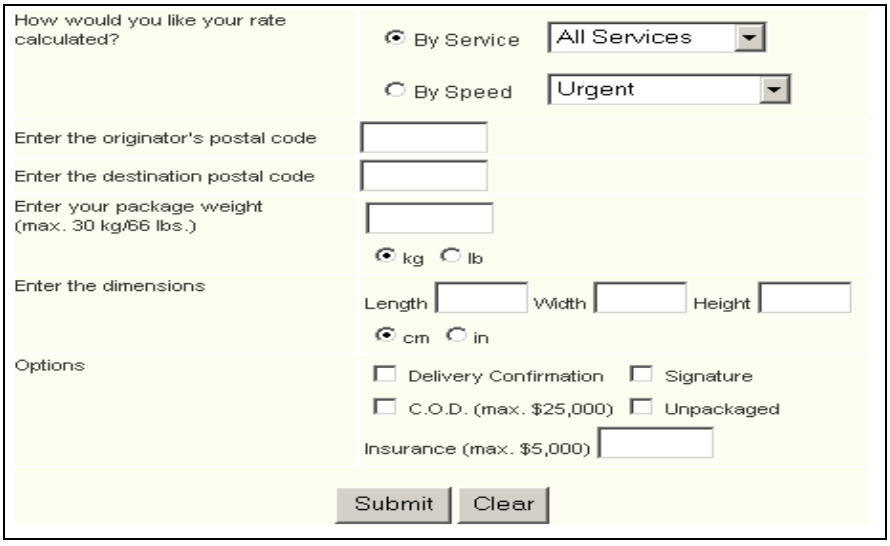

국제

□ 특사운송회사

민간 속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는 D.H.L., Priority Post, Purolator 등과 같은 업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배달은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기타 해외국가로의 배달도 2~3일 후에 이루어지지만 이용 요금은 비싼 편이다. (DHL의 경우 500g에 C$70선)

○ 사용방법
- 특사운송회사들은 여러 개의 지점이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운송장을 작성해야 한다.
- 특사운송회사들을 통해 우편을 송부할 때에도 일반 우체국과 마찬가지로 서류 이외의 'Commercial Invoice'를 동봉하여야 하며, Commercial Invoice 안에는 소포에 대한 정보 및 Commercial Value 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점의 위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취득할 수 있다.

주요 업체명

업체명	홈페이지
DHL Canada	www.dhl.ca
Purolator	www.purolator.ca
UPS	www.ups.ca
Fedex Canada	www.fedex.ca
한진택배	http://www.hanjinexpress.hanjin.net/hddusa/index.html

사. 호텔 및 식당

1) 호텔

캐나다의 숙박요금은 일반호텔의 경우 지역, 계절, 투숙 기간, 할인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나 일반적으로 토론토 지역의 경우 특급호텔이 C$200~350수준이고, 비즈니스 호텔은 C$120~180수준이다. 밴쿠버 지역의 경우 특급호텔이 C$200~350수준이고, 비즈니스 호텔은 C$150~200 수준이다.

모든 호텔이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이 가능하며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등의 신용카드를 취급한다. 인터넷의 호텔 검색 웹사이트 또는 여행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호텔도 많다.

일반적으로 여름의 관광성수기나 큰 행사가 있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호텔이 만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권장되며, 같은 호텔일지라도 며칠 간격으로 숙박요금이 조금씩 차이를 보일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유념해 두는 것이 좋다.

캐나다의 호텔 중에는 객실에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냉장고에 보관해야만 하는 음식은 호텔에서 장기체류 할 경우에 갖고 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객실에 비치된 물(페트병에 한함)을 마실 경우 이를 지불해야 하는데 일반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보통 1.5배 비싸다.

객실 내에서 인터넷 사용 시에는 보통 무선 혹은 유선 인터넷을 제공하는데, 보통 1일 24시간 기준으로 C$10~20을 선불 혹은 후불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프런트 데스크에 인터넷 사용을 요청해야 하며,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인터넷 접속 방법 및 Pin Number를 알려준다.

각 호텔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아래의 검색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캐나다 내 호텔 검색 관련 링크
- Hotel Canada: www.hotel-canada.com/
- World Web - Canada: http://canada.worldweb.com/WheretoStay/HotelsMotels/
- Expedia.ca: www.expedia.ca
- hotels.ca: www.hotel.ca

주요 도시별 호텔 리스트

호텔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토론토			
Toronto Hilton	토론토 시내145 Richmond St. W.	(416) 869~3456	C$209~249
Sheraton Centre Toronto	토론토 시내123 Queen St. W.	(416) 361~1000	C$199~249
Comfort Hotel Downtown	토론토 시내15 Charles St. E.	(416) 924~1222	C$99~139
Holiday Inn on King	토론토 시내370 King St. W.	(416) 599~4000	C$169~239
HotelInter-Continental	토론토 시내220 Bloor St. W.	(416) 960~8269	C$179~229
Hotel Victory Downtown	토론토 시내 56 Yonge St.	(416) 363~1666	C$110~169
Sutton Place Hotel	토론토 시내 955 Bay St.	(416) 924~9221	C$149부터
Westin Harbour Castle Hotel	토론토 시내1 Harbour Square	(416) 869~1600	C$189~289
Toronto Eaton Centre Marriott	토론토 시내 525 Bay St.	(416) 597~9200	C$169~179
Corporate Residences Canada	토론토 시내120 Carlton St.	(416) 925~7556	장기숙박 아파트호텔 C$2,500/월

밴쿠버			
The Pan Pacific Hotel	밴쿠버 시내999 Canada Place	(604) 662~8111	C$150~400
The Four Seasons Hotel	밴쿠버 시내791 West Georgia St.	(604) 689~9333	C$230~350
Hyatt Regency Vancouver Hotel	밴쿠버 시내655 Burrard St.	(604) 683~1234	C$199~264
Hotel Vancouver	밴쿠버 시내900 West Georgia St.	(604) 684~3131	C$160~270
Holiday Inn Vancouver Centre	밴쿠버 시내711 West Broadway Ave.	(604) 879~0511	C$99~127
Carlton Plaza Hotel	밴쿠버 시내642 Johnson St.	(604) 388~5513	C$109~149
Le Soleil Hotel	밴쿠버 시내 567 Hornby St	(604) 632~3000	C$160~230
Carmana Plaza Hotel	밴쿠버 시내 1128 Alberni St	(604) 683~1899	C$160~230
몬트리올			
Hotel Intercontinental Montreal	몬트리올 시내 360 Rue St-Antoine Ouest	(514) 987~9900	C$175~245
Chateau Versailles	몬트리올 시내 1659 Rue Sherbrooke Ouest	(514) 933~3611	C$145~220
Holiday Inn Montreal Centre-Ville	몬트리올 시내 99 Ave. Viger Ouest	(514) 878~9888	C$130~160
오타와			
Fairmont Chateau Laurier	오타와 시내1 Rideau St.	(613) 560~7000	C$249~279
Westin Hotel Ottawa	오타와 시내11 Colonel By Dr.	(613) 560~7000	C$139~239
Best Western Victoria Park	오타와 시내377 O'Con-ner St.	(613) 567~7275	C$119~149

자료: www.hotel-canada.com/, http://canada.worldweb.com/WheretoStay/HotelsMotels
주1: 주별로 다르나 온타리오주(토론토)의 경우 호텔요금에 11%의 세금이 추가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밴쿠버)의 경우에는 15%, 알버타(캘거리) 주의 경우에는 11%의 세금이 추가됨.
주 2: 보다 경제적인 숙박시설로는 공항 근처에 위치한 3성급 호텔(C$100-C$130)과 C$ 80-120수준의 모텔이 있다. 대다수 모텔은 도시 변두리나 입구, 고속도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2) 식당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이 어우러진 캐나다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서양요리, 중국요리, 일식, 한식은 물론 인도, 태국, 베트남, 아프리카, 자메이카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피자헛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도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토론토의 경우 대중음식점에서의 1인분 식사는 일반적으로 C$8~15, Fast food는 C$5~10수준이다.

또한 토론토에 위치한 한국음식점은 다운타운의 Bloor Street의 선상에 있는 한인타운 및 North York 지역의 Yonge & Sheppard부터 Yonge & Steel 사이에 밀집해 있으며 중국식당은 다운타운 지역 Spadina & Dundas 선상의 차이나타운과 토론토 북쪽의 위성도시인 Markham 지역에 밀집해 있다.

다운타운 Bloor Street 선상 한인타운은 지하철 Bathurst 또는 Christie 역에서 하차하고 Spadina & Dundas 선상 차이나타운은 지하철 Spadina 역에서 하차 후 전차를 이용한다.

밴쿠버의 경우 한국음식점은 다운타운 Robson St.와 다운타운 부근의 Broadway, Kingsway 및 한인 상점이 밀집해 있는 Burnaby시와 Coquitlam시 접경의 North Road선상에 집결해 있다.

고급식당의 경우 양식당은 2인기준 C$70~100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한식, 일식, 중식당의 경우에는 1인당 C$15~30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식사 비용 계산 시 토론토의 경우 C$4 이상의 식사에는 15%의 세금이 추가로 적용되며, 밴쿠버의 경우 연방세인 GST(상품과 용역 세금) 5%만이 추가로 적용되나, 술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10%의 주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셀프서비스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팁으로 음식 가격의 10~15%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 주요 식당 리스트

토론토

식당명	위치 및 주소	전화번호	종류
호수	시내, 2352 Yonge St.	(416) 848~9456	한식, 일식
나미 일식당	시내, 55 Adelaide St. E.	(416) 362-7373	일식
코리아하우스	시내, 666 Bloor St. W.	(416) 536-8666	한식
호심	시내, 100 King St. W.	(416) 368-0125	한식, 일식
일번지	시내, 668 Bloor St. W.	(416) 534-7223	한식, 일식
한국관	시내, 628 Bloor St. W.	(416) 536-0290	한식, 일식
세종회관	시내, 658 Bloor St. W.	(416) 535-5918	한식, 일식
물레방아	시내, 3 Christie St.	(416) 534-6833	한식
미네르바 부엉이	시내, 700 Bloor St.	(416) 538-3030	한식
북창동 순두부	시내, 691 Bloor St.	(416) 537-0972	한식
코리아 하우스	시내, 666 Bloor St.	(416) 536-8666	한식
기소야	서부, 5084 Dundas St. W.	(416) 233-2727	일식
신라회관	서부, 1161 Weston Rd.	(416) 247-2007	한식
만두향	북부, 6068 Yonge St.	(416) 512-2007	한식
낙원	북부, 5594 Yonge St.	(416) 590-1435	한식
노스욕 포장마차	북부, 5321 Yonge St.	(416) 733-3725	한식
뉴욕 순두부	북부, 4916 Yonge St.	(416) 233-5757	한식
닭한마리 칼국수	북부, 6309 Yonge St.	(416) 299-6248	한식
남산	북부, 879 York Mills Rd.	(416) 441-6060	한식, 일식
불고기하우스	북부, 41 Spring Garden Ave.	(416) 250-6094	한식
북촌	북부, 6012 Yonge St.	(416) 250-8383	한식
사리원	북부, 7388 Yonge St.	(905) 881-5103	한식
삼정	북부, 1865 Leslie St.	(416) 510-3300	한식, 일식
서울옥	북부, 7089 Yonge St.	(905) 731-2711	한식
장터밥집	북부, 5515 Yonge St.	(416) 221-2002	한식
장수면옥	북부, 2437 Finch Ave. W.	(416) 740-7233	한식
청기와	북부, 5817 Yonge St.	(416) 225-8090	한식, 일식
서울관	북부, 3220 Dufferin St.#1A	(416) 782-4405	한식, 일식
토담골	북부, 5935 Yonge St.	(416) 222-8076	한식
Buffet City	북부, 3160 Steeles Ave. E.	(905) 474-9899	중식 뷔페
챠이나 부페킹	서부, 4141 Dixie Rd.	(905) 629-2288	중식 뷔페
Jade Garden	시내, 222 Spadina Ave.	(416) 599-6000	중식
Ho Yuen	시내, 123 Dundas St. W.	(416) 813-0788	중식
Hua Sang	시내, 43 Baldwin St.	(416) 596-1628	중식, 해산물
LaMaquette	시내, 111 King St., E.	(416) 366-8191	프랑스
Little Anthony's	시내, 121 Richmond St. W.	(416) 368-2223	이태리
Al Frisco's	시내, 133 John St.	(416) 595-8201	지중해식
Mediterra	시내, 133 Richmond St. W.	(416) 861-1211	해산물
Bardi's	시내, 56 York St.	(416) 366-9211	스테이크
Tom Jones	시내, 17 Leader Lane	(416) 366-6583	스테이크

벤쿠버

식당명	위치 및 주소	전화번호	종류
북경반점	시내, 1639 Robson St.	(604) 689-3898	중식
코리아나	시내, 1256 Robson St	(604) 688-2101	한식, 중식
신포우리만두	시내, 833 Bute St	(604) 633-0667	한식
장모집	시내, 1719 Robson St.	(604) 642-0712	한식
우리집	동부, #7-3490 Kingsway	(604) 451-5177	한식
조선갈비	동부, 3486 Kingsway	(604) 434-1222	한식, 중식
토요스시	시내외곽, 2211 Cambie St.	(604) 879-0990	일식
서울관 로얄	시내외곽, 1215 W. Broadway	(604) 738-8285	한식, 중식
한우리	버나비시, 5740 Imperial St.	(604) 439-0815	한식, 중식
북창동순두부	버나비시, 4563 North Rd	(604) 420-5254	한식
경복궁	노스밴쿠버시, 143 W. 3rd St	(604) 987-3112	한식
Imperial	시내, 355 Burrard St	(604) 688-8191	중식
Lumiere	시내, 2551 W. Broadway	(604) 789-8185	프렌치
West Restaurant	시내, 2881 Granville St	(604) 738-8938	프렌치
C Restaurant	시내, 1600 Howe. St	(604) 681-1164	해산물
Tojo's	시내, 202-777 W. Broadway	(604) 872-8050	일식
Cin Cin	시내, 1154 Robson St	(604) 688-7338	이태리
Bule Water Café	시내, 1095 Hamilton St	(604) 688-7078	퓨전일식
Kamei-Royale	시내, 211-1030 W. Georgia	(604) 685-7355	일식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절차

캐나다에서 각종 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절한 담당 기관을 파악하는 일이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과 주, 시정부의 3단계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자 고유의 담당업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단위의 조직인 연방정부는 주로 무역이나 이민 등의 국가적 차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주와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 각 주정부는 교통, 보건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시정부는 치안,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관공서를 방문하기 이전에 관할지역 내의 어느 정부의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한다면 여러 곳의 관공서를 불필요하게 방문하는 시간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홈페이지(www.canada.gc.ca)에는 정부의 각 기관이 관장하는 업무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나열되어 있어 민원 처리 시 필요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기관별로 업무시간과 공휴일 등이 표시되어 있어 사전에 관공서 방문 일정을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방문자를 대하는 대부분의 관공서 직원들의 업무태도는 친절한 편이며 거의 예외 없이 선착순으로 민원이 처리되는데 관공서 방문 후 비치된 번호발생기를 통해 순서를 정한다. 대부

분 관공서 직원들이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관계로 변칙적인 방법을 활용한 빠른 일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캐나다의 민원처리 절차는 융통성이 결여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3개월의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캐나다의 관공서들은 가급적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Q&A나 이메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먼저 문의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전화응대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다만 문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거나 직접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 약속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공서의 특정인물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화 등을 통해 약속을 정한 후 약속시간 5분 전쯤에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는 것이 관례이고, 또한 사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철저하게 구비하고 방문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공휴일

캐나다의 공휴일(실제 휴일 기준)

공휴일	2008 년	2009 년	2010 년
New Year's Day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Good Friday(성금요일)	3월 21일	4월10일	4월 2일
Easter Monday(부활절)	3월 24일	4월13일	4월 5일
Victoria Day(빅토리아 데이)	5월 19일	5월 18일	5월 24일
Canada Day(캐나다 데이)	7월 1일	7월 1일	7월 1일
Civic Holiday	8월 4일	8월 3일	8월 2일
Labour Day(노동절)	9월 1일	9월 7일	9월 6일
Thanksgiving Day(추수감사절)	10월 13일	10월 12일	10월 11일
Remembrance Day(현충일)	11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Christmas	12월 25일	12월 25일	12월 27일
Boxing Day(박싱 데이)	12월 26일	12월 28일	12월 28일

주: 캐나다의 일부 공휴일은 특정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관례 및 법령에 따라 매년 변함. 만약 해당 공휴일이 주말(토,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 보통임.
자료: 캐나다 우체국

법정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은행, 대형 상점 등이 모두 휴무하며 소규모 상점들은 상점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여부를 결정 짓는다.

□ 출장 지양기간

○ 여름 휴가시즌(6 월):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경제관련 단체 등이 동 기간 중 2 주에서 1 개월간 휴가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 출장 시 사전확인이 필수적이다.

○ 겨울(11 월): 캐나다의 겨울은 우리나라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강추위와 폭설을 동반하기 때문에 출장 시 기후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12 월 중순에서 1 월 초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연이어 장기 휴가를 내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봄: 3 월 중에 학생들이 1 주일간의 봄방학(March Break)이 있어 가족을 동반한 휴가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

차. 여행 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준비

○ 여름
- 여름철에는 대체적으로 기온이 서늘해 여행하기 좋은 편이나 30 도가 넘는 무더위가 며칠간 지속되다가도 기온이 20 도 아래로 급락하는 등 기후 변동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캐나다의 기후는 여름에도 상당히 서늘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므로 방한용 스웨터나 겉옷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한다.

○ 겨울
- 밴쿠버의 경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온난하지만 동부 지역의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등은 기온이 섭씨 영하 20 도에서 30 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 여행할 경우에는 두꺼운 오버코트, 모자, 장갑 등의 준비는 필수이며, 특히 겨울은 빠르면 10 월 중순부터 늦게는 4 월 말까지 약 6 개월간 지속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또한, 광활한 국토를 지닌 나라인 만큼 지역에 따른 기후차이가 심하다. 밴쿠버 근처 태평양 연안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 선선하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화하고 흐린 날이 많고 습하다. 반면, 서부의 로키 산맥에서 동부의 5 대호에 이르는 내륙 지방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은 춥고 길며, 여름은 덥고 짧다.

□ 의약품 준비

여행 중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현지조달이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것이 있고 현지에서 구입한 약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권장된다. (위장약, 감기약, 반창고, 진통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 전기 규격

사용 전력은 110V, 60Hz인 관계로 이에 맞는 전자제품을 준비하거나 전력변환용 어댑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플러그는 220V의 경우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110 V에서는 납작하고 얇은 모양만을 사용하므로 220V를 110V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콘센트(일명 '돼지코')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여행여건

□ 치안

캐나다의 대도시는 미국의 가장 안전한 지방도시와 비교될 만큼 범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야간외출, 단독여행, 전철승차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사회적 치안상태도 미국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총기를 사용한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미리 우범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토론토의 경우 동부 Scarborough 지역과 북서쪽 Finch & Jane 지역이 치안이 불안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야간에는 이들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대부분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부를 수도 있으나 가급적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택시를 불러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며 안전한 편이다. 다만, 야간에 여성 혼자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팁 관행

○ 식당
-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을 제외한 음식점에서는 청구금액의 10~15% 상당을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단 청구 금액에 서비스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지불할 필요가 없다. 또한 총 금액이 C$ 300 이상인 경우나 간혹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팁의 액수까지 미리 적어놓은 청구서를 가지고 오는 레스토랑도 있으므로 이중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단체 손님일 경우(8~10 명 이상)계산서 작성 시 서비스 요금을 미리 추가하는 음식점도 있다.

○ 택시
-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의 10~15%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요금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 50 센트를 주는 것이 예의이다. 인원 수가 많거나 짐이 많은 경우에는 약간 더 준다. 특히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시 자동차 트렁크에 무거운 짐을 싣거나 운전사가 직접 짐을 운반해 줄 때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호텔
-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C$1 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호텔의 침실 청소 시에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1 인당 C$1 정도 놓아두는 것이 적당하다. 룸서비스를 부탁한 경우 보통 요금의 10~15%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며 부족한 수건이나 담요 등을 가져다 주면 50 센트~C$1 정도의 팁을 지불한다.

□ 비상의료 대책

병원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비상시에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Emergency Room)로 직접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며 보다 긴급한 상황에는 전화번호 911을 돌리면 응급 구조대가 즉시 출동한다. 토론토의 경우에는 한국어 911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911 연결 후 교환원에게 한국어 사용을 부탁)

주요 대도시 소재 병원

토론토 시내 주요 병원	주소	전화번호
Mount Sinai Hospital	600 University Ave.	416-586-4200
Toronto General Hospital	200 Elizabeth Ave.	416-595-3111
Hospital for Sick Children	555 University Ave.	416-813-1500
North York General Hospital	4001 Leslie	416-756-6000
Etobicoke General Hospital	101 Humber College	416-747-3400
Sunnybrook Hospital	2075 Bayview Ave.	416-486-3000
Toronto General Hospital	200 Elizabeth	416-595-3111
St. Michael's Hospital	30 Bond	416-360 4000
밴쿠버 시내 주요 병원	**주소**	**전화번호**
Vancouver General Hospital	899 West 12th St.	604-875-4111
BC Children's Hospital	4480 Oak St.	604-875-2345
UBC Hospital	2211 Westbrook Mall	604-822-7121
St. Paul's Hospital	1081 Burrard St.	604-682-2344
St. Vincent's Hospital	749 West 33rd Ave.	604-876-7171
Mount St. Joseph Hospital	3080 Prince Edward	604-874-1141

카. 유용한 연락처

한국기관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주소: 150 Boteler St., Ottawa, Ontario, K1N 5A6 - 전화: 613-244-5010 / 팩스: 613-244-5043 - 인터넷주소: can-ottawa.mofat.go.kr
몬트리올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Montreal)
- 주소: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H3B 2C4 - 전화: 514-845-2555 / 팩스: 514-845-1119 - 인터넷주소: www.koreanconsulate.qc.ca
토론토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ronto)
- 주소: 555 Avenue Rd., Toronto ON, M4V 2J7 - 전화: 416-920-3809 / 팩스: 416-924-7305 - 인터넷주소: www.koreanconsulate.on.ca
밴쿠버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Vancouver)
- 주소: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604-681-9581, 9582 / 팩스: 604-681-4864 - 인터넷주소: http://can-vancouver.mofat.go.kr
토론토 KBC(KOTRA, Toronto)
- 주소: 65 Queen St. W., Suite 600, Toronto, Ontario, M5H 2M5 - 전화: 416-368-3399 / 팩스: 416-368-2893 - e-메일: info@kotra.ca - 인터넷주소: www.kotra.or.kr/toronto
밴쿠버 KBC(KOTRA, Vancouver)
- 주소: Suite 1320, Cathedral Place, 925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C 3L2 - 전화: 604-683-1820 / 팩스: 604-687-6249 - e-메일: kotra@kotrayvr.com - 인터넷주소: www.kotra.or.kr/vancouver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 (Korea National Tourism Corporation, Toronto)
- 주소: 700 Bay St. Suite 1903, Toronto, Ontario, M5G 2Z6 - 전화: 416-348-9056 / 팩스: 416-348-9058 - 이메일: toronto@knto.ca - 인터넷주소: english.visitkorea.or.kr

대한광업진흥공사 캐나다 사무소 (Korea Resources Corporation, Toronto Office)
- 주소: 69 Yonge St. Suite 1300, Toronto, Ontario, M5E 1K3 - 전화: 416-929-8183 / 팩스: 416-929-7242 - e-메일: skchai@kores.or.kr - 인터넷주소: www.kores.or.kr
한국석유공사 캐나다 사무소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Calgary Office)
- 주소: Suite 2010, 520-5th Ave SW, Calgary, AB T2P 3R7 - 전화: 403-999-7106 / 팩스: 403-269-8081 - e-메일: mummyk@knoc.ca - 인터넷주소: www.knoc.co.kr

한인단체

토론토 한인회 (Korean 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of Metro Toronto)
-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tario, M3C 2J6 - 전화: 416-383-0777 - 팩스: 416-383-1113
오타와 한인회 (Korean Canadian Association of Ottawa)
- 주소: 28 Craig Henry Dr. Nepean K2G 3S5 - 전화: 613-947-1443
몬트리올 한인회 (Korean Community of Greater Montreal)
- 주소: 3480 Decarie Blvd., Montreal, Quebec, H4H 3J5 - 전화: 514-481-6661 - 팩스: 514-481-0062
밴쿠버 한인회 (Kore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 주소: 1320 East Hastings St., Vancouver, B.C., V5L 1S3 - 전화: 604-255-3739 - 팩스: 604-255-3443
에드먼튼 한인회 (Edmonton Korean Association)
- 주소: P.O. Box #68103, Bonnie Doon Mall, Edmonton, Alberta, T6C 4N6 - 전화: 780-468-3177 - 팩스: 780-988-6128
캘거리 한인회 (Calgary Korean Cultural Association)
- 주소: 1901 30 St. S.W., Calgary, Alberta, T3E 2L5 - 전화: 403-216-4600 - 팩스: 403-216-4600
노바스코샤 한인회 (Nova Scotia Korean Association)
- 주소: 1800 Argyle St. # 800, Halifax, N.S., B3J 3N8 - 전화: 902-860-1525
뉴브런즈윅 한인회 (New Brunswick Korean Association)
- 주소: 162 Prime William St., Moncton, N.B., E2L 2B6 - 전화: 506-693-0884 - 팩스: 506-642-7263
마니토바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of Manitoba)
- 주소: P.O. Box 800 150 River Ave., Winnipeg, Manitoba, R3L 0A9 - 전화: 204-284-0255 - 팩스: 204-952-9893
한인 무역인협회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OKTA)
- 주소: 750 Millway Ave, Unit 8, Concord, Ontario, L4K 3T7 (토론토지부) - 전화: 905-738-5556 - 팩스: 905-738-5884

3)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교역 관련 국가기관

캐나다 외교통상부(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소재지	Ottawa
주소	125 Sussex Drive, Ottawa, ON, Canada, K1A 0G2
전화	1 800 267-8376
팩스	(613) 996-9709
홈페이지	www.dfait-maeci.gc.ca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	
소재지	Ottawa
주소	West Tower, C.D. Howe Building, 235 Queen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A 0H5
전화	(613) 954-5031
팩스	(613) 952-5162
홈페이지	www.ic.gc.ca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 Export Development Canada)	
소재지	Ottawa
주소	151 O'Connor, Ottawa, Canada, K1A 1K3
전화	(613) 598-2500
팩스	(613) 237-2690
홈페이지	www.edc.ca
캐나다 상업개발공사(CCC: Canada Commercial Corporation)	
소재지	Ottawa
주소	50 O'Connor Street, 11th floor, Ottawa , Ontario, K1A 0S6
전화	(613) 996-0034
팩스	(613) 995-2121
홈페이지	www.ccc.ca
캐나다 관세청(CBSA: Canadian Border Service Agency)	
소재지	Ottawa
주소	2265 St. Laurent Blvd, Ottawa, Ontario, K1G 4K3
전화	(506) 636-5064
홈페이지	www.cbsa-asfc.gc.ca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소재지	Ottawa
주소	15th Floor, 333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tario, K1A 0G7
전화	(613) 949-2309
팩스	(613) 990-2439
홈페이지	www.citt.gc.ca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소재지	Ottawa
주소	59 Camelot Drive, Ottawa, Ontario, K1A 0Y9
전화	(613) 225-2342 / 1-800-442-2342
팩스	(613) 228-6601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

법률 서비스 기관

Blake, Cassels & Graydon LLP	
소재지	Montreal, Ottawa, Toronto, Calgary, Vancouver
주소	199 Bay Street Suite 2800, Commerce Court West Toronto, ON M5L1A9
전화	(1-416) 717-1500
팩스	(1-416) 863-2653
홈페이지	www.blakes.com

Fasken Martineau DuMoulin LLP			
소재지	Vancouver, Calgary, Toronto, Quebec		
주소	PO Box 20 Stn Toronto Dom. Toronto, ON M5K 1N6		
전화	(1-416) 366-8381		
팩스	(1-416) 364-7813		
홈페이지	www.fasken.com		
Borden Ladner Gervais LLP			
소재지	Toronto, Montreal, Calgary, Vancouver		
주소	1000 Centerra Tower 400 Third Ave. S.W Calgary Alberta T2P 4H2		
전화	(1-403) 232-9500	팩스	(1-403) 266-1395
홈페이지	www.blgcanada.com		
Goodmans LLP			
소재지	Toronto, Vancouver		
주소	PO Box 24 Toronto, Ontario M5B 2M6		
전화	(1-416) 979-2211	팩스	(1-416) 979-1234
홈페이지	www.goodmans.ca		
Macleod Dixon LLP			
소재지	Calgary, Toronto		
주소	PO Box 128 Stn Toronto Dom, Toronto, Ontario M5K 1H1		
전화	(1-416) 360-8511	팩스	(1-416) 360-8277
홈페이지	www.macleoddixon.com		
Aird & Berlis LLP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BCE Place Suite 1800, Box 754 181 Bay St. Toronton, M5J 2T9		
전화	(1-416) 863-1500	팩스	(1-416) 863-1515
홈페이지	www.airdberlis.com		
Baker & Mckenzie LLP			
소재지	Toronto		
주소	BCE Place 181 Bay St. Suite 2100 PO Box 874 Toronto, ON M5J 2T3		
전화	(1-416) 863-1221	팩스	(1-416) 863-6275
홈페이지	www.bakernet.com		
Gowling Lafleur Henderson LLP			
소재지	Toronto, Montreal, Ottawa, Hamilton, Waterloo, Vancouver, Calgary		
주소	160 Elgin St. Ottawa Ontario K1P 1C3		
전화	(1-613) 233-1781	팩스	(1-613) 563-9868
홈페이지	www.gowlings.com		
Hughes Amys LLP			
소재지	Toronto		
주소	48 Yonge St. Suite 200 Toronto, ON M5E 1G6		
전화	(1-416) 367-1608	팩스	(1-416) 367-8821
홈페이지	www.hughesamys.com		
Hwang Company(한입법률사무소)			
소재지	Vancouver		
주소	#333-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전화	(1-604) 421-3669		
팩스	(1-604) 421-6339		
홈페이지	N/A		

회계/투자 자문 서비스 기관

BDO Dunwoody			
소재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주소	55 Anik St. Alexandria, Ontario, K0G 1A0		
전화	(1-613) 525-1585		
팩스	(1-613) 525-1436		
홈페이지	www.bdo.ca		
Deloitte & Touche			
소재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주소	2 Queen St. E, Suite 1200 Toronto, Ontario M5C 3G7		
전화	(1-416) 874-3875		
팩스	(1-416) 874-3888		
홈페이지	www.deloitte.ca		
Grant Thornton			
소재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주소	PO Box 55 Stn Royal Bank Toronto, Ontario M5J 2P9		
전화	(1-416) 336-0100		
팩스	(1-416) 360-4949		
홈페이지	www.grantthornton.ca		
Mintz & Partners			
소재지	Toronto		
주소	1 Concorde Gate, Suite 200, North York Ontario M3C 4G4		
전화	(1-416) 391-2900	팩스	(1-416) 391-2748
홈페이지	www.mintzca.com		
RSM Richter			
소재지	Calgary, Montreal, Toronto		
주소	Watermark Tower #1410, 530-8th Ave S.W Calgary Alberta T2P 3S8		
전화	(1-403) 233-8462	팩스	(1-403) 233-8688
홈페이지	www.rsmrichter.com		
Soberman			
소재지	Toronto		
주소	2 St Clair Avenue, East Suite 1100 Toronto, Ontario M4T 2T5		
전화	(1-416) 964 7633	팩스	(1-416) 964-6454
홈페이지	www.soberman.com		
KPMG			
소재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주소	393 University Ave, Suite 1100, Toronto, Ontario M5G 2N9		
전화	(1-416) 777-8000	팩스	(1-416) 777-3969
홈페이지	www.kpmg.ca		
PricewaterhouseCoopers			
소재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주소	5700 Yonge St. Suite 1900 North York Ontario M2M 4K2		
전화	(1-416) 218-1500	팩스	(1-416) 218-1499
홈페이지	www.pwc.com		
Ernst & Young			
소재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주소	PO Box 251 Stn Toronto Dom, Toronto, Ontario M5K 1J7		
전화	(1-416) 864-1234	팩스	(1-416) 864-1174
홈페이지	www.ey.com		
Lee & Lee (한인회계사)			
소재지	Vancouver		
주소	4501 North Rd #216A, #327A Burnaby, BC V3N 4R7		
전화	(1-604) 873-1234	팩스	(1-604) 879-2388
홈페이지	N/A		

한인 언론기관

캐나다 중앙일보
- 주소: 655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L1 - 전화: 416-533-5533 /팩스: 416-533-5500 - e-메일: info@joongangcanada.com - 인터넷주소: www.joongangcanada.com
캐나다 중앙일보(서부 캐나다)
- 주소: 4501 North Road, Unit 320, Burnaby, B.C. V3N 4R7 - 전화: 604-420-6033 - 팩스: 604-420-6022 - e-메일: info@joinscanada.com - 인터넷주소: www.canadajoongang.com
캐나다 한국일보
- 주소: 287 Bridgeland Ave., Toronto, Ontario, M6A 1Z6 - 전화: 416-787-1111 - 팩스: 416-781-7777 - 인터넷주소: www.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서부 캐나다)
- 주소: 9940 Lougheed Hwy, Unit 303, Burnaby, B.C. V3J 1N3 - 전화: 604-420-3650 - 팩스: 604-420-3653 - 인터넷주소: www.koreatimes.net
얼TV(All TV)
- 주소: 1133 Leslie St. #213 Toronto, ON, M3C 2J6 - 전화: 416-538-2211 - 팩스: 416-538-1616 - 인터넷주소: www.alltv.ca

한인여행사

여행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토론토		
세방여행사	(416) 536-5530	(416) 532-2716
대한여행사	(416) 588-3344	(416) 588-3866
럭키여행사	(416) 222-5567	(416) 222-5535
신세계여행사	(416) 536-5000	(416) 536-3101
오렌지여행사	(416) 733-9355	(416) 733-9311
나라여행사	(416) 225-2580	(416) 225-6200
하나여행사	(416) 730-0101	(416) 730-8201
얼워렌여행사	(416) 534-7557	(416) 534-7559
세진여행사	(905) 949-6654	(905) 949-4421
로얄여행사	(416) 222-5586	(416) 222-0336
밴쿠버		
고려여행사	(604) 872-0747	(604) 872-0700
대한여행사	(604) 876-6646	(604) 876-6316
미주관광여행사	(604) 939-0043	(604) 603-8508
블루버드여행사	(604) 688-1994	(604) 688-1950
서울여행사	(604) 872-5600	(604) 872-8848
한국관광여행	(604) 438-0234	(604) 433-8762

은행

캐나다 외환은행 (Korean Exchange Bank of Canada)
○ 본점 - 주소: 4950 Yonge St. Suite 1101, Toronto, Ontario, M2N 6K1 - 전화: 416-222-5200 - 팩스: 416-222-5822
○ 블루어 지점 - 주소: 627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 전화: 416-533-8593 - 팩스: 416-531-1047
○ 미시사가 지점 - 주소: 90 Burnhamthrope Rd. W., #120, Mississauga, Ontario, L5B 3C3 - 전화: 905-272-3130 - 팩스: 905-272-3430
○ 밴쿠버 - 버나비 지점 - 주소: 4900 Kingsway, #100, Burnaby, BC, V5H 2E3 - 전화: 604-432-1984 - 팩스: 604-432-1964
○ 밴쿠버 - 코퀴틀람 지점 - 주소: 4501 North Road, #202A, Burnaby, BC, V3N 4R7 - 전화: 604-420-0019 - 팩스: 604-420-0066
○ 밴쿠버 - 다운타운 지점 - 주소: 590 Robson Street, Vancouver, BC, V6B 2B7 - 전화: 604-609-2700 - 팩스: 604-609-2777
로열은행 한인금융센터 (Royal Bank Financial Group)
- 주소: 5001 Yonge St., North York, Ontario, M2N 6P1 - 전화: 416-512-4554 - 팩스: 416-512-3077
몬트리올은행 블루어지점 (Bank of Montreal - Bloor Branch)
- 주소: 640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9 - 전화: 416-533-8810 - 팩스: 416-533-7609
한인신용조합 (Sharons Credit Union) - 본점
- 주소: 1055 Kingsway, Vancouver, B.C., V5V 3C7 - 전화: 604-873-6490 - 팩스: 604-873-6498
한인신용조합 (Toronto Korean Credit Union) - 토론토 블루어 본점
- 주소: 703 Bloor St., Toronto, Ontario, M6G 1L5 - 전화: 416-535-4511 - 팩스: 416-535-9323

비상연락처

긴급전화(화재, 도난, 경찰, 응급의료 등)	911(토론토 경우 한국어 통화 가능)
전화번호문의	411
날씨문의	416-739-4826 (토론토)
	604-664-9033 (밴쿠버)
대중교통문의	416-393-4636 (토론토)
한국 수신자부담 직통전화	1-800-663-0682 (한국 교환원)

콜택시

토론토	
Aerofleet (24시간)	(416) 678-7077
Airport Taxi (24시간)	(905) 624-2424
Beck	(416) 751-5555
Yellow Cab	(416) 777-9222
Crown	(416) 750-7878
Diamond	(416) 366-6868
Metro Cab	(416) 504-8294
밴쿠버	
Vancouver Taxi	(604) 871-1111
Yellow Cab	(604) 681-1111
Black Top & Checker Cabs	(604) 683-4567

병원

토론토 시내 주요 병원	주소	전화번호
Mount Sinai Hospital	600 University Ave.	416-586-4200
Toronto General Hospital	200 Elizabeth Ave.	416-595-3111
Hospital for Sick Children	555 University Ave.	416-813-1500
North York General Hospital	4001 Leslie	416-756-6000
Etobicoke General Hospital	101 Humber College	416-747-3400
Sunnybrook Hospital	2075 Bayview Ave.	416-486-3000
Toronto General Hospital	200 Elizabeth	416-595-3111
St. Michael's Hospital	30 Bond	416-360 4000
밴쿠버 시내 주요 병원	주소	전화번호
Vancouver General Hospital	899 West 12th St.	604-875-4111
BC Children's Hospital	4480 Oak St.	604-875-2345
UBC Hospital	2211 Westbrook Mall	604-822-7121
St. Paul's Hospital	1081 Burrard St.	604-682-2344
St. Vincent's Hospital	749 West 33rd Ave.	604-876-7171
Mount St. Joseph Hospital	3080 Prince Edward	604-874-1141

한인 포털 사이트(캐나다 주요뉴스, 한인사회 동정, 구인, 구직, 한인업소록 등 각종 정보)

아하 아이디어	www.ahaidea.com
케이티 타운	www.kttown.ca
교차로	www.kcrnews.com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비즈니스 쇼핑

출장자를 고민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귀국선물 구입이다. 가족, 친지는 물론 동료 몫까지 챙겨야 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캐나다 주요 도시의 중대형 상점에서는 좋은 품질의 유럽 유명 브랜드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을 캐나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캐나다산 특산품을 원하는 사람들은 단풍 시럽, 아이스 와인, 인디언 카우칭 스웨터, 캐나다의 원주민 이누이트 에스키모의 수공예품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 받고 있는 캐나다의 건강보조식품, 훈제연어 등을 주로 선택한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상품구입 시에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 GST)가 5% 부과되는데 관광객은 출국 시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제품 구입에만 해당하며 식당 등 서비스와 관련된 영수증은 환급이 불가하다. 또한 알버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가 연방세와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그 세율은 주에 따라 4~12%로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7%가 부과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경우는 8%가 부과되고 있다.

밴쿠버 지역에서의 쇼핑은 한국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Robson 거리에서 가능하다. 백화점인 The Bay, Sears 외에 외국 유명 브랜드 매장 및 캐나다 토산품 매장이 많이 있으며, 이밖에 전자제품 전문매장인 Future Shop, 의류 아웃렛 매장인 Winners, 대형서점인 Chapters 등이 위치하여 손쉽게 쇼핑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한인상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주요 쇼핑센터 리스트

토론토	주소	전화번호
Eaton Centre (www.torontoeatoncentre.com)	다운타운 Queen/Yonge	(416) 598-8560
Centerpoint Mall (www.centerpointshops.com)	6464 Yonge St.	(416) 222-6255
Yorkdale Shopping Center (www.yorkdale.com)	1 Yorkdale Rd.	(416) 789-3261
Promenade Shopping Center (www.promenadeshoppingcentre.ca)	1 Promenade Circle, Thornhill	(905) 764-0022
Woodbine Centre (www.woodbinecentre.ca)	500 Rexdale Blvd.Etobicoke	(416) 674-5200
Fariview Shopping Mall (www.fairviewmall.ca)	1800 Sheppard Ave. East.	(416) 491-0151
Don Mills Centre (www.donmillscentre.ca)	939 Lawrence Ave. East.	(416) 447-6087
밴쿠버	**주소**	**전화번호**
Pacific Centre Mall (www.pacificcentre,com)	609 Granville St	(604) 688-7235
Metrotown Centre	4720 Kingsway	(604) 630-3340
Lonsdale Quay	123 Carrie Cates Court	(604)985-6261
Park Royal Shopping Centre (http://www.shopparkroyal.com)	2002 Park Royal South. West	(604)925-9576

파. 관광명소

1) 온타리오州

□ 토론토(Toronto)

온타리오 주의 주도이자 캐나다 최대의 도시인 토론토는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토론토는 온타리오 호수에서 세인트로렌스 강을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수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5대호를 사이에 두고 미국의 미시건, 뉴욕 州와 접해 있다.

거리는 남북을 관통하는 영 스트리트 (Yonge Street)와 401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정비되었으며 온타리오 호수에서 바라보는 시가지의 전경은 뉴욕의 마천루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토론토가 뉴욕과 크게 다른 점은 이곳이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으로 유명한 People City, 즉 사람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점이다. 또한 토론토는 캐나다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토론토는 캐나다 최고의 문화 중심지이다. 뉴욕과 동시에 최신 영화가 개봉되고 유명 뮤지컬이 장기 공연되고 있으며 미술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스포츠 시설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연극, 미술, 쇼핑, 요리 등의 다양한 볼거리 또한 무궁무진하다.

□ 주요 관광명소

- ㅇ 신, 구 시청
  - 다운타운의 베이 스트리트 (Bay Street)와 퀸 스트리트 (Queen Street)가 교차하는 일대에 위치하여 있다. 시계탑이 있는 청록색의 지붕을 가진 어두운 빛깔의 오래된 건물이 1891 년 건축된 구 시청이다. 구 시청 서쪽으로 반원형의 2 동 짜리 고층 빌딩과 원형 의회장을 갖춘 건물은 신 시청으로 1965 년에 건축되었다. 신 시청 앞에 위치한 네이던 필립스 광장(Nathan Phillips Square)은 여러 문화행사가 펼쳐지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민 광장이다.

- ㅇ CN Tower
  - 다운타운의 최남단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CN Tower 의 전체 높이는 533m 이며, 전망대에는 바닥이 유리로 된 부분(Glass Floor)이 있어 346m 높이에서 바닥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전망대에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면 447 m 높이의 Sky Pod 전망대에 올라 토론토 시내와 근교를 볼 수 있다.

- ㅇ 토론토 아일랜드(Toronto Island)
  - 다운타운 최남단의 호숫가에서 10 분 정도 여객선을 타고 가면 인공 섬인 토론토 아일랜드에 도착하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른 도시의 모습을 모방해 놓은 공원과 자전거로 하이킹하기에 좋은 산책로,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잔디밭과 해변 등이 있다.

□ 앨공퀸 주립공원(Algonquin Provincial Park)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11번 고속도로를 따라 계속 북상하면 몇 개의 호수가 펼쳐져 있는 무스코카(Muskoka) 지방에 도착한다. 2만 개의 커티지(Cottage)와 130개의 리조트 호텔이 있어 토론토 주변 사람들이 여유롭게 여름휴가를 보내는 피서지인 이 곳은 사람들에게 Cottage & Country Resort 로 불린다.

무스코카 지역의 최대의 즐거움은 대자연을 무대로 즐기는 다양한 레저스포츠이다. 낚시,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호수가 자리잡고 있으며, 메이플 가도의 단풍나무 명소로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숲에서는 골프나 보트놀이를 즐길 수 있다.

무스코카 지역에서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깊은 숲에 둘러싸인 원시림인 앨공퀸 주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앨공퀸 주립공원에서는 무스(Moose)나 곰 등의 야생동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강원도에 필적하는 크기의 방대한 앨공퀸 주립공원의 가장자리 쪽으로는 리조트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집결해 있고 안쪽에는 카누나 하이킹 등을 통해 가야 하는 격리된 캠프사이트들이 있다.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토론토 대안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기도 하며, 과거 나이아가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탐험대가 거대한 폭포로 인해 갈 길이 막혔던 곳이기도 하다. 5대 호 중 하나인 에리 호수(Lake Erie)의 물이 호수의 끝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어 한꺼번에 흘러 떨어진 후 계곡을 지나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 든다.

폭포는 고트섬(Goat Island)을 사이에 두고 캐나다 폭포와 아메리카 폭포로 나누어지는데 거대한 말굽 모양의 캐나다 폭포가 미국 폭포보다 웅대하여 인기가 높아 매년 많은 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폭포의 웅장함을 한층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카지노, 유락시설, 기념품 상점 등도 풍부해 온타리오 주의 주요 외국 관광객 유치 지역이기도 하다.

□ 킹스톤 천섬(Kingston Thousand Islands)

물의 도시 킹스톤의 천섬은 캐나다의 셀 수 없이 많은 호수와 섬이 만들어내는 경치 중 가장 빼어난 곳으로 캐나다 인디언들은 이곳을 '조용한 영혼들의 마당'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1,000여 개가 훨씬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천 섬은 물위에 놓여진 '백만장자의 거리'란 이야기를 들을 만큼 호화로운 별장을 가진 섬이 많다.

특히 할리우드 스타들이 소유하고 있는 섬들이 많은데 각 섬들마다 아름다운 경치와 어우러진 독특한 별장들로 마치 하나의 조그만 왕국을 보는 듯 하다. 그 중 매우 웅장하며 아름 다운 모습을 가진 하트섬의 볼트성은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주인으로 독일 출 신인 볼트씨가 부인을 위해 세운 것이다.

□ 오타와(Ottawa)

오타와는 1857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캐나다의 수도로 선정된 도시이다.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의 중간에 위치한 오타와는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국가의 심장부를 미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있는 곳에 위치하려는 목적으로 수도로 지정되었다. 정연한 시가지가 색색의 튤립으로 가득 차는 봄은 이 도시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기이다.

오타와 강에 면한 견고한 언덕에는 시가지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국회의사당이 위치하여 있고 그 주변에는 국가의 중추기관들이 집결해 있다. 거리 여기저기에 공원과 미술관이 있으며 오타와 강을 사이에 둔 연안의 퀘벡 주의 도시 헐(Hull)과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헐 교외에는 단풍나무의 명소로 유명한 광대한 가티노 파크(Gatineau Park) 숲이 펼쳐져 있다. 행정도시인 만큼 화려함은 떨어지지만 미술관을 순회하고 리도 운하를 항해한 후 헐 거리까지 구경하면 충실한 관광이 될 것이다.

○ 주요 관광명소

- 국회의사당(Parliament Hill): 다운타운 북쪽의 오타와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위치하여 있으며 1866 년에 완성되었다. 중앙, 동쪽, 서쪽 건물의 3 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중앙에는 넓은 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 건물에서 가장 높이 솟은 탑은 평화의 탑이라고 불리며, 제 1 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캐나다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름 관광 시즌에는 매일 오전 10 시에 125 명의 위병들이 벌이는 위병 교대식이 열리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주변에 약 1,000 여 개의 전등이 켜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Sparks Street Mall: 국회의사당 앞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뒤편으로 놓인 거리로, 차량이 통제되는 보행자 전용 거리이다. 거리 양 옆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과 음식점, 환전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2) 퀘벡州

□ 몬트리올(Montreal)

세인트로렌스 강에 떠있는 섬 도시인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토론토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프랑스계 주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서 북미의 파리라고 일컬어진다. 중세의 분위기가 흠뻑 풍기는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분위기의 고층건물이 늘어선 신시가지로 구분되는 몬트리올은 과거와 현대의 매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시로써 전 세계에서 파리 다음으로 큰 프랑스어 사용 도시이기도 하다.

○ 주요 관광 명소

- 노틀담 대성당(Notre Dame Basilica): 1829 년에 세워진 대성당으로 몬트리올 구시가지 최대의 볼거리이다. 19 세기 후반에 개, 보수를 거친 성당 안은 화려한 분위기이며, 특히 천장에 꾸며진 스테인드글라스는 매우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건물 한쪽으로 대성당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으며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투어도 제공된다.
- 자크 카르티에 광장(Place Jacques-Cartier): 시청의 맞은 편에 위치한 광장으로 세인트 로렌스 강쪽으로 지대가 낮아지며 음식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마차로 관광하는 사람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 구 항구(Vieux Port):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구시가지가 형성되는 일대에 약 2km 정도 이어지는 공원지대로 강 연안을 따라 다양한 놀이시설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퀘벡 시티(Quebec City)

캐나다의 프랑스 문화권 내에서도 가장 문화가 풍부하고 역사가 깊으며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가 바로 퀘벡 시티이다. 특히 구 시가지의 다운타운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보존 지구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퀘벡 시티는 또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 시가지 외에 바깥쪽으로 신 시가지가 펼쳐져 뚜렷한 두 가지 색깔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3) 브리티시컬럼비아州

□ 밴쿠버(Vancouver)

태평양에 접한 밴쿠버는 캐나다를 동양권과 연결시키는 서부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자 캐나다 제3의 도시이다. 인정미 넘치고 친절한 사람들, 깨끗하고 안전한 주위 환경,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활 방식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련되고 현대적 감각을 지닌 도시와 함께 웅장한 산과 깊고 푸른 바다의 자연이 만들어 내는 조화는 세계 어디서도 체험할 수 없는 밴쿠버의 매력을 자아낸다.

o 주요 관광명소
- 개스타운(Gas Town): 다운타운 북쪽의 워터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타운으로 기념품 가게나 의류상점,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개시의 동상과 오래된 증기 시계(Steam Clock)가 이 곳의 명물인데 특히 증기 시계는 15 분마다 증기를 뿜으며 기적소리로 캐나다 국가를 연주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 캐나다 플레이스(Canada Place): 흰 돛 모양의 하얀 지붕이 인상적인 건물로 1986 년 엑스포에서 캐나다 가설 건축물로 세워진 후 현재는 국제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스탠리 공원(Stanley Park): 다운타운 북서쪽에 위치한 공원으로 밴쿠버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이다.

□ 밴쿠버 섬(Vancouver Island)

32,000 Km 의 면적으로 제주도의 약 20배 크기인 밴쿠버 섬은 북미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섬 중 가장 큰 섬으로 중심부에는 2,100 m 높이의 산이 우뚝 솟아 있다. 섬의 서해안은 굴곡이 심한 피요르드 해안이고 동해안은 완만한 해변으로 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산이 많다. 밴쿠버 섬 관광지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대중적인 관광지로 명성이 높은 빅토리아 와 밴쿠버 섬 서쪽 해안에 위치한 퍼시픽 림 국립공원(Pacific Rim National Park)이다.

4) 알버타州

□ 캐네디언 로키(Canadian Rockies)

북미대륙의 서쪽에 연안 지대와 중부 대평원을 가르며 남북으로 뻗어 있는 거대한 산맥이 바로 로키 산맥이다. 캐네디언 로키는 이 산맥의 캐나다령으로 밴프, 자스퍼, 요호, 코트니, 글레이셔 국립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이기도 하다.

캐네디언 로키 관광의 거점이 되는 곳은 밴프 (Banff)와 쟈스퍼 (Jasper) 두 도시이다. 캐네디언 로키는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청명한 하늘, 맑은 물,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웅장한 로키산, 무한한 삼림, 끝없는 대초원이 잘 보존되고 있어 이 곳을 찾는 이로 하여금 캐나다 특유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

□ 캘거리(Calgary)

캘거리는 밴쿠버에서 로키산맥을 넘으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대도시이다. 또한 캐나다의 중부 대평원으로 가는 입구이기도 하다. 서쪽에는 로키의 웅대한 모습이, 동쪽에는 광대한 프레이리(대초원)가 있는 캘거리는 캐나다의 역동하는 자연을 양 팔에 안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캘거리의 별명은 '소의 도시' 인데 알버타 주에서 생산되는 소로 요리된 스테이크가 캘거리의 명물요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캘거리 스탬피드(Calgary Stampede)' 축제 기간에는 세계 도처에서 관광객이 찾아온다.

○ 주요 관광명소
- 캘거리 타워(Calgary Tower): 다운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190.8m 높이의 관광타워이다. 전망대에서는 캘거리 시내를 조망할 수 있으며 로키산맥과 캘거리 주변으로 넓게 펼쳐 진 대평원을 바라볼 수 있다.
- 스티븐 애비뉴 몰(Stephen Avenue Mall): 시청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8번 애비뉴와 3번 스트리트가 만나는 부근까지 조성된 일대의 상업지역이다. 차량이 통제되며 거리 양 옆으로 음식점과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서부 개척시대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인상적이다.

□ 에드먼턴(Edmonton)

알버타주의 주도인 에드먼턴은 유전을 바탕으로 하여 캐나다의 '오일 캐피탈'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도시이다. 이 도시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세계 최대의 쇼핑센터로 천지가 눈으로 뒤덮인 엄동설한의 겨울에도 쾌적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상점과 레스토랑, 호텔, 유원지와 인공호수를 유리의 돔으로 덮은 거대한 몰을 갖추고 있다. 또한 비교적 짧은 여름을 실컷 즐기려는 듯 여름에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페스티벌 시티'로도 알려져 있다.

○ 주요 관광명소
- 알버타 주의사당(Alberta Legislation Building): 1912년에 건축된 그리스 양식의 건물로 도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드먼턴 성채 유적지에 건설되었으며, 알버타 주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실과 도서관, 본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다.
- 포트 에드먼턴 공원(Fort Edmonton Park): 다운타운 남서쪽에 위치한 역사공원으로 18세기 중순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도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 애틀란틱 캐나다(Atlantic Canada)

캐나다 동쪽의 대서양에 면한 뉴펀들랜드&래브라도 (NF), 뉴브런즈윅 (NB), 노바스코시아(NS),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의 네 州는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영국 및 프랑스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지역이다. 특히 P.E.I.는 몽고메리 여사의 명작 '빨강머리 앤'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네 주 중에서 관광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이다.

이들 네 州는 아름다운 해안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경관, 개척 시대의 전통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조 가옥 마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웅대한 로키 산맥의 아름다움과 함께 토론토의 세련미, 유럽풍의 몬트리올 등과는 또 다른 캐나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자료: 캐나다 정부 및 한인 여행사)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주요 전시회 개최 일정

o 환경 컨퍼런스(Blue Skies & Grass Root Conference)
- 개최기간: 2009/05/06~2009/05/08
- 개최도시: 밴쿠버
- 전시장: Victoria Conference Centre
- 전시분야: 환경, 생태
- 주최기관: BC Human Resources Management Association
- 담당자: Jacques LeBlanc
- 주소: 1101-1111 West Hastings Street, Vancouver, BC V6E 2J3
- 전화: (604) 694-6935
- 홈페이지: http://www.bchrma.org
- E-메일: sponsorship@bchrma.org

o 캘거리 국제에너지자원 박람회(Gas and Oil Exposition 2009)
- 개최기간: 2009/06/09~2009/06/11
- 개최도시: 캘거리
- 전시장: Calgary Exhibition & Stampede
- 전시분야: 건축, 건설, 빌딩, 기계류, 에너지, 화학
- 주최기관: DMG World Media (Canada) Inc.
- 담당자: Lesley Stevenson
- 주소: #605, 999-8 Street S.W., Calgary, Alberta T2R 1J5
- 전화: 1-403-209-3555
- 팩스: 1-403-245-8649
- 홈페이지: http://www.dmgworldmedia.com
- E-메일: lesleystevenson@dmgworldmedia.com

o CGTA 가을 선물용품 박람회(Canadian Gift & Tableware Show)
- 개최기간: 2009/08/09~2009/08/13
- 개최도시: 토론토
- 전시장: Toronto International Centre
- 전시분야: 선물, 판촉용품
- 주최기관: THE CGTA GIFT SHOW
- 주소: 42 VOYAGER CRT.S., TORONTO ON M9W 5M7
- 전화: 1-416-679-0170
- 팩스: 1-416-679-0175
- 홈페이지: www.cgta.org

o 밴쿠버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회(Interior Design Show West)
- 개최기간: 2009/09/17~2009/09/20
- 개최도시: 밴쿠버
- 전시장: Vancouver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 전시분야: 실내·외 장식. 인테리어
- 주최기관: Merchandise Mart Properties Inc.

- 담당자: Mr. Jason Heard - Show Director
- 주소: 1788 West Broadway, Suite 602 Vancouver, BC, Canada, V6J 1Y1
- 전화: 1-604-730-2060
- 팩스: 1-604-730-2080
- 홈페이지: http://www.idswest.com
- E-메일: jheard@mmart.com

○ 토론토 해상 국제 보트쇼(Toronto In-Water Boat Show)
- 개최기간: 2009/09/17~2009/09/20
- 개최도시: 토론토
- 전시장: Exhibition Centre
- 전시분야: 조선·보트
- 주최기관: Ontario Marine Operators Association
- 주소: 955 Lakeshore Blvd., Toronto, Ontario M6K 3B9, Canada
- 홈페이지: http://www.torontoinwaterboatshow.com

○ 토론토 공작기계 박람회(Canadian Machine Tool Show2009)
- 개최기간: 2009/10/20~2009/10/22
- 개최도시: 토론토
- 전시장: The Direct Energy Centre, Heritage Court, Exhibition Grounds
- 전시분야: 계측제어기기, 공작기계, 기계류
- 주최기관: Reed Exhibition Companies Inc.
- 주소: 3761 Victoria Park Ave., Unit 1, Scarborough, ONT. MIW 3S2
- 전화: (416)4917565

○ PGA 골프 박람회(Ontario PGA Golf Merchandise Show 2009)
- 개최기간: 2009/10/28~2009/10/30
- 개최도시: 토론토
- 전시장: Toronto International Centre
- 전시분야: 스포츠, 레저용품
- 주최기관: Reed Exhibitions Canada
- 담당자: Amy Robson
- 주소: 505 Consumers Road, Suite 901, Toronto, Ontario, Canada, M2J 4V8
- 전화: 416-756-8246
- 팩스: 416-756-8241
- 홈페이지: http://www.reedexpo.ca/ontariopga
- E-메일: arobson@reedexpo.com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1) 대사관 및 총영사관

○ 대사관 (Korean Embassy)
- 주소: 150 Boteler Street, Ottawa, ON, K1N 5A6, Canada
- Tel : (613) 244-5010
- Fax : (613) 244-5043
- 홈페이지: www.koreanembassy.ca

○ 주토론토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Toronto)
- 주소: 555 Avenue Rd., Toronto, ON, M4V 2J7, Canada
- Tel : (416) 920-3809, Fax : (416) 924-7305
- 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on.ca

○ 주밴쿠버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Vancouver)
- 주소: 1090 W. Georgia St, Suite 1600, Vancouver, B.C., V6E 3V7, Canada
- Tel : (604) 681-9581, Fax : (604) 681-4864
-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mission/emb/embassy.mof?si_dcode=CA-VA

○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Montreal)
- 주소: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H3B 2C4, Canada
- Tel : (514) 845-2555, Fax : (514) 845-1119
- 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qc.ca/

2) KOTRA KBC

○ 주토론토 KBC (Korea Business Center, Toronto)
- 주소: 65 Queen St., W., #600, Toronto, ON M5H 2M5
- Tel : (416)368-3399, Fax : (416)368-2893
- E-mail : info@kotra.ca

○ 주밴쿠버 KBC (Korea Business Center, Vancouver)
- 주소: 925 West Georgia St., Suite 1320, Vancouver, BC, V6C 3L2
- Tel : (604)683-1820, Fax : (604)687-6249
- E-mail : ktc@kotrayvr.com

3) 캐나다 정부 및 민간기관 웹 사이트

○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www.canada.gc.ca)

○ 캐나다 국경 관리국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 주소: http://www.cbsa.gc.ca/menu-eng.html

○ 캐나다 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
- 주소: http://www.chamber.ca/article.asp?id=3

○ 캐나다 정보기술협회(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Canada)
- 주소: http://www.itac.ca/

○ 캐나다 첨단기술협회(Canadian Advanced Technology Association)
- 주소: http://www.cata.ca/

○ 캐나다 표준협회(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 주소: http://www.csa.ca/Default.asp?language=english

○ 캐나다 포장 협회 (The Packaging Association of Canada)
- 주소: http://www.pac.ca/